연구보고서 2016-01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민기채 · 조성은 · 한경훈 · 김아람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머 리 말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다. 현재 분단국가는 한반도뿐이다. 분단체제가 무너질 것 같지만 여전히 통일은 피부로 다가오지 않고 있으며, 남과 북의 진정한 통합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통일에 대한 대비는 필수불가결하다. 준비된 통일과 준비되지 않는 통일이 국가미래에 주는 충격은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타고 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통일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 및 남북한 정세에 일희일비하거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체계적인 통일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최근 통일연구에서는 급변사태에 의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상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통일방식은 확정적일 수 없으므로 다양한 가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때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 구상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제도와 실태를 외부자의 관점에서 선입견으로 접근한다면, 향후 통합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공산이 크다. 북한의 제도와 실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법령과 사전 등 원전에 기초한 제도설명 및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파악이 요청되며, 최종적으로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분야는 연금이다. 독일의 경우 총 통일비용 중 약 25%가 연금분야에 사용되었다. 연금통합에 대한 제도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금지출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통일 이전 북한의 연금 제도와 실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다. 북한의 제도와 실태를 모른다면 통합 이슈를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동안 북한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연구는 년로년금과 공로자년금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지탱할 원천은 공적연금 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기환급의 성격을 갖는 인체보험과 사경제 영역인 노년기 근로소득에도 있다. 최근 공적연금제도 기능의 약화와 장마당의 확대는 공적연금 이외의 노후소득보장원에 대한 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 원전에 기초하여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분석되지 못하였던 인체보험과 노년기 근로활동에 대한 제도와 실태 연구까지 포괄함으로써 연구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통일시대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생산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민기채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다. 조성은 교수와 한경훈 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터뷰에 헌신하였다. 김아람 연구원과 이재은 연구원은 연구 진행과정에서의 실무적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별히 장시간 인터뷰에 참여한 25분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다. 공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6. 1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 형 표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김 성 숙

목 차 | Contents

요 약 ····· 1

Ⅰ. 서 론 ····· 3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3
2. 연구방법 ····· 37
3. 연구내용 ····· 43

Ⅱ. 선행연구 검토 ····· 45

Ⅲ.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 49
1. 북한의 사회보장 법령 및 제도 개괄 ····· 49
2.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 ····· 56
가. 법령에 기초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 56
나. 사전에 기초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 70
다.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 102
3. 북한의 소득보장 법령 및 제도 개괄 ····· 105
4.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 111
가. 년로년금 ····· 111
나. 로동능력상실년금 ····· 136
다. 유가족년금 ····· 146
라. 공로자년금 ····· 154
마. 인체보험 ····· 162
바. 노년기 근로활동 ····· 169
5. 남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비교 ····· 171

Ⅳ.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실태 및 정합성 ····· 181
1. 년로년금 ····· 181
가. 적용대상 ····· 181
나. 급여 ····· 196
다. 재원 ····· 223
라. 전달체계 ····· 227
2. 로동능력상실년금 ····· 239
가. 적용대상 ····· 239
나. 급여 ····· 251
다. 전달체계 ····· 257
3. 유가족년금 ····· 260
4. 공로자년금 ····· 262
가. 적용대상 ····· 262
나. 급여 ····· 267
다. 전달체계 ····· 282
5. 인체보험 ····· 283
가. 적용대상 ····· 283
나. 급여 ····· 284
다. 재원 ····· 286
라. 전달체계 ····· 289
6. 노년기 근로활동 ····· 292
가. 김일성 시대 ····· 292
나. 김정일 시대 및 김정은 시대 ····· 293

Ⅴ. 결론 및 제언 ····· 301
1. 결론 및 함의 ····· 301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308

표 차 례

〈표 Ⅰ-1〉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 선정순위 ····· 40
〈표 Ⅰ-2〉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 인적사항 ····· 41
〈표 Ⅱ-1〉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관련 주요 선행연구 동향 ····· 47
〈표 Ⅲ-1〉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법령 내용 ····· 58
〈표 Ⅲ-2〉 법령에 기초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 66
〈표 Ⅲ-3〉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사전 내용 ····· 71
〈표 Ⅲ-4〉 사전에 기초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 98
〈표 Ⅲ-5〉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 103
〈표 Ⅲ-6〉 생활비등급제 ····· 120
〈표 Ⅲ-7〉 사회보험료 ····· 126
〈표 Ⅲ-8〉 국가 및 기업소의 사회보험료 ····· 127
〈표 Ⅲ-9〉 년로년금 관련 주요 법령 조항 ····· 132
〈표 Ⅲ-10〉 년로년금 제도 ····· 136
〈표 Ⅲ-11〉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급여수준: 업무기인성의 경우 ····· 139
〈표 Ⅲ-12〉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근속연한: 업무불기인성의 경우 ····· 141
〈표 Ⅲ-13〉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급여수준: 업무불기인성의 경우 ····· 142
〈표 Ⅲ-14〉 로동능력상실년금 관련 주요 법령 조항 ····· 143
〈표 Ⅲ-15〉 로동능력상실년금 제도 ····· 145
〈표 Ⅲ-16〉 유가족년금에서 유족의 범위: 사회보험법 ····· 147
〈표 Ⅲ-17〉 유가족년금에서 유족의 범위: 사전 ····· 148
〈표 Ⅲ-18〉 유가족년금의 급여수준: 업무기인성의 경우 ····· 149
〈표 Ⅲ-19〉 유가족일시금의 급여수준: 업무불기인성의 경우 ····· 150
〈표 Ⅲ-20〉 유가족년금 관련 주요 법령 조항 ····· 151
〈표 Ⅲ-21〉 유가족년금 제도 ····· 153

〈표 Ⅲ-22〉 북한의 훈장 ····· 155
〈표 Ⅲ-23〉 공로자년금 제도 ····· 160
〈표 Ⅲ-24〉 인체보험 관련 주요 법령 조항 ····· 161
〈표 Ⅲ-25〉 인체보험 제도 ····· 167
〈표 Ⅲ-26〉 노년기 근로활동 관련 주요 법령 조항 ····· 168
〈표 Ⅲ-27〉 노년기 근로활동 제도 ····· 170
〈표 Ⅲ-28〉 남북한 공적연금제도 비교 ····· 171
〈표 Ⅲ-29〉 남북한 공적연금 적용규모 비교:
북한의 이론적 적용규모와 남한의 실질적 적용규모 ····· 176
〈표 Ⅳ-1〉 년로년금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근로연한 ····· 195
〈표 Ⅳ-2〉 시기와 대상에 따른 급여수준 및 급여주기: 년로년금 ····· 197
〈표 Ⅳ-3〉 시기와 대상에 따른 평균 임금 액수 ····· 209
〈표 Ⅳ-4〉 시기별 주요 생필품 장마당 가격 ····· 213
〈표 Ⅳ-5〉 시기별 주요 생필품 국정 가격 ····· 214
〈표 Ⅳ-6〉 년로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 238
〈표 Ⅳ-7〉 시기와 대상에 따른 급여수준 및 급여주기: 로동능력상실년금 ·· 252
〈표 Ⅳ-8〉 로동능력상실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 259
〈표 Ⅳ-9〉 유가족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 262
〈표 Ⅳ-10〉 공로자년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최소 훈장 요건 ····· 271
〈표 Ⅳ-11〉 공로자의 공훈에 따른 급여수준 ····· 274
〈표 Ⅳ-12〉 시기와 대상에 따른 급여수준 및 급여주기: 공로자년금 ····· 277
〈표 Ⅳ-13〉 공로자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 283
〈표 Ⅳ-14〉 인체보험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 291
〈표 Ⅳ-15〉 노년기 근로활동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 300

그림차례

〈그림 Ⅲ-1〉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 ····· 51
〈그림 Ⅲ-2〉 북한의 사회보장 법령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 구분 ····· 106
〈그림 Ⅲ-3〉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 172
〈그림 Ⅲ-4〉 남북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비교 ····· 175
〈그림 Ⅳ-1〉 년로년금 전달체계 ····· 237

요 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제도와 실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통일국가 건설 준비를 위한 선차적인 과제임

○ 그동안 북한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제도’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실태’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함

○ 기존 제도연구에서는 1층에 해당하는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은 분석하였으되, 1층 이외에 노후소득보장 원천이 될 수 있는 인체보험 및 노년기 근로활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음

○ 북한을 직접 가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원전 활용이 중요하나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원전의 직접 인용보다 간접 인용이 대부분임

○ 이에 본 연구는 제도와 실태 연구의 병행, 1층 이외에 노후소득보장 원천이 될 수 있는 인체보험 및 노년기 근로활동에 대한 분석, 법령을 포함한 각종 사전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관련 용어의 변화 분석,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규명 등 북한원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원전에 기초하여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을 설명하는 것임

2. 연구방법

❑ 연구주제와 관련된 남한 선행연구 및 북한 원자료에 대한 문헌 분석을 함

○ 199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발간된 북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26개의 남한 연구물을 추출하여 분석함

○ 1936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 및 법령의 변천,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 및 내용의 변천을 분석함

❑ 북한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시행함

○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으로 본 연구목적에 부합한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함

○ 먼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학 박사를 인터뷰 참여자로 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 참여자에게 본 연구목적과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 대하여 대면 또는 전화의 방식으로 사전 인터뷰를 시행함으로써 1차적으로 검증함

○ 인터뷰 질문지는 북한 및 노후소득보장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함

○ 최종적으로 확정된 구조화된 설문지에 기초하여 2016년 3월 24일부

터 5월 27일까지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진행함

○ 1,892분의 녹음시간(평균 76분 소요)에 대한 총 399페이지의 녹취록을 작성함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이외에도 북한 사회보장 전문가, 연금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과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함

○ 북한의 법령에 기초한 제도 이해 제고 및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와 제도 간 정합성 해석을 위해 FGI를 진행함

3. 연구내용

❑ 제Ⅱ장에서는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또는 실태를 다룬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독창성을 제시함

❑ 제Ⅲ장에서는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분석함

○ 북한의 사회보장 법령 및 사전에 기초하여 시기별 북한의 소득보장 관련 용어의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이라는 용어가 기존 제도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규명함

○ 주요 제도분석 대상은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인체보험, 노년기 근로활동임

○ 남북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 수급률 비교를 통해 북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 제Ⅳ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인터뷰에 기초하여 북한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분석함

○ 제Ⅲ장에서 분석한 제도내용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해석함

○ 이상의 제도분석과 실태분석에 기초하여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을 설명함

❑ 제Ⅴ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 요약, 학술적 함의 제시, 후속연구를 제언함

○ 연구목적에 대한 본 연구의 최종결론과 그 결론을 뒷받침할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함

○ 기존 연구에서 설명되지 못했거나 본 연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술적 함의를 제시함

○ 본 연구를 통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함

Ⅱ. 선행연구 검토

❑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도연구에 치중되어 있으며 실태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노후소득보장의 원천을 다층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1층의 제도에 집중하여 분석함

○ 연구방법에 있어 남북 제도비교와 통합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춘 반면, 북한원전의 직접 인용,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추계를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Ⅲ.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1. 북한의 사회보장 법령 및 제도 개괄

❑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음

○ 최상위에 사회주의헌법이 자리하고 있음

[그림 1]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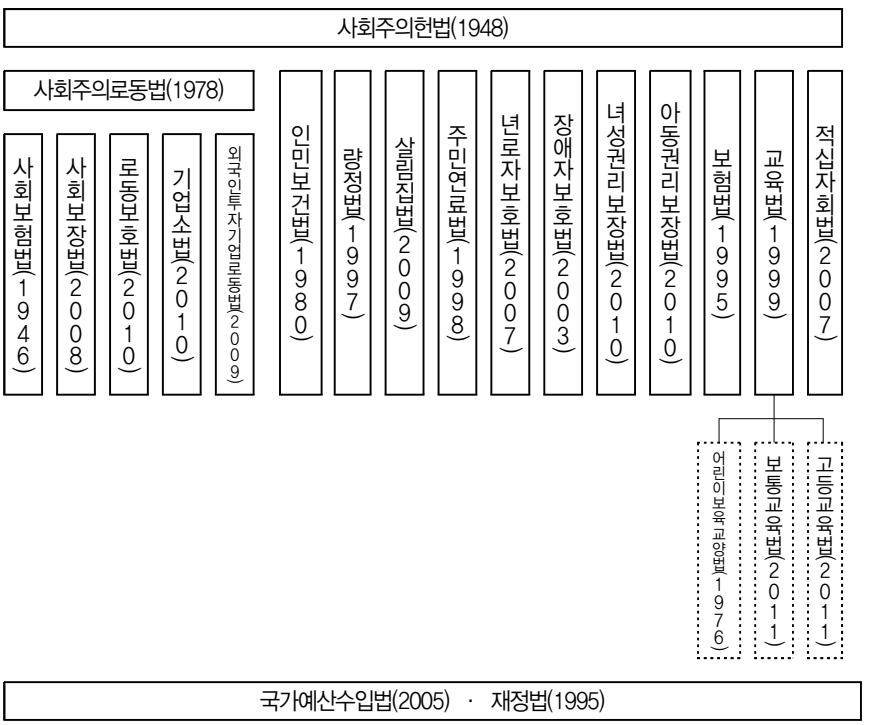

주: 1) 괄호 안은 법 제정년도임
2)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은 사회보장 관련 법령의 재정적 기반이 된다는 의미에서 하단에 배치한 것이며, 각 사회보장 법령들의 하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님

○ 헌법 아래의 하위 법령들은 근로인민인지 공민인지에 따라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근로인민이라면 노동에 기초한 급여를 받고 공민이라면 거주에 기초한 급여를 받음

○ 본 연구주제는 노동에 기초한 소득보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위법으로서의 사회주의로동법과 하위법으로서의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로동보호법, 기업소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에 초점을 맞춤

2.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

❑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일부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

○ 특정 법령의 내용만을 다루거나, 다양한 사전(事典)을 중심으로 해당 용어를 보다 세밀하게 해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가. 법령에 기초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령을 최초 제정년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분석함

○ 관련 법령으로 조국광복회 10대 강령(1936),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1946),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 북조선 노동당 강령(1946), 사회보험법(19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1978),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 년로자보호법(200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2010), 사회보장법(2008,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2, 20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그 변화를 분석함

○ 이상의 법령들에 기초하여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를 시간 순으로 연결함

나. 사전에 기초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 소득보장과 관련된 사전을 최초 출판년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분석함

○ 정치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3a, 1973b), 경제사전(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1985b), 재정금융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5), 조선대백과사전(백과사전출판사, 1995~200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그 변화를 분석함

○ 이상의 사전들에 기초하여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를 시간 순으로 연결함

다.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 법령과 사전 간에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를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과정을 체계화 함

○ 북한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장 풍부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험법(1946년),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경제사전(1985), 재정금융사전(1995), 사회보장법(2008년)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 함

- 생활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과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됨
- 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은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방조비, 정휴양비, 료양비로 구분됨
- 비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은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유가족년금, 전사자가족 유가족년금, 피살자가족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으로 구분됨
-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보조금은 영예군인 · 영예전상자 보조금, 영예군인 · 영예전상자 간호보조금, 인민군후방가족원호보조금, 장례보조금, 귀국공민부양가족 생활보조금, 로력자가 없는 사회보장년금대상자세대에 주는 보조금, 의료상 방조비로 구분됨

3. 북한의 소득보장 법령 및 제도 개괄

❑ 이상의 소득보장 용어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북한의 소득보장 법령 및 제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 북한의 사회보장 법령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 구분

	근로자 (일시 로동능력상실자 포함)	비근로자 (년로자, 로동능력상실자, 무의무탁자)
사회주의헌법 (1948)	모든 공민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	
	특별보호: 혁명투사 · 혁명렬사가족 · 애국렬사가족 · 인민군후방가족 · 영예군인	
	국가사회보험제	국가사회보장제
사회주의로동법 (1978)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 로동재해 · 질병 · 부상으로 인한 일시 로동능력상실자(6개월 미만)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 로동재해 · 질병 · 부상으로 인한 로동능력상실자(6개월 이상)
		로동,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로동능력상실 혹은 사망시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 배려
		유가족년금: 로동재해 · 질병 · 부상으로 근로자 사망시 부양가족에게 지급
		부양의무자 부재 노인과 장애인은 양로원 · 양생원에서 무상 돌봄
사회보험법 (1946)	■ 피보험자는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거주 외국인 적용) ■ 일시적 노동능력상실 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실업보조금, 폐질년휼금, 유가족년휼금, 양로년휼금, 의료상방조 ■ 고용주(유해 및 위험정도에 따른 납부비율)와 피보험자(임금 또는 보수의 1%)의 공동부담 ■ 최후소속직장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청구서(증빙서류첨부) 제출→도 인민위원회 · 노동부 승인→시 · 군 인민위원회 지급	
사회보장법 (2008)		■ 사회보장대상은 년로자, 로동능력상실자, 부양의무자 부재자 ■ 국가공로자 우대원칙 ■ 사회보장년금 혹은 보조금 중 선택 ■ 기관·기업소·단체 신청 →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 인민위원회 심의·승인→리·읍·로동자구·동사무소 통보→지급
년로자보호법 (2007)	■ 남녀 60살 이상의 공민,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남60세, 여55세 이상의 공민 ■ 공로있는 년로자의 특별보호원칙 ■ 년로년금과 보조금	
국가예산수입법 (2005)	사회보험료: 무상치료 · 국가사회보험 · 사회보장제 위한 국가예산 동원 자금	
	사회보험료 = 공동자금(기업소, 협동단체) + 로동보수자금(종업원) 월판매수입금에 따라 계산된 생활비의 7% / 월로동보수액의 1%	
	■ 외국투자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는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함 ■ 협동농장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체사회보험기금으로 적립	
재정법 (1995)	교육 · 보건 · 사회보험 · 사회보장은 인민적시책비에서 지출	

주: 괄호 안은 최초 법령 제정년도

4.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가. 년로년금

❑ 년로년금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년로년금 제도

구분	내용
적용대상	규정된 근속로동년한(일반로동의 경우 남성 15년 이상, 여성 12년; 힘든로동의 경우 남성 12년, 여성 10년)을 충족한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의 노동자 · 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외국인
급여	노동자 · 사무원 : 기여기간 및 로동보수와 생활비등급제에 기초한 급여 농민 : 로력일과 협동농장로력보수에 기초한 급여
	기본특징: 소득비례의 원리(기여기간 반영 및 생활비등급제), 가입기간 합산, 양로일시금, 이중급여 제한, 조기연금제도의 부재, 생활비와 년금의 병급 수급
재원	노동자 · 사무원 : 로동보수액의 1%(피고용인) + 월생활비의 7%(기업소 및 협동단체) 농민 : 년간 분배몫의 1%(피고용인)
전달체계	기관 · 기업소 · 단체 · 협동농장위원회 신청 →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 인민위원회 심의 · 승인 → 동 · 리 사무소 통보 → 지급

나. 로동능력상실년금

❑ 로동능력상실년금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로동능력상실년금 제도

구분		내용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한 노동자 · 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혁명투사와 그 부양가족, 로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로력자 부재세대, 공로있는 부양가족, 귀국공민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경우 일정 기여기간 충족 요건
급여	급여 종류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폐질일시금
	급여 수준	기본특징: 소득비례의 원리(기여기간 반영 및 생활비등급제),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급여, 업무관련성, 이중급여 제한 〈업무기인성 경우〉 제1류 폐질자에게는 최근 1년간 평균임금연액의 90%, 제2류에게는 65%, 제3류에게는 35%의 급여 한도 〈업무불기인성의 경우〉 제1종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 기준 제1류 폐질자 60%, 제2류 폐질자 40%, 제3류 폐질자 25%의 급여 한도 제2종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 기준 제1류 폐질자 58%, 제2류 폐질자 38%, 제3류 폐질자 24%의 급여 한도 제3종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 기준 제1류 폐질자 57%, 제2류 폐질자 37%, 제3류 폐질자 23%의 급여 한도
재원		통합 사회보험료
전달 체계		통합 전달체계

다. 유가족년금

❑ 유가족년금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유가족년금 제도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내용</th></tr>
<tr><td>적용 대상</td><td colspan="3">노동자 · 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혁명투사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의 부양을 받아오던 가족들이며, 유족의 범위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의 가족원과 16세 미만의 가족원,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들과 전문학교 학생들, 로동능력을 잃은 1, 2류의 불구자, 혁명렬사, 반일애국렬사증을 받은 유가족
<table>
<tr><th>지급대상</th><th colspan="2">요건</th></tr>
<tr><td rowspan="3">부양받던 유가족</td><td>16세 미만</td><td rowspan="3">또는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들과 전문학교 학생들
또는 불구 1, 2류
또는 혁명렬사, 반일애국렬사증을 받은 유가족</td></tr>
<tr><td>남성 60세 이상</td></tr>
<tr><td>여성 55세 이상</td></tr>
</table></td></tr>
<tr><td rowspan="2">급여</td><td>급여 종류</td><td colspan="2">유가족년금, 전사자가족 유가족연금, 피살자가족 유가족연금, 유가족일시금</td></tr>
<tr><td>급여 수준</td><td colspan="2">기본특징: 소득비례의 원리(기여기간 반영 및 생활비등급제), 유가족 수에 따른 차등급여, 업무관련성
〈업무기인성 경우: 근속년한 불문, 년금 형태〉
유가족 1명 :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40%
유가족 2명 :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60%
유가족 3명 :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90%
〈업무불기인성의 경우: 최소 근속년한 3년, 일시금〉
제1종 1. 근속연한 10년 미만자: 전(全)노동경력기간 평균임금연액 기준 유가족 1명 85%, 유가족 2명 110%, 유가족 3명 이상 135%
제2종 1. 근속연한 10년 미만자: 전(全)노동경력기간 평균임금연액 기준 유가족 1명 80%, 유가족 2명 105%, 유가족 3명 이상 130%
제3종 모든 직장에 종사하는 사무원은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령의 60%</td></tr>
<tr><td>재원</td><td colspan="3">통합 사회보험료</td></tr>
<tr><td>전달 체계</td><td colspan="3">통합 전달체계</td></tr>
</table>

라. 공로자년금

❑ 공로자년금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4〉 공로자년금 제도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내용</th></tr>
<tr><td>적용 대상</td><td colspan="3">《김일성훈장》, 《김일성상》 등 국가규정에 지적된 훈장, 명예칭호, 영예칭호, 표창을 비롯하여 높은 급의 수훈 및 표창을 받은 공로자 중 로동능력을 완전히 잃었거나 남자 60살, 녀자 55살에 이른 사람</td></tr>
<tr><td rowspan="3">급여</td><td>급여 종류</td><td colspan="2">공로자년금, 공로자로동능력상실년금, 공로자유가족년금</td></tr>
<tr><td rowspan="2">급여 수준</td><td>년금</td><td>공로자년금: 공훈 및 표창 수준에 따른 급여
공로자로등능력상실년금: 최근 봉급(1개월)의 100%를 회복시까지 지급
공로자유가족연금: 공로자가 공로기간에 있어서 보상년금을 받는 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년금을 유가족에게 계속 지급</td></tr>
<tr><td>보조금</td><td>공로자유가족일시금: 최근 봉급(1개월)의 100%
공로자장례보조금: 3만원
공로자유가족 로동능력상실보조금 및 장례보조금(공로자의 가족의 로동능력상실 및 사망 시) : 공로자년금의 50%</td></tr>
<tr><td>재원</td><td colspan="3">통합 사회보험료</td></tr>
<tr><td>전달 체계</td><td colspan="3">통합 전달체계</td></tr>
</table>

마. 인체보험

❑ 인체보험에 대한 기본특징, 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인체보험 제도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내용</th></tr>
<tr><td>기본 특징</td><td colspan="3">임의가입, 적립방식, 장기저축 및 반환적 성격</td></tr>
<tr><td>적용 대상</td><td colspan="3">보험가입자(공민이면 누구나 가능)
: 개인가입 또는 집단가입(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td></tr>
<tr><td rowspan="3">급여</td><td>급여 종류</td><td colspan="2">만기 · 사망보험금, 로동능력상실보험금(모두 일시금)</td></tr>
<tr><td rowspan="2">급여 수준</td><td>만기 · 사망보험금</td><td>보험금 전액 + 이자 4%</td></tr>
<tr><td>로동능력상실보험금</td><td>상실정도에 따라 계약된 보험금</td></tr>
<tr><td rowspan="4">재원</td><td colspan="2">보험료</td><td>중앙보험기관이 정한 적립규모와 방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분기별 보험료 납부
ex) 보험가입자가 3년 보험기간에 100원을 약정한 경우: 분기별 8원 × 12분기 납부
(만기보험금 = 보험료 96원 + 이자 4원)</td></tr>
<tr><td rowspan="2">보험료 면제</td><td>전액 면제</td><td>로동능력 완전상실한 계약자</td></tr>
<tr><td>일부 면제</td><td>로동능력 부분상실한 계약자
로동능력상실정도에 따라 추후 보험료의 일부 면제</td></tr>
<tr><td>전달 체계</td><td colspan="3">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결산년도 종료 3개월 내 업무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중앙보험지도기관 및 해당 재정기관에 제출
보험대리인 및 보험중개인 가능</td></tr>
</table>

바. 노년기 근로활동

❑ 노년기 근로활동 관련 논의에서 나온 주요 법령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6〉 노년기 근로활동 제도

구분		내용
기본 특징	주요 사회참여활동	강연, 담화, 강의, 전습, 번역, 창작, 예술활동, 공원 및 유원지 관리, 공중질서유지 같은 사회활동
	지방정부 및 년로자보호기관의 역할	년로자의 나이, 건강상태, 지식정도 같은 것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
적용 대상	년로자는 남녀 60세 이상의 공민 노동연한 충족 또는 현재 근로 중인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공민 포함	
급여	각 근로활동에 따른 생활비 지급 생활비와 년금의 병급 수급 가능	

5. 남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비교

❑ 남북한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음

○ 남한은 총 5개의 층으로 구성되는데 0층으로서 기초연금, 1층으로서 국민연금(노령연금), 2층으로서 퇴직연금, 3층으로서 개인연금, 4층으로서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북한은 총 3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층으로서 사회보장년금(년로년금), 3층으로서 인체보험, 4층으로서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제도를 넘어 현실에서도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그림 3] 남북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비교

❑ 남북한 공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음

○ 남한의 제도가 급여의 종류, 즉 포괄성(comprehensiveness)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보장년금을 기준으로 그에 대응하는 남한의 제도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음

〈표 7〉 남북한 공적연금제도 비교

구분	북한			남한
기초보장	없음			기초연금
사회보험	사회보장년금	년로년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산재보험의 장해보상연금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상이군경 보훈급여
		유가족년금	유가족년금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전사자가족 유가족년금	군경유족 보훈급여
			피살자가족 유가족년금	군경유족 보훈급여
		공로자년금		보훈급여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		독립유공자 보훈급여
	없음			공무원연금
	없음			군인연금
	없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남북한 공적연금 적용규모(가입규모 및 수급규모)를 다음과 같이 탐색적으로 비교할 수 있음

○ 북한의 2008년 인구일제조사와 남한의 2016년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70.2%, 남한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63.3%임

○ 남북한 공적연금 수급률을 북한의 이론적 적용규모와 남한의 실질적 적용규모를 적용할 경우,

- 북한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가입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70.2%이며, 남한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52.5%임
- 북한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년로보장자와 로동능력상실자 모두 년로년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을 각각 수급한다는 가정 하에 90.9%이며, 남한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39.4%(국민연금 수급률 34.8% + 공무원연금 수급률 3.4% + 사학연금 수급률 0.5% + 군인연금 수급률 0.7%) 또는 66.4%(기초연금 수급률)임

Ⅳ.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실태 및 정합성

1. 년로년금

❑ 년로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은 다음과 같음

〈표 8〉 년로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구분	실태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결과	설명
적용대상	노동자 · 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모두 포함됨	○	제도상의 적용대상이 확인됨 다만, 외국인 검증 안 됨
	수급개시연령은 남성 61세, 여성 56세의 태어난 달부터이며, 해당 수급연령 당시 근로활동에 종사해야 함	△	성별에 따른 5세 차이가 확인됨 제도상의 수급개시연령보다 실제로 1살이 더 많음
	근로연한은 15년~35년으로 다양함 근로연한 성별 차이에 대해서도 일치하지 않음	×	근로연한은 실제 〉 제도(남성 12년, 여성 10년)
급여	시기별, 지역별, 부문별로 급여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함 7 · 1조치 이후 년로년금은 지급되었으나 실질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수급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찾아가지 않기도 함	△	1990년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됨 1990년대부터 '계획'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과 부문에서는 중단 또는 간헐적 지급되었고, '계획'이 작동하는 지역과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급됨
	기여기간 및 생활비등급제가 적용됨 소득비례 급여이지만 임금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년로년금 급여격차도 낮음 소득대체율은 대략 40%에서 80%까지 추정됨	○	기본적으로 기여기간 및 생활비등급제라는 소득비례의 원리가 확인됨
	직장 간 이동 시 가입기간 합산 가능 제대군인도 군복무기간 + 근로기간으로 합산됨	○	가입기간 합산이 확인됨

구분	실태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결과	설명
	일시금을 받아보지 못하였음	×	양로일시금은 제도로만 존재함
	보조금과 년금을 동시에 수급 못함	○	이중급여 없음이 확인됨
	조기연금제도는 들어본 적 없음	○	조기연금제도 없음이 확인됨
	생활비와 년금의 동시 수급은 불가함	×	현실에서는 병급 수급이 불가능함
재원	피보험자의 사회보험료가 있으나 실제 금액이 적어 비율을 알 수 없음 기업소의 사회보험료는 알 수 없음 기업소에서도 납부하나 실제 비율은 확인 못함 사회보험료는 위험별로 따로 부담하지 않음 군인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음	△	피보험자의 사회보험료는 존재하지만 로동보수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 기업소의 사회보험료는 확인되지 않음 통합 사회보험료로 확인됨 군인은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음
전달체계	기관 · 기업소 · 단체 · 협동농장위원회 신청 →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 인민위원회 심의 · 승인 → 리 · 읍 · 로동자구 · 동사무소 통보 → 지급	○	신청과 지급절차는 동일 수급 시 도장과 사회보장카드 제시하여 확인 다만, 일부 진술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연금 수급장소가 기존의 동사무소가 아닌 직장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함

2. 로동능력상실년금

❑ 로동능력상실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은 다음과 같음

〈표 9〉 로동능력상실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구분		실태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결과	설명
적용대상		6개월 이상의 장기적 로동능력을 상실한 노동자 · 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혁명투사와 그 부양가족, 로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로력자 부재세대에게 적용됨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경우 일정 기여기간을 충족해야 지급됨	○	제도상의 적용대상이 확인됨 6개월 기준도 일치함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경우 기여기간 충족 요건이 확인됨 다만, 귀국공민 검증 안 됨
급여	급여여부	시기별, 지역별, 부문별로 급여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함	△	대부분 수령함 그러나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수급경험 없음이 확인됨
	급여종류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재해, 일반, 영예군인의 급여종류에 따라 구분됨	○	로동능력상실년금의 3가지 급여종류가 확인됨
		일시금을 받아보지 못하였음	×	폐질일시금은 제도로만 존재
	급여수준	소득비례의 원리가 반영됨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급여임 업무기인성과 업무불기인성으로 구분됨 일시적보조금 또는 년로년금 수급시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이 불가함	△	소득비례 원리가 확인되나 각 노동강도 및 근속연한별 평균임금의 몇 % 반영되는지 확인 안 됨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급여가 확인되나 각 등급별 급여수준은 확인 안 됨 직무관련 여부로 구분됨 이중급여 수급 불가 확인됨
재원		사회보험료가 있으나 실제 금액이 작아 비율을 계산한 응답자는 없음 기업소에서도 납부하나 실제 비율은 확인 못함	△	통합 사회보험료
전달체계		신청과 지급절차는 모든 년금제도가 동일함 영예군인도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수령함	○	통합 전달체계

3. 유가족년금

❑ 유가족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은 다음과 같음

〈표 10〉 유가족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구분	실태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결과	설명
적용대상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제도 존재 자체에 대하여 부정함		×	유가족연금 제도 자체가 없다는 진술이 대부분임 다만 직무 중 사망한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3년간 유가족연금을 받았다는 진술 있음
	직무 중 사망한 배우자가 유가족으로 확인되나 연령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	적용대상 중 배우자는 확인되나 연령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급여	급여종류	유가족년금은 3가지 급여종류에 따라 구분되지 않음	×	3가지 급여종류를 특정할 수 없음
		일시금을 받아보지 못하였음	×	유가족일시금은 제도로만 존재
	급여수준	소득비례의 원리를 확인하지 못함 유가족 수에 따른 차등급여를 확인하지 못함 업무기인성의 경우 수급경험이 있으나, 유가족 인원에 따른 급여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움 업무불기인성의 경우 수급경험을 확인하기 어려움	△	소득비례의 원리를 확인하지 못함 유가족 수에 따른 차등급여를 확인하지 못함 직무관련 여부로 구분 가능

4. 공로자년금

❑ 공로자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은 다음과 같음

〈표 11〉 공로자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구분	실태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결과	설명
적용 대상	누구가 공로자가 될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공로자가 되기는 매우 어려움 공훈에 따라 수상한 훈장과 공로메달에 기초하여 공로자년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년로년금의 수급연령과 동일함 공로자의 로동능력상실 시 공로자년금 적용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공훈에 따라 공로자년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연령기준 확인됨 로동능력 상실기준 확인 안 됨
급여	급여 종류	공로자년금과 공로자유가족년금은 확인되나 공로자로동능력상실년금은 확인되지 않음	△	2개의 급여종류만 확인됨
	급여 수준	공훈에 따라 급여수준에 차이가 있음 일반 근로자보다 급여수준이 높음	○	공훈에 따른 급여임이 확인됨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급여수준임이 확인됨
전달 체계	신청과 지급절차는 모든 년금제도가 동일함 공로자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동사무소에서 수급 일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연금 수급장소가 기존의 동사무소가 아닌 과거 소속직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함		○	통합 전달체계

5. 인체보험

❑ 인체보험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은 다음과 같음

〈표 12〉 인체보험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 rowspan="2">실태</th><th colspan="2">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th></tr>
<tr><th>결과</th><th>설명</th></tr>
<tr><td>기본 특징</td><td colspan="3">강요받기도 하였으나 개인선택의 임의가입임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적립하였으며, 보험금은 장기저축 및 반환적 성격임</td><td>○</td><td>임의가입이 확인됨
적립방식이 확인됨
장기저축 및 반환적 성격이 확인됨</td></tr>
<tr><td>적용 대상</td><td colspan="3">노동자 · 사무원, 농민 등 공민이면 누구나 가능함
소속직장별로 집단가입하며 개별가입자를 확인하기 어려움</td><td>△</td><td>개별가입은 확인되지 않으며 집단가입만 확인됨</td></tr>
<tr><td rowspan="3">급여</td><td rowspan="2">급여 종류</td><td colspan="2">만기보험금을 수령함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공존함
로동능력상실보험금은 없다는 주장이 있음</td><td>△</td><td>만기보험금은 확인됨
사망보험금에 대해 주장이 상반됨
만기 · 사망보험금은 일시금으로 확인됨
로동능력상실보험금은 확인하지 못함</td></tr>
<tr><td rowspan="2">급여 수준</td><td>만기 · 사망보험금</td><td>만기 ·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전액과 일부 이자를 받았음</td><td>○</td><td>보험금과 이자의 합임</td></tr>
<tr><td>로동능력상실보험금</td><td>본인과 주변에서 경험하거나 들어보지 못함</td><td>×</td><td>로동능력상실보험은 확인하지 못함</td></tr>
<tr><td rowspan="3">재원</td><td colspan="2">보험료</td><td>약정 금액에 따라 생활비에서 사전 공제하며, 로임표에 기입됨</td><td>○</td><td>보험료 사전공제가 확인됨</td></tr>
<tr><td rowspan="2">보험료 면제</td><td>전액 면제</td><td>본인과 주변에서 경험하거나 들어보지 못함</td><td>×</td><td>면제 경험 부재함</td></tr>
<tr><td>일부 면제</td><td>본인과 주변에서 경험하거나 들어보지 못함</td><td>×</td><td>면제 경험 부재함</td></tr>
</table>

구분	실태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결과	설명
전달 체계	소속직장에 납부하며 은행을 통해 수령함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 존재는 알지 못함 보험대리인 및 보험중개인인 확인되지 않음	△	소속직장에 납부 및 은행 통한 수령이 확인됨 중앙보험지도기관,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은 확인되지 않음

6. 노년기 근로활동

❑ 노년기 근로활동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은 다음과 같음

〈표 13〉 노년기 근로활동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구분	실태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결과	설명
기본 특징	주요 사회 참여 활동	김일성 시기는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음 능력있는 노인들은 노년기에도 사회참여를 하고 있음 김정일 시기부터 사회활동에 참여하였으나, 법령상의 일자리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한 장마당 활동이 대부분이었음	△	누구나 근로활동을 할 수 있으나 장마당에서의 생계유지 활동이 대부분인 비공식적 일자리임
	지방정부 및 년로자 보호 기관의 역할	지방정부 또는 년로자보호기관의 역할은 확인되지 않음	×	공식적인 정부기관의 지원은 확인되지 않음
적용 대상	년로자의 연령은 남성 60세와 여성 55세이며, 기본적으로 남성은 노동연한을 충족한 후 노년기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부터 은폐된 실업이 등장함		△	년로자의 연령은 인지하고 있으나 은폐된 실업으로 년로자 연령 이전부터 장마당에서 활동함
급여	생활비와 년금의 동시 수급은 불가함		×	현실에서는 병급 수급이 불가능함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함의

❑ 본 연구의 결론은 북한 노후소득보장의 제도와 실태는 ‘일부에서만 정합성을 갖는다’는 것임.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 즉 ‘계획’이 작동하면 제도가 구현되나 ‘계획’이 작동하지 않으면 제도로만 존재할 뿐임

❑ 이상의 결론을 뒷받침할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에 대해 설명하면,

- 완전정합성의 경우, 노동자 · 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라는 적용대상, 기여기간 및 생활비등급제라는 소득비례의 원리, 군복무를 포함하여 직장 간 이동 시 가입기간 합산, 이중급여 부재, 조기연금제도 부재,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임
- 부분정합성의 경우, 성별에 따라 5세 차이가 있으나 제도상의 남성 60세, 여성 55세가 아니라 실제로는 남성 61세, 여성 56세 태어난 달부터라는 수급개시연령, 일부 지역과 부문에서 연금을 지급했으나 ‘계획’이 작동하는 지역과 부문에서만 급여, 피보험자는 통합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실제 금액이 적어 비율을 알 수 없으며 기업소의 납부비율을 확인할 수 없는 사회보험료임
- 완전부정합성의 경우, 제도상의 남성 12년, 10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최소 15년부터 최대 35년까지라는 근로연한, 수급연령 당시 근로활동에 종사해야만 하는 노동규정, 제도상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부재한 양로일시금, 제도상에는 동시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생활비와 연금의 병급수급임

○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에 대해 설명하면,
- 완전정합성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적 로동능력을 상실한 노동자 · 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혁명투사와 그 부양가족, 로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로력자 부재세대라는 적용대상,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경우 일정하게 충족해야 하는 기여기간,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이라는 3가지 급여종류, 일시적보조금 또는 년로년금 수급시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을 할 수 없는 이중급여 불가의 원칙, 업무기인성과 업무불기인성으로 구분되는 직무관련성 원칙,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임
- 부분정합성의 경우, 특정 시기에 일부 지역과 부문에서 수급하였으나 일부는 미수급, 소득비례 원리이나 확인되지 않는 노동강도별 및 근속연한별 소득대체율,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급여이나 확인되지 않는 등급별 소득대체율임
- 완전부정합성의 경우, 제도상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부재한 폐질일시금임

○ 유가족년금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에 대해 설명하면,
-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유가족년금 제도 존재 자체에 대하여 부정하였기에 완전정합성의 경우는 없음
- 부분정합성의 경우, 유가족연금 수급자로서 배우자는 확인되나 부적합한 연령조건, 업무기인성과 업무불기인성으로 구분되는 직무관련성 원칙임
- 완전부정합성의 경우, 유가족연금, 전사자가족 유가족연금, 피살자가족 유가족연금으로 구분되지 않는 급여종류, 제도상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부재한 유족일시금임

○ 공로자년금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에 대해 설명하면,
- 완전정합성의 경우, 공훈에 따라 누구나 공로자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적용대상 기준, 년로년금과 동일한 연령기준, 공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급여수준,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급여수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를 통한 전달체계임
- 부분정합성의 경우, 공로자년금과 공로자유가족년금은 확인되나 공로자로동능력상실년금은 확인되지 않는 급여종류임
- 북한은 공훈 중심의 사회이므로 제도와 불일치한 완전부정합성의 경우는 없음

○ 인체보험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에 대해 설명하면,
- 완전정합성의 경우, 임의가입, 적립방식, 장기저축 및 반환적 성격의 보험, 일시금 방식의 만기 · 사망보험금, 만기 · 사망보험금 급여수준은 보험금과 이자의 합, 생활비에서 사전 공제되는 방식의 보험료임
- 부분정합성의 경우, 가입방식에서 집단가입은 존재하나 부재한 개별가입, 제도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 사망보험금, 소속직장 납부 및 은행을 통한 수령방식이나 중앙보험지도기관,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의 존재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전달체계임
- 완전부정합성의 경우, 부재한 로동능력상실보험금, 로동능력 완전상실 및 부분상실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제도임

○ 노년기 근로활동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에 대해 설명하면,
-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년로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노년기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완전정합성의 경우는 없음
- 부분정합성의 경우, 누구나 근로활동을 할 수 있으나 장마당에서의 생계유지 활동이 대부분인 비공식적 일자리, 년로자의 연령은 인지

하고 있으나 은폐된 실업으로 년로자 연령 이전부터 시작하는 장마당 활동임

- 완전부정합성의 경우, 지방정부 또는 년로자보호기관의 부재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제도상에는 동시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생활비와 연금의 병급수급임

❑ 기존 연구에서 설명되지 못했거나 본 연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술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단층이 아니라 다층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공로자년금과 영예군인년금은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가 아닌 통합된 제도 내의 급여수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한 대상별 제도임. 특히 영예군인년금은 로동능력상실년금의 3가지 급여종류 중 하나임

○ 별도의 특별연금제도로써 군인연금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별도의 군인연금제도의 부재는 직업군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원, 경비대 등 군인신분인 모든 군기관 종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임

○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를 볼 때, 양로년휼금, 폐질년휼금, 유가족년휼금은 각각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으로 변경됨

○ 사회보장년금은 북한의 모든 연금제도를 통칭하는 용어임

○ 사회보장법에서 등장한 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사회보장제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임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본 연구를 통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음

○ 계획이 작동하는 지역 및 부문과 계획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 및 부문에 대한 시기별 북한연금 지도구축(mapping)을 할 필요가 있음

– 계획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소한 은폐된 실업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근로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음

○ 농민을 위한 연금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는지를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협동농장 농민들의 경우, 노동자·사무원과 달리 농민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국가예산으로 전환되지 않고 각 협동농장 내에서 자체기금으로 적립되어 사용된다는 점 등을 다각도로 고려할 때 추후 충분히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음

○ 근로연한을 충족하지 못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를 위해 별도의 '년금과 보조금'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다 심도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법령상으로만 이해한다면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은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노동연한을 채우지 못한 노인과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들을 위해 지급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써 역할을 한다는 해석이 가능함

– 만약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있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3개의 층 이외의 0층으로 이해될 수 있음

○ 2000년대 중반부터 전달체계가 동사무소에서 과거 소속단위로 변경되었다는 일부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인터뷰 참여자는 년로년금 집행기관이 동사무소가 아니라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의 과거 소속단위로 변경되었고, 군인들의 경우 동사무소가 아닌 군사동원부에서 연금을 수령했으며, 동사무소에서 사회보장 담당 지도원이 없어졌다는 주장을 하였음

○ 로동능력상실년금 수령시 장애정도에 따른 급여차이, 경노동 종사자 구분, 근속연한 조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로동능력상실년금 수령시 장애정도에 따른 급여수준이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수급자는 경노동에 종사해야만 하며 어떤 수급자는 경노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며,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경우 근속연한 조건이 불분명함

❑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음

○ 다양한 북한 원자료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1946년 제정된 북한 사회보험법은 용어 및 제도에서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공개되어 있고 접근가능한 북한 원자료의 활용은 기존 연구에서 포착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게 하므로 로동신문, 김일성 저작집, 김일성 저작선집, 김정일 선집, 조선로동당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등의 출판 단행본, 경제연구 · 근로자 · 사회과학 등의 학술지 논문, 조선로동당대회 및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구학적 특성 및 실험자 효과로 인한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결과의 편향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는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법령, 사전, 신문, 단행본, 논문 등으로만 북한 노후소득보장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음
- 연구방법상의 한계가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 파악은 최선의 현실적 대안임

- 과거에는 생계형 탈북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탈북배경을 보면 정치적인 이유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구주제에 합당한 북한이탈주민을 새롭게 표집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북한 현지 방문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을 직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북한 원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라는 간접 경로보다는 북한 연금담당기관, 북한 근로자, 북한 각종 연금수급권자 등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제도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연금담당기관의 노동기록 및 연금수급 이력에 관한 통계, 개별 노동자의 로동수첩, 로임표, 진단서 등을 열람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음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통일 시나리오 중의 하나인 급변사태에 의한 북한 체제의 붕괴와 대규모 이주에 대비한 정책적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급변사태에 대비한 긴급구호 중심의 정책마련도 중요하지만 통일 시나리오는 다양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제도와 실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통일국가 건설 준비를 위한 선차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실태 연구는 인구고령화 측면에서도 요청된다.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규정할 때, 전체 인구 중 남한은 2030년 기준 24.3%, 북한은 2050년 기준 24.9%로 추계(통일부 북한통계포털, 2016)되고 있을 정도로 남북한 모두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사회통합에서 연금제도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도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실태 연구는 필요하다. 2010년까지 동독으로의 이전지출을 의미하는 통일비용 중 연금보험의 비중은 연평균 24.4%에 달하는데(Kloß et al., 2012), 이는 사회통합을 위해 연방정부가 얼마나 연금제도에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통일비용의 1/4을 연금제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금제도는 사회통합의 기제로 작동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통일 초기 서독의 사회보장제도가 동독으로 이식될 때 유일하게 완전 통합되지 않고 불평등하게 출발한 사회정책

이 연금제도였으나, 2016년 6월 기준 동독의 연금가치는 서독의 94% 수준까지 수렴되었다(BMAS, 2016). 이처럼 연금제도는 독일 사회통합의 역사와 함께 하여 왔으며, 동서독 사회통합의 중핵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북한의 공적연금을 비롯한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북한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제도'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실태'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북한이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관한 공식자료를 외부 세계에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존 연구들은 제도연구에 치중되어 왔다. 이에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법령을 중심으로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데, 그것은 연구방법상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소수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제도와 실태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북한 정보를 얻는 것은 북한 총인구 대비 0.12%에 불과한 탈북자 비율[1], 탈북자 중 여성 편중[2], 재북 출신지역 중 4개도 편중[3] 등의 특징을 볼 때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노동인구의 소득보장실태가 아닌 노인인구의 소득보장실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북한이탈주민 중 노인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4].

이러한 연구방법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 한 걸을 더 다가가기 위한 현실적인

1) 2016년 기준 북한 총인구 24,896천명, 탈북자 29,350명임(통일부 북한통계포털, 2016)
2) 2016년 8월말 기준 70.8%가 여성임(통일부 북한통계포털, 2016)
3) 2016년 8월말 기준 87.7%가 평북, 양강, 함북, 함남 4도 출신임(통일부 북한통계포털, 2016)
4) 2016년 8월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60세 이상 비율은 4.2%에 불과함(통일부 북한통계포털, 2016). 남한 입국 후 60세 이상이 된 인구도 포함한 수치임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성, 연령, 재북 출신지역, 탈북시기, 입국시기, 직업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함으로써 연구방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태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제도연구에서는 1층에 해당하는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은 분석하였으되, 1층 이외에 노후소득보장원천이 될 수 있는 인체보험 및 노년기 근로활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인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불한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과실로 일어났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전에서는 “인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의 전부를 지불해주는것만큼 그것은 장기저축의 성격을 가진다” 고 규정함으로써 노후소득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189).

노년기 근로활동과 관련하여 년로자보호법 제31조에 따르면, “년로자는 강연, 담화, 강의, 전습, 번역, 창작, 예술활동, 공원 및 유원지 관리, 공중질서유지 같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고난의 행군 및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거치면서 장마당 등을 통해 노인들도 생계를 위한 근로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요컨대 단층을 넘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을 직접 가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원전 활용이 중요하나 여전히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원전의 직접 인용보다 간접 인용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법령과 사전(事典) 등 북한 원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용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초기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용어들을 재언급하는 수준에서 북한 제도를 분석

하여 왔다. 개별 용어 또는 개별 제도에 대한 단편적 이해가 아닌 전체적(holistic) 관점에서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원전에 기초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이다. 나아가 제도와 실태 간의 정합성 진단을 위해서도 북한 원전에 기초한 연구는 중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법령을 중심으로만 용어를 해석하다보니 해당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법령에 명시된 용어는 추상적이므로 보다 세밀한 해석을 위해서는 법령의 해설서이자 시행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전들, 예컨대 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법령과 사전에서 제시되고 있는 용어들을 연결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8년 제정된 북한 사회보장법이 2014년 남한에 공개되었는데, 해당 법령에는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나 아직까지 기존의 북한 연금 및 보조금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대상에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속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사회보장법은 노동인구가 아닌 비노동인구대상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법령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동법 제19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자는 사회보장금증서에 따라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년금이라는 용어는 기존 법률에서는 없었던 용어이며, 보조금은 기존 사회보험법에서 언급된 용어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아직까지 해명된 바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와 실태 연구의 병행, 1층 이외에 노후소득보장 원천이 될 수 있는 인체보험 및 노년기 근로활동에 대한 분석, 법령 및 사전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관련 용어의 변화 분석,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규명 등 북한원전 활용이

라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극복은 곧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원전에 기초하여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정합성이라는 용어는 법령과 실태 간 모순이 없는 상태, 즉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통일시대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생산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분석

본 연구의 제도분석은 문헌분석을 기초로 하였다. 먼저 199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발간된 북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남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2016년 9월 20일 기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북한' & '연금'이라는 용어검색을 통해 추출된 학위논문(석사 및 박사), 국내 학술지 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467건 중 실질적으로 북한 노후소득보장과 관계없는 글을 모두 제외하고 26개의 연구물을 추출하였다. 이 외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관련 연구물(김연명, 1991) 1개를 추가하여 총 27개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북한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 및 법령의 변천,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 및 내용의 변천을 분석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방법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인터뷰 내용이 편향적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2016년 기준 북한 총인구 24,896,551명 중 북한이탈주민 29,350명은 0.1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통일부 북한통계포털, 2016). 북한 인구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통해 얻는 정보로 북한 사회의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편향적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본 연구주제인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고령의 북한이탈주민은 많지 않다. 북한이탈주민 중 고령자의 비중이 매우 낮은데, 2016년 8월말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입국 현황에 따르면, 전체 북한이탈주민 29,350명 중 60세 이상은 1,238명으로 약 4.2%에 불과하다(통일부 북한통계포털, 2016). 물론 6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남한에 입국한 이후 60세 이상이 된 인구도 포함된 수치이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청년층으로서 30대가 8,577명(29.2%)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8,321명(28.4%)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통일부 북한통계포털, 2016). 20대와 30대 연령집단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의 남성 북한이탈주민도 많지 않다. 북한의 연금도 임금과 기여기간에 기초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별 연금 수급자 비율 및 수급액은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노인으로부터 북한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중 고령자 집단에서 남성의 비중은 여성보다 더 낮다. 2016년 8월말 기

준 6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238명 중 여성은 915명(73.9%)이지만 남성은 323명(26.1%)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재북 당시 국경과 가까운 4개도에 거주한 비율이 높다. 2016년 8월말 기준 함경북도 18,284명(62.3%), 양강도 4,042명(13.8%), 함경남도 2,617명(8.9%), 평안북도 783명(2.7%)으로 4도 출신이 87.7%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북한통계포털, 2016).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얻는 정보가 편향적일 공산이 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는 북한의 연금에 대한 직접 접근이 불가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다. 이에 다음의 질적 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연구방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으로 본 연구목적에 부합한 인터뷰 참여자를 찾고자 하였다. 김정은 집권 시기에 탈북하였고 연금수급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실태를 최대한 자세하고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는 참여자를 1순위로 하였다. 2순위로는 직접 연금을 수급하지는 않았지만 연금수급자의 자녀, 손자녀 등 가까운 친인척 혹은 이웃의 노년기 경험을 목격한 북한이탈주민도 인터뷰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김정은 집권 이전 시기에 북한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본 연구목적 달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도 인터뷰 참여자로 포함하였다. 또한 공로자, 군인, 농민, 교원 등 특수직군 종사자를 인터뷰 참여자로 포괄함으로써 집단별 노후소득보장의 실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참여자 선정순위는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표 Ⅰ-1〉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 선정순위

구분	내용
1순위	김정은 시대에 탈북한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연금 수급 경험자
2순위	김정은 시대에 탈북한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연금 수급 경험자의 가족구성원
3순위	김정은 시대 이전에 탈북한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연금 수급 경험자
4순위	김정은 시대 이전에 탈북한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수급 경험자의 가족구성원
기타	공로자, 군인, 농민, 교원 등 특수직군 종사자

본 연구진은 먼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학 박사를 인터뷰 참여자로 하여 면접을 진행하였고, 이 참여자에게 본 연구목적과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후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 선정 시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학 박사가 다른 인터뷰 참여자에 대하여 대면 또는 전화의 방식으로 사전 인터뷰를 시행함으로써 1차적으로 검증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북한 및 노후소득보장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되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2016년 3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 녹취, 전사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구하였고, 녹취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 후 동의 하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892분의 녹음시간(평균 76분 소요)에 대한 총 399페이지의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2) 인터뷰 참여자

인터뷰 참여자는 총 25명으로 이들은 모두 2000년 이후 탈북 및 입국한 사람들이다. 인터뷰 참여자를 특성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자 7명, 여자 18명이다. 년로년금 수급연령을 기준으로 연령을

보면 남성 중 60세 이상이 2명이고, 60세 미만이 5명이다. 60세 미만의 5명은 모두 군인이다. 여성 중 55세 이상이 15명이고, 55세 미만이 3명이다. 55세 미만의 여성 3명은 농장원과 전업주부이다. 교육수준은 고졸 13명, 전문대졸 3명, 대졸 9명이다. 재북 당시 거주지 분포는 함경북도가 12명으로 절반 수준이며, 함경남도 5명, 평양 3명, 남포 1명, 양강도 1명, 황해북도 1명, 평안남도 1명, 평안북도 1명 순이다. 주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파악한 재북 당시의 직업은 노동자(공무원 포함) 9명, 교원 5명, 군인 5명, 농민 2명, 전업주부 4명이다. 탈북 시점은 2007년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가 16명이고 이전이 9명이다. 김정은 시대가 6명, 김정은 시대 이전이 19명이다. 참여자 인적사항은 다음의 〈표 Ⅰ-2〉와 같다.

〈표 Ⅰ-2〉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 인적사항

연번	성	출생년도(연령)	학력	거주지	직업	탈북	입국
1	여	1957년(59세)	대졸	남포	기업회계담당	2002	2002
2	여	1956년(60세)	대졸	함남 함흥	초등교원	2004	2004
3	여	1957년(59세)	대졸	함북 청진	대학교원	2004	2004
4	여	1957년(59세)	대졸	평북 영변	방송	2007	2012
5	여	1949년(67세)	전문대졸	평양	공장노동, 인민반장	2011	2013
6	여	1939년(77세)	고졸	함북 경원	탄광식당노동자	2004	2004
7	여	1949년(67세)	대졸	황북 사리원	공무원	2009	2009
8	여	1952년(64세)	대졸	함북 온성	교원, 조리, 인민위보급원	2006	2007
9	남	1941년(75세)	전문대졸	함북 경원	노동자, 사진사	2005	2006
10	여	1942년(74세)	고졸	함북 경원	탄광노동자, 수매원	2005	2006
11	여	1938년(78세)	대졸	함북 청진	중학교교원	2005	2006
12	여	1974년(42세)	전문대졸	함북 무산	농장원	2007	2007
13	남	1939년(77세)	대졸	평양	대학교원	2007	2007

연번	성	출생년도(연령)	학력	거주지	직업	탈북	입국
14	여	1937년(79세)	고졸	함북 청진	공장노동자	2007	2013
15	남	1971년(45세)	고졸	평남 양덕	군인, 군 인민위 지도원	2007	2007
16	남	1980년(36세)	고졸	함남 함흥	군인	2011	2011
17	남	1971년(45세)	고졸	함북 청진	군인	2011	2011
18	여	1956년(60세)	고졸	함남 함흥	전업주부	2011	2011
19	여	1979년(37세)	고졸	함남 함흥	전업주부	2011	2011
20	남	1986년(30세)	고졸	함북 무산	군인	2012	2012
21	여	1967년(49세)	고졸	함북 길주	주부, 농장원	2008	2008
22	남	1974년(42세)	고졸	양강 혜산	군인	2015	2015
23	여	1943년(73세)	고졸	평양	무역	2014	2015
24	여	1943년(73세)	대졸	함남 영광	주부	2007	2008
25	여	1941년(75세)	고졸	함북 길주	주부	2004	2009

3) FGI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이외에도 북한 사회보장 전문가, 연금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과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를 시행한 이유는 북한 사회보장 전문가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북한의 법령에 기초한 제도 이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과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 파악 시 제도와의 정합성을 도출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1946년에 제정된 사회보험법과 2008년 제정된 사회보장법 사이에 출현한 다양한 법률 및 사전들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실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가 진행되기 이전에 주요 논의안건을 전문가들에게 제시하였고 참고자료로 북한 법률, 북한 사전 및 관련 보고서를 제공하였다. 5명의 관련 전문가들과 2시간 동안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가

도출되도록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참고자료를 토대로 하여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였다.

3.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은 제Ⅱ장에서는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또는 실태를 다룬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한계를 도출함으로써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분석한다. 북한의 사회보장 법령 및 사전에 기초하여 시기별 북한의 소득보장 관련 용어의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이라는 용어가 기존 제도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주요 제도분석 대상은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족년금, 공로자년금, 인체보험, 노년기 근로활동이다. 로동능력상실년금과 유족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영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북한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설명을 위해서는 파생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제도들이며 공적연금 제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남북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 수급률 비교를 통해 북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제Ⅳ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인터뷰에 기초하여 북한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제Ⅲ장에서 분석한 제도내용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해석한다. 이상의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실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을 설명함으로써 북한 노후소득보장의 실체를 이해한다. 최종적으로 제Ⅴ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 요약, 학술적 함의 제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5)]를 다음의 〈표 Ⅱ-1〉에 요약하였다. 선행연구의 분석기준은 연구내용, 노후소득보장 범위, 연구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내용은 제도와 실태로 크게 구분하였다. 노후소득보장 범위는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사회보장년금, 보조금, 인체보험, 노년기근로의 주제를 다루었는지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북한원전의 직접 인용,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추계, 남북비교, 통합 시나리오로 구분하였다.

기존연구 검토 결과, 선행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연구에 치중되어 있으며 실태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분석대상인 27개의 연구 중 실태 연구는 정기원 · 강혜규 · 이상은(1995), 이철수(2003b), 이철수 · 민기채(2014)의 연구에 불과하였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의 원천을 다층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1층의 제도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과 같은 연금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보장법 및 각 사전에서 명시된 사회보장년금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회보장년금을 언급하고 있는 연구는 김영규(2012), 이철수(2015a), 이철수(2015b), 장창수(2016)의 연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연구들도 사회보장년금이 기존의 연금제도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들은 인체보험

5) 2016년 9월 20일 기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북한' & '연금'이라는 용어검색을 통해 추출된 학위논문(석사 및 박사), 국내학술지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467건 중 실질적으로 북한 노후소득보장과 관계없는 글을 모두 제외하고 26개의 연구물을 추출함. 이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관련 연구물(김연명, 1991) 1개를 추가하여 총 27개의 선행연구를 검토함

과 노년기 근로활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보험법, 년로자보호법 및 각종 사전에 언급되어 있는 인체보험과 노년기 근로를 노후소득보장 원천으로 포괄하지 못하였다.

셋째, 연구방법에 있어 남북 제도비교와 통합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춘 반면, 북한원전의 직접 인용,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추계를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원전을 하나라도 인용했다면 북한원전의 직접 인용으로 분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개의 논문은 단 하나의 북한원전도 인용하지 않고 북한 노후소득보장을 연구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원전 인용에서 북한 법령은 자료로 활용하였으나 각종 사전들은 검토하지 못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접 인터뷰를 실행한 연구는 정기원 · 강혜규 · 이상은(1995)과 이철수(2003b)의 연구에 불과하였다. 추계연구는 유일하게 우해봉 외(2011)의 연구뿐이었다. 남북한 제도 비교가 가장 많은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어 왔고, 제도비교를 넘어 제도통합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와 실태 연구의 병행, 노후소득보장 범위의 확장, 연구방법 측면에서 나타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도와 실태 병행연구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파악, 1층 이외에 노후소득보장 원천이 될 수 있는 인체보험 및 노년기 근로활동에 대한 분석 등의 노후소득보장 범위의 확장, 북한원전을 통한 제도 분석과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연구방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표 Ⅱ-1〉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관련 주요 선행연구 동향

구분	연구내용		노후소득보장 범위								연구방법				
	제도	실태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사회보장년금	보조금	인체보험	노년기근로	북한원전	이탈주민인터뷰	추계	남북비교	통합시나리오
김연명(1991)	○		○	○	○	○		○			○			○	
정경배 · 김기옥 · 김상호 · 이상은(1992)	○		○	○	○	○		○			○			○	
박진·이유수(1994)	○		○	○	○	○		○			○			○	○
조공주(1995)	○		○	○	○	○		○						○	
정기원 · 강혜규 · 이상은(1995)	○	○	○	○	○	○		○			○	○		○	
김진수(1996)	○		○											○	○
백진현(1997)	○		○	○	○	○		○			○			○	○
백진현(2000)	○		○	○	○	○		○						○	○
이현주(2001)	○		○	○	○	○		○						○	○
박관우(2002)	○		○	○	○	○		○						○	○
박영현(2002)	○		○	○	○	○		○						○	○
이용하 · 이정우(2002)	○		○	○	○	○		○						○	○

구분	연구내용		노후소득보장 범위								연구방법				
	제도	실태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사회보장년금	보조금	인체보험	노년기근로	북한원전	이탈주민인터뷰	추계	남북비교	통합시나리오
이철수(2003b)	○	○	○	○	○	○		○			○	○			
김태성(2003)	○		○	○	○	○		○						○	○
이두식(2003)	○		○	○	○	○		○						○	
조흥식(2006)	○		○	○	○	○		○			○			○	
김연정(2010)	○		○	○	○	○		○			○				
우해봉 외(2011)	○		○	○	○	○		○					○	○	
김영규(2012)	○		○	○	○	○	○	○			○				○
문형표·이지혜(2013)	○		○	○	○	○		○						○	○
박정원·장창수(2014)	○		○	○	○	○		○			○				
윤용문(2014)	○		○	○	○	○		○						○	○
민기채(2014)	○		○	○	○	○		○			○				
이철수·민기채(2014)	○	○	○	○	○	○		○			○			○	○
이철수(2015a)	○		○	○	○	○	○	○			○				
이철수(2015b)	○		○	○	○	○	○	○			○				
장창수(2016)	○		○	○	○	○	○	○			○			○	○

Ⅲ.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1. 북한의 사회보장 법령 및 제도 개괄

먼저 법령의 조작적 정의 및 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래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통칭한다. 본 연구에서 법령의 조작적 정의는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내각결정을 통해 제정된 모든 법령이다. 여기에서 정령이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내는 법문건의 하나"로 정의되며,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과 함께 최고의 법적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b: 752).

법령의 위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에서는 노동당 당규, 김일성의 유훈, 김정일과 김정은의 교시·명령이 헌법과 법령보다 상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둔다면 당규, 유훈, 교시·명령은 헌법과 법령에 당연히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법령의 법 체계상 위상은 헌법 아래 있으나, 당규, 유훈, 교시·명령이 반영되어 있는 내용적 위상을 갖는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면 최상위에 사회주의헌법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 아래의 하위 법령들은 근로인민인지 공민인지에 따라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인민이라면 노동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고 공민이라면 거주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원칙적으로 '노동'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서 상위법으로서의 사회주의로동법과 하위법으로서의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로동보호법, 기업소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이 있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거주'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서 인민보건법, 량정법, 살림집법, 주민연료법,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보험법, 교육법(어린이보육교양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적십자회법이 있다. 그리고 해당 사회보장 법령들에 대한 재원은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주제는 노동에 기초한 소득보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위법으로서의 사회주의로동법과 하위법으로서의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로동보호법, 기업소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노후소득과 관련된 년로자보호법과 보험법도 주요 분석대상에 포함하며, 사회보장 재원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도 다룬다. 이상의 북한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도식화하면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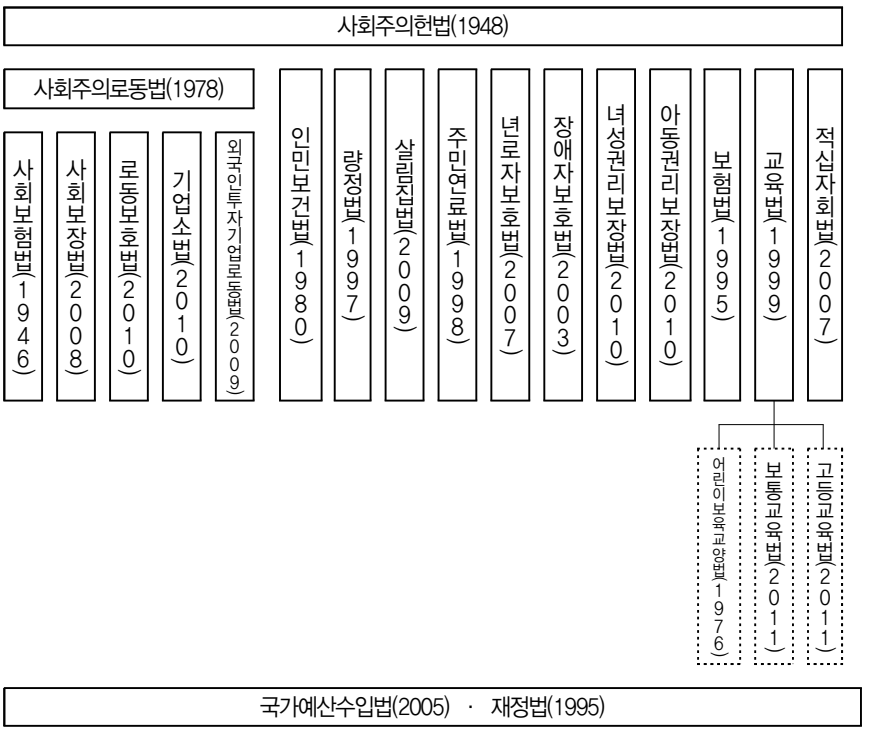

주: 1) 괄호 안은 법 제정년도임
2)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은 사회보장 관련 법령의 재정적 기반이 된다는 의미에서 하단에 배치한 것이며, 각 사회보장 법령들의 하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님

해당 법령들이 사회보장 제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주의헌법(1948년 채택, 2013년 수정보충)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북한의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위를 갖는다. 사회주의헌법은 주권이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으며(동법 제4조), 근로인민의 인권 존중 및 보호(동법 제8조), 모든 공민에 대한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의 실질적 보장(동법 제64조)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 · 의료 · 교육 · 모성 · 가정 분야

등에 대한 보호 혹은 보장 조치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관련 하위 법령들이 존재한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전진하기 위한 과도기로서의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 기초하여 분배가 실현되는데,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채택, 1999년 수정)은 그 원칙을 다루고 있는 핵심 법령이다.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동법 제37조)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여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동법 제68조). 사회주의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살림집(동법 제69조), 식량공급(제70조), 보육(제71조), 교육(제72조),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금 및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제73조), 년로년금(제74조), 국가공로자 배려(제75조), 정기 및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제76조), 유가족년금(제77조), 무의무탁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시설급여(제78조), 무상치료제(제80조) 등이다.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사회보험법(1946년 채택)을 공포하였다. 적용대상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이다(동법 제15조). 급여종류는 의료상의 방조, 일시적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실업보조금, 폐질년휼금, 유가족년휼금, 양로년휼금, 의료상 방조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전달체계는 "보조금을 받을려는 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소속직장 또는 최후소속직장의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1조).

사회보장법(2008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사회보장대상임을 밝히고 있다(동법 제2조). 즉 사회보장법에서는

과거에는 근로자였으나 현재 근로자가 아니거나 장애인, 무의무탁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다루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장 사회보장수속의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회보장의 신청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4장의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등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로동보호법(2010년 채택)은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규정한 노동보호와 관련한 조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로동보호법에서는 로동안전교양의 실시,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로동시간과 휴식·휴가, 로동안전규률 확립, 로동재해구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해당 기업소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육아에 대해 관련 조건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등 직장 내에서 시행해야 하는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소법(2010년 채택)도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규정한 사회주의적 로동보수제, 로동보호, 사회보험, 사회보장을 정확히 실시하고, 종업원의 생활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기업소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44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소는 "로동보호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야" 하고,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를 정확히 실시하여 종업원들에게 국가의 인민적 시책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동법 제45조).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 경제특구와 관련된 법률은 자

유경제무역지대법(1993년 채택), 라선경제무역지대법(1993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2002년 채택), 금강산관광지구법(2002년 채택, 2003년 수정보충), 개성공업지구법(2002년 채택, 2003년 수정보충),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2011년 채택) 등이 있다. 이러한 법령들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은 로동시간과 휴식, 로동보수, 로동보호, 사회보험, 사회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관계없이 공민의 지위로써 거주에 따라 전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규정을 해당 법령들에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년로자보호법과 보험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년로자보호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그 대상으로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살, 녀자 55살 이상의 공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급여에 관하여는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또한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년기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년로자보호법은 무의무탁 노인을 국가가 부양할 것(동법 제12조), 년로년금 및 여러가지 형태의 보조금(제14조), 무상치료(제17조), 장수보약, 영양식품의 보장(제20조), 보조기구 및 치료기구 보장(제21조), 문화오락시설의 보장(제28조), 휴양, 관광, 탑승(제29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년로자보호법은 남한의 노인복지법에 대응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험법(1995년 채택, 2008년 수정보충)에서의 “보험은 보험대상에 따라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눈다(동법 제3조)”. 이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인체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동법 29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 혹은 로동능력상실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제36조). 특히 인체보험은 임의가입을 통해 은퇴를 앞둔 이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만기환급일시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므로 남한의 개인보험에 대응될 수 있다. 민법(1990년 채택, 2007년 수정보충) 제210조는 인체보험금의 지불과 관련하여 "보험기간이 되고 보험에 든 공민이 보험료를 다 물면 만기보험금을 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재원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예산수입법(200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 제2조에 의하면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으로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며,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로동보수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4조).

다음으로 재정법(199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에서는 '재정법의 사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국가예산자금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인민경제발전비(제15조),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제16조)[6], 국방비(제17조), 국가관

6) 2007년까지의 재정법에서는 사회문화시책비(제16조)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가, 2009년 또는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인민적시책비와 사회문화사업비로 구분되었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사회문화시책은 "교육, 문화, 보건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가의 시책"이며, 사회문화시책비는 "교육, 문화, 보건 부문 등 사회

리비(제18조), 예비비(제19조)이다. 이 중 '인민적시책비'에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이루어진다. "인민적시책을 위한 지출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사회문화를 위한 지출에는 체육, 문화, 대외사업에 대한 지출"이 있다(동법 제16조).

2.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

남한의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일부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 연구에서 특정 법령의 내용만을 다루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령을 넘어 다양한 사전을 중심으로 해당 용어를 보다 세밀하게 해석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중요하게는 북한에서 1946년 사회보험법 제정 이후 해당 법령을 전면개정, 부분개정하지 않았거나 개정법령이 남한에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령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해당 법령의 해설서이자 명령과 규칙의 위상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전들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2008년 사회보장법에서 등장한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제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 관련 용어는 급여와 관련된 용어로 한정하여 살펴본다.

가. 법령에 기초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 중 급여와 관련된 용어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법령을 최초 제정년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들은 조국광복회 10대 강령(1936.05.05),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문화시책에 돌려지는 국가예산자금"으로 정의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77).

조선 인민에게 고함(1946.03.23),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06.24), 북조선 노동당 강령(1946.08.29), 사회보험법(1946.12.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09.08),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08.30),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02.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12.27),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1978.04.18),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1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04.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09.05.), 년로자보호법(2007.04.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04.09; 2010.04.09), 사회보장법(2008.01.09; 2008.10.26; 2012.04.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2.04.13.; 2013.04.01)이다. 각 법령에서 소득보장 중 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표 Ⅲ-1〉의 내용을 토대로 하면 〈표 Ⅲ-2〉와 같이 법령에 기초한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를 시간 순으로 연결할 수 있다. 크게 2개의 급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 6개월 미만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과 6개월 이상의 로동능력상실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회보장을 통한 소득보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용어는 남한에서 사용하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의미와는 다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회보장이 상위 개념이다. 반면 북한에서의 '사회보장'은 노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에 대응되는 비노동인구를 위한 급여를 통칭한다.

〈표 Ⅲ-1〉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법령 내용

법령	제정	주요 내용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1936.05.05	제9조 8시간 노동제 실시, 로동조건의 개선, 임금의 인상, 로동법안의 확정, 국가기관으로부터 각종 **로동자의 보험법**을 실시하며 실업하고 있는 근로대중을 구제할 것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	1946.03.23	제15조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생명보험**을 실시하며 **로동자와 기업소의 보험제**를 실시할 것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1946.06.24	제12조 **정기적 및 보충적 휴가일의 임금**은 기업주가 지불하되 최근 12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규정한다. 제13조 일군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사고가 있을 때에 기업주와 협의하여 **임금을 받지 않는 단기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기업소와 사무소에서 일하는 로동부녀와 여자사무원들이 임신중에 있을 때에는 **해산전 35일, 해산후 42일간의 휴가**를 줄 것을 제정한다. 제15조 건강상태에 의하여 전보다 경한 로동에 넘어가야 할 필요를 느끼는 임신중의 여자는 **임신 6개월부터 시작하여 산전휴가**를 이르기까지 경한 로동에 넘어갈 수 있으며 **그동안의 임금은 최근 6개월간의 평균 보수금**에 의하여 지불한다. 제18조 각 기업소, 사무소 및 경제부문의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ㄱ.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한 일군들에 대한 보조금** **ㄴ. 임신 및 해산으로 인한 휴가시의 보조금** **ㄷ. 장례시의 비용 보조금** **ㄹ.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 수 없는자들의 년휼금** **ㅁ. 양육자를 상실한 경우에 유가족들에게 주는 년휼금**

법령	제정	주요 내용
북조선 로동당 강령	1946.08.29	제6조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8시간 로동제를 실시하고 **사회보험을** 보장하며 여자들에게 남자와 동등한 임금을 지불할 것
사회보험법	1946.12.19	제1조 사회보험은 **노동자, 사무원**(이하 피보험자라 약칭한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급부를 한다. **1. 질병, 부상, 임신, 해산에 관하여 의료상의 방조** **2. 질병, 부상, 불구로 인하여 일시적 노동능력상실의 경우의 보조금** **3. 임신 및 해산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의 경우의 보조금** **4. 해산에 따르는 보충적 보조금** **5. 사망하였을 때의 장례보조금** **6. 실업하였을 때의 실업보조금** **7. 질병 부상으로 불구 또는 폐질이 되었을 때의 년휼금(年恤金)** **8. 부양의 책임을 진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였을 때의 그 유가족에 대한 년휼금** **9. 연로한 피보험자에게 주는 양로년휼금** **10.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하 피부양자라 약칭한다)의 질병, 부상, 임신, 해산에 관한 의료상의 방조** 제6장 **보조금** **제1절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일꾼들에게 주는 보조금(일시적보조금)** **제2절 해산보조금** **제3절 장례보조금** **제4절 실업보조금**

법령	제정	주요 내용
		제7장 **년휼금** **제1절 폐질년휼금** **제2절 유가족년휼금** **제100조 양로년휼금** 제8장 **의료상방조** **제122조 의료상방조비**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헌법	1948.09.08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간 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를 보장한다.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공민이 **로쇠,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방조**를 받을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보호**로 보장한다.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	1951.08.30	7. **사회보장을 받는 불구자, 연로자(그들의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및 유가족들**에게 식량, 신탄, 기타 생활필수품을 배급하며 주택을 보장하여 줄 것을 국가계획위원회의 위원장, 상업상, 도시경영상, 내각양정국장에게 각각 책임을 지우며 그들에 대한 국가적 및 사회적 원호사업을 광범히 조직 실시할 것을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책임지운다. 8. 조국해방**전쟁에서 불구로된 자와 전사한 자의 유가족 및 기타 사회보장을 받는 불구자, 연로자 유가족들에게 대하여 본인 및 그 자녀들의 학비와 국가주택의 사용료를 면제하며 농업현물세, 기타 세금을 20% 이상 감소 또는 면제**한다. 10. 민족보위성에서 관리하는 **전쟁불구자와 전사자의 유가족들에 대한 정기보조금 지급사업 및 사회보험기관에서 관리하는 퇴직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방조사업**은 그에 대한 재산과 함께 이를 1951년 9월 15일까지 사회보장기관에 이관할 것이다.

법령	제정	주요 내용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	1956.02.03	(1) **남60세, 여55세 이상으로서 로쇠자**가 작업할 수 있었던 최근 1개월의 봉급과 내각결정 제32호에 의한 **유가족금을 포함하여 그들의 최근 봉급(1개월)액에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할 것 (2)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질병, 손상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로동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그들의 **최근 1개월의 봉급에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회복할 때까지 지급**할 것 (3) **공로자가 공로기간에 있어서 보상년금을 받는 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년금을 계속 지급**할 것 (4) **공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의 장례금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 그의 유가족들이 년로, 부상, 질병으로 로동력을 상실 및 사망하였을 시는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액의 반수를 지급**할 것 (5) **8.15 전 국내에서 일제에 반대하는 투쟁과 8.15 후 남한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 및 혁명적 투쟁, 민족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군사, 경제, 과학, 문화, 예술 기타 사업에서 공훈을 세운 자 및 가족들은 동 결정에 의하여 공로금**을 받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72.12.27	제57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 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8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1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2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법령	제정	주요 내용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1978.04.18	제68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 제73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 제74조 **국가는 남자 60살, 녀자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년로년금**을 준다. 제75조 국가는 **로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돌린다. 제76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기간에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로력일**을 주며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일시적보조금 또는 평균로력일**을 준다. 제77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년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키운다. 제78조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봐준다. 제79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상 혜택을 준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치료, 료양, 예방, 해산등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는다.

법령	제정	주요 내용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	1985.10.04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대한 테제〉에서 제시한 방침에 따라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농촌의 모든 기본 건설과 문화주택건설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협동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였으며 농민들이 생활수준을 빨리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농민들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데서 근심걱정을 모르고 국가로부터 무료의무교육, 무상치료, 산전산후 휴가, 정휴양을 비롯한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제1조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다. 제3조 협동농민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제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2.04.09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58조와 동일 제75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61조와 동일 제76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62조와 동일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8.09.05	제71조 1992년 사회주의 헌법 제71조와 동일 제72조 1992년 사회주의 헌법 제72조와 동일 제76조 1992년 사회주의 헌법 제75조와 동일 제77조 1992년 사회주의 헌법 제76조와 동일

법령	제정	주요 내용
년로자보호법	2007.04.26	제2조(년로자의 나이, 보호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년로자는 남녀 60살 이상의 공민**이다.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살, 여자 55살이상의 공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공로있는 년로자의 특별보호원칙) 국가는 **혁명투사와 혁명투쟁공로자, 전쟁로병, 영예군인과 공로자 같은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년로자를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도록 한다. 제14조(년금, 보조금보장)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년로자에게 정해진 년금, 보조금을 정확히 내주어야 한다. 년금, 보조금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009.04.09. (수정보충) 2010.04.09. (수정보충)	제71조 1992년 사회주의 헌법 제71조와 동일 제72조 1992년 사회주의 헌법 제72조와 동일 제76조 1992년 사회주의 헌법 제75조와 동일 제77조 1992년 사회주의 헌법 제76조와 동일
사회보장법	2008.01.09. 2008.10.26. (수정보충) 2012.04.03 (수정보충)	제2조 (사회보장대상) **사회보장의 대상에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속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자들에게 사회보장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한다. 제4조 (우대원칙)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로를 세운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 제18조 (사회보장금의 지출대상)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 지불**과 사회보장기관의 운영, 장애보조기구의 생산, 공급 같은 목적에 지출한다. 해당 기관은 사회보장금지출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법령	제정	주요 내용
		제19조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 지불) 사회보장자는 사회보장금증서에 따라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 지불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012.04.13. (수정보충) 2013.04.01 (수정보충)	제71조 1992년 사회주의 헌법 제71조와 동일 제72조 1992년 사회주의 헌법 제72조와 동일 제76조 1992년 사회주의 헌법 제75조와 동일 제77조 1992년 사회주의 헌법 제76조와 동일

〈표 Ⅲ-2〉 법령에 기초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조국 광복회 (1936)	20개조 정강 (1946)	로동법령 (1946)	로동당 강령 (1946)	사회 보험법 (1946)	헌법 (1948)	국가 사회보장 (1951)	국가 공로자 (1956)	사회주의 헌법 (1972)	사회주의 로동법 (1978)	보험법 (1995)	년로자 보호법 (2007)	사회 보장법 (2008)
보험법	보험제	의무적 사회 보험제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 보험제	사회보험		국가사회 보험	국가사회 보험제			
		사회보험에 의한 보조금		보조금					국가사회 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일시적으로 로동 능력을 상실한 일꾼들에 대한 보조금		일시적으로 로동 능력을 상실한 일꾼들에게 주는 보조금(일시적보조금)								

조국 광복회 (1936)	20개조 정강 (1946)	로동법령 (1946)	로동당 강령 (1946)	사회 보험법 (1946)	헌법 (1948)	국가 사회보장 (1951)	국가 공로자 (1956)	사회주의 헌법 (1972)	사회주의 로동법 (1978)	보험법 (1995)	년로자 보호법 (2007)	사회 보장법 (2008)
		임신 및 해산으로 인한 휴가시의 보조금		해산 보조금				산전산후 휴가의 보장	산전산후 휴가기간에는 일시적 보조금 또는 평균로력일			
		장례시의 비용 보조금		장례 보조금								
		정기적 및 보충적 휴가일의 임금			유급 휴가제			유급 휴가제	정기 및 보충휴가 기간에 평균 생활비 또는 평균 로력일			
				요양소, 휴양소에 수용된 경우의 일시적 보조금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조국 광복회 (1936)	20개조 정강 (1946)	로동법령 (1946)	로동당 강령 (1946)	사회 보험법 (1946)	헌법 (1948)	국가 사회보장 (1951)	국가 공로자 (1956)	사회주의 헌법 (1972)	사회주의 로동법 (1978)	보험법 (1995)	년로자 보호법 (2007)	사회 보장법 (2008)
				실업 보조금								
					사회 보장제	국가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 보장제	국가사회 보장제			사회보장
												사회보장 년금
				양로 년휼금					년로년금		년로년금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 수 없는자들의 년휼금		폐질 년휼금			로동능력 상실년금		국가사회 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 상실년금			

조국 광복회 (1936)	20개조 정강 (1946)	로동법령 (1946)	로동당 강령 (1946)	사회 보험법 (1946)	헌법 (1948)	국가 사회보장 (1951)	국가 공로자 (1956)	사회주의 헌법 (1972)	사회주의 로동법 (1978)	보험법 (1995)	년로자 보호법 (2007)	사회 보장법 (2008)
		양육자를 상실한 경우에 유가족들에게 주는 년휼금		유가족 년휼금			유가족금		유가족 년금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년금, 공로금					
				의료상 방조					의료상 혜택			
	생명보험									인체보험		

주: 공란은 관련 용어 언급 없음

나. 사전에 기초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 중 급여와 관련된 용어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전을 최초 출판년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들은 정치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3a, 1973b), 경제사전(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1985b), 재정금융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5), 조선대백과사전(백과사전출판사, 1995~2001)이다. 각 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와 용어 간 관계를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 중 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표 Ⅲ-3〉과 같다.

〈표 Ⅲ-3〉의 내용을 토대로 하면 〈표 Ⅲ-4〉와 같이 사전에 기초한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를 시간 순으로 연결할 수 있다. 법령에서와 같이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을 통한 2개의 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Ⅲ-3〉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사전 내용

사전	주요 내용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3a, 1973b)	**국가사회보험**: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할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한 **보조금**을 받으며 무료로 의료상 치료를 받고있으며 또한 **정양소, 휴양소, 야영소들에서 무상으로 문화적인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a: 83).
	사회보험: 일시적인 로동능력상실자들의 생활보장, 건강회복과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되는 물질적보장제도 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정한 보험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불되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함께 기관, 기업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원천으로 한다는점에서 일반보험과 구별된다. 또한 그것은 보험형식을 취하여 현직 일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과도 구별**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와 생산, 건설, 수산 및 편의협동조합들에서 일하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방조, 휴양, 야영, 관광, 탑승료** 등 여러가지 형태로 실시되고있으며, 그 지출은 기관, 기업소들의 부담을 원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a: 533).
	국가사회보장: 사회주의사회에서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여 종신토록 또는 오랜기간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생활자료와 의료상봉사를 보장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인민적 시책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시된다. 1) 국가사회보장해당자의 희망에 따라 그의 능력에 알맞은 **적당한 직업을 알선**하여주며, 2) **년금 또는 보조금**을 주며, 3) **무의무탁한 불구자, 년로자, 고아들을 양로원, 양생원, 애육원, 육아원과 같은데 보내여 보호**하는것 등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73a: 82-83).

사전	주요 내용
	사회보장제도: 일군들이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활을 국가적부담으로 보장하는 제도 국민소득의 분배에서 사회보장폰드를 계획적으로 형성하여 사회보장대상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해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는 당, 국가 경제 기관, 기업소 및 근로단체 일군들이 로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사망된 경우에 본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부담으로 실시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는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의료상 방조, 사회적보호시설을 통한 방조, 알맞은 일자리의 보장, 사회적원호**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현금 및 현물 지불에 의한 방조에는 각종 년금 및 보조금 지불, 불구자에 대한 교정기구공급** 등이 속한다. 의료상 방조에 의하여 사회보장대상자들은 건강회복에 필요한 온갖 혜택을 받는다. **건강이 회복된 사회보장대상자들은 그들의 체질과 능력에 알맞은 일자리에 배치**된다. **영예군인, 무의무탁한 불구자, 년로자, 고아들은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애육원 등 사회적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그들은 필요한 교양을 받는다. **로동능력을 상실한 애국렬사유가족, 영예군인, 후방가족 등 사회보장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원호사업은 우리 나라 사회보장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a: 532-533).
경제사전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1985b)	**생활보조금**: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 혁명투사들과 군인, 로동자, 사무원, 농민들이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나이가 많아 일할수 없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 본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생활보장을 위하여 돌려지는 당과 국가의 배려금 생활보조금은 로동에 의한 분배에 참가할수 없는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사회보장제와 함께 사회보험제를 통하여 돌려지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혜택이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우월한 국가사회보험제와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하여 여러 가지 생활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생활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 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 및 보조금**의 형태로 국가예산을 통해 지출된다. **국가사회보험에 의한 생활보조금에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등이 있다. **일시적보조금**은 원칙적으로 1년이상의

사전	주요 내용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근로자들이 직장에 다니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경우에 주는 보조금이다. **산전산후보조금**은 녀성근로자들이 산전산후휴가를 받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불하는 보조금이다. **장례보조금**은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장례를 치는 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는 보조금이다. **사회보장에 의한 년금 및 보조금에는 공로있는 사람에게 주는 년금, 나이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년로년금, 불구자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과 유가족년금, 인민군후방가족원호보조금** 등이 있다. **공로있는 사람에게 주는 년금**은 나이많거나(남자는 60살, 녀자는 55살) 불구 등으로 쉬고있는 국가공로자에게 그의 공로정도에 따라 주는 특혜로서 일반년로년금보다 그 적용비률이 높다. **나이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년로년금**은 남자 60살, 여자 55살에 이르고 해당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혜택으로서 그 금액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생겼을 때에 받던 월기본생활비의 일정한 비률에 따라 준다. **불구자에게 주는 보조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에는 **영예군인에게 주는 보조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로 불구가 된 사람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 일반근로자들이 불구로 되었을 경우에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이 있으며 그 매개 생활보조금은 불구류에 따라 준다. **유가족년금**에는 **전사자가족에게 주는 유가족년금, 피살자가족에게 주는 유가족년금, 직무와 관계없이 사망한 사람의 가족에게 주는 유가족년금**이 있으며 그 매개 생활보조금 역시 유가족년금의 종류에 따라 각이하게 설정되여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189).
	국가사회보험: 사회주의하에서 국가가 로동자, 사무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 국가사회보험은 생활비를 받는 현직일군들중에서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것으로서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과 구별**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205). 우리 나라에서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지출형태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방조, 정휴양, 료양** 등이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206).

사전	주요 내용
	사회보험 → 국가사회보험(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78).
	국가사회보장: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사업을 수행하다가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래동안(6개월이상) 잃은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혜택 우리 나라 **국가사회보장은 1)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2) 의료상 방조, 3)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 의한 방조**의 형태로 실시된다. **현금에 의한 방조는 생활보장금지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생활보장금에는 공로자생활보장금, 영예군인 및 영예전상자 생활보장금, 일반생활보장금(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금, 유가족년금)**이 있다. **현물에 의한 방조에는 의족, 의수 등과 같은 교정기구보장**이 포함된다. **의료상방조에는 사회보장대상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것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료상 방조가 포함되며 사회보장대상자들의 건강회복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로동료법을 고려하여 조직된 경로동직장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사회보장보호시설에 의한 방조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등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예산으로부터 보장하여주는것이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205).
	사회보장제: 로동자, 사무원들이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활을 국가적부담으로 보장하는 제도(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77).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인민적이고 선진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보장제는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알맞는 일자리의 보장, 사회적원호**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있다. **현금 및 현물 지불에 의한 방조에는 각종 년금 및 보조금 지불, 불구자에 대한 교정기구공급** 등이 속한다. **사회보장에 의한 년금 및 보조금에는 공로있는 사람에게 주는 년금, 나이많은 사람에게 주는 년로년금, 오래 앓은 사람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 불구**

사전	주요 내용
	자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과 보조금, 유가족년금, 후방가족원호보조금 등이 있다. **의료상 방조**에 의하여 사회보장대상자들은 건강회복에 필요한 온갖 혜택을 받는다. 건강이 회복된 사회보장자들은 그들의 체질과 능력에 알맞은 일자리에 배치된다. 영예군인, 무의무탁한 불구자, 년로자, 고아들은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애육원 등 사회적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그들은 필요한 교양을 받는다.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에 대한 사회적원호사업**은 우리 나라 사회보장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78).
	보조금: 사회주의국가가 근로자들의 안정된 물질문화생활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주는 물질적방조의 한 형태 우리 나라에서 **보조금에서는 사회보험에 의한 보조금과 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이 있다. **사회보험에 의한 보조금에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방조비, 휴양 및 료양비** 등이 있다. **일시적보조금**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로동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때 주는 보조금이다. 혁명투사, 《김일성훈장》을 받은 사람을 비롯한 공로자들과 직업과 관련하여 병이 생겼거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일시적보조금을 준다. 일시적보조금은 년간을 통하여 6개월까지 주며 그 기간이 넘으면 사회보장에 의한 해당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 **산전산후보조금**은 녀성근로자가 산전산후휴가를 받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불하는 보조금으로서 근속로동년한에 관계없이 그가 받던 월 기본생활비의 전액을 준다. **장례보조금**은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장례를 치는 가족에게 제정된 금액으로 주는 보조금이다. **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에는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생활보조금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년금외에 **영예군인과 영예전상자에게 주는 보조금, 인민군후방가족원호보조금** 등이 있다. **영예군인과 영예전상자에게 주는 보조금**은 일을 하고있는 영예군인들과 영예전상자들에게 불구정도에 따라 주는 생활보조금이다. **인민군후방가족원호보조금**은 조선인민군대, 조선인민경비대의 전사, 하사관들의 부양가족가운데서 로력자가 한사람도 없거나 군인의 안해 또는 어머니가 3명이상의 비로력자를 부양하고있는 경우에 그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주는 보조금이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10).

사전	주요 내용
	산전산후보조금: 사회주의사회에서 녀성근로자들이 산전산후휴가를 받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국가에서 지불하는 보조금 국가사회보험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의 한 형태**이다. 이 기간에 녀성 로동자, 사무원들은 국가로부터 일 또는 월 정액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으며 녀성협동농장원들은 협동농장으로부터 **평균로력일**을 받는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23).
	년금: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투사, 로동자, 사무원, 군인이 늙었거나 로동능력을 잃었을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그 유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주는 사회보장에 의한 물질적방조의 한 형태 년금은 **사회보험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에 대응하여 사회보장에 의한 정기보조금**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년금 종류에는 **공로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년금, 나이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년금, 오래 앓는 사람들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 등이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359). **공로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년금**은 나이많거나 불구 또는 병으로 일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있는 공로자들이 받게 된다. 공로자 년금대상은 로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워 국가로부터 《김일성훈장》, 《김일성상》을 비롯하여 높은 급의 수훈 및 표창을 받는 공로자들이다. 이들에게는 공로로 수훈 및 표창을 받은 정도에 따라 해당한 높은 비률의 사회보장금이 지불된다. **나이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년금**은 남자 60살, 여자 55살에 이른 사람으로서 제정된 근속로동년한이 되었을 때 준다. **오래 앓는 사람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로동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근속로동년한에 관계없이 주며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이 로동능력을 잃었을 때에는 제정된 근속로동년한에 이른 사람에게만 준다. **유가족년금**은 피살자가족,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부양가족별로 나누어 제정된 지불조건에 따라 준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360).
	년로년금: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로동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일할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가가 주는 생활보조금, **년로생활보조금**이라고도 하며 국가사회보장에 의한 물질적보장의 한 형태이다.

사전	주요 내용
	년로년금대상자들중에서도 로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은 가장 높은 비률의 년로년금**을 받으며 의료상방조를 비롯한 많은 국가적혜택을 받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 년금(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360).
	로동능력상실년금: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로동자, 사무원들이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랜 기간 잃었을 경우에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돌려지는 물질적방조의 한 형태(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485). 우리나라에서는 **로동능력상실자들가운데서 국가로부터 높은 급의 표창을 받은 공로자들에 한하여 공로자년금**을 적용하며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대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486).
	국가보험: 재해로 인한 손실을 미리 막거나 발생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앙집중적으로 조성하고 리용하는 보험예비의 한 형태 우리 나라에서 국가보험은 보험대상에 따라 **재산보험과 인체보험**으로 가르며 재산보험은 포괄범위에 따라 의무적재산보험과 자원적재산보험으로 나눈다. 재산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협동적소유의 가관, 기업소들과 개인소유의 재산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국가보험형태이며 인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공민이 사망하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보험보상금을 지불해주는 형태이다. **인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의 전부를 지불해주는것만큼 그것은 **장기저축의 성격**을 가진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205) **보험**: 자연재해 또는 사고로 일어날수 있는 피해를 미리 막으며 발생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형성하고 리용하는 경제관계 보험은 보험대상의 차이에 따라 **재산보험과 인체보험**으로 구분된다. **생명보험 → 인체보험**(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149). **인체보험**: 자연재해 또는 불상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형성하고 리용하는 국가보험의 한 형태, 생명보험이라고도 한다.

사전	주요 내용
	로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상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하며 보험기간이 다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전액을 지불한다. 그러므로 인체보험은 **장기저축의 성격**을 띤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691-692).
재정금융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5)	**국가사회보험 → 사회보험**(사회과학출판사, 1995: 135). **국가사회보험예산**: 사회주의국가가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사회과학출판사, 1995: 135). **국가사회보험자금**은 사회보험대상자들에 대한 **보조금, 정휴양 및 야영 사업비, 기타 사회보험사업비** 형태로 계획화되여 지출된다. 사회보험대상자들에 대한 보조금은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으로 나누어 계획되여 지출된다. **일시적보조금**은 1년이상의 근속년한을 가진 로동자, 사무원 등이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주는 보조금이다. 일시적보조금을 받는 기간은 진단서를 내고 결근한 기간, 보건기관이 발급한 교통차단증명서를 내고 결근한 기간, 교정기구를 받기 위하여 갔다온 기간, 료양기간과 료양소에 가고온 기간이다. 일시적보조금은 월기본생활비에 규정된 방조비률을 곱하여 규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일시적보조금이 지불된다. 녀성근로자들은 150일간의 산전산후휴가기간에 기본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산후보조금**을 받으며 로동자, 사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그 가족들은 해당한 **장례보조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답사 및 숙영, 정휴양, 야영, 관광, 료양을 위하여 많은 국가자금을 지출하고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135~136).
	사회보험: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가 로동자, 협동농민, 사무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 사회보험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협동농장포함)에 적을 두고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것으로서 6개월까지의 기간에 로동능력을 회복할수 있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다른 형태의 보험에서는 사람과 재산이 보험대상으로

사전	주요 내용
	된다면 사회보험에서는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하였으나 규정된 기간안에 로동능력을 회복할수 있는 근로자들이 보험대상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의 보상은 현직에서 일하다가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과 국가와의 관계로서 로동능력회복의 전기간에 돌려지는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인 혜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은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과 구별**된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자금원천은 다같이 국가예산자금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의 자금원천은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에서 지출되는 국가자금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근로자들이 내는 자기 수입의 1%에 해당한 사회보험료가 포함된다. 이것은 사회보험의 자금원천에서 극히 적은 몫을 차지한다. 사회보험의 자금원천과는 달리 사회보장금은 전적으로 국가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마련한다. 그것은 사회보장대상자들이 현직일군이 아니라 이미 로동생활령역에서 나온 사람들로서 그들은 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자금원천형성에 기여할수 없기 때문이다. 협동농장원들에 대한 사회보험제는 농촌경리의 특성으로부터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사회보험제와는 다른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업부문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의하여 받는 보조금은 기본생활비의 일정한 비률로 규정된다면 협동농장원들에게 사회보험료에 의하여 지불되는 보조금은 평균로력일의 형태로 규정된다. 또한 협동농장원들에게 사회보험료에 의하여 지불되는 보조금은 평균로력일의 형태로 규정된다. 또한 협동농장원들에 대한 사회보험제는 동일한 보험적근거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사회보험에 의한 물질적방조의 규모는 협동농장마다 각이한 수준으로 계산되고 규정되며 그 혜택은 년말에 가서야 확정적으로 생산물에 의하여 지불된다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형태에는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 방조, 정휴양, 료양** 등이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655~656).
	사회보장제: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적 부담으로 보장하여주는 제도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인민적이고 선진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사전	주요 내용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보장제는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알맞는 일자리의 보장, 사회적원호**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있다. **현금 및 현물 지불에 의한 방조에는 각종 년금 및 보조금 지불, 불구자에 대한 교정기구공급** 등이 속한다. **사회보장에 의한 년금 및 보조금에는 공로있는 사람에게 주는 년금, 나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년로년금, 오래 앓은 사람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 불구자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과 보조금, 유가족년금, 후방가족원호보조금** 등이 있다. **의료상 방조**에 의하여 사회보장대상자들은 건강회복에 필요한 온갖 혜택을 받는다. 건강이 회복된 사회보장자들은 그들의 체질과 능력에 알맞은 일자리를 보장받는다. 영예군인, 무의무탁한 불구자, 년로자, 고아들은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애육원 등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기관에서 생활한다.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에 대한 사회적원호사업**은 우리 나라 사회보장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655).
	보조금: 사회주의국가가 로동능력을 일시 또는 장기간 잃은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출하는 국가예산자금 우리 나라에서 **보조금은 사회보험에 의한 보조금과 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에 의한 보조금에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방조비, 휴양 및 료양비** 등이 있다. **일시적보조금**은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로동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때 주는 보조금이며 이것은 월기본생활비에 적용대상별로 각이하게 설정된 근속로동년한에 따르는 일정한 비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지불한다.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사람과 **혁명투사를 비롯한 공로자들과 직업과 관련하여 병이 생겼거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속로동년한에 관계없이 일시적보조금**을 준다. 일시적보조금은 년간을 통하여 6개월까지 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사회보장에 의한 해당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 **산전산후보조금**은 녀성근로자들이 산전산후휴가를 받아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불하는 보조금으로서 근속로동년한에 관계없이 그가 받던 월 기본생활비의 전액을 준다. **장례보조금**은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장례를 치는 가족에게 제정된 금액으로 주는 보조금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549).

사전	주요 내용
	사회보험보조금: 국가사회보험제에 따라 로동자, 사무원들이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을 때에 본인과 그 가족들을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지불해주는 돈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사회보험제에 따라** 로동자, 사무원 및 협동농장원들과 그 부양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의료방조 또는 휴양, 야영, 료양, 정양** 등의 형태를 통하여 막대한 국가적혜택을 받고있을뿐아니라 여러가지 **사회보험보조금**을 받고 있다. **사회보험보조금에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이 있다. **일시적보조금**은 1년 이상의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로동자, 사무원이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주는 보조금이다. 일시적보조금은 로동자, 사무원들이 받던 기본생활비에 기초하여 정해진 방조비률만큼 계산지불한다.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직업과 관련하여 병이 생겼거나 부상당한 사람, 세대안에 다른 로력자가 없는 로동자, 사무원, 귀국공민 등 정해진 대상들**에게는 근속년한이 1년이 못되여도 해당한 일시적보조금을 지불한다. 일시적보조금을 받는 대상기간은 병 또는 부상으로 진단서를 내고 결근한 기간, 가족의 병간호를 위한 간호진단서를 내고 결근한 기간, 치료예방기관 또는 위생방역기관이 발급한 교통차단증명서를 내고 결근한 기간, 불구자들이 교정기구를 받기 위하여 교정기구제작소에 갔다온 기간, 료양한 기간과 료양소에 가고온 기간이다. **산전산후보조금**은 녀성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산전산후휴가를 받는 경우에 그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혜택이다. 산전산후보조금은 휴가기간에 대하여 그가 받던 기본생활비의 100%를 지불한다. **장례보조금**은 로동자, 사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로 지출하는 보조금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659).

사전	주요 내용
	< 생활비기준액이 일로 주어지는 경우 > 일시적보조금 = 일생활비기준액 × 일시적보조금지불일수 × 근속로동년한에 따르는 보조금비률 < 생활비기준액이 월로 주어지는 경우 > $일시적보조금 = \frac{월생활비기준액}{월법정로동일수} \times 일시적보조금지불일수 \times 근속로동년한에 따르는 보조금비률$ < 산전산후보조금이 생활비기준액이 월로 주어지는 경우 > $산전산후보조금 = \frac{월생활비기준액}{월법정로동일수} \times 일요일을 제외한 산전산후 휴가일수$ < 산전산후보조금이 생활비기준액이 일로 주어지는 경우 > 산전산후보조금 = 일생활비기준액 × 일요일을 제외한 산전산후 휴가일수 (사회과학출판사, 1995: 656) **사회보장보조금**: 국가적으로 돌봐주어야 할 대상자들과 그 부양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년금이외에 지불되는 생활보조금 사회보장보조금에는 **원호보조금, 생활보조금, 불구보조금, 간호보조금, 장례보조금**이 있다. **원호보조금**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의 병사, 사관으로 있는 군인의 부양가족들에게 로력자가 없거나 부양가족이 많을 때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돈이다. **생활보조금**은 귀국공민의 세대안에 로력자가 없을 때 부양가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불되는 돈이며 **불구보조금**은 영예군인, 영예전상자들에게 일을 하건 안하건 관계없이 불구급수에 따라 지불되는 돈이다. **간호보조금**은 불구가 심한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공상자 등 불구자들을 간호할 때 그 간호를 하는 사람에게 지불되는 돈이며 **장례보조금**은 사회보장년금을 받던 사람들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장례를 위하여 지불되는 돈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654).

사전	주요 내용
	사회보장사업비: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년로한 경우 또는 사망하였을 때 본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며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되는 자금 국가사회보장에는 현금에 의한 방조와 현물에 의한 방조, 사회보장시설에 의한 방조형태가 있다. **현금에 의한 방조는 국가사회보장년금 및 보조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 군인부양가족원호보조금, 귀국공민부양가족 생활보조금과 로력자가 없는 사회보장년금대상자세대에 주는 보조금, 영예군인, 영예전상자들에게 주는 불구보조금, 사회보장년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주는 장례보조금** 등이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654). **사회보장에 의한 예산**에는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출되고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년금외에 **영예군인과 영예전상자에게 주는 보조금, 인민군후방가족원호보조금** 등이 있다. **영예군인과 영예전상자들에게 주는 보조금**은 일을 하고있는 영예군인들과 영예전상자들에게 부상정도에 따라 주는 생활보조금이다. **후방가족원호보조금**은 조선인민군대, 조선인민경비대의 전사, 하사관들의 부양가족가운데서 로력자가 한사람도 없는 경우에 그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주는 보조금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549).
	일시적보조금: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이 로동생활과정에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자연재해, 기타 불가피한 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 국가가 사회보험예산에서 지출하는 돈 일시적보조금은 일시적인 로동능력의 상실과 기타 불가피한 리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본인과 그 부양가족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해주는 국가적시책의 한 형태이다. 일시적보조금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출근하지 못한 일수에 따르는 정액생활비와 정해진 보조금비률에 의하여 계산하며 해당한 자금은 해당 지역 로동행정기관을 통하여 사회보험예산에서 받는다. 일시적보조금은 근속로동년한에 따라 로동자, 사무원들의 하루 생활비기준액범위에서 정해진 비률에 따라 지불된다. 일시적보조금의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과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이며 여기서 기본원천은 국가예산자금이고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보충적 자금원천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1399).

사전	주요 내용
	산전산후보조금: 사회주의사회에서 녀성근로자들이 산전산후휴가를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 녀성 로동자, 사무원들은 국가로부터 일 또는 월 정액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으며 녀성협동농장원들은 협동농장으로부터 **평균로력일**을 받는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690).
	정휴양비: 근로자들의 정휴양을 위하여 지출하는 국가예산자금의 한 형태 정휴양비에는 **근로자들이 휴양소에 오가는 차비, 정휴양기간의 식사비와 문화정서생활과 휴식보장을 위한 시설들을 리용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휴양생들의 식사비이다. 식사비는 정휴양생들의 1일식사비기준에 기초하여 계획화된다. 이밖에 휴양소, 정양소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들은 경비예산계획화 방법론에 기초하여 계획화된다. 이와 함께 휴양소에 오가는 려비는 근로자들을 휴양소에 보내는 기관, 기업소의 예산에서 지출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931).
	년금: 사회주의국가가 혁명투사, 로동자, 사무원, 군인이 년로자로 되었거나 로동능력을 잃었을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그 유가족, 부양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는 사회보장제 의한 자금적방조의 한 형태 년금은 **사회보험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에 대응하여 사회보장에 의한 정기보조금**이라고도 한다. 년금은 국가예산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비 항목으로 계획화되며 예산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지불된다. 년금은 그 종류에 따라 본래 받던 기본생활비의 일정한 비률 또는 제정된 금액에 의하여 계산지불된다. 두가지이상의 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는 그중 유리한 한가지 년금만을 지불한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년금에는 사회보장년금과 유가족년금**이 있다. **사회보장년금**은 그 대상에 따라 **년로년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으로 구분된다. **년로년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 군인과 그 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년금**이다. **년로년금**은 남자 60살, 여자 55살 이상 되고 기관, 기업소의 재적종업원으로 일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을 받게 되는 로동자, 사무원들과 군인, 공로있는 부양가족들

사전	주요 내용
	에게 국가적혜택과 특혜를 주는 **사회보장년금**이다. **로동능력상실년금**은 병 또는 불구로 하여 안정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기관, 기업소의 재적종업원으로 일하지 못하는 로동자, 사무원들과 군인, 공로있는 부양가족들에게 국가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년금**이다. **유가족년금**은 로동자, 사무원, 군인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부양가족들에게 국가적 혜택과 특혜를 주는 **사회보장년금**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332).
	년로년금: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해오다가 년로하여 휴식하게 될 때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가가 주는 사회보장년금 년로년금은 남자 60살, 여자 55살에 이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 협동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받는다. 년로년금을 받을수 있는 근속로동년한은 국가가 규정하며 녀성근로자들의 근속로동년한은 육체적특성으로 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짧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년금을 받을 년한이 되면 이미 받던 기본생활비에 기초하여 년로년금적용비률에 따라 달마다 년로년금을 받게 된다. 년로년금대상자들가운데서 **공로자들은 그가 받은 국가표창의 내용에 따라** 일반 년로년금보다 많은 년금을 받는다. 년로년금은 국가예산에서 지불된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333).
	로동능력상실년금: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잃었을 때 국가가 해당한 일군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지출하는 사회보장년금의 한 형태 로동능력상실년금은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을 비롯한 일군들이 로동능력을 상실하여 **국가사회보험제에 따라 일시적보조금**을 받던 때로부터 6개월이 넘을 때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받는 년금**이다.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졌거나 불구자, 안정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자로서 기관, 기업소의 재적종업원으로 일하지 못하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공로있는 부양가족들에게 준다. 로동능력상실원인이 직무와 관련되였을 때와 그것이

사전	주요 내용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여도 세대안에 로력자가 없을 경우 그리고 **공로있는 부양가족, 귀국공민들에게는 근속로동년한에 관계없이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 **일정한 근속년한이 있고 국가 수훈과 표창을 받는 로동능력상실년금대상자가 로동능력상실년금을 받는 기간에 년로하여 일할 나이가 지났을 때에는 그가 받은 공로에 따라 공로자년금**을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는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433).
	유가족년금: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 사무원 등 근로자들과 군인들이 사망하였을 때 그 유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주는 사회보장에 의한 물질적방조의 한 형태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유가족년금은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의 하나이다. 유가족년금은 국가로부터 렬사증을 수여받은 유가족들과 로동자, 사무원 및 군인이 일을 하다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부양을 받아오던 가족들에게 적용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항일혁명투사, 애국렬사, 피살자, 인민군대 또는 국가기관, 기업소에서 복무하거나 사회보장을 받다가 사망한 일군들의 부양가족들에게 국가사회보장년금의 형태로 많은 방조금을 주고있다. 유가족년금은 유가족가운데서 로동할 나이가 지난 년로자와 16살미만의 어린이(학생은 대학을 끝마칠 때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로동능력을 잃은 불구자와 장기환자, 혁명렬사, 반일애국렬사증을 받은 유가족을 비롯한 지정된 대상들에게 지불된다. 유가족년금은 국가예산에 의한 사회보장기금에서 해당 대상별 년금기준액에 따라 달마다 준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1339~1340).
	공로자사회보장년금: 조국과 인민 앞에 공로를 세운 일군들이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거나 년로보장을 받게 되었을 때 주는 년금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한 항일혁명투사들과 사회와 인민앞에 공로를 세운 일군들을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우대하기 위하여 **공로자사회보장년금제**를 실시한다. 당과 수령의

사전	주요 내용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공로자들에게 **식량공급, 병치료, 보조금지불** 등 특별한 우대를 해주고있다. 공로자사회보장년금은 공로를 세운 일군들이 년로년금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기전에 로동능력을 완전히 잃었거나 남자 60살, 녀자 55살에 이른 사람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았을 때 주게 된다. 공로자사회보장년금은 개별적사람들이 세운 공로에 따라 월생활비의 일정한 비률로 주게 된다. 국가는 채취공업부문, 수산부문, 화학공업부문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던(지정된 직종)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로자사회보장년금대상의 해당 부류에 속하지 못하여도 공로자사회보장년금지불을 통한 혜택을 돌려준다. 공로자사회보장년금을 받던 일군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가족들에게 계속 주게 된다. 한사람이 두가지이상의 공로자사회보장년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 사회보장년금을 준다. 공로자사회보장년금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제정된 규정과 절차대로 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시(구역), 군 행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96).
	국가보험: 국가가 보험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보험의 한 형태 국가보험은 그 포괄대상과 범위, 적용방식과 경제적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여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인체보험**과 물질적부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보험**으로 구분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134). **보험**: 자연재해나 사고로 일어날수 있는 피해를 미리 막거나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형성하고 리용하는 경제관계(사회과학출판사, 1995: 559). **인체보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사람의 신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인체보험은 보험에 든 사람이 로동과 생활과정에 자연재해와 뜻밖의 사고로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을 말한다. 인체보험의 중요한 특징은 첫째로, 그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라는데 있다. 둘째로, 그것이 **장기저축의 기능**을 수행하며 **반환적성격**을 가진다는것이다. 셋째로, 그것이 재산보험에서와 같이 보험의 크기가 보험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미친 재난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규정한다는것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1392).

사전	주요 내용
조선대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1995~2001)	**국가사회보험**: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 국가사회보험은 생활비를 받는 현직일군들중에서 국가의 정휴양소, 야영소들에서 휴식을 하는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것으로서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과 구별된다. 국가사회보험을 위한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과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지출형태에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정휴양, 료양** 등이 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가장 선진적인 사회보험제도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고 일할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생활상 애로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받고있으며 치료비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건강을 회복하고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로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년금외에 살림집, 식량, 연료 등 모든 생활조건을 계속 완전히 보장받고있다. 근로자들은 또한 누구나 다 사회보험제에 의한 휴양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의 건강과 로동능력의 증진,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인민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국가사회보장: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사업을 수행하다가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래동안(6개월이상)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 우리 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그 력사적뿌리를 두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은 항일혁명투사들과 군인(경비대, 사회안전원 포함)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이다. 국가사회보장은 1)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2) 의료상 방조, 3)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 의한 방조의 형태로 실시된다. **현금에 의한 방조는 사회보장년금 및 보조금 지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에는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 공로자사회보장년금, 영예군인 및 영예전상자 사회보장 년금**

사전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일반사회보장년금(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금, 유가족년금)이 있다. 현물에 의한 방조에는 의족, 의수 등과 같은 교정기구보장이 포함된다. 의료상방조에는 사회보장대상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것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료상방조가 포함되며 사회보장대상자들의 건강회복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조직된 경로동직장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다. 사회보장보호시설에 의한 방조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등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국가사회보장의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이다.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고있는 국가사회보장의 우월성은 국가사회보장적용대상의 범위가 매우 넓으며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보호하며 생활을 완전히 책임지고 보장하는데 있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국가사회보장시설**: 사회주의하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보호시설 전체 인민의 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다. 우리 나라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에는 양로원, 양생원, 영예군인보양소 등이 있다. 양로원에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남자 60살이상, 여자 55살이상), 양생원에는 돌볼 사람이 없는 불구자, 영예군인보양소에는 허약한 영예군인이 들어간다.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은 전적으로 국가부담에 의하여 설치되고 관리운영된다.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에 들어가는 보양자들은 국가로부터 식량, 부식물, 옷과 일체 생활필수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으며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에 의한 생활보장제도는 인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의 뚜렷한 표현의 하나이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사회보장제: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적 부담으로 보장해주는 제도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보장제는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알맞은 일자리의 보장, 사회적 원호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현금 및 현물 지불에 의한 방조에는 각종 년금 및 보조금 지불, 불구자에 대한 교정기구 공급 등이 속한다. **사회보장에 의한 년금 및 보조금에는 공로있는 사람에제 주는 년금, 나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년로년금, 오래 앓은 사람과 불구자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과 보조금, 유가족년금. 후방가족원호보조금** 등이 있다. 의료상 방조에 의하여 사회보장대상자들은 건강회복에 필요한 온갖 혜택을 받는다. 건강이 회복된 사회보장자들은 그들의 체질과 능력에 알맞은 일자리에 배치된다. 영예군인, 무의무탁한 불구자, 년로자, 고아들은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육아원 등 사회적 보소시설에서 생활하며 거기에서 그들은 필요한 지식을 배

사전	주요 내용
	우며 교양을 받는다.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에 대한 사회적원호사업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백과사전출판사, 2000: 82).
	보조금: 사회주의국가가 로동능력을 일시 또는 장기간 잃은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출하는 국가예산자금. 사회주의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혜택의 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은 사회보험에 의한 보조금과 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에 의한 보조금에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방조비, 휴양 및 료양비** 등이 있다. **일시적보조금**은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로동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때 주는 보조금이며 이것은 월 기본생활비에 적용대상별로 각이하게 설정된 근속로동년한에 따르는 일정한 비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지불한다.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사람과 혁명투사를 비롯한 공로자들과 직업과 관련하여 병이 생겼거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속로동년한에 관계없이 일시적보조금을 준다. 일시적보조금은 년간을 통하여 6개월까지 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사회보장에 의한 해당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 **산전산후보조금**은 녀성근로자들이 산전산후휴가를 받아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불하는 보조금으로서 근속로동년한에 관계없이 그가 받던 월 기본생활비의 전액을 준다. **장례보조금**은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에게 제정된 금액으로 주는 보조금이다. 사회보장에 의한 예산에는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출되고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년금 외에 **영예군인과 영예전상자들에게 주는 보조금, 인민군후방가족원호보조금** 등이 있다. **영예군인과 영예전상자에게 주는 보조금**은 일을 하고있는 영예군인들과 영예전상자들에게 부상정도에 따라 주는 생활보조금이다. **후방가족원호보조금**은 조선인민군대, 조선인민경비대의 전사, 하사관들의 부양가족들가운데서 로력자가 한사람도 없는 경우에 그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주는 보조금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보조금의 기본 원천은 물질적생산부문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이며 그 일부는 근로자들이 국가에 바치는 보험료이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에서 지출되는 보조금의 규모는 대단히 방대하며 그것을 통하여 광범한 근로자들이 많은 추가적 혜택을 받고 있다(백과사전출판사, 1999: 195).

사전	주요 내용
	일시적보조금: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이 받는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의 한 형태 일시적보조금은 사회보험대상자들에게 가장 널리 적용되는 물질적 방조의 한 형태이다. 우리 나라의 모든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로동능력을 일시 상실하여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보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시적보조금을 동거가족의 병간호를 위하여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때와 전염병 또는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교통이 차단되여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불구자들이 교정기구를 받기 위하여 갔다오는 기간과 료양소에 갔다오는 기간에도 제공된다. 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할 때는 진단서, 간호진단서, 교통차단증명서나 격리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속년한이 1년 이상되는 사람이 일시적보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로동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근속년한이 관계되지 않는다. 일시적보조금은 로동자, 사무원인 경우 70-40%, 협동농장원의 경우 지난해에 번 하루 평균 가동일당 로동일의 70-40%의 범위에서 지불되며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 로동능력상실의 근거, 근속년한의 길이 등에 따라 차이를 둔다.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으며 안정된 생활조건을 보장받는다. 일시적보조금을 받는 기간이 6개월을 넘을 때에는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받는다.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다(백과사전출판사, 2001: 84).
	산전산후보조금: 산전산후휴가를 받는 녀성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지불하는 일시적보조금 녀성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처럼 임신을 리유로 녀성들의 취업을 거절하거나 해산을 리유로 그들을 퇴직시키는 현상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임신, 해산을 한 녀성근로자들에게 온갖 의료상방조를 주어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모든 배려를 돌리고 있다. 국가사회보험에 의한 산전산후보조금은 녀성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방조의 한 형태이다. 우리나라 녀성근로자들은 해산을 전후로하여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산전산후휴가를 받으며 이 기간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월 기본생활비에 맞먹은 산전산후보조금**

사전	주요 내용
	(녀성협동농장원은 평균로력일)을 받는다. 산전산후보조금의 지불기간은 산전에 60일, 산후에 90일이다. 주체 35(1946)년에 채택된 민주주의로동법령과 주체 67년에 채택된 사회주의로동법령에는 산전산후휴가기간을 산전 35일, 산후 42일로 하고 이 기간에 산전산후보조금을 주도록 규정되어있었다. 우리 당과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의 로동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갓난애기들을 더욱 튼튼히 키우기 위하여 주체 75년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녀성근로자들의 산전산후기간을 150일로 규정하였으며 이 기간에 **월 기본생활비의 100프로에 해당한 산전산후보조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유급산전산후휴가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게되였다. 높은 비률의 산전산후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녀성근로자들에 대한 우리 당과 국가의 특별한 배려이다(백과사전출판사, 2000: 274).
	년금: 사회주의국가가 혁명투사, 로동자, 사무원, 군인이 년로자로 되었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와 사망하였을 경우 본인 또는 그 유가족, 부양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는 사회보장제 의한 자금적방조의 한 형태 년금은 **사회보험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에 대응하여 사회보장에 의한 정기보조금**이라고도 한다... 년금제도는 근로자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에 고유한 우월성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년금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그 대상범위가 넓고 방조비률이 높으며 종류가 다양한것이다. 년금은 그 종류에 따라 본래 받던 기본생활비의 일정한 비률에 해당한 금액 또는 제정된 금액으로 국가예산에서 지불한다. 두가지이상의 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중 유리한 한가지 년금만을 준다(백과사전출판사, 1997: 232).
	년로년금: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근로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일할수 없게 되였을 때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가가 주는 사회보장년금 우리 나라에서 **년로년금은 남자 60살, 여자 55살에 이른 로동자, 사무원, 군인들의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국가가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받는다. 년로년금을 받을수 있는 근속로동년한은 힘든 로동직종인가 헐한 로동직종인가에 따라 다르다.

사전	주요 내용
	년로년금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당시의 월 기본생활비에 기초하여 년로년금대상자들의 근무여하에는 관계없이 그들에게 매달 지불한다. 년로년금은 우리 나라와 같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쥐여져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실제적으로 보장된다. 우리당의 배려에 의하여 년로년금대상자들 중에서도 로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은 가장 높은 비률의 년로년금을 받으며 의료상 방조를 비롯한 많은 국가적혜택을 보장받는다(백과사전출판사, 1997: 232).
	로동능력상실년금: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로동자, 사무원들이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랜기간 잃었을 경우에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는 사회보장년금 우리 나라에서 **로동능력상실년금의 대상자는 혁명투사, 군인,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이다. 만일 로동능력상실이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있다면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로동능력상실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로동능력상실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직계가족 중 로력자가 없는 경우에는 로동능력상실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상실년금은 회복될 때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지불한다. 이 년금은 로동능력상실 원인과 정도에 따라 지불비률에서 차이가 있다. 로동능력상실정도(불구정도)는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몇가지 부류로 나누고 의료기관이 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로동능력상실자들 가운데서 국가로부터 높은 급의 표창을 받은 공로자들에 한하여 공로자년금을 적용하며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대한다.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돌려지는 이와 같은 사회보장에 의한 년금제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하나이다(백과사전출판사, 1997: 232). **로동능력상실년금**: 근로자들이 질병, 부상 등으로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랜기간 잃었을 경우에 그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불하는 국가사회보장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은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비롯한 일군들이 로동능력을 상실하여 **국가사회보험제에 따라 일시적보조금을 받던 때로부터 6개월이 넘을 때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받는 년금**이다.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졌거나 불구자, 안정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자로서 기관, 기업소의 재적종업원으로 일하지 못하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공로있는 부양가족들에게 준다. 로동능력상실원인이 직무와 관련되였을 때와 그것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여도 세대안에 로력자가 없을

사전	주요 내용
	경우, 그리고 공로있는 부양가족, 귀국공민들에게는 근속로동년한에 관계없이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 일정한 근속년한이 있고 국가수훈과 표창을 받은 로동능력상실년금대상자가 로동능력상실년금을 받는 기간에 년로하여 일할 나이가 지났을 때에는 그가 받은 공로에 따라 공로자년금을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는다. 로동능력상실년금제는 우리 나라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백과사전출판사, 1998: 480).
	유가족년금: 혁명투사, 군인, 로동자, 사무원, 농민들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의 부양을 받아오던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주는 사회보장년금 유가족연금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참가하여 일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부양가족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국가적으로 보장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가족들은 년금형태로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는 물질적방조를 받을뿐아니라 국가로부터 우선적으로 살림집과 식량을 비롯한 모든 방조를 받으며 광범한 사회적 원호를 받고있다(백과사전출판사, 1997: 232). **유가족년금**: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주는 사회보장년금 유가족년금은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물질적 방조의 한 형태로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희생되였거나 조국광복후 혁명과 건설에 참가하여 일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부양가족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국가적으로 보장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우리의 사회주의국가는 근로자들이 근무중에 사망하였을때에는 물론 일시적 또는 항구적인 로동능력상실로 하여 생활보조금이나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기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그의 로동기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유가족년금을 지불한다. 이 년금은 유가족으로서 남자 60살, 여자 55살이상되는 늙은이와 16살에 이르지 못한 어린이들이 받으며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들과 전문학교 학생들, 로동능력을 잃은 1, 2류의 불구자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받는다. 국가는 특히 혁명투쟁공로자, 국가의 책임적인 지위에서 사업한 간부들, 전사자, 피살자 유가족들의 년금지정에 각별한 관심을 돌린다. 우리 나라에서 유가족들은 년금형태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뿐아니라 국가로부터 살림집, 식량, 의료상방조 등을 우선적으로 받으며 광범한 사회적 원호를 받는다(백과사전출판사, 2001: 205).

사전	주요 내용
	공로자년금: 사회보장을 받게 된 국가공로자들에게 국가가 지불하는 사회보장년금. 공로자정기보조금이라고도 한다. 공로자년금은 국가공로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특별한 배려이다. 이 년금은 나이가 많거나 불구 또는 신변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공로자들이 받는다. 공로자년금은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해 지불되는 년금의 한 종류로서 국가규정에 지적된 훈장, 명예칭호, 영예칭호, 표창을 받은 사람들과 인민경제의 중요부문에서 다년간 일하면서 국가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들, 오래동안 군사복무를 한 사람들,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지불된다. 공로자년금 대상자에게는 높은 급의 식량공급과 치료대우도 적용된다. 공로자년금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들과 자기 직무에 성실한 사람들을 높이 대우함으로써 그들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며 근로자들을 위훈에로 고무추동하는데서 커다른 의의를 가진다(백과사전출판사, 1995: 482). **공로자년금**: 조국과 인민 앞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사회보장년금 이것은 우리 당이 조국과 인민앞에 공로를 세운 일군들에게 특별히 돌려주는 배려이다. 공로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회보장년금은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거나 년로보장을 받고있는 공로자들이 받게된다. 공로자년금대상은 로동과 사회정치생활에서 공훈을 세워 국가로부터 공로수훈 및 표창을 받은 공로자들이다. 이들에게는 공로로 수훈 및 표창을 받은 정도에 따라 해당한 높은 비률의 사회보장금이 지불된다(백과사전출판사, 1997: 232).
	국가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미리 막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중앙집중적으로 화폐예비를 조성리용하는 국가적인 손해보상거래의 한 형태 국가보험은 사회주의적소유를 보호하고 확대재생산을 원만히 보장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가보험보상의 자금원천은 기관, 기업소, 개인들의 생명재산에 미치는 위험을 담보로 하여 보험참가자들로부터 받는 보험료에 의하여 조성된다. 국가보험은 예방적기능과 보상적기능을 수행한다. 국가보험의 예방적기능은 손해의 발생을 미리 막거나 발생된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며 보상적기능은 발생된 손해를 제때에 보상해주어 재생산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보험은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본질적차이를 가진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보험은 보험업자들의

사전	주요 내용
	리윤추구를 위한 영리적기업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보험은 사회주의적소유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운영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보험이 국가보험기관에 의하여 조직되며 따라서 그것은 국가보험으로 취급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보험은 계획성의 원칙과 보험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일정한 리익을 주며 보험거래자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원칙에서 조직된다. 국가보험은 보험대상의 재산 및 보험거래자들의 국적관계에 따라 국내보험과 국제보험으로 구분된다. 국내보험은 국내의 재산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하는 국가보험형태이며 국제보험은 외국인재산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직하는 국가보험형태이다. 우리 나라에서 국내국가보험은 **보험대상과 보험거래의 의무성여부에 따라 재산보험과 인체보험, 의무적보험과 자원적보험형태로 구분**된다. 재산보험이나 인체보험은 다 의무적보험 또는 자원적보험형태로 조직된다. 재산보험은 재산에 미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형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산보험을 사회주의적 소유나 근로자들의 개인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하여 조직한다.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철도보험, 비행기보험, 선박보험, 기계파손보험, 건설공사 및 조립보험, 농업보험 등의 여러가지 보험형태들이 있다. 여기서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의무적보험형태로 조직하며 근로자들의 개인소유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자원적보험형태로 조직하고있다. **인체보험**은 근로자들의 생명에 미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형태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적용하고있는 인체보험형태에는 생명보험, 재해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등이 있다. **인체보험에서는 려객보험을 제외하고는 다 자원적보험**형태로 조직한다. **인체보험의 특징은 많은 경우에 그것이 장기저축의 성격을 띤다는것**이다. 생명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은 보험계약만기가 되면 보험금을 보험가입자들에게 반환해주게 된다. 우리 당의 인민적보건정책과 로동보호를 위한 국가적시책으로 하여 **인체보험의 이러한 형태들에서는 보험보상금으로 지불하는 금액보다 만기보험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1). **보험**: 자연재해나 사고로 일어날수 있는 피해를 미리 막거나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형성하고 리용하는 경제관계 보험은 사회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사회경제생활의 해당한 요구를 반영하여 발생한 범주이다. 사람들이 자연에 작용하여 물질적부를 만들어내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과정에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	주요 내용
	이로하여 자원부원은 물론 인간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물질문화적부가 파괴되고 인명피해도 발생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활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그것들을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경제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경제적 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사회적으로 형성하고 리용하는 것이 보험이다.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자금은 해당 대상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보험기관에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지불한 자금이며 보험기관은 그것을 받은대가로 보험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재정적으로 그것을 보상하거나 **인체보험일 경우 보험금으로 지불**한다. 보험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자금예비조성이 가능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보험에 필요한 자금예비조성은 사회생산력발전수준정도에 의존한다. 보험이 실현되자면 사회생산력이 발전하여 일정한 정도로 화폐 축적이 이루어지고 재산과 생명에 미치는 자연재해와 뜻하지 않은 사로고 인한 손해를 보상할 요구가 제기되여야 한다. 보험은 생산력 발전으로 잉여생산물이 존재하고 상업과 무역거래가 발전하던 14세기 중엽에 해상보험으로부터 발생하여 그후 화재보험, 집짐승보험, 생명보험 등 여러가지 형태들로 확대발전하였다. 보험은 사회제도의 차이에 따라 그 성격과 생명, 목적이 서로 다르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보험은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이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보험사업은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자연재해과 뜻밖의 불상사고로부터 보호하고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의 생활안전과 향상을 보장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위험피해보상에 필요한 자금원천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 자기자신을 위하여 창조한 물질적 및 재정적 소득이다. 이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국가보험기관들에 집중되여 중앙집권적원칙에서 장악리용된다. 보험기관들은 보험자금을 자연력에 의하여 파괴되는 물질문화적재부를 복구하고 불상사로 인한 피해를 극력 줄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한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보험제도의 인민적 성격과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보험은 보험기관이 보험대상에 대한 피해를 책임지는 방식에 따라 직접보험과 재보험으로, 보험에 참가하는 형태에 따라 의무적보험과 자원적보험으로, 보험대상의 소유관계, 거래조직과 방식에 따라 국제보험과 국내보험으로 나눈다. 보험은 해당나라 법과 규정세칙에 의거하여 진행된다(백과사전출판사, 1999: 228-229).

〈표 Ⅲ-4〉 사전에 기초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정치사전(1973)	경제사전(1985)	재정금융사전(1995)	조선대백과사전(1995~2001)
	생활보조금		생활보조금
국가사회보험, 사회보험	국가사회보험, 사회보험	국가사회보험, 사회보험	국가사회보험, 사회보험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 사회보험에 의한 보조금, 사회보험에 의한 일시적보조금	보조금, 사회보험에 의한 보조금, 사회보험에 의한 일시적보조금, 사회보험보조금	사회보험에 의한 일시적보조금
일시적 보조금	일시적보조금	일시적보조금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장례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방조	의료상방조비	의료상방조, 의료상방조비	의료상방조, 의료방조
정양, 휴양, 야영, 관광, 탑승료	정휴양, 휴양 및 료양비	정휴양(비), 료양, 휴양 및 료양비, 야영	정휴양(비), 료양, 휴양
국가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국가사회보장, 사회보장제	사회보장제	국가사회보장, 사회보장제
		국가사회보장년금, 사회보장년금	국가사회보장년금, 사회보장년금

<table>
<tr><th>정치사전(1973)</th><th colspan="2">경제사전(1985)</th><th>재정금융사전(1995)</th><th>조선대백과사전(1995~2001)</th></tr>
<tr><td>년금</td><td colspan="2">년금, 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 사회보장에 의한 정기보조금</td><td>년금, 사회보장에 의한 정기보조금,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받는 년금</td><td>년금, 사회보장에 의한 정기보조금,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받는 년금</td></tr>
<tr><td></td><td colspan="2">나이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년로년금, 년로년금, 년로생활보조금</td><td>나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년로년금, 년로년금</td><td>나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년로년금, 년로년금</td></tr>
<tr><td rowspan="4"></td><td rowspan="4">오래 앓는 사람들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td><td>불구자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td><td rowspan="4">로동능력상실년금, 오래 앓은 사람과 불구자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및 영예전상자 사회보장년금</td><td rowspan="4">로동능력상실년금, 오래 앓은 사람과 불구자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및 영예전상자 사회보장년금</td></tr>
<tr><td>영예군인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td></tr>
<tr><td>재해로 불구가 된 사람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td></tr>
<tr><td>일반근로자들이 불구로 되었을 경우에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td></tr>
<tr><td rowspan="3"></td><td rowspan="3">유가족년금</td><td>직무와 관계없이 사망한 사람의 가족에게 주는 유가족년금</td><td rowspan="3">유가족년금</td><td rowspan="3">유가족년금</td></tr>
<tr><td>전사자가족에게 주는 유가족년금</td></tr>
<tr><td>피살자가족에게 주는 유가족년금</td></tr>
</table>

정치사전(1973)	경제사전(1985)	재정금융사전(1995)	조선대백과사전(1995~2001)
	공로자년금, 공로있는 사람에게 주는 년금	공로자년금, 공로있는 사람에게 주는 년금, 공로자사회보장년금	공로자년금, 공로있는 사람에게 주는 년금, 공로자사회보장년금, 공로자정기보조금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
보조금	보조금, 사회보장제에 의한 보조금, 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	보조금, 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 사회보장보조금	보조금
	불구자에게 주는 보조금	불구자에게 주는 보조금	오래 앓은 사람과 불구자에게 주는 보조금
	영예군인에게 주는 보조금, 영예군인과 영예전상자에게 주는 보조금	불구보조금, 영예군인, 영예전상자들에게 주는 불구보조금, 영예군인과 영예전상자에게 주는 보조금	영예군인 및 영예전상자 보조금
		간호보조금	
	인민군후방가족원호보조금	후방가족원호보조금, 원호보조금, 군인부양가족원호보조금, 인민군후방가족원호보조금	후방가족원호보조금, 인민군후방가족원호보조금

정치사전(1973)	경제사전(1985)	재정금융사전(1995)	조선대백과사전(1995~2001)
		장례보조금	장례보조금
		귀국공민부양가족 생활보조금, 생활보조금	
		로력자가 없는 사회보장년금대상자세대에 주는 보조금	
	의료상 방조비	의료상 방조	의료상 방조
	인체보험	인체보험	인체보험

주: 공란은 관련 용어 언급 없음

다.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이상과 같이 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았다. 그 중 북한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장 풍부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험법(1946년),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경제사전(1985), 재정금융사전(1995), 사회보장법(2008년)에 기초할 때, 최종적으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는 〈표 Ⅲ-5〉와 같이 체계화할 수 있다.

생활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과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은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방조비, 정휴양비, 료양비라고 할 수 있다. 실업보조금은 1978년 사회주의로동법 제5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에 의거하여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은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유가족년금, 전사자가족 유가족년금, 피살자가족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보조금은 영예군인·영예전상자 보조금, 영예군인·영예전상자 간호보조금, 인민군후방가족원호보조금, 장례보조금, 귀국공민부양가족 생활보조금, 로력자가 없는 사회보장년금대상자세대에 주는 보조금, 의료상 방조비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Ⅲ-5〉의 굵은 테두리 안 회색 음영의 영역에 있는 사회보장년금에 해당하는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이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이 된다.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은 그 대상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Ⅲ-5〉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구분			사회보험법 (1946)	사회주의로동법 (1978)	경제사전(1985)	재정금융사전(1995)	사회보장법 (2012)
생활보조금	국가사회보험제	보조금	일시적보조금	일시적보조금	일시적보조금	일시적보조금	
			해산보조금	산전산후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장례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방조		의료상방조비	의료상방조비	
					정휴양, 료양비	정휴양비, 료양비	
			실업보조금				
	국가사회보장제	년금	양로 년휼금 (양로일시금)	년로년금	년로년금	년로년금	사회보장 년금
			폐질 년휼금 (폐질일시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구분			사회보험법 (1946)	사회주의로동법 (1978)	경제사전(1985)	재정금융사전(1995)	사회보장법 (2012)
			유가족년휼금 (유가족 일시금)	유가족년금	유가족년금	유가족년금	
					전사자가족 유가족년금		
					피살자가족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공로자년금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	
		보조금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보조금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보조금	보조금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간호보조금	
					인민군후방가족원호보조금	인민군후방가족원호보조금	
						장례보조금	
						귀국공민부양가족 생활보조금	
						로력자가 없는 사회보장년금대상자세대에 주는 보조금	
			의료상 방조	의료상 혜택	의료상 방조비	의료상 방조비	

3. 북한의 소득보장 법령 및 제도 개괄

앞에서는 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이 장에서는 북한의 소득보장 법령 및 제도를 개괄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북한의 소득보장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도식은 〈그림 Ⅲ-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Ⅲ-2〉 북한의 사회보장 법령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 구분

	근로자 (일시 로동능력상실자 포함)	비근로자 (년로자, 로동능력상실자, 무의무탁자)
사회주의헌법 (1948)	모든 공민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	
	특별보호: 혁명투사 · 혁명렬사가족 · 애국렬사가족 · 인민군후방가족 · 영예군인	
	국가사회보험제	국가사회보장제
사회주의로동법 (1978)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 로동재해 · 질병 · 부상으로 인한 일시 로동능력상실자(6개월 미만)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 로동재해 · 질병 · 부상으로 인한 로동능력상실자(6개월 이상)
		로동,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로동능력상실 혹은 사망시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 배려
		유가족년금: 로동재해 · 질병 · 부상으로 근로자 사망시 부양가족에게 지급
		부양의무자 부재 노인과 장애인은 양로원 · 양생원에서 무상 돌봄
사회보험법 (1946)	■ 피보험자는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거주 외국인 적용) ■ 일시적 노동능력상실 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실업보조금, 폐질년휼금, 유가족년휼금, 양로년휼금, 의료상방조 ■ 고용주(유해 및 위험정도에 따른 납부비율)와 피보험자(임금 또는 보수의 1%)의 공동부담 ■ 최후소속직장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청구서(증빙서류첨부) 제출→도 인민위원회 · 노동부 승인→시 · 군 인민위원회 지급	
사회보장법 (2008)		■ 사회보장대상은 년로자, 로동능력상실자, 부양의무자 부재자 ■ 국가공로자 우대원칙 ■ 사회보장년금 혹은 보조금 중 선택 ■ 기관 · 기업소 · 단체 신청→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 인민위원회 심의 · 승인→리 · 읍 · 로동자구 · 동사무소 통보→지급
년로자보호법 (2007)	■ 남녀 60살 이상의 공민,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남60세, 여55세 이상의 공민 ■ 공로있는 년로자의 특별보호원칙 ■ 년로년금과 보조금	
국가예산수입법 (2005)	사회보험료: 무상치료 · 국가사회보험 · 사회보장제 위한 국가예산 동원 자금	
	사회보험료 = 공동자금(기업소, 협동단체) + 로동보수자금(종업원) 월판매수입금에 따라 계산된 생활비의 7% 월로동보수액의 1%	
	■ 외국투자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는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함 ■ 협동농장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체사회보험기금으로 적립	
재정법 (1995)	교육 · 보건 · 사회보험 · 사회보장은 인민적시책비에서 지출	

주: 괄호 안은 최초 법령 제정년도

북한의 사회보장 법령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를 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북한 소득보장의 적용대상은 전체 공민이다. 사회주의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2조에 따르면,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민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을 보다 세분화할 수 있는데, 북한의 소득보장 제도는 적용대상에 따라 근로자(일시 로동능력상실자 포함)와 비근로자(년로자, 로동능력상실자, 부양의무자 부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4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근로자(근로인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법 제2조 ‘사회보장대상’에서는 “사회보장의 대상에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과 관련한 규정은 사회주의로동법 제73조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들에 따라 근로자와 비근로자로 적용대상을 다음과 같이

크게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로동재해 · 질병 · 부상으로 인한 일시 로동능력상실자는 국가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집단에 포함되며, 6개월 이상의 로동능력상실자를 비롯한 년로자, 부양의무자 부재자는 국가사회보장제의 적용을 받는 비근로자 집단에 속한다.

특별보호를 받는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사회주의헌법 제76조에 따르면,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법 제4조 ‘우대원칙’에서는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로를 세운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에 대한 우대정책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둘째, 급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다. 급여는 국가사회보험제와 국가사회보장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용어는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구분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남한에서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하위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국가사회보험은 현재 시점에 근로활동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근로인민에게 제공하는 일시적 보조금을 의미하며, 국가사회보장은 현재 시점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근로능력상실자, 부양의무자 부재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연금을 의미한다.

사회보험법 제6장 ‘보조금’에서는 일시적보조금(제1절), 해산보조금(제2절), 장례보조금(제3절), 실업보조금(제4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 ‘년휴금’에서는 폐질년휴금(제1절), 유가족년휴금(제2절), 양로년휴금(제3

절), 제9장 '의료상방조'에서는 진찰료, 약재 또는 치료재료,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입원료, 물리요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접의료비, 요양소 또는 휴양소에 수용되었을 때의 비용(제107조) 및 의료방조비(제122조)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법 제19조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 지불'에 따르면, "사회보장자는 사회보장금증서에 따라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 '한가지 사회보장년금 또는 보조금의 지불'에 따르면, "사회보장자에게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 사회보장년금 또는 보조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사회보장자에게 사회보장년금외에 보조금을 더 지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국가사회보장제 적용을 받는 급여는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의 2개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재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다. 사회보험법 제14조에 의하면, "고용주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보수총액에 그 직장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 및 위험정도에 의하여 따로히 규정하는 납부비율을 겸한 금액"을, 그리고 "피보험자는 고용주로 부터서 받은 임금 또는 보수의 1%에 해당한 금액"을 납부한다. 즉 고용주와 피보험자 간 공동부담으로 사회보험료를 충당하고 있다.

국가예산수입법에서는 그 납부 비율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제47조 '사회보험료의 납부비률'에 따르면, "종업원의 사회보험료납부비률은 월로동보수액의 1%로 한다. 기업소와 협동단체의 사회보험료납부비률은 월판매수입금에 따라 계산된 생활비의 7%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사회보험료납부는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예산수입법 제44조 '사회보험료의 정의, 납부대상'에 따르면,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을 포괄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통합 보험료의 성격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예산수입법 제47조 '사회보험료의 납부비률'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의 사회보험료납부는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제특구 지역의 보험료율은 차등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가예산수입법 제48조 '사회보험료의 납부'에 따르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험료를 은행기관에서 로동보수자금을 받는 날 또는 결산분배를 받는 달에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협동농장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체사회보험기금으로 적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동농장에서는 따로 기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적립금이란 "독립채산제기업소들과 지방예산제단위들, 협동적소유의 기업소들과 일부 부, 총국들이 국가의 승인밑에 마련해주고 쓰는 돈"(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272)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가예산수입법에 따르면 협동농장은 자체적인 사회보험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전달체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다. 사회보험법 제51조에 따르면, "폐질년휼금, 폐질일시금, 양로년휼금, 양로일시금, 유가족년휼금, 유가족부조료, 실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소속직장 또는 최후소속직장의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제출한다. 전항의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직업동맹 및 고용주는 시군인민위원회를 경유하여 도인민위원회(평양시에서는 직접 평양특별시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도인민위원회(평양시에서는 평양특별시인민위원회)는 전항의 청구에 대하여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시군인민위원회를 통하여 (평양특별시인민위원회에서는 직접)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최후소속직장의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청구서(증빙서류첨부) 제출 → 도 인민위원회 · 노동부

승인 → 시 · 군 인민위원회 지급의 순으로 전달체계가 이루어진다.

사회보장법에서도 전달체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보장법 제10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신청은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공민이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대상이 제기되였을 경우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작성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자등록정형을 그가 거주하고있는 지역의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자가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그의 사회보장등록자료를 해당 거주지역 인민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관 · 기업소 · 단체에 신청 →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 인민위원회의 심의 · 승인 → 리 · 읍 · 로동자구 · 동사무소에 통보의 순으로 전달체계가 이루어진다.

4.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가. 년로년금

1) 적용대상

(1) 노동자 · 사무원

사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노동자와 사무원은 양로년휼금의 대상이다(사회보험법 제1조). 동법 제15조에서는 “본 법에 있어서 피보험자라 함은 노동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로년휼금은 사회주의로동법에서 년로년금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며,

동법 제74조는 “남자 60살, 녀자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년로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년로자보호법 제14조는 년로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살, 여자 55살 이상의 공민”(동법 제2조)이다. 연령기준은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기여기간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전에서 기여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년로년금을 받을수 있는 근속로동년한은 힘든 로동직종인가 헐한 로동직종인가에 따라 다르다. 일반로동부문인 경우에는 남자는 15년이상, 여자는 12년이상, 특별히 힘든 부문인 경우에는 남자는 12년이상, 여자는 10년이상의 근속로동년한을 가지고 있으면 년로년금을 받을수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360). 여기에서 근속로동년한이란 “근로자들이 사회적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중단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로동한 년한”으로 정의되며 “근속로동년한은 매개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오래동안 복무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434). 또한 “우리 나라에서 근속로동년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945년 8.15해방이후시기부터 계산”되며, 근속로동년한은 “공훈칭호와 국가표창사업, 그리고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의 실시 및 각종 가급금의 지불에서 고려”되고 있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434). “근속로동년한은 사회적로동에 참가한 날부터 계산하되 사회보장을 받은 기간, 기관, 기업소에서 적을 완전히 떼고 학교에 가서 공부한 기간, 제정된 절차를 밟아 휴식한 기간은 빼고 인민군대복무기간, 강습 및 실습에 참가한 기간은 넣어서 계산한다. 매개 근로자들의 근속로동년한은 로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로동수첩에 기입되며

그에 의하여 확인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434). 즉 근속노동연한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노동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강도와 노동유해성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힘든 로동은 "단위시간안에 보다 많은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지출하는 로동"으로 "쉬운 로동과 대치"되는데, "중로동, 유해로동, 고열로동 등이 속한다"고 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595). 따라서 노동강도와 노동유해성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로동과 경로동, 유해로동과 무해로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7)]

첫째, 중로동과 경로동에 대한 설명이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중로동은 "단위시간안에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의 소비를 보다 많이 요구하며 로동강도가 높은 로동"이며, "일반적으로 채취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과 같은 중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 있으며 그밖에 경공업 및 기타 공업부문에도 개별적작업부문"에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427). 다음으로 경로동은 "단위시간안에 사람의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이 적게 지출되는 로동"이며, "주로 방직공업, 신발공업, 식료공업, 일용품공업, 팔프제지공업 등 경공업부분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로동"이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86). 특히 경로동직장은 "국가가 허약자와 년로자, 사회보장자들의 건강관리와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그들의 신체조건에 맞게 간단한 설비를 갖추고 조직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생산단위"로 정의하고, 직장형태를 "허약자경로동직장과 사회보장자경로동직장으로 구분"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86). 허약자경로동직장은 "해당 기관, 기업소안의 허약자들로 조직"하며 "여기에는 기관, 기업소에서 일하다가 몸이 허약하여 경로동만을 할수 있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들어갈수" 있으며, 사회보장경로동직장은 "사회보장자들이 살고있는 지역단위로 조직하며 그밑에 작업반을 조직"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

7) 고열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회보장을 받고있는 나이많은 사람들, 혁명렬사유가족, 전사자가족, 인민군후방가족으로서 헐한 생산로동에 참가할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수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86). 그리고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단위시간내에 보다 많은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지출하는 로동과 그렇지 않은 로동사이의 차이"로 규정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428). 이상의 설명에 따르면 사회보장자들도 경로동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과 단순히 육체로동을 중로동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유해로동과 무해로동에 대한 설명이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무해로동은 "사람들의 건강에 아무런 해도 주지 않는 로동으로 유해로동과 대치되는 개념"이며(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567), 유해로동은 "로동환경과 로동조건이 좋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로동"을 의미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658). 유해로동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해로동에는 기계화, 자동화 수준이 낮고 로동보호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못한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열, 가스, 먼지, 습기 등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작업이 들어간다. 즉 유해로동에는 수은, 비소, 염산, 류산 등 유해물질을 직접 다루는 작업, 고열작업과 갱내작업, 유해물의 가스와 연기의 영향을 받는 작업,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될수 있는 작업, 라디움방사선, 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영향을 받는 작업, 온도가 낮은 물체를 다루거나 추운 장소에서 진행되는 작업, 진동과 소음이 심하거나 기압이 너무 높거나 낮은데서 진행되는 작업이 해당"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658).

(2) 농민

먼저 농민과 협동농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농민에 대한 사전적 명칭은 '사회주의적근로농민'인데, "사회주의적협동경리의 주인으로서 농업생산을 직접 담당하고있는 근로자"로 정의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737). "사회주의적근로농민은 사회주의적농업협동경리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일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기초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며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로 지위와 역할이 규정되고 있으며, "농민은 사회주의적소유의 낮은 형태인 협동적소유의 주인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737). 공업부문의 생산수단이 대부분 전인민적 소유인데 반해, 여전히 농업부문의 생산수단은 협동적 소유라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협동농장은 "농민들의 자원적의사에 의하여 토지를 비롯한 그밖의 생산수단들을 통합하고 농장원들의 공동로동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진행하는 사회주의적농업기업소"로 정의되는데,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는 사업은 전후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성"되었고 "농업협동조합들은 1962년부터 협동농장으로 고쳐부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584). 1950년 이전에 개인농은 사라졌고 1962년 이전에 농업협동조합은 사라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해방 후 40년이 지난 1985년에서야 중앙인민위원회에서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가 공표되었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사회주의적협동농민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와 소유관계 등에서 로동계급보다 뒤떨어져" 있으며, "농민은 오직 로동계급의 령도밑에서만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사회주의에로 나갈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367). 이러한 규정은 협동농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왜 1985년에서야 시작되었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에서는 연금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제2조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재정금융사전에서 사회보험의 대상을 "로동자, 협동농민, 사무원들"로 명시하고 있으며(사회과학출판사, 1995: 655~656), "년로년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 군인과 그 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년금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332). 따라서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라는 정령과 재정금융사전에 의거할 때, 농민 역시 년로년금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3)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 · 사무원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2009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 제1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운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39조에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나라 종업원이 병, 부상같은 원인으로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게 되였을 경우에는 국가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에는 보조금, 년금의 지불과 정양, 휴양, 견학 같은 것이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1999년 채택, 2005년 수정) 제37조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공민인 종업원은 병 또는 부상,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에는 보조금, 년금의 지불, 정휴양 및 치료가 포함된다" 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 종업원들도 년로년금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외국인

사회보험법에서는 외국인도 사회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본 법은 북조선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군인은 제외) 차별이 없이 적용되며 그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12조). 사회보험법 이외에 다른 법령이나 사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상과 같이 년로년금의 적용대상은 규정된 근속노동연한(일반로동의 경우 남성 15년, 여성 12년, 힘든로동의 경우 남성 12년, 여성 10년)을 충족한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의 노동자 · 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외국인이다.

2) 급여

(1) 노동자 · 사무원

① 소득비례의 원리: 기여기간 반영 및 생활비등급제

현재 국내에 소개된 북한 사회보험법은 제95조에서 제99조까지 누락되어 있다. 이 누락된 조항들이 현재의 년로년금의 급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추정된다(정기원 · 강혜규 · 이상은, 1995). 무려 70여 년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급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유일한 법률이 사회보험법이라는 점에서(노용환 · 연하청, 1997), 이 조항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년로년금의 급여제도 파악에 있어 큰 한계이다. 제한된 범위에서 급여제도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법 제100조에 따르면 “양로년휼금은 제99조에 규정한 노동경력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서는 만 1년을 증가할 때마다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한의 2%율을 소정율에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 힘든노동과 일반노동의 성별로 규정된 노동경력을 초과할수록 비례적으로 연금액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증가분이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한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년로년금 액수도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비례의 원리는 북한이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가 아닌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인 사회주의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평균주의를 "무원칙한 평등을 주장하는 소부르죠아 사상"이며 "사회주의분배원칙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평균주의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모든것은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하여 분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b: 1162). 즉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과도기 단계이므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동에 따른 분배가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은 "사회총생산물가운데서 개인소비에 돌려지는 부분의 분배를 사회주의사회의 근로자들이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진행할 것을 규제하는 경제법칙"으로 정의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513). 즉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과도기 단계이므로 능력에 따른 노동, 노동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그것은 수요에 따른 분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였고 공산주의형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동에 따른 분배에서 중요한 용어는 노동자·사무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기반인 로동보수와 고용주(기업소와 협동단체)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기반인 생활비이다. 먼저 로동보수(=사회주의적로동보수)는 "사회주의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국민소득의 일부를 분배하는 몫"으로 정의되며, "생활비, 장려금, 상금, 가급금"으로 구성되

는데 첫째, “생활비는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지불하는 사회주의적로동보수지불의 기본형태이며 장려금, 상금, 가급금은 로동보수지불의 추가적형태”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434). 둘째, 장려금은 “국가계획과제 또는 기술경제적기준을 넘쳐 수행한 근로자들에게 생활비외에 더 주는 추가적인 사회주의로동보수의 한 형태”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896). 셋째, 상금은 “기관, 기업소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생산계획을 비롯한 경제지표를 넘쳐 수행하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준 집단 또는 개별적일군들에게 주는 사회주의적로동보수의 추가적형태”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693). 넷째, 가급금은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기본생활비외에 근무년한, 로동조건, 기술자격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사회주의적로동보수의 한 형태”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17).

다음으로 생활비에 대한 설명이다. 경제사전에서는 “년로년금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당시의 월기본생활비에 기초하여 년로년금대상자들의 근무여하에는 관계없이 그들에게 매달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360). 여기에서 생활비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생활비는 “사회주의국가가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총생산물의 일부를 그들이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몫의 화폐적 표현”인데, “넓은 의미에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화폐로 받는 사회주의적로동보수”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주의적로동보수의 기본형태만 포함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190).

생활비는 생활비등급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사전에서는 생활비등급제란 “직종 및 직제, 기술기능 자격과 급수, 로동조건 등에 따라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지불할 생활비기준에서 차이를 두는 제도”로서, “생활비등급제는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190). 생활비등급제는 생활비표, 산업부문별 직종기능 등급표, 기능등급 사정기준표가 반영되며, 특히 생활비표는 로동부류와 기능등급으로 구성되는 로동자 생활비표와 기술자·사무원 생활비표로 구분된다. 생활비등급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표 Ⅲ-6〉과 같다.

〈표 Ⅲ-6〉 생활비등급제

<table>
<tr><th>대분류</th><th colspan="3">중분류</th><th>비고</th></tr>
<tr><td rowspan="6">생활비표</td><td rowspan="4">로동자
생활비표</td><td rowspan="2">로동부류</td><td>로동강도</td><td rowspan="2">헐한 로동은 1부류로 하고 힘든 정도에 따라 2, 3, 4부류와 특수 1, 2부류로 모두 6가지로 구분</td></tr>
<tr><td>로동의
유해성여부</td></tr>
<tr><td rowspan="2">기능등급</td><td>기술적복잡성</td><td rowspan="2">산업부문별로 직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8급으로 구분</td></tr>
<tr><td>정밀성</td></tr>
<tr><td rowspan="3">기술자·사무원
생활비표</td><td colspan="2">기구직제에 의한 생활비</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2">기관, 기업소의 급수에
의한 생활비</td></tr>
<tr><td colspan="2">자격급수에 의한 생활비</td></tr>
<tr><td>산업부문별
직종기능
등급표</td><td colspan="3">해당 산업부문로동자생활비표를 적용할 직종과 그 직종의 로동부류, 기능등급의 폭이 규정</td><td></td></tr>
<tr><td>기능등급
사정기준표</td><td colspan="3">직종의 이름과 로동부류 그 직종의 작업내용, 그리고 해당 직종의 로동자들이 매 기능등급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정도 및 기술기능정도</td><td></td></tr>
</table>

자료: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b: 190~191) 재구성

이상과 같이 사회주의 단계인 북한에서의 연금급여는 기여기간 반영과 로동보수와 생활비등급제가 반영된 소득비례의 원리가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생활비 격차, 즉 임금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득비례의 원리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② 가입기간 합산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고등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제대군인도 직업을 배치하며, 대체로 하나의 직장이 주된 일자리로서 평생근무지가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옮길 수 있는데 이 경우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경력연한의 단절 없이 가입기간 합산 인정이 가능하다.

사회보험법 제39조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명령 또는 고용주의 지시에 의하여 전근하였을 때 및 제18조에 의한 계속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장의 동일여부를 불문하고 통산(通算)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8조는 "본 법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을 제하고 계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직장의 전부 또는 부분적 파괴, 멸실, 축소, 폐쇄, 정지, 중지, 개편함으로 인하여 해고당한 자가 해고된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장에 취업하였을 때. 2. 국가기관의 명령 또는 자기의 개인적 사정에 기인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직한 자가 사직의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직하였을 때. 3. 역월(歷月)로 1개월 이상 휴직중에 있든 자가 다시 취직하였을 때(단 질병, 부상으로 사회보험의사의 지시로 휴직중에 있는 자는 중단되지 않고 권리계속된 것으로 인정한다). 4. 법령에 의하여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로 석방되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취직하였을 때. 5. 국가기관의 명령 또는 전근 또는 파견되었던 자가 귀환하여 계속 취업하였을 때. 6. 기타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해고되었든 자가 30일 이내에 취업하였을 때"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노동규율위반, 처형, 기타 상당한 구금자의 사유로 해고당하였거나 자기의 개인적 의사에 기인하여 사직하였든 자는 본조의 계속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한편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서는 전직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중요한

데, ‘전직생활비’와 이를 증명할 ‘재정증명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직생활비란 “직장을 이동하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이미 있던 직장에서 받던 생활비”로 정의되는데, 그 대상으로는 “인민군대에서 오랜 기간 복무하다가 제대되는 제대군관, 각급 양성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들, 농촌에 진출하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비롯하여 직장을 조직적으로 이동하는 일군들과 직장에 다니던 그 가족들”이며 “전직생활비를 기준으로 하여 내줄 생활비계산의 근거문건은 군부대와 전직장이 발생한 《재정증명서》”이다 (사회과학출판사, 1995: 922). 이상과 같이 전직생활비를 증명할 재정증명서를 갖추고 이직에 따른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다.

③ 일시금

년로년금은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한다. 사회보험법 제101조에 의하면 “양로년휼금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종신 지급”한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일시금이 가능하다. 사회보험법 제105조에 따르면, “양로년휼금의 지급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양로년휼금이 5년분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차액을 양로일시금으로서 그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양로년휼금을 받을 권리발생 이후 그 지급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는 5년분의 양로년휼금을 가족에게 양로일시금으로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이중급여 제한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엄격히 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제101조에 따르면, “일시적 보조금을 받는 자가 양로년휼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조급부가 종료된 익일부터

지급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국가사회보험에 의한 보조금 수급자가 국가사회보장에 의한 년금 수급자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즉 원칙적으로 보조금과 연금을 병급 수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⑤ 조기연금제도의 부재

북한에서는 공로자 등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를 위한 조기연금제도가 원칙적으로 부재하다. 사회보험법 제103조에서는 "제98조의 노동경력을 초과한 자가 제98조 소정의 연령에 달하기 이전에 노동을 휴지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연령에 달하였을 때부터 양로년휼금을 지급한다"고 언급하였다.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은퇴하였다 하더라도 조기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⑥ 로동보수와 년금의 병급 수급

연금수급연령 이후 로동보수와 년금을 병급하여 수급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 제104조에서는 "양로년휼금을 받는 자가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양로년휼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02조에서는 "양로년휼금을 받을 조건구비후의 노동은 노동경력기간에 통산하여 이에 해당하는 비율의 양로년휼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농민

농민의 년로년금에 대한 구체적 급여규정은 법령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사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농민의 경우,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기여기간 및 로동보수와 생활비등급제가 아닌 '로력일'과 '협동농장로력보수'가 적용된다. 재정금융사전에 따르면, 로력일은 "협동농장들에서 로력자들이 공동경리에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을 평가하며 그들의 개인분배몫을 규정하는 척도"로 정의되며, "협동농장들에서 로력일에 따르는 분배의 크기는 협동농민들이 수득한 로력일과 로력일의 무게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로력일의 무게는 한 로력일당 차례지는 현물 및 현금 분배몫으로서 그것은 결산분배때에 가서 해당 년도 협동농장의 분배몫을 총 로력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441).

협동농장로력보수는 "농장원들이 공동경리에 참가하여 들인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실시되는 보수"로 정의되는데, "매개 농장원과 생산자집단이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을 로력일을 리용하여 평가계산하였다가 생산결과가 나타난 년말에 가서 로력일을 기준으로 현물과 현금으로 분배몫을 나누어주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585). 이상과 같이 농민의 년로년금 급여는 로력일과 협동농장로력보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종합해 볼 때, 년로년금의 급여는 노동자·사무원의 경우 기여기간 반영과 로동보수 및 생활비등급제에 기초한 급여를 받고, 농민의 경우 로력일과 협동농장로력보수에 기초한 급여를 받는다.

3) 재원

(1) 노동자 · 사무원

먼저 사회보험료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예산수입법 제44조에 의하면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는 년로년금을 사회보장의 하나로 보고 국가예산 중 사회보장사업비에서 지출하는데, 사회보장사업비란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년로한 경우 또는 사망하였을 때 본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며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되는 자금”으로 정의된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654). 따라서 년로년금도 통합 사회보험료로 조성되며 국가예산의 사회보장사업비 항목에서 집행된다. “우리 나라에서 년로년금은 국가예산에서 지불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360). 경제사전에서는 국가예산을 “국가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중앙집중적으로 형성하고 분배하는 재정활동의 기본형태”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예산수입의 원천은 “전적으로 사회주의기업소들의 축적에 의하여 보장”되며 “사회주의국가예산지출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 국가관리 및 국방에 대한 지출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215).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인 기업소와 피보험자인 노동자 · 사무원의 사회보험료로 구성된다. 국가예산수입법 제44조에 따르면,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로동보수자금”으로 이루어진다(동법 제44조). 이와 같은 내용은 사회보험법 제14조에서도 확인되는데, 고용주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보수총액에 그 직장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 및 위험정도에 의하여 따로히 규정하는 납부비율을 겸

한 금액"을, 그리고 "피보험자는 고용주로 부터서 받은 임금 또는 보수의 1%에 해당한 금액"을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946년 9월 28일 공표된 '사회보험료수납절차에 관한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는 국가, 소비조합, 사회기업소, 사무소 및 단체의 경우 지불임금의 5-8%이며, 개인기업소 및 고용주의 경우 지불임금의 10%-12%이다. 노동자 · 사무원은 1%로 동일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Ⅲ-7〉과 같다.

〈표 Ⅲ-7〉 사회보험료

구분	보험료율
국가, 소비조합, 사회기업소, 사무소 및 단체	지불임금의 5-8%
개인기업소, 고용주	지불임금의 10%-12%
노동자 · 사무원	임금의 1%

자료: 사회보험료수납절차에 관한 규정

노동자 · 사무원은 보험료율이 1%로 고정된 반면, 국가, 소비조합, 사회기업소, 사무소 및 단체와 개인기업소, 고용주의 사회보험료율은 차등적이다. '사회보험료수납절차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 이유를 위험정도, 유해정도, 육제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 사망률의 다소라는 4가지의 경중정도를 기준으로 제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기관별 차등적 사회보험료는 다음의 〈표 Ⅲ-8〉과 같다.

〈표 Ⅲ-8〉 국가 및 기업소의 사회보험료

구분	보험료율	해당부문
국가, 사회단체기업소 등	5%를 기여하는 부문(1급)	행정기관, 문화기관, 금융기관 등 6개
	6%를 기여하는 부문(2급)	교육기관, 의료기관, 식료품제공가공업, 여관 · 음식업 등 18개
	7%를 기여하는 부문(3급)	섬유공업, 피복공업, 제당업, 철공업, 제약공업, 도금업, 수도업 등 23개
	8%를 기여하는 부문(4급)	광업, 석재가공업, 어업, 조선업, 화약공업, 채석업 등 30개
개인기업소 등	10%를 기여하는 부문(1급)	의료업, 상전, 사진업 등 17개
	11%를 기여하는 부문(2급)	섬유공업, 유지공업, 제재업, 제약공업, 정미업, 고무공업 등 20개
	12%를 기여하는 부문(3급)	광업, 건설업, 유기합성공업, 해운업, 채석업, 하천운송업 등 20개

자료: 사회보험료수납절차에 관한 규정

한편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이 국가예산수입법의 등장으로 변화하였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1946년 제정된 사회보험법에서는 노동자 · 사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소의 보험료 기준이 모두 '임금 또는 보수'였다. 그런데 2005년 제정된 국가예산수입법 제47조 '사회보험료의 납부비률'에 따르면, "종업원의 사회보험료납부비률은 월로동보수액의 1%로 한다. 기업소와 협동단체의 사회보험료납부비률은 월판매수입금에 따라 계산된 생활비의 7%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에서는 임금 또는 보수가 보험료 납부기준이 되지만, 국가예산수입법에서는 노동자 · 사무원에게는 로동보수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소와 협동단체에는 생활비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2) 농민

협동농장 농민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재정경제사전에 따르면, “협동농장의 공동기금은 기본건설기금, 사회문화기금, 탁아소, 유치원 운영기금, 사회보험기금, 류동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문화기금, 탁아소, 유치원 운영기금, 사회보험기금은 협동농장의 사회문화사업비, 탁아소, 유치원 운영 및 사회보험 비용으로 리용되는 자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92). 이를 통해 농민들도 년로년금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통합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농민들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협동농장은 그 경리운영 및 수입분배의 특성과 관련하여 농장원의 년간 분배몫의 1프로에 해당한 몫을 사회보험료로 사회보험기금을 조성하며 그것으로 모자라는 경우에는 협동농장순수입에서 더 세워 리용한다”(백과사전출판사, 2000: 82). 즉 년간 분배몫의 1%를 1년에 한 번 납부한다.

특히 노동자 · 사무원과 달리 농민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국가예산으로 전환되지 않고 각 협동농장 내에서 자체기금으로 적립되어 사용된다. 국가예산수입법 제48조에 의하면 “협동농장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체사회보험기금으로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 · 사무원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제41조 및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 제39조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들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해 받는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장”되며, 이 기금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종업원으로부터 받는 사회보험료”로 조성된다. 동법 제42조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과 종업원은 달마다 해당 재정기관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회보험료의 납부비률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1999년 채택, 2005년 수정) 제42조 역시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부담으로 하는 사회보험료를 바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예산수입법 제47조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의 사회보험료납부는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몇 개의 경제특구별 사회보험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2000년 채택, 2005년 수정) 제55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강산관광지구 로동규정 (2004년 채택) 제42조에 의하면 “기업은 공화국공민인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월로임총액의 15프로를 사회보험료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날 10일안으로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동 규정 제47조에 의하면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매일 0.05프로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는 미납액의 15프로를 넘을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혜택이 종업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2003년 채택) 제42조와 제47조 역시 위의 금강산관광지구 로동규정 제42조 및 제47조와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종합해볼 때, 노동자·사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기업소 및 협동단체가 월 생활비의 7%, 피보험자가 월 노동보수액의 1%를 부담한다. 농민의 경우 년간 분배몫의 1%를 1년에 한 번 납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기업은 월노임총액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며, 개인은 경제특구별로 달리 적용된다. 년로년금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보험 급여지급을 위한 통합 사회보험료이므로, 이후 설명할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연금, 공로자년금도 모두 이러한 재원체계에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전달체계

(1) 노동자 · 사무원

사회보장년금의 신청은 사회보장년금을 받으려는 “공민이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대상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작성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사회보장법 제10조). 기업소법 제45조에 의하면 “기업소는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를 정확히 실시”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사회보장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업소 역시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회보장신청문건이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에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사회보장법 제12조), “사회보장자로 등록된 공민에게는 사회보장금증서”가 발급된다(동법 제13조).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자등록정형을 그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리, 읍, 노동자구, 동사무소에 알려”준다(동법 제14조). 이를 통해 동사무소 단위에서 실제 구체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년금의 수령은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를 거쳐(동법 제17조) 해당 거주지역의 리, 읍, 노동자구사무소, 혹은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년금을 받는 사회보장자의 “거주지, 가족 수, 기타 생활상 변동이 생긴 경우 5일 내에 해당 리, 읍, 노동자구, 동사무소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 조항(동법 제16조 제2항)을 볼 때도, 연금지급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 따르면 노동자 · 사무원의 사회보장년금의 전달체계는 기관 · 기업소 · 단체 신청 →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 인민위원회 심의 · 승인 → 리 · 읍 · 로동자구 · 동사무소 통보 → 지급의 순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농민

농민에 대한 년로년금의 전달체계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농민들도 기본적으로 노동자·사무원의 년로년금 전달체계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관, 기업소, 단체가 아닌 협동농장위원회에 신청하고 협동농장을 통해 년로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사무원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 제37조에 의하면 "보조금과 년금을 받으려는 종업원은 보건기관이 발급하는 진단문건 또는 보조금과 년금을 받아야 할 사유를 확인하는 문건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사회보험보조금지불청구문건을 사회보험기관에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은행기관에서 해당한 사회보험보조금을 받아 로동보수를 주는 날에 해당 종업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또한 동 규정 동 조항에 의하면 "사회보장에 의한 년금, 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보험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여 수속한데 따라 사회보장년금지불기관에서 달마다 정한 날에 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동 규정 제41조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회보험료의 납부,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에 대하여 기업소재지 사회보험기관과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년로년금 전달체계에 대한 상기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년로년금 신청자는 소속 직장에 청구서(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내고 이를 접수한 소속 기업소(혹은 소속 기관, 단체 등)는 인민위원회 혹은 해당 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상급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검토·승인 후 시·군 인민위원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기관·기업소·단체·협동농장위원회 신청 →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인민위원회 심의·승인 → 리·읍·로동자구·동사무소 통보 → 지급의 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년로년금은 사회보장년금의 하나인데, 이후 로동능력상실년

금, 유가족연금, 공로자년금도 모두 이러한 전달체계를 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년로년금과 관련된 주요 법령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9〉와 같다.

〈표 Ⅲ-9〉 년로년금 관련 주요 법령 조항

구분	법령 내용	법령 조항
적용대상	국가는 남자 60살, 녀자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년로년금을 준다.	사회주의로동법 (1999) 제74조
	사회보험은 노동자, 사무원(이하 피보험자라 약칭한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급부를 한다. (중략) 9. 연로한 피보험자에게 주는 양로년휼금	사회보험법 (1946) 제1조 제9항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 (후략)	년로자보호법 (2012) 제14조
	(선략)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살, 여자 55살이상의 공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년로자보호법 (2012) 제2조
	본 법은 북조선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군인은 제외) 차별이 없이 적용되며 그 효력을 가진다.	사회보험법 (1946) 제12조
	본 법에 있어서 피보험자라 함은 노동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을 지칭한다. 단 군인 및 군속은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회보험법 (1946) 제15조
	보험료를 만 7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납부하는 피보험자만이 본 법 제1조의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보험법 (1946) 제16조
	제1조,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다. 제3조, 협동농민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제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종업원이 병, 부상 같은 원인으로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에는 보조금, 년금의 지불과 정양, 휴양, 견학 같은 것이 속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로동법(2011) 제39조

구분	법령 내용	법령 조항
급여	양로년휼금은 제99조에 규정한 노동경력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서는 만 1년을 증가할 때마다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한의 2% 율을 소정율에 추가한다.	사회보험법 (1946) 제100조
	양로년휼금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종신 지급한다. 일시적 보조금을 받는 자가 양로년휼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조급부가 종료된 익일부터 지급한다.	사회보험법 (1946) 제101조
	양로년휼금을 받을 조건구비후의 노동은 노동경력기간에 통산하여 이에 해당하는 비율의 양로년휼금을 지급한다.	사회보험법 (1946) 제102조
	제98조의 노동경력을 초과한 자가 제98조 소정의 연령에 달하기 이전에 노동을 휴지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연령에 달하였을 때부터 양로년휼금을 지급한다.	사회보험법 (1946) 제103조
	양로년휼금의 지급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양로년휼금이 5년분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차액을 양로일시금으로서 그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양로년휼금을 받을 권리발생 이후 그 지급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는 5년분의 양로년휼금을 기 가족에게 양로일시금으로서 지급한다.	사회보험법 (1946) 제105조
재원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이다. 국가예산수입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예산수입법 (2011) 제2조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로동보수자금으로 한다.	국가예산수입법 (2011) 제44조
	종업원의 사회보험료계산은 월로동보수액에 정한 비률을 적용하여 한다. 협동단체의 공동자금에서 바칠 사회보험료계산은 월로동보수액에 정한 비률을 적용하여 한다.	국가예산수입법 (2011) 제46조
	종업원의 사회보험료납부비률은 월로동보수액의 1%로 한다. 기업소와 협동단체의 사회보험료납부비률은 월판매수입금에 따라 계산된 생활비의 7%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사회보험료납부는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다.	국가예산수입법 (2011) 제47조

구분	법령 내용	법령 조항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험료를 은행기관에서 로동보수자금을 받는 날 또는 결산분배를 받는 달에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협동농장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체사회보험기금으로 적립한다.	국가예산수입법 (2011) 제48조
	국가는 재정수입이 늘어나는데 맞게 사회보장금의 지출을 계통적 늘이도록 한다.	사회보장법 (2012) 제6조
	재정기관은 국가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차례지도록 인민적시책과 사회문화를 위한 지출을 늘여야 한다. 인민적시책을 위한 지출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사회문화를 위한 지출에는 체육, 문화, 대외사업에 대한 지출이 속한다.	재정법(2012) 제16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회보험기금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종업원으로부터 받는 사회보험료로 조성한다.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2011) 제41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종업원은 달마다 해당 재정기관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의 납부비률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2011) 제42조
	기업은 공화국공민인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월로임총액의 15프로를 사회보험료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날 10일안으로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문화시책과 관련하여 기업은 사회보험료밖의 다른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금강산관광지구로동규정(2005) 제42조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지난날부터 매일 0.05프로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는 미납액의 15프로를 넘을수 없다.	금강산관광지구로동규정(2005) 제47조
전달체계	폐질년휼금, 폐질일시금, 양로년휼금, 양로일시금, 유가족년휼금, 유가족부조료, 실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소속직장 또는 최후소속직장의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제출한다. 전항의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직업동맹 및 고용주는 시군인민위원회를 경유하여 도인민위원회(평양시에서는 직접 평양특별시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도인민위원회(평양시에서는 평양특별시인민위원회)는 전항의 청구에 대하여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시군인민위원회를 통하여(평양특별시인민위원회에서는 직접) 지급한다.	사회보험법 (1946) 제51조

구분	법령 내용	법령 조항
	사회보장신청은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공민이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대상이 제기되였을 경우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작성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사회보장법 (2012) 제10조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제때에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법 (2012) 제12조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신청문건심의에서 승인된 공민을 사회보장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자로 등록된 공민에게는 사회보장금증서를 발급한다.	사회보장법 (2012) 제13조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자등록정형을 그가 거주하고있는 지역의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자가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그의 사회보장등록자료를 해당 거주지역 인민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사회보장법 (2012) 제14조
	거주지, 가족수 그밖의 생활상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5일안으로 해당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사회보장법 (2012) 제16조 제2항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자금이다.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금을 정확히 지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법 (2012) 제17조
	(선략)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년로자에게 정해진 년금, 보조금을 정확히 내주어야 한다. 년금, 보조금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년로자보호법 (2012) 제14조
	(선략) 보조금과 년금을 받으려는 종업원은 보건기관이 발급하는 진단문건 또는 보조금과 년금을 받아야 할 사유를 확인하는 문건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사회보험보조금지불청구문건을 사회보험기관에 내여 확인을 받은 다음 은행기관에서 해당한 사회보험보조금을 받아 로동보수를 주는 날에 해당 종업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중략) 사회보장에 의한 년금, 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보험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여 수속한데 따라 사회보장년금지불기관에서 달마다 정한 날에 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2005) 제3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사회보험료의 납부,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에 대하여 기업소재지 사회보험기관과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는다.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2005) 제41조

주: 괄호 안은 법령의 최근 개정년도

이상의 년로년금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Ⅲ-10〉과 같다.

〈표 Ⅲ-10〉 년로년금 제도

구분	내용
적용대상	규정된 근속로동년한(일반로동의 경우 남성 15년, 여성 12년; 힘든로동의 경우 남성 12년, 여성 10년)을 충족한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의 노동자 · 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외국인
급여	노동자 · 사무원 : 기여기간 및 로동보수와 생활비등급제에 기초한 급여 농민 : 로력일과 협동농장로력보수에 기초한 급여
	기본특징: 소득비례의 원리(기여기간 반영 및 생활비등급제), 가입기간 합산, 양로일시금, 이중급여 제한, 조기연금제도의 부재, 생활비와 년금의 병급 수급
재원	노동자 · 사무원 : 로동보수액의 1%(피고용인) + 월생활비의 7%(기업소 및 협동단체) 농민 : 년간 분배몫의 1%(피고용인)
전달체계	기관 · 기업소 · 단체 · 협동농장위원회 신청 →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 인민위원회 심의 · 승인 → 동 · 리 사무소 통보 → 지급

나. 로동능력상실년금

1) 적용대상

먼저 로동능력상실년금[8]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46년에 채택된 사회보험법의 폐질년휼금이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일시적 노동능력상실로 인해 일시적보조금을 받는 자가 노동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불구폐질자로 인정될 경우 보조금 지급은 중단되고 폐질년휼금 지급이 시작된다(사회보험법 제55조). 폐질년휼금은 1978년 채택

8) 북한의 로동능력상실년금은 남한의 산재보험의 장해보상연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보훈연금의 상이군경 보훈급여를 포괄하는 급여이다.

된 사회주의로동법에서 ‘(로동능력 상실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등능력상실년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제73조)으로 그 개념이 이어진다. 이 로동능력상실년금은 2008년에 채택된 사회보장법에서 언급되는 사회보장년금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로동능력상실년금은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잃었을 때 국가가 해당한 일군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지출하는 사회보장년금의 한 형태”로 정의되는데, “로동능력상실년금은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을 비롯한 일군들이 로동능력을 상실하여 국가사회보험제에 따라 일시적보조금을 받던 때로부터 6개월이 넘을 때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받는 년금”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433).

로동능력상실년금의 대상은 법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년로년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 군인과 그 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년금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332). 또한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졌거나 불구자, 안정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자로서 기관, 기업소의 재적종업원으로 일하지 못하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공로있는 부양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433).

특히 로동능력상실대상자는 업무기인성(직무관련)과 업무불기인성(직무무관)으로 구분된다. 먼저 재정금융사전에서는 “로동능력상실원인이 직무와 관련되였을 때와 그것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여도 세대안에 로력자가 없을 경우 그리고 공로있는 부양가족, 귀국공민들에게는 근속로동년한에 관계없이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 일정한 근속년한이 있고 국가수훈과 표창을 받는 로동능력상실년금대상자가 로동능력상실년금을 받는 기간에 년로하여 일할 나이가 지났을 때에는 그가 받은 공로에 따라 공로자년금을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433). 다음으로 경제사전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로동능력상실년금의 대상자는 혁명투사, 군무자, 로동자, 사무원들이다. 로동능력상실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로동능력상실이 직무와 관련되여 있을 때에는 근속로동년한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직계가족중 로력자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485).

이상에 따라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적용대상은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한 노동자 · 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혁명투사와 그 부양가족, 로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로력자 부재세대, 공로있는 부양가족, 귀국공민이라고 할 수 있다.

2) 급여

로동능력상실년금에는 3개의 급여종류가 있다. “불구자에게 주는 보조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에는 영예군인에게 주는 보조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로 불구가 된 사람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 일반근로자들이 불구로 되었을 경우에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이 있으며 그 매개 생활보조금은 불구류에 따라 준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189). 이를 본 연구에서는 각각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으로 구분한다.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급여수준은 불구폐질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 그 내용은 사회보험법의 폐질년휼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제81조에 따르면, 불구폐질은 제1류, 제2류, 제3류로 구분되며, 제1류는 “전연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타인의 간호를 요하는 자”로서 시각의 완전한 상실 혹은 청력의 완전한 상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2류는 “일반적인 보통노동능력을 상실한 자”로서 일안 반 이상의 시력이 상실되었거나 일이 반 이상의 청력이 상실된 자, 전혀 코로 호흡을 할 수 없게 된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3류는 “자기직업의 노동을 그 직업의 보통사정 밑에서 계속적으로 노동할 능력을 상실하였으나 불규칙한 노동 또는 노동시간의 단축 혹은 타의 직업에 있어서 현저히 자격을 저하시킨 노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반안 이상의 시력이 상실된 자 혹은 반이 이상의 청력이 상실된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피보험자가 직무 집행 상 질병 혹은 부상으로 불구폐질이 되었을 시 제1류 폐질자에게는 최근 1년간 평균임금연액의 90%, 제2류에게는 65%, 제3류에게는 35%의 급여 한도를 설정한다(동법 제82조). “피보험자가 직무집행상의 폐질, 부상에 기인되어 해고이후 불구폐질자로 인정되었을 때에도 폐질년휼금을 지급”한다(동법 제83조). “피보험자가 직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불구폐질자로 인정”되었을 경우 연령별 및 직종별 근속연한구분에 따라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폐질년휼금을 지급한다(동법 제84조). 이 경우 지하노동 또는 유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모든 직장의 모범노동자, 모범사무원, 기술자로서 근속 10년 미만자 중 제1류 폐질자는 최근 1년간 평균임금연액의 60%, 제2류는 40%, 제3류는 35%를 한도로 정하게 되며, 기타 다른 직종의 노동자 역시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급여 한도가 설정된다(동법 제85조).

〈표 Ⅲ-11〉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급여수준: 업무기인성의 경우

구분	내용	급여수준
제1류	전연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타인의 간호를 요하는 자 1. 양안이 맹목(盲目)된 자 2. 양이가 농실(聾失)된 자 3. 저작(咀嚼) 및 언어의 기능이 병폐(併廢)된 자 4. 양상지를 상실하여 또는 그 작용이 전폐된 자 5. 양하지를 상실하여 또는 그 작용이 전폐된 자 6.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를 태(胎)하여 항상 간호를 요하게 된 자 7. 지각정신을 상실하고 뇌척수 또는 신경이 고도한 기능장해를 태하여 항상 간호를 요하게 된 자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90%

구분	내용	급여수준
제2류	일반적인 보통노동능력을 상실한 자 1. 일안 반이상의 시력이 상실된 자 2. 일이 반이상의 청력이 상실된 자 3. 전혀 코로 호흡할 수 없게된 자 4. 저작 및 언어의 기능이 크게 상실된 자 5. 일편상지를 상실하여 그 작용이 전폐된 자, 일편상지의 견갑 주완(肘腕)관절중 2관절 이상의 작용이 상실된 자 또는 일편수지(手指)가 전부 결손되어 또는 폐용된 자 6. 일편하지를 상실하여 또는 그 작용이 전폐된 자, 일편하지의 고슬족(股膝足)관절중 2관절 이상의 작용이 상실된 자 또는 한 편족지가 전부 결손되어 보행이 부자유한 자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이 방해되여 회복의 희망이 없는 자 8. 발작증에 인하여 지각정신이 상실된 자 지각정신이 모약(耗弱)되여 보좌인을 요케 된 자 또는 뇌척수 혹은 신경의 기능장해를 태하여 혹시 간호를 요케 된 자 9. 고도의 수흔수축유자(瘦痕收縮癒者) 혹은 유백(癒白) 및 만곡 또는 단축 등에 인하여 그 부분의 기능장해를 태한 자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65%
제3류	자기직업의 노동을 그 직업의 보통사정 밑에서 계속적으로 노동할 능력을 상실하였으나 불규칙한 노동 또는 노동시간의 단축 혹은 타의 직업에 있어서 현저히 자격을 저하시킨 노동을 할 수 있는 자 1. 반안 이상의 시력이 상실된 자 2. 반이 이상의 청력이 상실된 자 3. 호흡장해를 태한 자 4.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를 받게 된 자(단 치아만을 결손한 자를 제외한다) 5. 2수지 이상이 결손된 자(골에 달한 자에 한한다) 또는 수지관절의 작용이 상실된 자 6. 족지가 결손된 자(골에 달한 자에 한한다) 또는 족지관절의 작용이 상실된 자 7. 흉복부 장기기능이 방해된 자 8. 지각정신이 쇠약되어 뇌척수 또는 신경에 기능이 장해를 태한 자 9. 생식기 또는 요기(尿器)가 훼손되어 그 기능의 일부가 방해되어 치료의 희망이 없는 자 또는 편고환을 상실한 자 10. 수흔수축유자 또는 유합(癒合) 등에 의하여 크게 추형(醜形)을 태한 자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35%

자료: 사회보험법 제81조, 82조

업무불기인성의 경우에도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지급될 수 있다. “오래 앓는 사람에게 주는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로동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근속로동년한에 관계없이 주며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이 로동능력을 잃었을 때에는 제정된 근속로동년한에 이른 사람에게만 준다”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360). 즉 업무기인성 로동능력상실년금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되지만, 업무불기인성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일정한 근무기간을 고려하고 있다. 동시에 업무불기인성의 경우, 연령, 노동강도 및 유해노동 유무 등을 고려한다. 먼저 연령, 유해노동 유무, 노동자와 사무원 구분에 따른 근속연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Ⅲ-12〉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근속연한: 업무불기인성의 경우

연령별 (연령은 만으로 표시함)	지하 또는 유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기술자	기타노동자	사무원
16세 미만	근속연한의 제한이 없다.	근속연한의 제한이 없다.	근속연한의 제한이 없다.
16세 이상 20세 미만	근속연한의 제한이 없다.	1	1
20세 이상 22세 미만	1	2	2
22세 이상 25세 미만	3	3	3
25세 이상 30세 미만	4	4	5
30세 이상 40세 미만	6	7	8
40세 이상 50세 미만	8	10	12
50세 이상	10	12	16

자료: 사회보험법 제84조

다음으로 업무불기인성의 경우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의 로동강도에 따라 급여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3〉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급여수준: 업무불기인성의 경우

구분	급여수준
제1종	제1종 지하노동 또는 유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모든 직장의 모범노동자, 모범사무원, 기술자로서 근속 10년 미만자 1. 제1류의 폐질자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60% 2. 제2류의 폐질자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40% 3. 제3류의 폐질자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25% 4. 근속 10년 이상 18년 미만 자는 그 기간 9년 이상 1년을 증가할 때마다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2%를 근속10년 미만자가 받는 율에 가산한다. 5. 근속 18년 이상자는 그 기간 17년 이상 만 1년을 증가할 때마다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3%를 근속 10년 이상 18년 미만자가 받는 율에 가산한다. 단 제1류의 폐질자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90%, 제2류는 70%, 제3류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종	제2종 야금, 기계제작, 전기와사, 석탄공업, 광산, 석유공업, 산알카리공업, 철도, 체신, 육운, 수운, 어로, 토목건축, 조선의 각 노동자로서 근속 10년 미만자 6. 제1류의 폐질자에 있어서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58% 7. 제2류의 폐질자에 있어서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38% 8. 제3류의 폐질자에 있어서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24% 9. 근속 10년 이상 18년 미만 자는 그 기간 9년 이상 만 1년을 증가할 때마다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1%를 근속10년 미만자가 받는 율에 가산한다. 10. 근속 10년 이상자는 그 기간 17년 이상 만 1년을 증가할 때마다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2%를 근속 10년 이상 18년 미만자가 받는 율에 가산한다. 단 제1류의 폐질자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70%, 제2류는 60%, 제3류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종	제3종 제1종, 제2종 이외의 모든 노동자,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현장내의 사무원, 교원, 예술인으로서 근속 15년 미만자 11. 제1류의 폐질자에 있어서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57% 12. 제2류의 폐질자에 있어서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37% 13. 제3류의 폐질자에 있어서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23% 14. 근속 15년 이상자는 그 기간 14년 이상 만1년을 증가할 때마다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1%를 근속 15년 미만자가 받는 율에 가산한다. 단 제1류의 폐질자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70%, 제2류의 폐질자는 50%, 제3류의 폐질자는 30%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급여수준
제4종	제4종 직접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원으로 근속 15년 미만자 15. 제1류의 폐질자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57% 16. 제2류의 폐질자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37% 17. 제3류의 폐질자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23% 18. 근속 15년 이상자는 그 기간 14년 이상 만1년을 증가할 때마다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0.5%를 근속 15년 미만자가 받는 율에 가산한다. 단 제1류의 폐질자는 최근 15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65%, 제2류는 45%, 제3류는 25%를 초과할 수 없다.

자료: 사회보험법 제85조

다음으로 폐질일시금 제도가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폐질년휼금의 지급을 받는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이미 지급한 폐질년휼금의 5년분에 상당한 금액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차액을 폐질일시금으로써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동법 제88조).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급여는 “피보험자가 폐질, 부상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의사로부터 불구폐질자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폐질된 익일부터 사망 혹은 회복일까지 폐질년휼금을 월할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다(사회보험법 제80조). 이상의 로동능력상실년금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14〉와 같다.

〈표 Ⅲ-14〉 로동능력상실년금 관련 주요 법령 조항

구분	법령 내용	법령 조항
적용대상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회주의헌법 (2013) 제72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	사회주의 로동법 (1999) 제73조

구분	법령 내용	법령 조항
	사회보장의 대상에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속한다.	사회보장법 (2012) 제2조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로를 세운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	사회보장법 (2012) 제4조
	사회보험은 노동자 사무원(이하 피보험자라 약칭한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급부를 한다. 2. 질병, 부상, 불구로 인하여 일시적 로동능력상실의 경우의 보조금 3. 임신 및 해산으로 인하여 로동능력상실의 경우의 보조금 7. 질병 부상으로 불구 또는 폐질이 되었을 때의 년휼금	사회보험법 (1946) 제1조
급여	※ 사회보험법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85조는 본문 참조 피보험자가 폐질, 부상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의사로부터 불구폐질자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폐질된 익일부터 사망 혹은 회복일까지 폐질년휼금을 월할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사회보험법 (1946) 제80조
	피보험자가 직무집행상의 폐질, 부상에 기인되어 해고이후 불구폐질자로 인정되었을 때에도 폐질년휼금을 지급한다.	사회보험법 (1946) 제83조
	폐질년휼금을 받는 기간중에 그 폐질정도가 전보다 경감되었을 때에는 그 경감을 인정한 익일부터 경감정도에 속하는 종류의 폐질년휼금을 지급한다.	사회보험법 (1946) 제86조
	폐질년휼금을 받는 기간중에 그 폐질에 기인하여 폐질정도가 전보다 가중되었을 때에는 그 가중을 인정한 익일부터 가중된 정도에 속하는 종류의 폐질년휼금을 지불한다.	사회보험법 (1946) 제87조
	폐질년휼금의 지급을 받는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이미 지급한 폐질년휼금의 5년분에 상당한 금액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을 폐질일시금으로써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사회보험법 (1946) 제88조
	전조의 유가족이 전조의 일시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구폐질자를 치상케 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일시금을 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회보험법 (1946) 제89조
	폐질년휼금산출이 기준으로 되는 평균임금액이 1만2천원을 초과할 때에는 1만2천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사회보험법 (1946) 제90조
	다음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1.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위법행위를 하여 법적제재를 받고있는 경우 3. 사회보장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4. 국가로부터 생활상방조를 따로 받고있는 경우 5. 기타 따로 정한 법규에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하였을 경우	사회보장법 (2012) 제22조

주: 괄호 안은 법령의 최근 개정년도

이상의 로동능력상실년금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Ⅲ-15〉와 같다.

〈표 Ⅲ-15〉 로동능력상실년금 제도

구분		내용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혁명투사와 그 부양가족, 로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로력자 부재세대, 공로있는 부양가족, 귀국공민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경우 일정 기여기간 충족 요건
급여	급여 종류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폐질 일시금
	급여 수준	기본특징: 소득비례의 원리(기여기간 반영 및 생활비등급제),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급여, 업무관련성, 이중급여 제한 〈업무기인성 경우〉 제1류 폐질자에게는 최근 1년간 평균임금연액의 90%, 제2류에게는 65%, 제3류에게는 35%의 급여 한도 〈업무불기인성의 경우〉 제1종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 기준 제1류 폐질자 60%, 제2류 폐질자 40%, 제3류 폐질자 25%의 급여 한도 제2종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 기준 제1류 폐질자 58%, 제2류 폐질자 38%, 제3류 폐질자 24%의 급여 한도 제3종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 기준 제1류 폐질자 57%, 제2류 폐질자 37%, 제3류 폐질자 23%의 급여 한도
재원		통합 사회보험료
전달 체계		통합 전달체계

주 : 북한의 로동능력상실년금은 남한의 산재보험의 장해보상연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보훈연금의 상이군경 보훈급여를 포괄하는 급여이다.

다. 유가족년금

1) 적용대상

유가족년금은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주는 사회보장년금이다. 사회보험법 제91조에 따르면, “피보험자와 동일한 가족에 속하여 주로 피보험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유가족에게 유가족년휼금을 지급”하는데, 다음의 4가지 경우에 속하면 유가족년금이 지급된다. 첫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둘째, 피보험자가 해고이후 15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셋째, 피보험자였든 자로서 의료상 방조를 받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 넷째, 재판소에서 종신실종자로 판결되었을 때이다(동법 제91조).

구체적으로 유가족년금은 “혁명투사, 군인, 로동자, 사무원, 농민들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의 부양을 받아오던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주는 사회보장년금”으로 정의되는데, 유가족연금의 목적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참가하여 일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부양가족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국가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백과사전출판사, 1997: 232). 또한 경제사전에서는 “유가족년금은 국가로부터 렬사증을 수여받은 유가족들과 로동자, 사무원 및 군인이 일을 하다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부양을 받아오던 가족들에게 적용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항일혁명투사, 애국렬사, 피살자, 인민군대 또는 국가기관, 기업소에서 복무하거나 사회보장을 받다가 사망한 일군들의 부양가족들에게 국가사회보장년금의 형태로 많은 방조금을 주고있다”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1339~1340).

특히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우리의 사회주의국가는 근로자들이 근무중에 사망하였을때에는 물론 일시적 또는 항구적인 로동능력상실로 하여 생활보조금이나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기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그의 로동기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유가족년금을 지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백과사전출판사, 2001: 205). 현재 노동세대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현재 비노동세대의 유가족들도 급여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유가족년금에서 유족의 범위를 법령과 사전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령에 기초할 때, 다음과 같이 유가족년금에서 유족의 범위와 지급기간이 있다.

〈표 Ⅲ-16〉 유가족년금에서 유족의 범위: 사회보험법

유가족의 범위	지급기간
1. 만16세 미만의 자녀(직계비속을 포함한다) 형제자매	만16세에 달하는 전일까지(년휼금을 받는 기간 중 불구폐질이 되었을 때는 만16세 이상에 있어서도 불구폐질의 전기간)
2.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직계비속을 포함한다) 형제자매양친(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배우자로서 불구폐질된 자	불구폐질의 전기간
3. 남자 만55세 이상 여자 만 50세 이상의 양친(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처(사실상부부관계에 있는 처를 포함한다)	종신 처가 그 가정을 이탈하거나 재가하였을 때에는 그 전일까지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14세 미만의 자녀자매가 있을 때에 그 보호자	피보험자가 만14세에 달하기 전일까지
5. 피보험자의 이복자 및 이복자의 보호자	출생일부터 만16세에 달하기 전일까지 보호자에게는 피보험자가 만14세에 달하기 전일까지

자료: 사회보험법 제92조

다음으로 1946년 제정된 사회보험법에서의 유가족년금 범위에 대한 조항과 비교할 때, 2001년 출판된 조선대백과사전에서는 몇 가지 변화가 발견된다. 여기에는 연령, 학생유무, 장애정도에 따른 대상기준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년금은 유가족으로서 남자 60살, 여자 55살이상되는 늙은

이와 16살에 이르지 못한 어린이들이 받으며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들과 전문학교 학생들, 로동능력을 잃은 1, 2류의 불구자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받는다"고 설명되어 있다(백과사전출판사, 2001: 205). 또한 재정금융사전에서는 "유가족년금은 유가족가운데서 로동할 나이가 지난 년로자와 16살미만의 어린이(학생은 대학을 끝마칠 때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로동능력을 잃은 불구자와 장기환자, 혁명렬사, 반일애국렬사증을 받은 유가족을 비롯한 지정된 대상들에게 지불된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1340). 이상의 사전에 기초할 때, 유가족년금에서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Ⅲ-17〉 유가족년금에서 유족의 범위: 사전

지급대상	요건	
부양받던 유가족	16세 미만	또는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들과 전문학교 학생들
	남성 60세 이상	또는 불구 1, 2류
	여성 55세 이상	또는 혁명렬사, 반일애국렬사증을 받은 유가족

이상에 따라 유가족년금의 적용대상은 노동자·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혁명투사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의 부양을 받아오던 가족들이며, 유족의 범위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의 가족원과 16세 미만의 가족원,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들과 전문학교 학생들, 로동능력을 잃은 1, 2류의 불구자, 혁명렬사, 반일애국렬사증을 받은 유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2) 급여

사회보험에서는 유가족년금의 급여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법 제93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직무집행상 사망하거나 또는 직무집행의 질병, 부상에 기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속년한을 불문하고 그 유가족 1명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40%, 2명인 경우에는 60%, 3명이상인 경우에는 90%를 사망익일부터 월할계산하여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3조). 경제사전에서도 “유가족년금은 국가예산에 의한 사회보장기금에서 해당 대상별 년금기준액에 따라 달마다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1340).

〈표 Ⅲ-18〉 유가족년금의 급여수준: 업무기인성의 경우

구분	급여수준
유가족 1명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40%
유가족 2명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60%
유가족 3명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90%

자료: 사회보험법 제93조

다음으로 업무불기인성의 경우 최소 근속연한 3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년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그 급여수준은 노동강도 및 유해노동 유무, 근속연한, 유가족 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표 Ⅲ-19〉 유가족일시금의 급여수준: 업무불기인성의 경우

구분	급여수준
제1종	제1종 지하노동 또는 유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모든 직장의 기술자, 모범노동자, 모범사무원 1. 근속연한 10년 미만자 1) 유가족 1명인 경우에는 전(全)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85% 2) 유가족 2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110% 3) 유가족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135%
	2. 근속연한 10년 이상 18년 미만자는 그 기간 9년 이상 만 1년을 증가할 때마다 다음 율을 근속 10년 미만자가 받는 율에 가산한다. 4) 유가족 1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3% 5) 유가족 2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4% 6) 유가족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5%
	3. 근속연한 18년 이상자는 그 기간 10년 이상 만 1년을 증가할 때마다 다음 율을 근속 10년 이상 18년 미만자가 받는 율에 가산한다. 7) 유가족 1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4% 8) 유가족 2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5% 9) 유가족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6%
제2종	제2종 야금, 기계제작, 전기와사, 석탄공업, 광산, 산알카리-공업, 철도, 체신, 수운, 육운, 어로, 토목건축, 조선 외 각 노동자 4. 근속연한 10년 미만자 10) 유가족 1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80% 11) 유가족 2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105% 12) 유가족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130%
	5. 근속연한 10년 이상 18년 미만자는 그 기간 9년 만 이상 만 1년을 증가할 때마다 다음 율을 근속 10년 미만자가 받는 율에 가산한다. 13) 유가족 1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2% 14) 유가족 2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3% 15) 유가족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4%
	6. 근속연한 18년 이상자는 그 기간 17년 이상 만 1년을 증가할 때마다 다음 율을 근속 10년 이상 18년 미만자가 받는 율에 가산한다. 제2종 제2종 이외의 모든 노동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한의 70%
제3종	제3종 모든 직장에 종사하는 사무원은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령의 60%

자료: 사회보험법 제94조

이상의 로동능력상실년금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20〉과 같다.

〈표 Ⅲ-20〉 유가족년금 관련 주요 법령 조항

구분	법령 내용	법령 조항
적용대상	사회보험은 노동자, 사무원(이하 피보험자라 약칭한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급부를 한다. (중략) 8. 부양의 책임을 진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였을 때의 그 유가족에 대한 년휼금	사회보험법 (1946) 제1조 제8항
	※ 사회보험법 제92조는 본문 참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피보험자와 동일한 가족에 속하여 주로 피보험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유가족에게 유가족년휼금을 지급한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2. 피보험자가 해고이후 15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3. 피보험자였든 자로서 의료상 방조를 받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 4. 재판소에서 종신실종자로 판결되었을 때	사회보험법 (1946) 제91조
급여	폐질년휼금의 지급을 받는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이미 지급한 폐질년휼금의 5년분에 상당한 금액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을 폐질일시금으로써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사회보험법 (1946) 제88조
	전조의 유가족이 전조의 일시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구폐질자를 치상케 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일시금을 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회보험법 (1946) 제89조
	피보험자가 직무집행상 사망하거나 또는 직무집행의 질병, 부상에 기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속연한을 불문하고 그 유가족 1명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40% 2명인 경우에는 60% 3명이상인 경우에는 90%를 사망익일부터 월할계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사회보험법 (1946) 제93조
	근속연한 3년 이상의 피보험자가 직무와 관계없는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유가족부양료를 일시금으로서 지급한다. 제1종 지하노동 또는 유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모든 직장의 기술자, 모범노동자, 모범사무원	사회보험법 (1946) 제94조

구분	법령 내용	법령 조항
	1. 근속연한 10년 미만자 1) 유가족 1명인 경우에는 전(全)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85% 2) 유가족 2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110% 3) 유가족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135% 2. 근속연한 10년 이상 18년 미만자는 그 기간 9년 이상 만 1년을 증가할 때마다 다음 율을 근속 10년 미만자가 받는 율에 가산한다. 4) 유가족 1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3% 5) 유가족 2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4% 6) 유가족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5% 3. 근속연한 18년 이상자는 그 기간 10년 이상 만 1년을 증가할 때마다 다음 율을 근속 10년 이상 18년 미만자가 받는 율에 가산한다. 7) 유가족 1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4% 8) 유가족 2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5% 9) 유가족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6% 제2종 야금, 기계제작, 전기와사, 석탄공업, 광산, 산알카리–공업, 철도, 체신, 수운, 육운, 어로, 토목건축, 조선 외 각 노동자 4. 근속연한 10년 미만자 10) 유가족 1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80% 11) 유가족 2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105% 12) 유가족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130% 5. 근속연한 10년 이상 18년 미만자는 그 기간 9년 만 이상 만 1년을 증가할 때마다 다음 율을 근속 10년 미만자가 받는 율에 가산한다. 13) 유가족 1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2% 14) 유가족 2명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3% 15) 유가족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액의 4% 6. 근속연한 18년 이상자는 그 기간 17년 이상 만 1년을 증가할 때마다 다음 율을 근속 10년 이상 18년 미만자가 받는 율에 가산한다. 제2종 제2종 이외의 모든 노동자는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한의 70% 제3종 모든 직장에 종사하는 사무원은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령의 60%	

구분	법령 내용	법령 조항
	양로년휼금의 지급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양로년휼금이 5년분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차액을 양로일시금으로서 그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양로년휼금을 받을 권리발생 이후 그 지급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는 5년분의 양로년휼금을 기 가족에게 양로일시금으로서 지급한다.	사회보험법 (1946) 제105조

주: 괄호 안은 법령의 최근 개정년도

이상의 유가족년금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Ⅲ-21〉과 같다.

〈표 Ⅲ-21〉 유가족년금 제도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내용</th></tr>
<tr><td>적용 대상</td><td colspan="3">노동자 · 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혁명투사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의 부양을 받아오던 가족들이며, 유족의 범위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의 가족원과 16세 미만의 가족원,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들과 전문학교 학생들, 로동능력을 잃은 1, 2류의 불구자, 혁명렬사, 반일애국렬사증을 받은 유가족
<table>
<tr><th>지급대상</th><th colspan="2">요건</th></tr>
<tr><td rowspan="3">부양받던 유가족</td><td>16세 미만</td><td>또는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들과 전문학교 학생들</td></tr>
<tr><td>남성 60세 이상</td><td>또는 불구 1, 2류</td></tr>
<tr><td>여성 55세 이상</td><td>또는 혁명렬사, 반일애국렬사증을 받은 유가족</td></tr>
</table></td></tr>
<tr><td rowspan="2">급여</td><td>급여 종류</td><td colspan="2">유가족년금, 전사자가족 유가족연금, 피살자가족 유가족연금, 유가족일시금</td></tr>
<tr><td>급여 수준</td><td colspan="2">기본특징: 소득비례의 원리(기여기간 반영 및 생활비등급제), 유가족 수에 따른 차등급여, 업무관련성
〈업무기인성 경우: 근속년한 불문, 년금 형태〉
유가족 1명 :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40%
유가족 2명 :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60%
유가족 3명 :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연액의 90%
〈업무불기인성의 경우: 최소 근속년한 3년, 일시금〉</td></tr>
</table>

구분	내용	
		제1종 1. 근속연한 10년 미만자: 전(全)노동경력기간 평균임금연액 기준 유가족 1명 85%, 유가족 2명 110%, 유가족 3명 이상 135% 제2종 1. 근속연한 10년 미만자: 전(全)노동경력기간 평균임금연액 기준 유가족 1명 80%, 유가족 2명 105%, 유가족 3명 이상 130% 제3종 모든 직장에 종사하는 사무원은 전(全)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연령의 60%
재원	통합 사회보험료	
전달체계	통합 전달체계	

라. 공로자년금

1) 적용대상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은 사회보험법을 통해 그 구체적인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공로자년금은 사회보험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없다. 다만 사회보험법 이외의 법령들과 사전들을 통해 공로자에 대한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공로자년금의 적용대상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대상은 조선대백과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공로자년금은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해 지불되는 년금의 한 종류로서 국가규정에 지적된 훈장, 명예칭호, 영예칭호, 표창을 받은 사람들과 인민경제의 중요부문에서 다년간 일하면서 국가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들, 오래동안 군사복무를 한 사람들,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지불된다”(백과사전출판사, 1995: 482). 경제사전에서는 훈장 및 표창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공로자년금대상은 로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워 국가로부터 《김일성훈장》, 《김일성상》을 비롯하여 높은 급의 수훈 및 표창을 받는 공로자들이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360). 재정금융사전에서는 공로자의 장애기준 및 연령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로자사회보장년금은 공로를 세운 일군들이 년로년금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기전에 로동능력을 완전히 잃었거나 남자 60살, 녀자 55살에 이른 사람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았을 때 주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96). 특히 “국가는 채취공업부문, 수산부문, 화학공업부문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던(지정된 직종)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로자사회보장년금대상의 해당 부류에 속하지 못하여도 공로자사회보장년금지불을 통한 혜택을 돌려준다”고 설명함으로써 훈장, 칭호, 표창을 충족하지 못한 예외규정도 인정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96). 이상과 같이 공민이면 누구나 공로자가 될 수 있는데, 주요 공로자년금 수급권자는 훈장·칭호·표창 수여자. 경제발전 기여자, 장기 군복무자, 정부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공로자년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로자가 되어야 하며, 공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로 공훈에 따른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 훈장은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훈을 세운 개인과 집단, 기관, 단체 등에 수여하는 국가표창의 한 형태”이다. 공로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북한의 훈장은 다음과 같다.

〈표 Ⅲ-22〉 북한의 훈장

구분	훈장명	사례	급
1950	공화국영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4회 김정일, 3회 김일성 2회 리을설 외 8명 1회 광명성 과학자 101명 등	국기훈장1급
1951	로력영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2회 리준구 1회 계순희, 장성택 등	국기훈장1급
1972	김일성훈장	4회 김정일, 3회 로동신문 등 2회 오극렬 등, 1회 강반석 등	국기훈장1급

구분	훈장명	사례	급
1972	김일성상	2회 김정일 1회 계순희, 리춘히 등	국기훈장1급
1974	김일성청년영예상		국기훈장1급
1974	김일성소년영예상		국기훈장1급
1993	국제김일성상		국기훈장1급
2012	김정일훈장	김경희 등	국기훈장1급
2012	김정일상	제3차 지하 핵실험 19명 등	국기훈장1급
2012	김정일청년영예상		국기훈장1급
2012	김정일소년영예상		국기훈장1급
1948	국기훈장	※ 국기훈장은 1, 2, 3급 구분	
1951	로력훈장		국기훈장1급
1950	전사영예훈장		국기훈장1급
1950	자유독립훈장		국기훈장1급
1950	이순신장군훈장		국기훈장1급
1973	군사복무영예훈장		
	군수공복무영예훈장		
	철도복무영예훈장		
1973	석탄광업복무영예훈장		
1986	수산복무영예훈장		
1985	친선훈장		
1986	3대혁명붉은기훈장		
1990	조국통일상	김구, 강경대 외	
2013	조국해방전쟁승리60돐기념훈장		
	공로메달		

주: 1) 가장 높은 순위의 훈장명부터 차례대로 나열함
2) 공로메달은 훈장으로 포함되지 않음

영웅칭호, 상, 훈장 중 일부는 국기훈장[9] 1급의 위상을 가짐으로써

9) 국기훈장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과 조국보위사업에 크게 기여한 일군들과 집단, 기관, 단체에 수여한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

공로자년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국기훈장이란 “혁명과 건설에서 공훈을 세운 일군들과 집단, 기관, 단체, 대상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훈장”으로 정의되며, “1948년 10월 12일에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제정되였으며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분류되여있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43).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공로자년금의 적용대상은《김일성훈장》,《김일성상》등 국가규정에 지적된 훈장, 명예칭호, 영예칭호, 표창을 비롯하여 높은 급의 수훈 및 표창을 받은 공로자 중 로동능력을 완전히 잃었거나 남자 60살, 녀자 55살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2) 급여

공로자를 위한 우대조항은 각종 법률과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사회주의헌법 제76조에 따르면,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 제75조에 따르면, “국가는 로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돌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법 제4조 ‘우대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로를 세운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년로자보호법 제5조 ‘공로있는 년로자의 특별보호원칙’에

을 촉진시키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일군, 집단에 수여한다. 우리 나라와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기여한 외국의 벗들에게도 수여한다. 훈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기대, 설비를 비롯한 여러 대상들에도 수여한다. 훈장은 중요 회의나 행사, 명절날에 왼쪽가슴에 단다. 수훈을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따라 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43).

따르면, “국가는 혁명투사와 혁명투쟁공로자, 전쟁로병, 영예군인과 공로자 같은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년로자를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전에서도 공로자 우대급여는 확인된다. 정치사전에 의하면, “로동능력을 상실한 애국렬사유가족, 영예군인, 후방가족 등 사회보장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원호사업은 우리 나라 사회보장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a: 532-533). 재정금융사전에 의하면,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영예군인들에 대한 사회적원호사업은 우리 나라 사회보장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655). 또한 경제사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로동능력상실자들가운데서 국가로부터 높은 급의 표창을 받은 공로자들에 한하여 공로자년금을 적용하며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486).

공로자년금에 대한 구체적 급여는 1956년 2월 3일 공표한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표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남60세, 여55세 이상으로서 로쇠자가 작업할 수 있었던 최근 1개월의 봉급과 내각결정 제32호에 의한 유가족금을 포함하여 그들의 최근 봉급(1개월)액에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할 것, 둘째, 로등능력상실년금은 질병, 손상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로동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그들의 최근 1개월의 봉급에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회복할 때까지 지급할 것, 셋째, 공로자가 공로기간에 있어서 보상년금을 받는 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년금을 계속 지급할 것, 넷째, 공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의 장례금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 그의 유가족들이 년로, 부상, 질병으로 로동력을 상

실 및 사망하였을 시는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액의 반수를 지급할 것, 다섯째, 8.15 전 국내에서 일제에 반대하는 투쟁과 8.15 후 남한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 및 혁명적 투쟁, 민족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군사, 경제, 과학, 문화, 예술 기타 사업에서 공훈을 세운 자 및 가족들은 동 결정에 의하여 공로금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공로자년금 대상자에게는 높은 급의 식량공급과 치료대우도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백과사전출판사, 1995: 482). 또한 "당과 수령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공로자들에게 식량공급, 병치료, 보조금지불 등 특별한 우대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96).

이외에도 "공로자년금대상은 로동과 사회정치생활에서 공훈을 세워 국가로부터 공로수훈 및 표창을 받은 정도에 따라 해당한 높은 비률의 사회보장금이 지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백과사전출판사, 1997: 232). 또한 "공로자사회보장년금은 개별적사람들이 세운 공로에 따라 월생활비의 일정한 비률로 주게 된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96). 결국 급여수준은 공훈 및 표창 수준에 따른 비율의 사회보장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로자사회보장년금을 받던 일군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가족들에게 계속 주게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로자들은 유가족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96). 또한 "국가는 특히 혁명투쟁공로자, 국가의 책임적인 지위에서 사업한 간부들, 전사자, 피살자 유가족들의 년금지정에 각별한 관심을 돌린다"고 함으로써 공로자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급여를 재확인할 수 있다(백과사전출판사, 2001: 205). 또한 "한사람이 두가지이상의 공로자사회보장년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 사회보장년금을 준다"고 함으로써 공로자도 예외없이 중복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96).

이상의 공로자년금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23〉과 같다.

〈표 Ⅲ-23〉 공로자년금 관련 주요 법령 조항

구분	법령 내용	법령 조항
적용대상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사회주의헌법 (2013) 제7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지위는 로동의 성실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에서 모범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 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근로자들은 로력영웅칭호와 명예칭호를 비롯한 국가적표창을 받는다.	사회주의 로동법 (1999) 제24조
	국가는 로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돌린다.	사회주의 로동법 (1999) 제75조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로를 세운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	사회보장법 (2012) 제4조
	국가는 혁명투사와 혁명투쟁공로자, 전쟁로병, 영예군인과 공로자 같은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년로자를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도록 한다.	년로자보호법 (2007) 제54조
급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규정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1) 남60세, 여55에 이상으로서 로쇠자가 작업할 수 있었던 최근 1개월의 봉급과 내각결정 제32호에 의한 유가족금을 포함하여 그들의 최근 봉급(1개월)액에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할 것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 (1946)
	(2)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질병, 손상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로동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그들의 최근 1개월의 봉급에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회복할 때까지 지급할 것	
	(3) 공로자가 공로기간에 있어서 보상년금을 받는 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년금을 계속 지급할 것	
	(4) 공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의 장례금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 그의 유가족들이 년로, 부상, 질병으로 로동력을 상실 및 사망하였을 시는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액의 반수를 지급할 것	

구분	법령 내용	법령 조항
	(5) 8.15 전 국내에서 일제에 반대하는 투쟁과 8.15 후 남한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 및 혁명적 투쟁, 민족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군사, 경제, 과학, 문화, 예술, 기타 사업에서 공훈을 세운 자 및 가족들은 동 결정에 의하여 공로금을 받게 된다.	

주: 괄호 안은 법령의 최근 개정년도

이상의 공로자년금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Ⅲ-24〉와 같다.

〈표 Ⅲ-24〉 공로자년금 제도

구분	내용		
적용대상	《김일성훈장》, 《김일성상》 등 국가규정에 지적된 훈장, 명예칭호, 영예칭호, 표창을 비롯하여 높은 급의 수훈 및 표창을 받은 공로자 중 로동능력을 완전히 잃었거나 남자 60살, 녀자 55살에 이른 사람		
급여	급여 종류	공로자년금, 공로자로동능력상실년금, 공로자유가족년금	
	급여 수준	년금	공로자년금: 공훈 및 표창 수준에 따른 급여 공로자로등능력상실년금: 최근 봉급(1개월)의 100%를 회복시까지 지급 공로자유가족연금: 공로자가 공로기간에 있어서 보상년금을 받는 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년금을 유가족에게 계속 지급
		보조금	공로자유가족일시금: 최근 봉급(1개월)의 100% 공로자장례보조금: 3만원 공로자유가족 로동능력상실보조금 및 장례보조금(공로자의 가족의 로동능력상실 및 사망 시) : 공로자년금의 50%
재원	통합 사회보험료		
전달체계	통합 전달체계		

마. 인체보험

1) 적용대상

북한은 1946년 3월 23일 조선 임시정부 수립을 앞두고 공표한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 제15조에서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생명보험을 실시하며 로동자와 기업소의 보험제를 실시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후 정식으로 채택된 보험법(1995년 채택, 2008년 수정보충) 제29조에 의하면, "인체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민사상행위무능력자를 인체보험에 들일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불상사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등이 있다(동법 제3조). 인체보험의 근거가 되는 보험법은 "국가의 시책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즉 인체보험은 국가의 시책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며, 임의가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경제사전에서도 확인되는데 "보험은 또한 보험에 참가하는 형태에 따라 의무적보험과 자원적보험으로 나눈다. 의무적보험은 국가법령에 기초하여 일정한 보험대상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보험이며 자원적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보험이다"고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13).

인체보험은 장기저축 및 반환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경제사전에서는 "인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공민이 사망하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보험보상금을 지불해주는 형태이다. 인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의 전부를 지불해주는것만큼 그것은 장기저축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205). 또한 "인체보험은 만기가 되면 불상사고가 생기지 않아도 보험금을 지불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체보험이 근로자들의 장기저금의 한 형태로서 그들의 생활향상에 복무한다"고 설명함으로써 보험사고 미발생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14). 그리고 재정금융사전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재확인되는데, "인체보험의 중요한 특징은 첫째로, 그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라는데 있다. 둘째로, 그것이 장기저축의 기능을 수행하며 반환적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셋째로, 그것이 재산보험에서와 같이 보험의 크기가 보험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미친 재난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1392).

보험법 제30조에 의하면, "인체보험은 개별적으로 들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즉 개인선택으로 혹은 소속근로기관 및 단체에서 집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체보험의 기본특징은 임의가입, 적립방식 재정운영, 장기저축 및 반환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인체보험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공민 중 보험가입자이며, 가입방식은 개인가입 또는 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를 통한 집단가입 방식이 있다.

2) 급여

먼저 보험금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험법 제2조의 제9항에 의하면 "보험금이란 인체보험에서 보험기간이 만기되었거나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하는 자금"으로 정의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담보한 위험이 현실"(동법 제2조 제3항)화된 보험사고의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기간이 만기되었을 때도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에 대한 용어는 재정금융사전에서도 확인되는데 보험금은 "인체보험에 든 사람에게 보험기간이 만기되였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관이 지불하는 돈"으로 정의되며,

“보험금은 인체보험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561). 따라서 인체보험은 은퇴를 앞두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일종의 민간연금으로서 만기환급일시금을 기대할 수 있어 노후소득보장의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인체보험의 수급권은 “만기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에 예견된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조건에서 지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483).

인체보험의 급여종류는 다음과 같다. 동법 제35조에 의하면 “인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불한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과실로 일어났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동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험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나 다른 보험수익자가 없을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 또는 포기하였으나 다른 보험수익자가 없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재정금융사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은 그 지불책임범위와 내용에 따라 만기보험금, 로동능력상실보험금, 사망보험금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483). 다만 북한에서는 “만기보험을 따로 조직하지 않고 사망보험과 만기보험을 포괄한 혼합형태의 인체보험을 조직하고 있다”고 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483).

인체보험의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급여수준은 법령에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을 통해 급여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보험가격은 “보험대상의 가격, 다시말하여 피보험리익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인데,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기관과 피보험자 사이에 보험가격을 미리 합의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확정되지 않은채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13). 여기에서 만기보험금의 액수에 대한 구체적 예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례하면 보험가입자가 3년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보험금액 100원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기간이 만기가 되어 보험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만기보험금 100원은 본인이 매 분기 8원씩 12번에 걸쳐 납부한 보험료 96원과 그에 해당한 리자 4원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483). 이렇게 “만기보험에서 리자가 적용되는것은 인체보험이나 생명보험이 장기저축의 기능을 수행하기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95: 483). 다음으로 경제사전에 의하면 로동능력상실보험금의 급여수준은 “로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상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691-692).

3) 재원

인체보험의 재원을 이해하기 위하여 보험료와 보험회사에 대한 북한의 정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보험료는 “보험에 든 사람 또는 기관, 기업소가 보험기관에 정기적으로 내는 돈”으로서, “보험종류에 따라 재산보험료와 인체보험료로 나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13). 북한은 사회보험법에 의거한 강제가입의 ‘사회보험료’라는 용어와 보험법에 의거한 임의가입의 ‘보험료’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받아 자금을 조성하며 보험참가자에게서 발생된 사고손실을 보험금의 형태로 보상”하는 것을 기본업무로 삼고 있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14). 그러나 보험회사는 중앙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은데 “우리 나라에서는 보험회사를 따로 조직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보험업무를 담당수행하며 대외보험거래는

조선국제보험회사가 담당수행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14)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와 보험회사' 용어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인체보험의 재정을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인체보험 계약 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보험법 제15조),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 번에 납부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동법 제16조). 보험회사는 여러 피보험자들부터 받은 보험료를 만기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정해진 최저보상지불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보험담보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보험담보금의 적립규모와 방법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동법 제63조).

특히 현재 노동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전액 또는 일부 면제된다. "인체보험에서도 특전이 적용되고있다. 로동능력을 완전히 잃은 계약자에게는 앞으로 물어야 할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며 로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잃은 계약자에게는 로동능력상실정도에 따라 앞으로 물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면제해준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14). 또한 "인체보험에 든 사람이 사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간에 보험료를 물지 않아도 보험효력이 계속된다"고 규정함으로써(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14), 로동능력상실년금의 보험효력은 계속되며,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전액 또는 일부 면제된다.

4) 전달체계

인체보험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평등한 지위(보험법 제9조)에서 맺고 이행한다. 보험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공화국령역안에서 보험업무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가" 맡는다. 보험대리인이 있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 보험계약을 맺도록 할 수 있고(동법 제66조), 보

험중개인이 있어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중개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동법 제67조). 동법 제65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결산년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으로 업무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보험지도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건전성을 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인체보험과 관련된 주요 법령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25〉와 같다.

〈표 Ⅲ-25〉 인체보험 관련 주요 법령 조항

구분	법령 내용	법령 조항
적용대상	인체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민사상행위무능력자를 인체보험에 들일 수 없다.	보험법(2008) 제29조
	이 법은 국가의 시책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법(2008) 제8조
	인체보험은 개별적으로 들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를 단위로 들 수도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납부와 보험금청구권 같은 보험계약상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보험법(2008) 제30조
급여	인체보험에서 보험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보험법(2008) 제32조
	인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불한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과실로 일어났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불한다.	보험법(2008) 제35조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2.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나 다른 보험수익자가 없을 경우, 3.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 또는 포기하였으나 다른 보험수익자가 없을 경우	보험법(2008) 제37조
재원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보험자는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보험법(2008) 제15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지적된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번에 납부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다.	보험법(2008) 제16조
	보험회사는 정해진 최저보상지불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보험담보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보험법(2008) 제63조

구분	법령 내용	법령 조항
전달체계	보험계약은 보험활동의 기초이다. 보험당사자들은 평등한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맺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보험법(2008) 제9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맺을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명부를 갖추고 보험대리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인은 보험회사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에서 대리업무를 하며 그 정형을 문건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가 진다.	보험법(2008) 제66조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중개업무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인이 한다. 보험중개인은 과실로 보험계약자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며 중개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험법(2008) 제67조

주: 괄호 안은 법령의 최근 개정년도

이상의 인체보험에 대한 기본특징, 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Ⅲ-26〉과 같다.

〈표 Ⅲ-26〉 인체보험 제도

구분	내용		
기본특징	임의가입, 적립방식, 장기저축 및 반환적 성격		
적용대상	보험가입자(공민이면 누구나 가능) : 개인가입 또는 집단가입(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		
급여	급여종류	만기 · 사망보험금, 로동능력상실보험금(모두 일시금)	
	급여수준	만기 · 사망보험금	보험금 전액 + 이자 4%
		로동능력상실보험금	상실정도에 따라 계약된 보험금
재원	보험료		중앙보험기관이 정한 적립규모와 방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분기별 보험료 납부 ex) 보험가입자가 3년 보험기간에 100원을 약정한 경우: 분기별 8원 × 12분기 납부 (만기보험금 = 보험료 96원 + 이자 4원)
	보험료 면제	전액면제	로동능력 완전상실한 계약자
		일부면제	로동능력 부분상실한 계약자 로동능력상실정도에 따라 추후 보험료의 일부 면제

구분	내용
전달 체계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결산년도 종료 3개월 내 업무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중앙보험지도기관 및 해당 재정기관에 제출 보험대리인 및 보험중개인 가능

바. 노년기 근로활동

먼저 북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기준을 이해하고자 한다. 년로자보호법에서는 "년로자는 남녀 60살이상의 공민이다.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60살, 여자 55살이상의 공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동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노년기 근로활동 또는 고령자 고용에 관한 독립된 법령은 없다. 다만 년로자보호법 제30조에 의하면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앞선 세대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경험, 민족문화와 풍습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며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며,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년로자의 사회활동이란 "강연, 담화, 강의, 전습, 번역, 창작, 예술활동, 공원 및 유원지 관리, 공중질서유지" 등을 가리킨다(동법 제31조).

북한은 년로자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보장할 것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노인시설에 요청하고 있다. "지방정권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은 년로자의 나이, 건강상태, 지식정도 같은 것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동법 제32조)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분야에서 일하여 정년을 맞이한 노동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노년기에도 계속 근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식있고 능력있는 년로자가 계속 근무하려 할 경우 필요에 따라 알맞는 직종에서 일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년로자의

사업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동법 제33조). 즉 년로자보호법에서는 노년기의 근로 등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년기 근로소득과 사회보장년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만하다. 사회보험법 제104조에 따르면 "양로년휼금을 받는 자가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양로년휼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02조에도 "양로년휼금을 받을 조건구비후의 노동은 노동경력기간에 통산하여 이에 해당하는 비율의 양로년휼금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즉 생활비와 년금을 병급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노년기 근로활동 관련된 주요 법령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Ⅲ-27〉과 같다.

〈표 Ⅲ-27〉 노년기 근로활동 관련 주요 법령 조항

구분	법령 내용	법령 조항
노년기 근로활동	년로자가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앞선 세대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경험, 민족문화와 풍습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며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년로자보호법 (2012) 제30조
	년로자는 강연, 담화, 강의, 전습, 번역, 창작, 예술활동, 공원 및 유원지 관리, 공중질서유지 같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년로자보호법 (2012) 제31조
	지방정권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은 년로자의 나이, 건강상태, 지식정도 같은 것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년로자보호법 (2012) 제32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식있고 능력있는 년로자가 계속 근무하려 할 경우 필요에 따라 알맞는 직종에서 일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년로자의 사업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년로자보호법 (2012) 제33조
병급	양로년휼금을 받는 자가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양로년휼금을 지급한다.	사회보험법 (1946) 제104조

주: 괄호 안은 법령의 최근 개정년도

이상의 노년기 근로활동에 대한 기본특징, 적용대상, 급여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Ⅲ-28〉과 같다.

〈표 Ⅲ-28〉 노년기 근로활동 제도

구분	내용	
기본 특징	주요 사회참여활동	강연, 담화, 강의, 전습, 번역, 창작, 예술활동, 공원 및 유원지 관리, 공중질서유지 같은 사회활동
	지방정부 및 년로자보호기관의 역할	년로자의 나이, 건강상태, 지식정도 같은 것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
적용 대상	년로자는 남녀 60세 이상의 공민 노동연한 충족 또는 현재 근로 중인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공민 포함	
급여	각 근로활동에 따른 생활비 지급 생활비와 년금의 병급 수급 가능	

5. 남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비교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법령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북한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단층이 아니라 다층이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1층의 제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층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지 못했는데, 인체보험과 노년기 근로활동을 고려한다면 다층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총 3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층으로서 사회보장년금(년로년금, 3층으로서 인체보험, 4층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다. 본 연구는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0층 역할의 배급제(식량공급제)는 제외하였고, 퇴직연금 또는 강제적 사적연금의 역할을 하는 연금제도가 부재하므로 2층 제도는 부재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제도를 넘어 현실에서도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실태는 제Ⅳ장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구체화하고자 한다.

〈그림 Ⅲ-3〉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주 1) 소득보장이므로 0층 역할의 배급제(식량공급제)는 제외함
주 2) 퇴직연금 또는 강제적 사적연금의 역할을 하는 제도가 부재하므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시각적 비교의 편의상 북한의 2층 제도를 공란으로 둠

남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남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비교와 공적연금 제도 비교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남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비교이다. 남한은 총 5개의 층으로 구성되는데 0층으로서 기초연금, 1층으로서 국민연금(노령연금), 2층으로서 퇴직연금, 3층으로서 개인연금, 4층으로서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총 3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층으로서 사회보장년금(년로년금), 3층으로서 인체보험, 4층으로서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층별로 남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은 0층의 기초연금제도가 있으나 북한은 0층의 제도가 부재하다.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최저소득보장 또는 기초보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연금제도가 있으나, 북한은 남한의 기초연금에 대한 기능적 등가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한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빈곤과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다. 프로파간다를 논외로 한다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은 의무이므로 빈곤과 실업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한 가구 안에 최소 한 명 이상의 로력자가 있어야 하며 다른 가족구성원들은 로력자를 통해 배급제 등의 사회권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제도상으로는 최저생활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공급제를 제도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0층의 역할을 일정하게 수행하는 배급제(식량공급제)가 있기 때문에 0층의 현금형 복지제도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한은 1층에 국민연금이 있으며 북한은 1층에 사회보장년금이 있다. 남한의 국민연금에는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급여인 노령연금과 함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급여가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년금에는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급여인 년로년금과 함께, 로동능력상실년금과 유가족년금이 있다. 남한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노령연금이라면 그에 대응하는 제도는 바로 북한의 년로년금이다.

셋째, 남한은 2층에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나 북한은 2층의 제도가 부재하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가 재원을 마련하여 금융회사에 적립하면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투자에 기반하여 운용하며, 이후 근로자의 퇴직 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대상인 시장의 부재와 국유기업의 이윤은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으로 납부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북한이탈주민 중 군제대 또는 퇴직시 임금의 일정 비율을 퇴직일시금의 형태로 받았다는 진술이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남한에서 존재하는 2층의 퇴직연금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넷째, 남한은 3층에 개인연금이 있으며 북한은 3층에 인체보험이 있다. 남한의 개인연금은 임의가입 제도로서 추가적인 소득보장을 원하는 가입자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사적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

체보험은 임의가입 제도로서 장기저축의 성격을 갖는 만기환급 일시금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이 연금 형태가 아니며 일정 기간 동안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되돌려주는 저축성격의 일시금이라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인체보험이 남한의 개인연금과 완전히 일치하는 기능적 등가물은 아니다. 다만 북한에도 근로자가 퇴직 시 노후소득보장의 원천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만기저축상품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남한의 개인연금에 대응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인체보험은 남한의 개연연금 중 일반연금보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여부(세제적격, 비세제적격)에 따라 구분되는데, 북한의 인체보험이 소득공제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세제적 개인연금인 일반연금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남북한 모두 4층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다. 남한은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및 낮은 기초연금 급여수준으로 인하여 공적 영역에서 적정한 급여를 보장받기 어렵다. 북한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는 약화되었다. 남한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통해 노년기 근로활동 강화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년로자보호법을 통해 노년기 근로활동 보장에 대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지방정권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법적으로나 현실에서 노년기 근로소득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주요 소득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Ⅲ-4〉 남북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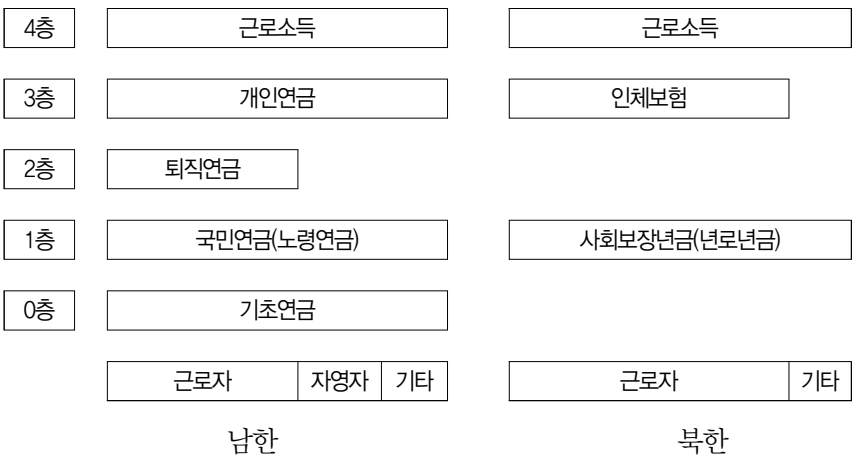

다음으로 남북한 공적연금제도 비교이다. 이 비교에서는 급여종류를 기준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남한의 제도가 급여의 종류, 즉 포괄성(comprehensiveness)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사회보장년금을 기준으로 그에 대응하는 남한의 제도를 열거하고자 한다. 다만 북한에서는 해당 제도가 없으나 남한의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공적연금 비교 차원에서 중요하므로 비교표에 삽입하였다.

먼저 최저생활보장 또는 빈곤예방 목적의 기초보장형 공적연금의 경우 남한은 기초연금, 북한은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비례 또는 기여에 따른 사회보험형 공적연금의 경우 일반국민 대상의 연금과 특수계층 대상의 연금으로 구분된다. 일반국민 대상의 경우 북한의 년로년금은 남한의 노령연금에 대응된다. 북한의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총 4개로 구분되는데, 북한의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은 남한의 산재보험의 장해보상연금에, 북한의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은 남한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 북한의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은 남한의 상이군경 보훈급여에 대응된다. 북한의 유가족년금은 남한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에, 북한의 전

사자가족 유가족년금과 피살자가족 유가족년금은 남한의 군경유족 보훈급여에 대응된다. 북한의 공로자년금은 남한의 보훈급여에 대응되며, 북한의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은 남한의 독립유공자 보훈급여에 대응된다. 남한의 경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위한 연금제도가 별도로 운영되지만 북한의 경우 해당 직업군을 위한 연금제도가 특화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각 급여들이 사회보장년금이라는 하나의 제도로 통합되어 명명되고 있으나, 남한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보훈급여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표 Ⅲ-29〉 남북한 공적연금제도 비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북한</th><th>남한</th></tr>
<tr><td>기초보장</td><td colspan="3">없음</td><td>기초연금</td></tr>
<tr><td rowspan="12">사회보험</td><td rowspan="9">사회보장년금</td><td colspan="2">년로년금</td><td>국민연금의 노령연금</td></tr>
<tr><td rowspan="3">로동능력상실년금</td><td>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td><td>산재보험의 장해보상연금</td></tr>
<tr><td>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td><td>국민연금의 장애연금</td></tr>
<tr><td>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td><td>상이군경 보훈급여</td></tr>
<tr><td rowspan="3">유가족년금</td><td>유가족년금</td><td>국민연금의 유족연금</td></tr>
<tr><td>전사자가족 유가족년금</td><td>군경유족 보훈급여</td></tr>
<tr><td>피살자가족 유가족년금</td><td>군경유족 보훈급여</td></tr>
<tr><td colspan="2">공로자년금</td><td>보훈급여</td></tr>
<tr><td colspan="2">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td><td>독립유공자 보훈급여</td></tr>
<tr><td colspan="3">없음</td><td>공무원연금</td></tr>
<tr><td colspan="3">없음</td><td>군인연금</td></tr>
<tr><td colspan="3">없음</td><td>사립학교교직원연금</td></tr>
</table>

남북한 공적연금 적용규모(가입규모 및 수급규모)를 탐색적으로 비교하고자 남북한 각각 가장 최근의 자료인 북한의 2008년 인구일제조사와 남한의 2016년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였다. 북한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70.2%, 남한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63.3%이다. 비경제활동

인구의 구성을 보면, 북한의 경우 학생 5.4%, 가사 5.3%, 기타 0.1%, 년로보장 18.1%, 로동능력상실 0.9%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을 북한의 5개 분류와 대응할 때, 남한의 경우 통학(학생) 13.2%, 육아와 가사(가사) 16.3%, 그 외(기타) 5.1%, 연로(년로보장) 5.0%, 심신장애(로동능력상실) 1.1%이다. 남한은 학생과 가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북한은 년로보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남북한 공적연금 적용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북한의 이론적 적용규모와 남한의 실질적 적용규모를 파악하였다. 북한은 제도에 모두 포괄되어 있다는 최대가정에 기초하였고, 남한은 실태에 기초한 현실반영 수치이다. 북한의 최대가정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모두 사회보장년금 가입자이며, 비경제활동인구의 년로보장은 모두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은 모두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수급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에 최대가정을 적용한 이유는 해당 가정 이외에 가입규모 및 수급규모 도출을 위한 대안은 없기 때문이며, 해당 비교는 탐색적 비교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남북한 공적연금 가입률 비교이다. 북한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가입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70.2%이며, 남한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52.5%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공적연금 수급률 비교이다. 북한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년로보장자와 로동능력상실자 모두 년로년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을 각각 수급한다는 가정 하에 90.9%이며, 남한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39.4%(국민연금 수급률 34.8% + 공무원연금 수급률 3.4% + 사학연금 수급률 0.5% + 군인연금 수급률 0.7%) 또는 66.4%(기초연금 수급률)이다. 한편 북한의 9.1%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비적용 비율은 가사로 인하여 년로년금 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인구라고 추정할 수 있다.

남북한 공적연금 수급률을 이해할 때, 유의할 점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의 공적연금 수급률 90.9%라는 수치는 북한의 공적연금제도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즉 최대가정인 북한의 공적연금 수급률 90.9%는 남한의 실질 공적연금 수급률인 39.4%와 기초연금 수급률 66.4%에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지만, 이론적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둘째, 분모의 차이이다. 북한의 경우 년로년금 수급연령인 남성 60세 이상과 여성 55세 이상 인구수에 대비하여 수급률을 산정한 결과이며, 남한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수에 대비하여 수급률을 산정한 결과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Ⅲ-30〉 남북한 공적연금 적용규모 비교: 북한의 이론적 적용규모와 남한의 실질적 적용규모

(단위: 천명, %)

구분		북한	남한	
총인구[1)2)]		17,367(100)	43,488(100)	
경제활동인구[1)2)]		12,184(70.2)	27,516(63.3)	
비경제활동인구 3)4)	학생	941(5.4)	5,744(13.2)	
	가사	921(5.3)	7,088(16.3)	
	기타	17(0.1)	2,198(5.1)	
	년로보장	3,148(18.1)	2,169(5.0)	
	로동능력상실	155(0.9)	460(1.1)	
공적연금 가입규모[5)6)]	사회보장년금	12,184(70.2)	22,812(52.5%)	
공적연금 수급규모[7)8)]	년로년금	3,148	노령연금[9)]	3,151
			유족연금[10)]	617
			특수직역연금[11)]	572
			기초연금[12)]	4,495
	로동능력 상실년금	155	장애인연금[13)]	329
			장애연금[14)]	76
공적연금 수급률	사회보장년금	90.9%[15)]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16)]	39.4%
			기초연금[17)]	66.4%

주 : 1) 북한의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인구는 16세 이상 인구 수 기준임(북한 인구일제조사, 2008년 기준)

2) 남한의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수 기준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9월 기준)
3) 북한의 공적연금 적용인구 산정 시 비경제활동인구의 년로보장은 모두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은 모두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함(북한 인구일제조사, 2008년 기준)
4) 남한의 비경제활동인구 분류는 북한 기준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학은 학생, 육아와 가사는 가사, 연로는 년로보장, 심신장애는 로동능력상실, 그외는 기타로 구분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9월 기준)
5) 북한의 공적연금 가입인구는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가입되어 있다는 가정임(북한 인구일제조사, 2008년 기준)
6) 남한의 공적연금 가입인구는 국민연금 가입인구 21,349천명(보험료 납부자 15,745천명, 납부예외자 4,512천명, 장기체납자 1,093천명), 특수직역연금 가입인구 1,463천명(공무원연금 1,093천명, 사학연금 282천명, 군인연금 87천명, 다만 군인연금은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수급자 수로 대신함)을 합한 수치임(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15년 12월 기준; 공무원연금통계집, 2015년 12월 기준; 사학연금 교직원 및 퇴직자 현황, 2015년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군인연금기금 재정규모 및 수급자, 2015년 12월 기준), 남한 공적연금 가입률 52.46% = 공적연금 가입인구 22,812천명 / 총인구 43,488천명 × 100
7) 북한의 공적연금 수급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년로보장과 로동능력상실 인구가 모두 년로년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을 각각 수급한다는 가정임(북한 인구일제조사, 2008년 기준)
8) 남한의 공적연금 수급인구에는 중복수급자가 있으므로 과대 추정됨
9) 남한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3,151천명임(국민연금통계연보, 2015년 기준)
10) 남한의 유족연금 수급자는 617천명임(국민연금통계연보, 2015년 기준)
11) 남한의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572천명임(공무원연금 426천명, 사학연금 59천명, 군인연금 87천명을 합산함)(공무원연금통계집, 2015년 12월 기준; 사학연금 교직원 및 퇴직자 현황, 2015년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군인연금기금 재정규모 및 수급자, 2015년 12월 기준)
12) 남한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4,495천명임(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2015년 기준)
13) 남한의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29천명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15년 기준)
14) 남한의 장애연금 수급자는 76천명임(국민연금통계연보, 2015년 기준), 남한의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 수치는 제시되었으나, 남한의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수가 제외되어 있음
15) 북한의 공적연금 수급률 90.9%는 년로년금 수급자와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자를 합산한 수치를 남성 60세 이상 인구 1,188,241명과 여성 55세 이상 인구 2,445,752명을 합산한 수치로 나눈 비율임(북한 인구일제조사, 2008년 기준)
16) 남한의 공적연금 수급률 39.4%는 각 연금수급자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비율로서, 국민연금 수급률 34.8%, 공무원연금 수급률 3.4%, 사학연금 수급률 0.5%, 군인연금 수급률 0.7%를 합산한 수치임(재정통계, 2014년 기준)
17) 남한의 공적연금 수급률 66.4%는 기초연금 수급률임(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2015년 기준)

Ⅳ.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실태 및 정합성

1. 년로년금

가. 적용대상

1) 노동자 · 사무원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압박이 배어 있기 때문에 놀아야 된다는 개념이 더 많지 않아요. (중략) 옛날에는 우리는 노는 사람이 있을 수 없었어요.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북한은 로동이 의무에요. 여기처럼 직장 안 다니고 논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북한은 일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처럼 자본주의와 다르거든, 북한은. (남/45세/청진/군인/2011년 탈북)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은 의무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노동자 또는 사무원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년로년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일 안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년금이라는 것은 그 원천자체가 내가 사회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많은 걸 보상해주고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공로라기보다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일을 안 한 주부들은 이것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주부의 경우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년로년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이 있다.

어민은 개별적인 어민이라는 게 없거든요. 수산사업소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로동자로 취급하거든요.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어민들은 당연히 받죠. 직장인들인데. (중략) 수산사업소죠.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어민들이야 다 로동자 대우 받죠. (여/78세/청진/중등교원/2005년 탈북)

어민은 수산사업소 소속의 일반노동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농민

맨 처음에 농민은 (년로보장) 안 탔습니다. 처음에는 못 탔습니다. 한 83년? 그때 탔는가? 80년도 지나서 농촌에 가서 할머니들은. 우리 식당원들은 이 채소 가지러 농촌에 많이 드나들죠. 그러니깐 우리도 그런 거 국가 년로보장비를 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해당되냐니깐 우리 농민들도 해당된다고 그러던 게 아마 (쌀) 미공급이 8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국가배급이 없는 미공급이. 그런데 그 전에 나가니깐 자기네들도 년로보장 그거 받는다고 하던데.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저희 옆집 할머님이 농장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받으셨어요. (중략) 그 때(=1980년대)는 돈이 있으니까 국가 재정에 돈이 있을 때는 년로보장 나이 되신 분들이 돈을 받았어요. (여/42세/무산/농장원/2007년 탈북)

인터뷰에 따르면 농민은 80년대 이후 년로년금의 대상자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85년 10월 4일 공표된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 이후 년로년금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민들도 년금 줍니다. (중략) 농민도 공로자 있고 그러면 공로에 따라서 직장과 똑같습니다.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농민들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공훈에 따라 년로년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진술이다.

(그럼 그때 할머니도 연금을 받으셨겠죠?) 아니요. 할머니는 농장 농민이었어요.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농민들은 년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농민들은 년로보장비가 없어요.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농민들은 연금은 없네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농민은 년로보장금이 없는 것 같던데요. (중략) 분배를 받았는데... (중략) 년로보장이라는 그런 게 없고, 이 사람들은 분배를 주는 거예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위의 진술들은 농민이 년로년금의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내용들이다. 년로년금을 수급했다는 대상자와 수급하지 못했다는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계획'의 작동여부에 따라 농촌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소가입기간) 15년 이상부터. 그 다음에 북한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그것도 조사했겠죠. 농민들도 주는 거. 농민들은 원래 년로보장금이 없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농민들에 한해서도 언제부터인가 80년대... 그 조사해보면 나올 거예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농민들도 일정한 근로연한을 충족해야만 년로년금의 수급자격이 될 수 있다는 진술이 있다.

그 기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외지에서 시집을 온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을 따지면 이 사람들은 년로보장을 못 받죠. (중략) 내가 농장 일을 30년 하나, 20년 하나, 10년 하나 그것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내가 내 나이 때까지 농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면 돼요. (여/42세/무산/농장원/2007년 탈북)

그러면 그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어쨌든 공장에서 일하다가 왔으니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3년 일했다고 안 주고, 이런 거는 계산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 나이대. 농사지을 수 있는 나이대까지만. 여자 45, 남자 55. 그 때까지 일을 하면 연로보장 받더라니까요? (여/42세/무산/농장원/2007년 탈북)

농민들에게는 별도의 근로연한이 없고 노동자에서 농민이 되었을 때 가입기간 합산이 없다는 진술이다. 농민의 근로연한 충족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한편 농민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연금수급연령까지 농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진술이 있다.

3) 군인

(군인연금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군인연금이라는 건 못 들어봤어요. (남/45세/양덕/군인/2007년 탈북)

(군인들이 군인연금을 일반노동자와 다르게 61세가 되면 일반노동자는 그냥 연로자연금을 받고 군인들은 군인연금을 받나요?) 없어요. (남/45세/양덕/군인/2007년 탈북)

(군인들은 제대하면 여기 남한 같은 경우는 제대하면 연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을 위한 연금제도가 따로 있다고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군인들은 위한 연금제도가 없는데. 없습니다.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군인들을 위한 연금제도가 남한처럼 있을까요?) 없어요. (남한은) 10년만 군사 복

무를 하면 한 달에 150만원씩 나오더라고요, 군인연금으로. 북한이 그렇다면 내가 왜 여기를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런 제도가 있다면 왜 오겠어요? 안 오지. (군인들을 위한 연금제도는 없다?) 없어요. 상상도 못해요. 피를 흘려서 산 사람들도 국가적으로 몇 명 안 되는 사람도 2,000원 주는데, 그것도 술 한 병 값인데. (남/42세/혜산/군인/2015년 탈북)

위 진술은 북한군 출신인 인터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군인연금의 존재여부에 대해 질문했을 때의 응답내용이다. 진술 모두 군인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여러 진술에 따르면 제대 군인은 군인들만의 특별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 년로년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군인도 내가 제대되잖아요. 고급군관 아닌 이상 다 똑같아요, 다. 노동연한으로 쳐요. 나 군인이라서 특수성 없어요. (중략) (군인으로 한 10년간 일한 것도 노동연한으로?) 네. 노동연한으로 된다고요. 다. (남/45세/양덕/군인/2007년 탈북)

위 진술은 군인이라고 하여 특별한 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군복무기간은 일반 근로자의 근속연한으로 산입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분들이 군인으로 한 10년, 선생님은 14년 복무하셨고, 사회에서 30년 이상 60세까지 계속 일을 하면 이것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받는 것이 군인연금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일반 연금이라고 생각하지요. (중략) 어차피 제대되니까. 군대에서 전역을 하니까. (중략) 사회에서 받지요. 군대에서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특수한 조건. 특별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들이 특별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것처럼. 그런 특수한 조건이 아닌 이상은 나머지는 다. 복무하다가 전역하면 민간인이니까. 그리고 북한 법에 군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거든요. 북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신분은 군인이지만 사실 북한의 공민이거든요. 민간인이거든요. 군대에 자원해서 나갔다뿐이지. 대한민국 군인들도 전역하면 민간인이에요. 똑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각 도 지역에서 마지막에 전역하고 오면 지급을 해주는, 이 사람의 연한에 따라서.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군인들은, 당 간부들은, 국가안전보위부는 일반노동자와 다르게 연금을 받나요?) 군관들은 우리하고 사회보장이 같아요. (남/77세/평양/대학교원/2007년 탈북)

위 진술에 따르면 북한에서 군인뿐만 아니라 당 간부, 경찰, 국가안전보위원들도 별도의 특수직역연금제도가 없이 년로년금 대상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군인들도 제대를 하면 일반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군관들은 60세 되어서 군 고위급 간부되는 거 제외하고는 60세 이전에 다 제대시키거든요. 그리고 한 40대 그런 분들이 군관 제대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여덟 살부터 군대나가면 거기서 한 이십년 어치 일했으니까 사회 나와서 제대 군관들은 배려했거든요. 직업을 군 당에서 배치해요, 이 사람들은. 대개 리사무소나 동사무소 직원들로 배치하거든요. 지도원이라든가, 사무장이라든가, 당 비서로 넣어주든가 다 배치하고. 기업소가도 지도원 급으로 다 해주거든요. 연한되면 년로보장금 주는 거 제대군관들은 배급 600에 돈 60원 딱 규정되어 있는 대로 주죠. (중복) 50세 넘어 제대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 관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정도만 얘기를 하면, 다 40대에 제대가 되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군인은 내가 60세 전에 거의 다 전역 시키죠. 근데 보안서나 보위부 같은 애들은 60세까지 딱. 환갑이 되어야 얘네는 전역되는 거예요. 그게 좀 군인하고 다른 거죠. 그만큼 걔네는 연한은 다 채우고 나오는 거예요. 보위원 생활 대체로 30대 이상부터 했다고 보면 제일 오래한 사람이 25년 이상 하고 나온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걔네는 년금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안 훈장도 많이 탔을 거고. 세운 공로가 있으면 훈장 타잖아요. 군대도 같은 거죠. 내가 그 기간에 훈련이나 이런 데서 잘 했으면 당연히 국가로부터 나는 훈장을 받는 거예요. 표창을. (남/45세/청진/군인/2011년 탈북)

(대부분 장교들은 몇 세에 제대하나요?) 다 각이해요. 너 장교니깐 몇 세까지 근무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깐 몸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또 스트레스 받아서 열 받아서 제대하겠다. 뭐 어떤 저도 목격을 많이 한 건 있어요. 어떤 중대장이 내가 제대를 해야 되겠는데 제대를 안 시켜요. 군대는 이유 없이 제대

시킬 이유가 없어요. 아파? 안 해요. 다리 꺾였어? 그럼 나을 때까지 기다려요. 제대를 절대로 안 시켜요. 그런데 이분이 제대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6개월인가 3개월 동안 부대 출근도 안했어요. 아프다고. 그냥 병원만 다녔지 부대도 안 갔어요. 그러니깐 부대가 뭐라고 하겠어. 목적은 뻔하잖아. 이유는 오직 하나 제대되는 것 밖에 없어요. 몸이 약하다는 거죠. 그것만 벗어나면 공도 얼마나 잘 차는지 몰라요. 5개월이니깐 제대시키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비밀을 모르니깐. (그러면 60세 전에 제대하셨다?) 그런데 그 분이 37살 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면 다시 취업을?) 다시 해야죠. 사회 나가서. 그러니깐 연결되는 거예요. (남/45세/양덕/군인/2007년 탈북)

아무리 높은 계급이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은 60세 이전인 은퇴수급연령 전에 제대하며 공로자가 아니라면 년로년금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직업군인들은 40대에 제대하고 취업한다는 진술도 볼 수 있다. 은퇴 연령 이전에 대부분 제대한 군인은 바로 일반 사회에서 취업하여 근로자로 생활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군복무기간 통산 후 근속연한을 따져 년로년금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60세의 연금수급연령까지 복무하는 군인이 거의 없이 대부분 중도에 제대를 하며, 제대를 하는 순간 일반 사회의 공민으로서 곧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 후 취업함과 동시에 일반 근로자가 되므로, 군복무 기간과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을 하나의 근로연한으로 통산함으로써 제대군인 역시 년로년금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훈장을 군인들도 받는 거죠?) 받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로자들이 받는 대우를 받습니까?) 대우를 받죠. 공로자도 다를 수 있어요. 거기까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훈장 받더라도 장성급 소령급은 국기훈장 1급 받기는 힘들어요. 2급, 3급은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봤자 1급 대신할 지는... 제가 그때는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저도 2급은 있어요, 2급은 있는데. 2급에 3개에다가 3급이 다섯 개였나? 그게 1급을 대신해요, 그만큼. 그런데 인정은 안 해줘요. (그러면 훈장을 하나도 못 받고 군인으로 제대하면 군인 연금을 받습니까?) 일반하고 똑같아요. 일반 사람이에요. (남/45세/양덕/

군인/2007년 탈북)

거기도 무슨 연금이라는 그건 있는 거죠. 연로보장 받으면 보조금이 나오는 게 있고. 공로를 세웠거나 자기 연한을 다 채웠을 때 국가가 연금 형식으로 돈 주는 게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연금 여기하고는 말은 달라도 연금 형태는 다 되어 있는 거죠. (남/45세/청진/군인/2011년 탈북)

군인들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공훈에 따라 년로년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진술이다.

30년 기간을 보더라고요. 30년 정도. 그러면 우리가 부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선임하사, 원사 이런 사람들은 30년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대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중략) 복무를 해야 하죠.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민간인으로 말하면 노동이고, 부대로 말하면, 부대 실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단장님이시고, 내가 부사관인데, 내가 이 여단에서 30년 이상을 하면 부대에서 저에게 600에 60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군단, 사단해서 서류가 넘어가면 민간에서 내가 전역을 해도 민간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군인의 경우 군대에서 년로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지급하므로 년로년금 대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군인이라고 해서 더 높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공로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무조건 공로사회에요, 북한은. (그러면 공로가 없이 소좌이상 계급이 높다고 해서 나중에 받는 사회보장비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다?) 네. 없어요. (중략) 내가 아무 것도 없는데 소좌 달았다고 해서 600g에 60원은 안줘요. 그렇잖아요. 나라에 공로가 있어야 이 사람들 대우하는 차원인거에요. 일반사람들은 300g밖에 안줘요, 쌀을. 만약에 이 사람들 군복무 오래하면 차이점이 있을 텐데 저는 잘 모른다는 거죠. 제가 알기에 사회보장제는 누구나 똑같은 제정을 했다는 거죠. 공로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을 했지. 공급량은 똑같다는 거죠. (중략) (그러면 군 인민위원회는 여기로 치면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한은 일반 사람들이 받는 국민연금이 있고 그 외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연금보다 급여수준이 월등하게 높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게 없다? 공로가 없으면 똑같다?) 네.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45세/양덕/군인/2007년 탈북)

(혹시 군인으로 복무하고 60을 채우셔가지고 사회 나가서 군인들이 받는 연금이나 보조금이 따로 있나요? 그냥 일반 노동자들과...) 일반하고 같은데 이게 이제 부대장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상좌를 달고 전역을 했는가, 아니면 대좌를 달고 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게.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계급이 높아 로임이 높으면 급여수준이 높아진다는 소득비례의 원리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계급이 높아도 공로가 없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국민연금제도가 있지만, 군인연금 따로 있고, 공무원연금 따로 있고, 교직원 연금제도 총 4가지 연금제도가 있거든요?) 저희는 하나의 연금제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연금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공평하게 사는 나라잖아요. 그 대신 뭐가 있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특복한 사람들. 이건 연금이라고 안하고 특별보장을 해주는 것. (공로자에게만 연금제도가 있다?) 아니. 연금제도가 아니고, 보상제도고요. 나머지는 공무원, 교사, 군인, 일반은 다 하나의 시스템.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위 인터뷰 참여자는 북한 사회에서 연금제도가 단일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 국가를 위해 특별히 복무한 사람들의 경우 별도로 특별보장을 해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별도의 공로자연금이 아니라 일반연금체계 내에 공로자에 대한 우대원칙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대군인은 공훈이 없는 한 년로년금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여성

일 안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략) 그러나 일을 안 한 주부들은 이것(=사회보험료)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나 300g 쌀은 다 주죠. 쌀은 다 줘요. (중략) 북한 사람은 그전에 대학을 졸업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군대에서 제대하면 은퇴하기 전까지 일을 계속해요. 왜? 의무니깐. 여자는 그만둘 수 있지만. 남자는. 그러나 그만두는 사람은 장애자야. 로동능력 상실했으니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고. (중략) "애가 많고 내가 이래서 힘듭니다." 하면 여성은 은퇴를 시켜주죠. (중략) 대신 결혼 안한 여자는 로동이 의무에요. 결혼 안하면 의무. 결혼을 해야지.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여자들은 그 나이까지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일 안하죠. (중략) 남자인 경우는 무조건 일을 하던 안 하던 60세 전에는 일을 그만 둘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루래도 직장에 안 나가면, 출근을 안 하면 벌써 보안소에서 매일매일 출근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깐, 오늘 안 나왔으면 이사람 어디로 갔는지 따져야 되거든요.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그런데 여자는 대체로 집에서 쉬다가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자들은 년금 대상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년로보장비 부부 간에 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일을 못하니까. 없어요.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여자가 20년 일하기는 쉽지 않아요. 북한의 환경에서 20년 이상을 있다는 것은 인민위원회의 지도원을 했거나 정말 특별하게 직업이 좋았거나, 특정 직업이거나, 아니면 혼자 살아서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20년 일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북한은 공식적으로 실업이 없다. 인터뷰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 남성의 경우 무직자는 없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여성은 결혼 후 부양, 양육, 가사 등의 사유로 일을 안 할 수 있지만 실제 북한에서 자발적 실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 남성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년로년금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북한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년로년금의 적용대상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낮다.

5) 연금수급연령

여자는 56세, 남자는 61세에 퇴직을 하거든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북한에서는 만 55세까지 일해야 되거든요. 남자는 만 60세까지 일해야 되고.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남자 60살, 여자 55살입니다. 만 55세 되면 년로보장 받고. 56세가 되는 생일부터 받는 거고, 남자도 61세가 되는 생일부터 받아요.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남자는 만 60세에 년로보장 받고, 여자는 만 55세에 년로보장을 받는단 말입니다. (중략) 자기 나이까지 해서 되어야 되지.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년로년금의 수급개시연령은 남성 61세, 여성 56세 태어난 달부터라고 할 수 있다.

25년이 되어도, 계속 56세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정이 56세가 되어야 년로보장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을 일했든, 20년을 일했든 56세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56세까지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사람의 노동연한을 보는 거예요. 30년 넘어도 어쨌든 25년만 되면 해당이 되고, 25년 안 되면 안 되고, 25년 지난 것은 괜찮고. 어쨌든 56세 먹는 동안 노동연한이 25년 되면 해당 되거든요. 남자는 61세고. 남자는 노동연한이 30년 일 거예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북한은 일하다가 걷어치우면 안돼요. 년로보장 받기 전까지 일을 해야 돼요. 여기

는 도중에 50세까지 일해도 나이가 되면 10년 지나면 주는 거잖아요. 북한은 년로보장 전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도중에 일을 그만두면 여자들 연금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반드시 60세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네. 공장기업소에 적이 걸려 있어야 되요. 이거 빠지면 안 되요.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연한이 찼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은 년로금에 해당되질 않아요. (여/73세/평양/무역업/2014년 탈북)

년로년금 수급자격은 규정된 근로연한을 채웠다고 할지라도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까지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야 획득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가 근로연한을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년로년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반드시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야 년로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근로연한을 30년 이상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년로년금을 받는 시점인 남성 60세, 여성 55세에 일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년로년금을 받을 수 없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한 20년은 일했어요. (그런데 55세 때 연금을 못 받으셨다는 거죠?) 35년 안됐으니깐. (중략) (56세가 됐을 때 선생님한테 나오는 연금은 확실히 없었다는 거죠?) 없었죠. 그때까지 일을 못했으니까.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위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20년 일했지만 55세가 되기 전에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연금을 수급하지 못했다. 20년의 근로연한을 충족하였지만 그녀는 전혀 년로년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본인이 연금수급연령 시점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지하였다.

그런데 농장원들은 남자가 60세가 아니고요. 남자가 55세였던 것 같아요. 여자가 마흔 다섯이었나? 50세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차이가 좀 있었는데. (중략) 왜냐하

면 60세까지 꼬부랑 할머니 농사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장원들은 그게 달랐었어요. 60세 할머니한테 호미 들고 나가라고 국가가 내모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회주의 나라에서. (여/42세/무산/농장원/2007년 탈북)

농민의 경우 은퇴 연령 기준은 남성 55세, 여성 45~50세라는 진술이 있다. 고된 농장 노동의 특성을 감안한 수급연령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6) 기여기간(로동년한)

(가입기간) 35년 이상이니깐, 중학교 졸업하면 17살, 18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대학 졸업하게 되면 보통 4년제, 5년제, 6년제거든요. 그러면 18살에 졸업하고 대학 가게 되면 24살, 25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일을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죠. 17살, 18살 때 군대 나갔죠? 군대나가면 군대나간 군사복무기간을 노동연한으로 잡아주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35년. (중략) 대학 공부하는 것은 노동연한으로 안 잡아줘요.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대학에서 교육받는 기간은 근로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저희 어머니가 그냥 가정주부로 있다가 직장 나가서 일한 기간이 15년이 돼서, 그때 사회보장 수속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는 15년 이상이면 된다는 것 같아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가사노동은 근로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61살이 돼서 년로보장 나이가 지나도 일하는 연한을 제대로 못하면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략) 연한이 30년이면 30년 국가 연한이 다 되어야 15원을 탑니다. 아니면 못 탑니다. 녀자는 28~30년, 남자는 30년~32년으로 생각됩니다.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만 55세, 만 60세 되면서도 그 연한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녀자는 17년, 남자는 20년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남자들은 중간에 끊지 말고, 30년을 일해야 하거든요. 녀자들은 25년 이상.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노동연한이 녀자는 25년이고, 남자는 30년일 거예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남자가 30년이라면, 녀자는 25년? 딱 5년 차이. 차이가 있습니다.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내가 일했다고 해도 20년을 못 채우면 년로보장이 없어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20년 이상 꾸준하게 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한 달에 20원씩 줍니다. (남/42세/혜산/군인/2015년 탈북)

2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여/73세/평양/무역업/2014년 탈북)

년로년금 수급자격이 되는 근로연한의 경우 15년부터 35년에 이르기까지 참여자 진술이 다양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남자는 30년, 여자는 25년 정도의 근로연한을 가져야 년로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진술과 남녀동일 20년의 근로연한을 가져야 한다는 진술 등이 많았다. 년로년금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연한에 대한 진술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Ⅳ-1〉과 같다.

〈표 Ⅳ-1〉 년로년금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근로연한

참여자	근로연한
3	남녀동일 15년
7	남자 20년, 여자 17년
21	남녀동일 20년
22	남녀동일 20년
23	남녀동일 20년
9	남자 30년, 여자 25년
10	남자 30년, 여자 25년
16	(일반 노동자의 경우) 남자 30년, 여자 25년
6	남자 30-32년, 여자 28-30년
11	(교원의 경우) 남녀동일 30년
12	(농장원의 경우) 별도의 근로연한 없음
16	(군인의 경우) 30년
5	남녀동일 35년
종합	남자 15~35년, 여자 15~35년

저축했다는 의미에서 주는 게 아니라, 노동연한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따지는 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15년 동안 한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면, “15년 동안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하고 말 할 때도, “15년 동안 공장에 다닌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말해요. (중략) 내가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내가 그동안 사회보험비를 낸 것에 의해서 받는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년로년금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은퇴 연령까지 일을 지속하고 있어야 하고 로동연한을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기여기간 개념과는 다르다. 즉 남한은 국민연금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시 보험료 납부기간과 보험료를 고려하지만, 북한은 사회보험료 납부기간뿐만 아니라

몇 년이나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동'했는가와 '연금수급시점에 노동'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이다.

> 의사라든가 교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년로년금이) 있다시피 되는데.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는 그 연금까지 받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배급을 안주고 돈을 안주니깐. 다 장사했으니깐.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고난의 행군 이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활비와 식량공급을 받지 못하여, 직장에는 형식적인 출근만 해놓고 장마당 등에 나가 돈을 벌었다는 진술이 많다. 즉 체제전환국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은폐된 실업(hidden unemployment)이 북한에서도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통일시 이러한 은폐된 실업에 대한 근로연한 인정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직장에는 소속만 두고 외부에서 생계활동을 펼친 기간이 근로연한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년로년금의 수급자 및 급여액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나. 급여

급여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김일성 시대(1990년 초반까지), 김정일 시대(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까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직후 화폐개혁을 단행했던 시기는 북한 노인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시기이다. 급여수준과 급여여부(급여주기)도 이 시기를 중심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체 인터뷰 참여자들의 급여수준에 대한 진술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시기와 대상에 따른 급여수준 및 급여주기: 년로년금

참여자	시기	수급권자	급여수준	급여주기
2	7 · 1조치 이전	일반 노동자	10원 대	계속 지급
15	김일성	일반 노동자	10–30원	
3	김일성	일반 노동자 (외화벌이 수매원)	15원, 300g	
6	김일성	일반 노동자	15원, 300g	
9	김일성	일반 노동자	15원, 300g	
2	김일성	교원	15~16원	
10	7 · 1조치 이전	일반 노동자(수매원)	16원, 300g	밀려서 지급
21	7 · 1조치 이전	일반 노동자	16원, 32원, 300g	지급
7	김일성	일반 노동자	남 23원, 여 15원	05년 전까지 지급
16	김일성	일반 노동자	25–30원	
1	김일성	일반 노동자	30원, 300g	90년대부터 밀려서 지급
11	7 · 1조치 이전	농민	30원, 300g	
23	7 · 1조치 이전	일반 노동자(철물)	40원	
13	김일성, 김정일	일반 노동자	60원, 300g	
7	김일성, 김정일	제대 군인	마지막 월급의 70%	
21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60원, 300g	간헐적 지급
22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500–600원	매월 지급
4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580–600원, 300g	
3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외화벌이 수매원)	600원, 300g	
22	7 · 1조치 이후	농민	600원, 분배	
14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600–700원	
5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700원	
9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700원, 300g	
10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수매원)	700원, 300g	밀려서 지급
11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700원, 300g	
8	7 · 1조치 이후	군 인민위원회 보급원	700원 (마지막 월급의 70%)	1회 지급
2	7 · 1조치 이후	교원	700원	

참여자	시기	수급권자	급여수준	급여주기
9	7 · 1조치 이후	사진사 (편의봉사사업소 소속)	700원, 300g	3년간 3회 지급, 1회 지급시 3-5개월분 일시 지급
11	7 · 1조치 이후	교원	700-800원	
23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700-900원	
1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약 1,000원, 300g	밀려서 지급
5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1,200원	
11	7 · 1조치 이후	제철소 노동자	2,000원	
17	7 · 1조치 이후	제대군인 (제대 후 기업소 간부)	280원	매월 지급
종합	김일성 시대	일반 노동자	15~16원이 다수 남성23원/여성15원 30원 내외	80년대까지는 원만하게 지급
		농민	20원~30원	80년대 후반부터 지급
		제대 군인	마지막 월급 70%~80%	80년대까지는 원만하게 지급
	김정일 시대	일반 노동자	16원~40원	고난의 행군(90년대 중반) 미지급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600~700원이 다수 800원, 900원 1,000원, 1,200원	매월 지급과 간헐적 지급이 혼재
		중노동 근로자(제철소)	2,000원	
		농민	600원	
		군 인민위원회 보급원	700원 (마지막 월급 70%)	
		교원	700원	

주: 1) 급여액이 가장 낮은 순부터 기입
2) 인터뷰 시 년로년금 수급자의 배급량에 대해 따로 진술하지 않은 경우, 연금액만 기입하였음. 따라서 특정 대상자가 연금액만 있고 배급량이 없다고 해서 배급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님

1) 노동자 · 사무원

15원이 제일 작은 거고, 15원에 쌀 300이 제일 작은 거고.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공로 없는 사람들은 15원 줬단 말입니다.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제가 97년도에 받아가지고 16원씩 타다가, 그 다음에 700원씩 탔어요. 화폐교환 한 다음부터는 700원씩 탔어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그냥 퇴직하신 분은 300g 배급을 주고요, 국가가. 돈은 580원~600원 정도 당시(2002년 화폐개혁 이후)에 줬거든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저희 어머니가 그냥 가정주부로 있다가 직장 나가서 일한 기간이 15년이 돼서, 그때 사회보장 수속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는 15년 이상이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 달에 15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매월 동사무소에서 받았어요. (중략) 년로보장으로 하면 그게 300그램이 되는 거죠. 300그램을 주고, 그 다음에 15년 이상 된 사람은 15원을 주는 거고요. (중략) 웬만한 노동자들은 다 15원짜리. (중략) 7·1경제조치할 때 2002년 7월에 모든 로임을 시장가격으로 기준해서 올렸거든요. (중략) 그러면서 연금도 그 때 올라갔다고 해요. 연로보장금이 600원으로. 우리 어머니 것이 600원으로 올라간 거죠.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직장 생활을 꼬봇이 한 사람인데. 우리 장인도 군관이었어요. 군관하다가 제대되어서 ○○ 농업기계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연로보장 받아서 사는데, 500원을 받는 것 같아요. 500원인지 600원인지 어쨌든 그 정도에요. 너무나도 돈이 보잘 것 없으니까 우리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돈은 꼬박꼬박 나와요. (남/42세/혜산/군인/2015년 탈북)

할머니도 할머니 되기 전에 남편이 일을 했으니깐 (배급을) 줘요. 북한은 원칙적으로 세대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장. 북한에서는 세대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략) 정정한 사람은 무조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깐 부인이 이 남편이 일을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속하는 거예요. 남편의 부양에 속하기 때문에 쌀은 다주는 거예요. 왜? 먹고 살게끔은 해야 되기 때문에. 쌀은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깐 할머니가 되나 할아버지가 되나 그 과정을 다 거쳐 왔기 때문에 쌀 안 받는 사람은 없죠.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진술을 종합하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 시기에 나타난 년로년금의 최저 급여액수는 약 15원이며, 년로년금액은 대체로 15원에서 30원 사이이다. 하루 쌀 배급량은 300g이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기의 년로년금 최저 급여액수는 약 600원이며, 년로년금액은 대체로 600원에서 1,200원 사이이다. 7·1조치를 통해 약 40배 정도 연로연금액이 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

하루 쌀 배급량은 기본 300g으로 동일하다. 쌀 배급량의 경우 공로자가 아니면 300g으로 동일하며, 임금이 높다고 해서 배급량이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공로자의 년로년금액은 대체로 1,000원에서 2,000원대 사이를 형성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그건 높고 낮고가 없고 15원 공통적으로 줍니다. (중략) (년로보장) 결정하는 방식이 여자는 한 자리에서 15년을 다 했으면 만 55세가 됐으면 15원을 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건 60원 안됩니다. 남자가 61세 환갑 날짜까지 한곳에서 변함이 없이 일했으면 진단서 두 달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되면 23원. 여자는 15원, 남자는 23원. (중략) 여자는 17년이고 남자는 20년 아닙니까.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일반 노동자의 년로년금 액수는 남자 23원, 여자 15원으로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성별 내에서는 액수가 동일하다는 진술도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 년로년금액의 차이는 남자의 년로년금 자격 근로연한이 여자의 근로연한보다 더 길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는 있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나에게 도움이 되썼느냐가 문제지. 제도를 봤을 때는 그게 뭐 잘 되어있죠. 300에 30, 600에 60. 여기서 300에 30, 600에 60 그게 말하자면 년금제도인데 직장 다니는 사람은 사회보험료 1%, 급여의 1%만 계속 내면은 그러면 년로보장을 받잖아요. 년로보장을 받고 나면 평범한 사람은 훈장하나도 없는 사람 공로를 세우지 못한 사람은 300에 30이라는 게 쌀 300g에 현금 30원.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내가 스무 살부터 일했다, 60세에 년로보장을 받는다면 40년을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40년 되는 거죠. 내가 30년밖에 일 못했는데 죽 내려왔으면 30년으로 인해서 년로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안 되어서 계속 60세까지 일해야 하니까 40년 일한 사람도 있고, 많게는 45년 일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년로보장 받는 데는 관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더 일해도 더 주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중략) 그것은 관계가 없지, 700원. 탄광에서 40년 일하고 연로보장 받은 사람도 훈장 없으면 나하고 다 똑 같다고.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일부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일반 노동자의 년로보장 수준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 시기에 월 30원, 쌀 배급 하루 300g으로 동일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700원으로 일반 노동자 간 동일했다는 진술도 보인다. 그것은 동일한 직장의 동일한 직종에서 노동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근로연한이 늘어난다고 하여 급여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진술도 있다.

부양으로 쌀 300g타고 700원을 받는 사람은 사회보장이나 연로보장이나 같거든요, 700원은. 년로보장대상도 700원 주고 사회보장 된 사람도 700원 주는데, 그 돈은 규정된 거고.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위 진술에 따르면 년로년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급여수준은 비슷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농민

농장에서 연로보장 받은 사람들이 20원을 받아요. (중략) (2002년 이후) 600원을 받은 것 같아요. (남/42세/혜산/군인/2015년 탈북)

농민들은 관계없이 일생을 농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은퇴만 하면 여자는 56세 되면 300에 30원. 우리보다 절반 가격을 전부 받아요, 농민 세대는. 그거는 일생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농민은 다 그렇게 받더라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 00대 선생이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 00대 졸업하고, 문화대혁명 때 함경북도로 나와서 함북도 00대학 교원질을 30년 했어요. 그런데 은퇴했는데, 그 분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 중국 출신이라고 안 주더라고. 그래서 세포 총회할 때 계속 불편을 얘기해요. “동지, 좀 세게 제기해주시오. 왜 차별하는가? 조선민족으로 받았으면 조선민족으로 대우를 해 줘야지. 중국 출신이라고 왜 그러는가?” 그거를 제기하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농민들은 다 “내가 농민들과 같이 년금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대학 교원이었는데!” 그리고 제기하는 게 지금도 귀에 선해요. (중략) 농민들은 전부 다 년로보장 기간 되면 300에 30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여/78세/청진/중등교원/2005년 탈북)

농민의 경우 연로보장을 받은 사람들은 김일성 시기에 20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0원에 쌀 300g을 받았다는 진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농장원에 대한 년로년금 액수가 6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3) 군인

이게 년로보장비가 그래서 남한 비슷하게 많은 게 군대에요. 저희 아버지가 군대에 계시다가 은퇴를 했는데 (중략) 군 장성이라서 그 때 우리 아버지가 뭐 600g은 무조건 주는 거고, 은퇴하면 비용이 230원 탄다고 그러던가, 220원인가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군대는 다른 데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같은 연한에 대해서도 군대는 좀 더 줄 거야.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그 600에 60원이라는 말을 할 때는 대학교수들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간부들 속에서도 다 그런 말이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주는 돈이 600에 60원이 아니었겠나. 한데 우리 아버지가 많이 탄 것을 봐서는 그 마지막에 제대될 때 돈에 한해서 계산하는 군대에서는 그런 계산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원래 평시 받던 로임의 몇 퍼센트다. 근데 그 평시 받던 로임은, 군대 로임은 그 군복무 연한, 그 다음에 뭐 직무... (중략)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공무원도 기간이 고려되잖아요. 기간, 그리고 직무수준 그것을 다 고려해서 어떤 계산법이 있겠는데, 계산법은 제가 모르죠.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군인들은 일반 사람보다 더 많다고.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전사 생활 몇 년, 군관생활 몇 년 관계돼서 로임의 70%를 줍니다. 자기가 군대에서 타던 로임의 70%를 줍니다. (중략) 다 제대되죠. 다 그 때 제대되기 때문에 군대는 50살에 제대되든 40살에 제대되든 관계없이 그 횟수만 차면 준단 말입니다. 25년에 전사생활 몇 년, 군관생활 몇 년에 따라 돈이 달라요. (중략) 자기 마지막 월급 탈 때 그 월급의 70%를 줍니다. (중략) 그런데 일반병사는 주지 않습니다.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군인들은 공로자보다 더 높을까요?) 높을 겁니다. 군인이 25년을 있으려면 보통 사단장이상 되어야 제대됩니다. 사단장정도 되면 로임이 한 300원씩 됩니다.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많이 타는 사람들은 군관 제대군인들, 보위부 제대군인들, 안전부 제대군인들. 그 사람들은 다 600에 돈은 자기 로임의 80%를 줬거든요. (중략) 고급군관 이상. 줄 둘에 별 세 개면 고급군관이에요. 그 이상은 자기 로임의 80%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 로임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지만 일반 로동자들이 몇 배씩 했겠지요. 거기에서 80%를 줬으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받았지. 배급도 600그램 탔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년로보장 받은 사람들은 600에 60원 줬거든요. 배급 600에 돈 60원 주고. 일반 로동자들은 탄광 지하에서 일했든, 바깥에서 나처럼 사진사로 일했든 관계없이 배급은 300, 돈은 700원. 똑 같았어요, 정확히.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군인들은 60살까지 복무를 만약에 했다면 이분들은 년금액이 일반사람들보다 더 많을까요?) 많지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가요?) 군복무는 일반 사회 그거 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그리고 군복무는 힘들잖아요,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남/45세/청진/군인/2011년 탈북)

군대는 거의 다 공로자가 될 거예요. 군대도 공로자를 고려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훈장을 많이 차려 주는 데가 군대거든요. 군대는 그 정도 직위가 되면 다 훈장은 600에 60 정도는 받을 거고.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군인의 경우 일반 노동자의 년로년금에 비해 급여수준이 더 높다. 임금과 공로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임금에 대한 연금급여 비율은 진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진술에 의하면 제대군인은 월급의 70%를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며, 또 다른 진술에서는 고급 군관들의 경우 월급의 80% 수준까지 언급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군인연금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복무기간이 오래된 직업군인의 경우 대부분 공로자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급여수준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연로보장비 보조금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계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거네요?) 네. 차등이 있습니다.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군대는 계급장별로 주는 것 같던데요? 대좌잖아요. 대좌에 걸맞는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군인도 월급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계급에 따라서 연금액에 차등이 있다.

4) 시기별 연금 급여의 실질 가치 추정

그때 당시 일 다니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100원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30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였죠. 그때 쌀값이 8전밖에 안됐는데.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국정가격이라는 게, 배급할 때 돈을 냈는데, 입쌀이 8전이라 그랬던가.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년금도 많지는 않지만 년금을 가지고 채소를 사먹을 돈이 됐고, 그 때 당시에는 시장도 활발하게 될 때가 아니었어요. 식료상점이 지역별로 군이나 구역 단위까지 동까지 식료상점이 하나씩 있었어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600g에다가 그 때 돈 60원이면 괜찮은 돈이었어요.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국정가격이라고 하면 60원이면 큰돈이 되니까. 그리고 쌀 600g을 사람이 하루에 다 섭취를 못 하잖아요, 늙으니까. 젊은 층도 아니고. 그러니까 600에 60이면 제 생각에는 큰 것 같아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급수가 있어요, 그것도. 직무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가능한 거죠. (남/30세/무산/군인/2012년 탈북)

쌀 1kg 당 국정가격 판매가 8전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김일성 시대의 년로년금 수준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근로자 월 년로년금액 15원은 쌀 1kg 당 국정가격 판매가인 8전의 약 188배이고, 공로자 월 공로자년금 60원은 쌀 1kg 국정가격 판매가인 8전의 750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90년대 이전의 제도는 노인들이 은퇴를 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야. (중략) 아무 걱정 없어. 그냥 끝나고 나면 배급을 타죠. 그다음에 배급 300g가지고 사실은 못 살죠. 그러나 가족들이 다 같이 타오면 그 정도 가지고는 먹고살 수 있었어요. (중략) 남자들은 누구나 다 직장을 다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깐 세대주가 직장을 다니

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면 그 년금이 나오니깐 여기말대로 사회보장이 되다 보니깐 걱정이 하나 없어. 그런 거로 고민해 본 사람이 없어 일단.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두 분 노인만 살아도 '고난의 행군' 이전에 배급과 연금만 가지고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했나요?) 네, 가능하죠.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본인이 년금을 받아서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큰소리 떵떵 치며 살았죠. 며느리한테 이거 가지라고 하면서. 왜? 나는 여기다 먹을 거 다 들여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러기 때문에 아무걱정이 없이 살았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때부터는 장마당에 나가. 며느리보기 미안하니깐. 그때부터 다 장사를 했죠.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년로년금과 배급이 끊이지 않았던 김일성 시대에는 북한 노인들의 실생활이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난이 들어오면서 임금에 대한 개념 이런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이 싹 없어진 거예요. 왜? 국정가격하고 시장가격이라는 게 생기다보니깐. 그러면서 관심이 없으니깐 재정 회계 쪽 힘이 막강했는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급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활비에 관심 없고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거죠. 그걸 받아봐야 쌀값 1kg도 못사니깐. 그래봐야 1kg이었어요 그 때 당시. 제가 떠날 당시만 해도 쌀값이 45원이였어요.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600g에 60원 받아야 쌀 1kg밖에 못 사지. 그러니깐 그때는 관심이 없는 거야. (중략) 관심이 없으니깐 (년로년금이) 밀리나 마나 상관이 없었어요.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다 년금은 받는데 그 년금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중략) 90년대 이후에는 쌀값이 높아 년금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년금하고 아무 무관해. 그러니까 정정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장마당에 앉았죠.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제도는 좋은데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거죠. 제도는 모든 것이 국정가격에 맞춰있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국정가격은 무의미하고 시장가격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돈 60원이라는 것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라이터 하나 값도 안 되고 배터리 하나도 못 사는 돈이라, 그게 옛날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이 때 구소련 무너지기 전에 그 때에 이야기가 가능한 거지, 지금은 90년대 중반부터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이고, 나온다고 해도 받을 사람도 없고. 나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남/30세/무산/군인/2012년 탈북)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배급이 끊기고 쌀의 시장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였다.[10] 이로 인해 년로년금은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로 인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북한 노인의 생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노후생활 전반이 악화되었다. 소비재 공급의 절대적 부족 및 장마당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과 실질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북한 사람들은 받으나마나한 임금 혹은 년로년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국가가 사적소유를 아직도 완전히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생산에서의 사적 생산을 허용하지 않아서, 팔고 사는 사람은 많은데, 생산이 도무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전 못하죠. 시장화라는 게 생산이 시장화 되어야지 판매가 시장화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

10) 북한의 장마당(시장)에서의 1킬로그램 당 쌀 가격은 1992년 20원, 1998년 77원, 1999년 64원, 2000년 46원, 2001년 49원, 2002년 2월 48-55원, 2002년 12월 130-150원, 2003년 5월 185-195원, 2004년 5월(평양) 240원, 2004년 8월(청진) 900원, 2005년 10월(회령) 1,000원, 2006년 7월(평양) 700원, 2009년 8월(평양) 2,300원-2,400원, 2010년 8월(평양) 1,050원, 2011년 8월(평양) 2,100-2,600원, 2012년 9월(평양) 6,800원, 2013년 9월(평양) 4,800원, 2014년 9월(평양) 6,100원, 2015년 9월(평양) 6,000원, 2016년 7월(평양) 5,100원 등의 추이를 보여 왔다(통일부 보도참고자료, 2001; 양문수, 2003; 세계농정연구원, 2006; 데일리NK 북 장마당 동향).

600원 정도면 쌀 12kg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쌀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그게 한 두 달이지, 그 다음부터 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국가에서 그 때 새롭게 기준을 정해서 다 올렸죠. 근데 그게 기껏해야 두 달에서 석 달. 그 다음에 그 해 말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가파르게 식량 값이 올라서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됐죠. 처음에 로임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사 못할 바에는 차라리 직장 다니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어야 말이지.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지금도 노인들이나 국가공로자들에게 년금은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그 돈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써볼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어디에 써요? 막말로 빵 한 개도 못 사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남/45세/청진/군인/2011년 탈북)

2000년도쯤에 되어서 2,000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한 두 달 그렇게 좋았다가 물가가 올라가면서 100배로 올라가면서 올려 뛰는 통에 괜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죠. 한 두 달 그저 좋은 시절을 보내셨어요. (남/42세/혜산/군인/2015년 탈북)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직후 국정가격을 장마당가격으로 현실화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면서(조영국, 2005) 이 시기에 년로년금액 역시 상승하였다. 따라서 일반노동자의 년로년금액은 김일성 시기 15원 내외였던 것이 약 600원으로 인상되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직후 년로년금의 실질가치가 짧은 기간이나마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공급부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면서 시장 물가의 급등이 다시 빠르게 나타났다(차문석, 2005). 북한 주민의 월급을 비롯한 년로년금의 실질가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 수준으로 곧 떨어지고 말았다.

시기별 평균 임금액 및 쌀을 비롯한 주요 생필품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시기별 연금 액수의 실질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따라서 진술에서 나타난 시기별 평균 임금액과 주요 생필품의 장마당 가격, 국정 가격을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각 〈표 Ⅳ-3〉, 〈표 Ⅳ-4〉, 〈표 Ⅳ-5〉와 같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기를 보면, 일반노동자가 대체로 8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임금수준을 나타내는데 비하여, 탄광노동자는 4,500원, 군 장교는 1,600원에서 5,000원 사이, 교원은 2,000원에서 6,000원 사이의 임금수준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회주의분배원칙과 생활비등급제 원칙이 실제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Ⅳ-3〉 시기와 대상에 따른 평균 임금 액수

참여자	시기	대상자	평균임금액(월)	현황
5	김일성	인민반장	30원	
21	7·1조치 이전	인민반장	30원	매월 지급
21	김일성(80년대)	피복공장 노동자	32원	지급
23	김일성(60년대)	일반 노동자	32~52원	
25	김일성(80년대)	합판공장 노동자	38원	
11	김일성(60년대)	중학교 교원	45원	
10	김일성(70~90년대)	수매원	50~63원	지급
23	김일성(70년대)	일반 노동자	56원 이상	
8	김일성(7~80년대)	일반 노동자	60~70원	
6	7·1조치 이전	탄광식당노동자	63원	2002년까지 지급, 2003년부터 밀려서 지급
6	7·1조치 이전	식당책임자, 통계원	63~70원	
10	김일성(6~70년대)	탄광 제복공장노동자	65~80원	지급
23	김일성(90년대)	일반 노동자	70원	
8	김일성(90년대초)	답사숙영소 조리원	70원	지급

참여자	시기	대상자	평균임금액(월)	현황
4	김일성(80년대)	일반 노동자	70~80원	
11	김일성(8~90년대)	중학교 교원	70~110원	
4	김일성	일반 노동자(방송업)	74~84원	92년까지 지급, 93년에는 밀리거나 일부 삭감 지급, 94년부터 미지급
8	7 · 1조치 이전	군 인민위 보급원	80원	간헐적 지급
1	김일성	일반 노동자	100원	
25	김정일(90년대)	농장 식모	100원	
2	김일성	초등 교원	120~150원	고난의행군 이후 미지급
3	김일성(80년대)	대학 교원(조교원)	120원	
5	김일성	공무원	135원	
7	7 · 1조치 이전	고위급 공무원	140원	지급
12	김일성(80년대)	농민	150원(만가동 (=매일노동) 기준)	지급
3	김일성(90년대)	대학 교원(상급)	165~175원	
13	7 · 1조치 이전	대학교원(교수)	180원	지급
7	7 · 1조치 이전	군인(25년이상 복무, 사단장급)	300원	
9	김일성(60년대)	제사(製絲)공장	1,500원	지급
9	김일성(7~80년대)	노동보호기구공장 노동자	3,000~4,000원	지급
9	김일성(70년대)	(갱내) 탄광노동자	10,000원	지급
20	7 · 1조치 이후	병사	150원	
16	7 · 1조치 이후	병사	180원	미지급
16	7 · 1조치 이후	하사	220원	지급
20	7 · 1조치 이후	하사	220원	
16	7 · 1조치 이후	중사	260원	지급
20	7 · 1조치 이후	상사	260원	

참여자	시기	대상자	평균임금액(월)	현황
16	7 · 1조치 이후	상사	280원	지급
20	7 · 1조치 이후	특무상사	310원	
16	7 · 1조치 이후	특무상사	360원	지급
21	7 · 1조치 이후	공무원	800원	지급
3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1,000원부터	
8	7 · 1조치 이후	군 인민위 보급원	1,030원	미지급
13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1,500원	
16	7 · 1조치 이후	소위	1,600~2,000원 (소대장직무비 400원 추가)	지급
23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1,700~2,300원	
6	7 · 1조치 이후	식당책임자, 통계원	1,800원	
22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2,000~2,500원	
16	7 · 1조치 이후	중위	2,000~3,000원 (국경연선근무시 800원 추가)	지급
2	7 · 1조치 이후	초등 교원	2,000~3,000원	02-04년에 1회 지급
6	7 · 1조치 이후	갱장, 경리과장, 본부과장	2,400원	
9	7 · 1조치 이후	사진사(편의봉사사업소 소속)	2,500원 (공식임금), 1~2만원 (비공식수입)	지급
10	7 · 1조치 이후	수매원	2,500~2,800원	지급
13	7 · 1조치 이후	대학교원(박사 미만)	2,500~2,600원	
22	7 · 1조치 이후	대위	2,700~3,000원	지급
1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	3,000원	
15	7 · 1조치 이후	군 인민위원회 지도원	3,000원	
2	7 · 1조치 이후	3급 교원	3,000원	
3	7 · 1조치 이후	군인(간부)	3,000원 이상	

참여자	시기	대상자	평균임금액(월)	현황
5	7·1조치 이후	중학교 교원	3,000원	
5	7·1조치 이후	대학 교원	3,000원	
20	7·1조치 이후	상위	3,000~4,000원	
10	7·1조치 이후	교원	3,200원	
3	7·1조치 이후	대학 교원(상급)	3,700원	
13	7·1조치 이후	대학교원(교수)	3,800원	지급
17	7·1조치 이후	상위	4,300원	지급
22	7·1조치 이후	중좌	4,300~4,500원	지급
10	7·1조치 이후	탄광노동자	4,500원	
16	7·1조치 이후	상위,대위,소좌	5,000원	지급
7	7·1조치 이후	최고위급 공무원	6,000원	지급
23	7·1조치 이후	교수	6,000원	
23	7·1조치 이후	보위부장	19,000원	
계	7·1조치 이전	일반노동자 교원 군인(사단장급 이상)	32~100원 45~180원 300원	
	7·1조치 이후	일반노동자 탄광노동자 교원 군인(병사) 군인(하사~특무상사) 군인(소위~대위) 군인(소좌 이상)	800~3,000원 4,500원 2,000~6,000원 150~180원 220~360원 1,600~5,000원 4,300원부터	

〈표 Ⅳ-4〉는 주요 생필품의 장마당 가격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쌀의 경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에는 1kg당 40원에서 100원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가, 2009년까지 1,000원대로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고, 2011년에 5,000원의 가파른 쌀 가격 상승 이후 2016년 현재까지 5,000원에서 7,000원대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이는 〈표 Ⅳ-3〉에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일반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월 1,000원에서 3,000원대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물가라고 볼 수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년로년금이 600원에서 1,200원이라고 하였는데, 이 금액은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이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년로년금액의 실질가치가 얼마나 하락되었는지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표 Ⅳ-4〉 시기별 주요 생필품 장마당 가격

품목	시기	단위	가격	지역	응답자
쌀	1997~1998년	kg	100원	함북 청진	3
	2002년		45~50원	남포	1
	2002년		40원	함남 함흥	2
	2002년		40~50원	함북 청진	3
	2002년 말		1,200원	함북 청진	11
	2003년		150원	함북 경원	6
	2004년		300~600원	함북 청진	3
	2004년		400~500원	함북 경원	6
	2005년		800~1,000원	함북 온성	8
	2005년		900원	함북 경원	10
	2009년 초		800~900원	평양	23
	2009년 말		1,600원	평양	23
	2011년		5,000원	평양	5
	2011년		5,800~6,000원	함북 무산	16
	2012년		4,500~5,000원	함북 무산	20
	2015년		5,000원	양강 혜산	21
	2016년		5,000~5,500원	함북 청진	17
	2016년		7,500~7,700원	평양	23

품목	시기	단위	가격	지역	응답자
강냉이	2002년 초	kg	23원	함북 경원	10
	2002년 말		700~800원	함북 청진	11
	2004년		200원	함북 경원	6
콩	2005년	kg	200원	함북 온성	8
옥수수	2005년	kg	500원	함북 경원	10
두부	2005년	모	100원	함북 온성	8
술	2003~2007년	병	400원	평남 양덕	13
	2011년		500원	함북 청진	17
담배	2003~2007년	갑	500원	평남 양덕	12
	2011년		1,500~3,500원	함북 무산	16
	2011년		250원~3,000원	함북 청진	17
국수	2002년 말	1인분	3,500원	함북 길주	25
	2014년		5,000~8,000원	평양	23

〈표 Ⅳ-5〉는 김일성 시대 주요 생필품의 국정 가격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1kg 당 8전밖에 하지 않아 15원의 년로년금의 실질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5〉 시기별 주요 생필품 국정 가격

품목	시기	단위	가격	지역	응답자
쌀	김일성	kg	8전	남포	1
				함남 함흥	2
				함북 청진	3
				평양	13
명태		3마리	30전	함남 함흥	2
잡곡		kg	5전	함북 청진	3
가스통		통(한 달분)	6원	평양	13

5) 소득비례의 원리: 생활비

년금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직위와 그 사람의 마지막 생활비.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년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에 따르는 차이는 잘 모르겠고,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단순한 것 같더라고요. (중략) 그 사람의 로임이 높으면 더 높여주는 거지.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급여의 몇 %가 있으니깐. (중략) (북한도 그런 식으로 다르게 반영을?) 네, 그렇게 해요. (중략) 일하다가 년금 받으면 자기 급여에 따라서 30원 타든 40원 타든 달라요. 급여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기본 로임에 관계됩니다. 오랫동안 일하면 180원 버는 사람이 있고, 70원인 사람도 있고, 후방 부분 먹는 거 다루는 부분은 로임이 적습니다. 갱에 일하거나 건설에 일하면 로임이 많습니다. 그 로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중략) 평생 받았던 월급의 마지막 월급에서 %로 계산합니다. 평생 내가 30년을 쭉 일하는 가정에서 70원, 90원에, 100원에, 120원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로임의 40%를 계산해서 년로보장비를 줍니다. 40년 해도 돈 오르지 못하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년로보장비를 받는데, 그 년로보장비가 각이하거든요.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다 일을 그만뒀나에 따라서 액수가 조금 많은 사람도 있고 고저 수수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젊었을 때 일을 해서 35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연령이 55세 돼야, 그때까지 일을 해야, 거기에 얼마 700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의 직급에 따라서 돈이 조금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1,200원 타는 사람도 있고.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중로동한 사람들은 중로동하는 그때도 임금이 많잖아요. 중로동이 힘드니깐. 힘든 로동을 한 사람인 만큼 이제 사회보장이라든가 년로보장, 년금이 관계되죠. (여/67세

/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년금이 700원짜리가 보통이에요. 700원, 800원, 900원이 보통이에요. (중략) 그 사람들의 기본 월급에 따라서 나가는 거고요. (여/73세/평양/무역업/2014년 탈북)

사회보장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왜 다른가? 기본 로임 정액에 따라, 한 달에 기본 로임이 있는데, 채탄공 1급이나 2급이나 급수에 따라서 그 돈을 40%를 줬으니깐. 만약에 (로임) 100원을 탔다. 그럼 (사회보장) 40원이야. 200원이면 80원 타고. (중략) 배급은 300g. 일반 배급.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년로년금 적용 대상자의 은퇴 직전 월급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고 기여 기간에 따라 년로년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공로자가 아닌 일반 노동자의 경우 최종임금의 40% 이상을 년로년금으로 받는 것으로 예상된다. 년로년금액의 결정이 생활비를 기본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높았던 노동자일수록 년로년금액도 높다.

(교사가 다른 회사원보다 조금 더 받거나 그런 거는?) 더 받습니다. 년금은 더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서 초등학교 교사만큼 년금 높은 데는 없어요. 중등 교사도 우리보다 월급이 적어요. 어린이집도 더 적고. 초등학교 교사가 제일 많아요.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교원을 하면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데 보다 돈(=월급)이 10원 정도 더 높고요. 그 다음에 기사하고 전문가가 비슷하고. 다 이렇게 비슷해서 딱 로임 수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급수 안에서는 딱 얼마부터 얼마까지다. 무슨 120원부터 130원까지다. 그리고 연한에 따라서 올려주고. 그게 다 올라가면 다시 급수가 올라갈 때까지는 더 로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임금이 높았던 교원, 의사 혹은 탄광노동자 등의 경우 기타 일반 노동자보다 더 많은 년로년금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6) 가입기간 합산

(1) 가입기간 합산 : 노동자 · 사무원

로동수첩에서 15일 이상 공간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내가 오늘 군 행정위원회 로동과 가서 오늘 도자기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해서 도장 눌렀죠. 그러면 그 15일 전에 수산사업소 갔습니다. 그래서 도장 누른 거 그걸 연한을 봐주지. 15일에 하루만 지나도 안 봐줍니다. (중략) 일한 기업소에서 다른 기업소로 갈 때 그 기간이 15일 벗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인정해줍니다. 그렇지만 15일 하루라도 지나면 그건 안 해준단 말입니다.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그 날짜를 국가가 보름으로 봐줬거든요. 이동기간을요. 보름 내에 이동을 해야 연로보장이 계속 날짜가 연결 된다고요. (중략) 내가 이 공장을 다니다 저쪽 공장에서 필요해서 이 사람을 저 공장에 넘겨야 되겠다고 할 때는 넘기는 기한이 '도'가 다를 경우 15일 걸린단 말입니다. 국가 규정이 15일 이내에 다시 수속해서 저쪽 공장에 들어가서 일해야 이 (년로보장을 받기 위한 자격으로서의) 연한이 계속된다, 잘리지 않고. (중략) 그 다음에 한 개 '도'에서 있잖아요. (예컨대) 함경북도 내에서 이동을 한다. 그거는 일주일이거든요.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보름이라도 공백이 있거나 하면 안 돼요. 이을 수가 없어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도 간 일자리 이동의 경우 공백기간이 15일 이내에 한하여 근로연한의 합산이 가능하다. 도 내 일자리 이동의 경우 공백기간이 일주일 이내에 한하여 근로연한의 합산이 가능하다.

그저 어쨌든 녀자는 56세에 년로보장을 받거든요. 56세에 받는데, 56세 동안 25년 정도 일을 해야 그 규정에 딱 되고. 그 중간에 노동연한이 끊어지지 않아야 해요. 끊어지지 말아야지, 끊어지면 못 타요. 끊어지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30년 되어도 못 타요. 내가 만일 여기서 다른 기업소 갔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이동한 것은 몰라도, 개별적으로 이 기업소가 싫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로 간 것은 절대

로 연결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업소에서 무슨 로력이 얼마만큼 필요한데, 군 차원에서 로력을 조절할 때가 있어요. 어느 탄광에서 몇 명을 어디다 넘겨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넘어가는 사람은 (근로연한을) 연결해주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연결 안 돼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죽 연달아서 일을 해야 되고요. 로동수첩 있잖아요. 로동수첩에 내가 일을 하다가 해산도 했고, 해산하고 나니까 법적으로 수속한 것이 없이 그냥 놀았다고 된 거에요. 그러다가 다시 직업을 구했을 적에는 지나간 연한이 다 잘라지는 거예요. 연속되지 못해요. (여/73세/평양/무역업/2014년 탈북)

근데 중간에 직장이 바뀌어도 국가적인 조치에 의해서 바뀌는 사람들은 일 없고, 개별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장 가서 일하겠다면 그 연한이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년로보장 못 받죠. 남자는 30년이고, 녀자는 25년 이상이 되었을 때. 나도 일생에 직장을 세 번 바꿨는데, 다 국가적 조치에 의해서 바꿨거든요.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근로연한은 법에서 규정한 노동능력 상실 등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노동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끊어지지 않아야 계속 인정받고 통산될 수 있다. 국가에서 인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타 사유로 노동기간이 중도에 일정시기 이상 단절될 경우 그 동안 합산해온 근로연한이 소멸되고 새로운 근로연한으로 다시 계산이 시작된다. 결국 해당 노동자는 년로년금 수급자격의 근로연한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놀다가 끊어졌다가, 그것도 연결하는 수법이 있긴 있는데. 진단서를 냈거나, 아이를 키웠거나. 근데 이게 연결이 되어야지 끊어지면 안돼요. (여/78세/청진/중등교원/2005년 탈북)

다만 로동능력상실로 인한 진단서 제출 또는 양육의 사유일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2) 가입기간 합산: 군인

로동기간에 그것(군복무)은 반영이 됩니다.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군사복무기간도 노동연한으로 쳐줍니다.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포함하지요. 군사복무 한 사람들 10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20년만 더 있으면 되지요. 그건 해줘요.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군대 연한을 포함해줘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군복무 기간은 근로연한에 산입된다는 일관된 진술이 있다.

(40세 정도에 제대를 해요. 제대를 하면 그 때 끝나버리면 연금을 나중에 못 타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일하죠. 놀면 안 되거든요. 가족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군(郡) 당 간부과에서 불러요. 불러서 “너는 어디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로동자로 배치 안 해요. 지도원 급으로 배치하죠.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10년 군인 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나머지 20년을 하면, 그럼 30년이 되잖아요. 이렇게 연계가 가능한가요?) 연계는 가능합니다. 연계를 시켜주는데. 이것도 어쨌든 둘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데 열일곱 살에 나와서 10년 복무하면 스물일곱. 20년 더하면 마흔일곱. 여기서 13년이 비거든요. 그런데 주는 조건이 60이 넘어서야 해요. 그러면 13년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규정에는 30년이 되어 있지만. 13년이 더 해야 되니까.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군사복무를 15년 했어요. 15년 했다가 제대가 되었으면 내가 노동연한 15년을 군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무가 군인. 거기에다가 그렇게 밝혀요.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10년 더 했으면 사회근무연한이 25년이 되는 거예요. 군사복무를 15년 했는데, 사회 나와서 정식 수속을 해가지고, 군대도 제대되어서 1달 이내에 수속을 해야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달 이내에 수속을 해야 하고, 무지하게 1달 이내에 수속 안하고 북조선에서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돌고 저기 돌면서

장사하다가 그 다음 직장 들어간다고 수속하면 이거는 다 잘라져나가는 거예요. (여/73세/평양/무역업/2014년 탈북)

20여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 군인들도 이 근로연한을 채우기 위해 제대 후 취업하여 근로연한을 이어나감으로써 년로년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군관으로서 장기 군사복무기간과 사회에서의 일반 근로연한은 연계된다.

간부들의 경우에는 간부이력서가 쫓아다니고, 어디로 이사를 가면 간부이력서가 쫓아간다니까. 로동자들한테는 사실은 노동수첩을 갖고 다 이사 가야 돼요. (중략)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때 그냥 공짜로 여기처럼 가는 게 아니라, 다 로동과에서 발급한 어떤 노동파견장에 의해서 가야되거든요? 내가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 그 때는 로동국이 있어요. 로동처. 로동처에서 파견장을 발급해야만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로동... 국가기관 어딘가에 다 기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노동연한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근로연한의 산정은 국가의 노동부문 행정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7) 일시금

(어떤 할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어요.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매달 연금을 받을 텐데 못 받잖아요. 사망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일시금으로 주고 그런 건?)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장례보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깐 뭐냐면 내가 사망을 했으니 장례 정도 치를 장례보조금을 줬죠, 나라에서.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년로보장비를 한꺼번에 주는 것은 없고, 사회보장비도 한꺼번에 주는 것도 없고, 한 달에 700원이다 1200원이다 지정된 대로 그걸 타는 거죠.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연금 대신에 60세 이상 됐을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못 그러지. 그거 주겠어. 절대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일시금으로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년로년금을 수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급자 본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일시금 형태로 일부 액수가 지급되는 등의 사례는 없다. 사회보험 대상자의 경우 연금 외에 장례보조금을 지급받는다.

8) 생활비와 연금의 병급 수급

일해서 기본 로임 타니깐 연로비 안줍니다. (중략) 보통사람들은 이중으로 줄게 뭐 있나. 북한에서는 그런 것을 이중이라고 합니다. 이중으로 아니 줍니다.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나는 (연로보장) 대상이 되도, 일을 하니깐 그걸 안 준단 말입니다. (중략) (동시에 근로소득도 벌고 연금도 같이 받고 그렇게는 못합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일하면 년로보장비는 안 줘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로임을 받는 사람은 연금을 못 받나요?) 네. 그렇죠. 은퇴하면서 연금 주는 거죠. (연금도 받고 로임도 받고 이럴 수는 없나요?) 그런 건 안돼요. (여/78세/청진/중등교원/2005년 탈북)

북한에서 이중으로 주는 것은 없어요. (남/45세/청진/군인/2011년 탈북)

은퇴 연령이 지났지만 계속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해당 직장에서 임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별도의 년로년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9) 분할연금

년금은 분할 할 수가 없죠. 이제 봐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이제 어머니는 일을 안했어. 나는 쌀을 300g은 나오지만, 제도적으로. 근데 나는 돈은 없어. 그런데 나는 남편하고 리혼을 했어. 그러면 남편은 연금은 나와요. 그러면 그 남편이 년금을 가져가는 거지. (할머니는 배급만?) 네, 배급만 타는 거죠.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남편이 받던 년금을 부인한테 주는 법이 없어요. 남편이 사망과 동시에 그 년금도 소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가 아무 것도 못 받았어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부부가 이혼할 경우 연금 수령할 나이가 될 때 남편 연금을 떼주는?) 어떻게 떼줘. 못 떼 주지. 안 떼 주지.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그 리혼한 부인에게 무엇을 주나요. 그저 갈라지면 다에요. 여기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수급자의 배우자가 년로년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부가연금은 없으나 배급은 받는다. 또한 이혼한 경우 년로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0) 부양가족연금

식구가 열이든 백이든 관계없어요. 부모가 있든 자식이 많든 관계없이 년금은 똑같이 700원.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아내 아무 공로도 없는데 왜 주겠어? 일도 안했는데. 놀았는데 뭘 주겠어. 돈이 없지. 어떤 집은 한 집의 식구가 열 되도 년금을 못 받는 집도 있습니다. 연한을 하나도 못 채웠으니깐 년금 하나도 없는 집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기본 로력이 700짜리가 하나도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격도 없지. 나가서 일 안하

지 그러니깐 없습니다. 년금 못 탑니다. 다 300g 배급 탑니다.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연금은 년로년금 수급권을 가진 해당 년로자에게만 지급한다.

다. 재원

통계원이 로임 쪽지를 주잖아요. 로임 이 달에 총 얼마인데, 무슨 보험 얼마, 무슨 보험 얼마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재해보험하고 년금보험하고 그게 두 가지는 머리에 들어왔어요. (여/60세/청진/방송/2007년 탈북)

통계원이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다 계산을 해요. 우리 여기 ○○의 30여 명이면 30여 명에 대한 생활비를 다 계산을 해요. 그러면 다 계산을 하면 "너 얼마만큼 일을 했으니 며칠 나왔으니 얼마얼마 다 계산이 되잖아" 그러면 계산이 된 생활비에요. 계산된 생활비가 쭉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 타야 되는데 얼마 얼마 지각하고 그래서 99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99원에 1%를 계산을 하는 거죠. 99전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면 우리 직장 것을 전체를 계산을 하면 사회보험료가 100명이면 99원 이렇게 쭉 계산이 되죠. 그러면 그 통계원들이 쭉 다 가져와서 회계에 재정회계를 회사에 가서 던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생활비 담당 지도원이 있어요. 생활비만 담당하는 지도원. 원가하고 생활비. 원가도 생활비에 들어가니깐 그러면 그 지도원이 앉아서 전체를 종합해서 회사전체의 생활비는 얼마 사회보험료는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사회 보험료를 빼면 지불할 생활비가 되는 거죠. (중략) 계산된 생활비는 전체를 받아야 되는데 사회보험료 1%를 떼고 나머지는 지불할 생활비가 되는 거죠.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생활비에서 몇 퍼센트가 사회보험비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험비가 근데, 떼는 돈이 매우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별로 계산을 안했죠. (중략) 정확한 월급이 얼마인지는 하여간 생각이 안 나는데 175원 정도 될 텐데, 거기서 기껏해야 2~3원이나 뗐나?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사회보장비를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로임에서 계속 제하는 게 있어요. (중략) 많이 제하지는 않고, 제하긴 제했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잔뜩 썼는데 그것을 자세히 기억은 안하거든요.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떼 가는 돈이 북한에서는 별로 없어요. 만약에 내가 000이다 하면 임금이 27원이다 하면 사회보장비가 27전 제하죠. 1%에요. 사회보장. 이게 왜 제하냐. 이거 모았다가 진단서, 아파서 병원입원한 사람 진단서 주는 돈이 이거 모아 논 돈이에요. 일하다가 감기가 와서 앓거나 어디 다쳐서 앓거나 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앓아서 병원에서 진단 떼었죠. 병원에서 진단 뗀 데 한해서 이 돈이.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임금을 받는다. 대체로 사회보험료는 임금의 1% 수준으로 매우 낮다.

북한 사람들이 거기(=월급)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표딱지를 주긴 줘요. 로임을 어떻게 준다는 표가 다 있는데. 월급이죠. 그게 북한말로는 생활비죠. (중략) 로임 자체가 적어요. 로임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각하면, 용돈 개념이에요. 좀 넉넉한 용돈.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년금에 해당하는 것을 로임에서 몇 %씩 뗐거든요. 뗐는데 그게 몇 십전 안 되니깐 생각이 잘 안나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공제는 무슨 사회보장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회보험비도 있고. (중략) 잘 기억이 안 나요. 서너 가지 떼는데 액수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지. (중략) 5%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기억을 잘 안하지. 10%만 되어도 알잖아요. 5,000원에서 500원 떼면 알지. 그런데 비율이 그렇게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몰라요. 년금에 대해서 말하는 데도 없고, 주는 데도 없고 신경 안 쓰니까.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로임표에 다 나오는데, 너무 작으니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을 못하죠. 뭐가 규정이 다 있어요. 나라에서 뭐 무슨 보험 이런 게 다 있는데 너무 작고 신경을 안 써서 기억을 못 하겠어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너무 적어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도 위에서 볼 수 있다. 현금보다 현물중심의 복지체제 특성상 북한 주민은 임금액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에도 높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인은 보험료가 없어요. 군인은 없어요. 보험료를 안내지만 군인은 대상이 되는 거지, 직업군인만.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사회보험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군인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사회보험이라는 게 순전히 그 년금뿐만 아니라 그 년금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다른데도 들어가죠. 무슨 무상치료를 받는다거나 그런데도 다 들어가는 돈이죠.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사회보험료는 년로년금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무상치료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도 사용된다. 재정 측면에서 각 사회보험 제도는 남한처럼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제도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통합 사회보험료이다.

북한은 그저 하나의 년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략) 년금 기금을 따로 적립하지 않는다. 기금을 적립하는 주체가 다 다른 거잖아요. 사학연금은 사학연금대로 적립을 하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적립을 하고. 그 다음 뭐 모자를 때는 국가에서 갖다 주기도 하지만은 다 자기네가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년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국가 외에 없다니까요. 유일적으로. 군대는 년금 관리를 따로 한다? 안 그러죠. (중략) 군대는 따로 관리하고, 사민은 따로 관리하고, 무

슨 공로자 따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는 게 뭐냐면, 군대에 따르는 기준은 별도고, 공로자에 따르는 기준은 또 따로 있고. 일반 로동자 기준이 따로 있다는 그런 말이지. 그거는 국가가 유일적으로 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다는 거지, 그 주체가 서로 각이하다는 소리가 아니죠. (중략) 기본 년로자연금. 그 기준이 보통 일반 사람들은 다 일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주고. 뭐 가르자면 농민들이 받는 년금 기준표가 다를 거고, 일반 로동자들이 받는 년금 기준표가 다를 거고, 공로자인 경우에는 또 그 기준이 달라질 거고, 군인들은 또 기준이 달라질 거고. 이렇게 주는 기준이 다르죠. 그게 다를 뿐이지, 그걸 국가가 다 유일적으로 정했고, 국가 예산에서 집체적으로 나간다니까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재정 측면에서도 북한의 연금제도는 남한처럼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제도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진술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통합 사회보험료이다. 또한 통합 사회보험료는 년로년금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연금 및 보조금 지급에 사용된다.

(기업에서는 사회보장명목으로 정부에다가 내는 돈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2009년까지 전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기업소에서 무슨 사회보장금을 (국가에) 내는 게 있어요? 없지. (중략) 우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이익금이 다 국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다 누구나 다 1%. 똑같아요. 북한의 사회보장법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법이 조금 바뀐 게 원래는 회사는 내는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회사가 7%인가 얼만가 내요.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기업소가 내는 사회보험료가 없었다는 진술이 있기도 하고 최근 도입되었다는 진술도 있다. 기업소는 국가에 이익금을 납부할 때 국가사회보장제 명목의 별도로 분리된 자금이라기보다는 통합된 기업소이익금을 국가에 납부한다는 진술로 이해될 수 있다.

라. 전달체계

기업소에서 동사무소에다 문서를 다 넘겨요. 넘기면 (중략) 동사무소에서 년로보장비를 받고...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중략)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는 통장으로 쏴주잖아요. 북한은 본인들이 가서 찾아요. 본인들이 가서줘요.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동사무소의 지도원이 은행에 가서 연로보장비 타다가 나눠주거든요. 나눠준다고 써 붙이면 거기에 도장 들고 들어가서 자기 이름에다가 도장 찍고 700원씩 타가거든요.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연금은 다 동사무소에서. 연금을 취급하는 사람이 있지요. (중략) 본인 확인 도장 찍고. (여/78세/청진/중등교원/2005년 탈북)

지도원이 군 은행으로 가서. 한 6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은행까지). 아무것도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가야 해요. 은행에서 돈 나왔다고 연락 오면 타오지. 타다가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지요. (중략) 동사무소 창문에 써 붙이면, 한 사람만 봤다고 하면 그날로 온 동네가 돈 나왔다는 것을 다 알죠. 그러니까 왁 모여들지. 그러면 남자들은 남자끼리 모여서 한 잔 먹자고 해서 그거 탄 것 절반 떼서 술 한 병에다 (먹지요).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기업소에서는 년로년금 수급자 명단을 동사무소에 제출한다. 노동자 구·동·리 사무소의 담당 지도원은 연금을 시·군 은행에서 수령한 뒤 수급권자에게 년로년금을 제공한다. 동사무소 게시판에 년로년금 수령에 대하여 알림으로 공지하면 연금 수급자들은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와 수령한다.

처음 가는 사람은 수속 그... 북한은 공민증이라고 하죠. 공민증 가지고 수속을 다 해야 하겠지만, 가서 탈 때는 뭐 동에서 얼굴 다 아는데, 가서... (중략) 이름 잘 모

르는 사람은 “누구시죠?” 이러면 “어, 나 몇 반에 누구” 이렇게 하면 우리 택배 수령해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그렇게 철저하게 따지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속이지 않으니까. 북한은 빤한 세상이라서. 완전히 낯도 모르는 사람이 은행가서 돈 찾는 거랑은 다른 것이거든요. 동에서 거주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다 알아요. (중략) 뭐 싸인 정도는 할 걸요. 받았다는. 도장 갖고 가는지는 몰라. 북한은 싸인이라는 걸 잘 안 쓰고 도장을 쓰니까.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노동자구에 사무장이 있고, 지도원이 있고, 인민위원장이 있고, 당 비서가 있고 또 뭐 이렇게 해서 5명이 있단 말입니다. 사무실도 그리 크지 않아서 이런 책상 하나 놓고, 지도원이 앉아 있고, 사무장이 저렇게 앉아 있고, 건너편 조그만 방에 리 당 비서하고, 인민위원장이 앉아 있고. 지도원은 할 일 없지 뭐. 퇴거수속도 다 분소에서 하지. 연금 타다주고, 청소하라고 소리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일하고. 배급표도 연로보장 받은 사람들만 배급표를 동사무소에서 주고, 직장원들은 자기 직장 경리과에서 배급표를 주고요. 그러니까 배급표 타다주는 것 하고 연로보장비 타는 것을 동사무소 지도원이 군에 가서 타다가 나눠줘요. 수표에 도장 찍고.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우리는 노동자구니까 동이거든요. 동사무소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지도원에게 받았는데요. 이 지도원이 은행가서 그 동에 연로보장금 해당되는 분들의 돈을 타오거든요. 수속을 해서 은행가서 타오면, 만일 20일 날에 타왔다면 타다가 20일 날에 사무소에 대장이 있어요. 지도원이 가지고 있는 대장이 있어요. 노령연금 주는 명단이 있어요. 그 명단을 보면서 본인 도장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돈을 주죠. 그렇게 해요. 리는 또 리사무소에서 그게 사무장 아니면 지도원들이 가서 타고. (중략) 나는 문서는 똑바로 못 봤는데, 만일 일반로동자가 얼마라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700원짜리 타는 사람 기록되어 있고, 60만원 타는 사람 그거 다 명단에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저 막 이름 적고 하면 안 되거든요. 3,000원 해당되는 사람들은 3,000원 조가 다 있고, 우리는 700원짜리지요. 그 사람들 다 기록해놔야죠.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동사무소에 가면 연금 수령 확인을 남기기 위해 신원 대조 후 명부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 절차가 이루어진다.

제대 군관이면 (중략) 요만한 수첩이 있어요(A4의 1/4). 그런 수첩을 줘요. 군 복무 30년 이상을 하신 제대된 군관이니깐. 이것을 내면 어디가나 기차도 탈 수 있고, 그리고 쌀도 달마다 하루에 600g씩 주라고 국가가 다 선정을 해놨어요. (중략) 아빠가 차려지는 돈(=년로년금)이 2500원이였어요. (중략) 수첩에는 그렇게 표시 돼 있죠. (중략) 그게 안에 들어가면 월이 있어요. 1, 2, 3월... 그리고 거기에 저금통장처럼 장 수가 있어요. 2005년도에 받고, 2006년도에 받고... 너무 여러 장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게 서너 장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장 수가. (중략) 군 복무 25년 이상 한사람들은 이 수첩대상이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고, 동사무소는 우리처럼 있으니깐 이거 돈 가서 군에 가서 타오지. 동사무소도. 은행가서 타오지. 우리 연로보장 받은 사람이 아무개, 아무개 이래서 100명이다. 누구 것은 1400원도 있고, 800원도 있고, 700원도 있고 이거 타다가 이름 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동사무소에 도장 찍고 돈 받아오지. 나는 직장에는 관계없고 사회적으로 로동자구의 사람이 됐지.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수첩 있지. 다달이 몇 개 표시. 탄 건 도장 찍어주고 안 탄 건 없고. (수첩 앞에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보조금 카드이었을 거야, 아마. 되게 간단해. 도장이나 하나 찍을 수 있는 거 12개 표시해서. (여/79세/청진/공장노동자/2007년 탈북)

연로보장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가져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거기에다가 며칠에 받았다고 해서 북한은 주로 싸인을 못하게 해요. 도장이 있어요. 도장을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오고 했어요. (중략) (연로보장카드가 대략 어떻게 생겼어요?) 두꺼운 가우지 같은 데에 속지가 끼워 있어요. (중략) 매번 가서 며칠날, 얼마, 확인 이렇게 해서 구 지도원이 내 도장 찍고 이랬어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년로년금의 액수 등 년로년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카드 혹은 수첩이 있어서 년로년금 수령을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 카드 혹은 수첩을 지참한다.

매월 줍니다. 어느 날짜에 준다는 날짜가 있어요.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연금도 주는 날짜가 있죠. 연금은 한 달에 한 번 주죠. (중략) 동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날이 연금 주는 날짜다 하면, 그러면 그 날 가서 다 타 먹는 거죠.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동사무소요. 동사무소에 퇴직금만 주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 자체도 동사무소에 잘 안 나와요. 행사가 있는 날만 나오지. 그 사람도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깐. 장마당에 다 나가요. 동사무소 문 닫고.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붙이던가요?) '알림'이라고. 몇 월 달 몇 월 달의 연로보장비가 나왔으니 타가시오라고 써 놓지. 전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이크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동에. 그래도 (동사무소에 써 붙이면) 순간에 그 날로 다 알려져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요.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매달 20일이면 20일, 1일이면 1일 이렇게 공통으로 년로보장비 주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매달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 월급날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게 되어있는데, 혹시 은행에 돈이 없을 때는 가서 못 타 올 때가 있어요. 미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구 지도원이 며칠에 돈이 나오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뒤에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밀리는 때가 있지만 매 사람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어느 날 준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연금 수령은 정해진 날짜가 있어서, 해당 날짜에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연금을 수령한다.

군관에서 나오면 동에 가서 타야지 그 사람들. 사회 나오겠죠. 동에 거주하겠죠? 그럼 동사무소에서 타요. (중략) 공로자들도 동사무소에서 타요. (남/77세/평양/대학교원/2007년 탈북)

전역해서 군사동원부에서 서류가 고향에 오면, (중략) 노동부에서 관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군사동원부에서 서류가 왔다고 하고, 등록을 하는 거죠. 민간인 등록을 다 끝내고 거기서 이제 61세 되면 사회보장 대상이라는 것을 서류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규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고, 규정에 합당하다 하면

싸인을 해서 이 사람은 600에 60주는 거예요. 600에 40 대상이든 규정이 있어요. (중략) 국가유공자들도 동사무소에서 주는데, 이 사람들은 따로 동사무소에서 불러다 따로 주더라고요.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그 사람은 제대되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받았어요. 군인연금이라고 따로 주는 게 없이 그냥 동사무소에서 다 줘요. 이 연금은 똑같이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일단 지도원 하나 있는 게 나오죠.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공로자와 제대군인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동사무소에서 연금을 수령한다.

년금이라는 게 한국에서 년금이라는 개념이 북한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 게 존재하질 않아요. (중략) (퇴직하기 전에 아파서 받는 건 사회보장금이고 60세 이후에는 연금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것도 사회보장금이에요. 년금이라는 게 없어요. 년금은 금융학적으로 보면 보험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북한에는. (중략) 국기훈장 2급과 그 외에 매달이 4-5개 되면 공로자로 인정해서 식량 일일 600g에 60원을 줘요. (그 60원을 뭐라고 부르나요?) 사회보장금이라 그러죠. (공로자연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회보장금인데, 공로자인 경우에는 600g에 60원이고 공로자가 아닌 경우는 300g에 60원이에요. (남/77세/평양/대학교원/2007년 탈북)

년금이라는 개념이 없고 사회보장금을 받는다니깐. 여기랑 말하면 연금이랑 같겠죠. 저는 사회보장금이라고 해요. 군대에서 일하다가 이 사람들이 제대됐어요. 좌급이든 군대에서 종결했어요. 60세까지. 했다 치면 군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제로. 군대에서 돈은 안줘요. (그러면 60세까지 군복무한 장교들도?) 네. 사회로 넘어가요. 사회로 넘어가서 문건들이 나오면 사회보장금이 나온다고요. (그걸 연금이라고 표현한 적은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없죠. 나는 여기서 들었지 저기서 년금이라는 건 못 들어봤어요. (남/45세/양덕/군인/2007년 탈북)

이러한 진술들은 전달체계가 하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일부 인터뷰 참여자는 공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이든,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이든, 노동능력 상실에 의해 사회보장자가 된 사람이 받는

연금이든 모두 사회보장금 내지는 일반연금으로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의 논의와 연계하여 볼 때, 북한의 연금 체계가 우리나라처럼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제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보장년금의 하위에 모든 년금이 포괄된다고 할 수 있다.

다 평등하게 똑같이 그냥 옛날 그 시스템 아직도 그대로 가요. 시장경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2000년대 새경제관리체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돈이 올라갔다 뿐이지, 그 시스템대로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마찬가지로 북한의 통합적인 연금제도는 과거부터 제도 체계의 변화 없이 큰 틀을 유지하면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을 거쳐 액수만 일부 조정되었다는 진술도 확인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 하면서 쌀은 없었지만, 돈은 줬어요. (중략) 돈이라는 건 너무 작으니까. 처음에 한 두 해 정도 못 줬나? 은행이 다 돈이 동이 나서, 사람들이 저금한 돈을 다 주지 않았거든, 그 때는 안 주고 그 다음에는 다 줬던 것 같아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제대군인의 경우 극도의 경제난을 겪었던 고난의 행군 초기를 제외하고는 연금은 밀리지 않고 제대로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995년에 정년퇴직. (그러면 이 오라버니는 연금을 받으시던가요?) 우리 오빠도 연금 못 받았어요. (군인이었는데 도요?) 그거 내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연금은 우리가 거기서 600g에 60원만 기억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것 다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중략) (그 60원을 안 받으셨어요?) 못 받았지요.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그러나 또 다른 진술에 의하면, 제대군인이라 하더라도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했다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군인만 군사동원부에서 직접 준단 말입니다.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군대 다니다 제대되어서 돈을 80원씩 탄다면, 우리보다 몇 배를 탄다면, 군에 군사동원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서 타고. 내가 보위원하다가 연로보장을 받았다면, 보위부에 가서 돈을 타고. 안전원하다가 받았다라고 하면 안전원가서 타고. 이렇게 자기 해당되는 곳에 가서 타기 때문에, 로동자들은 (그들이) 많이 타는지 적게 타는지 조차 몰라요.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일부 인터뷰 참여자는 군인들의 경우 동사무소가 아닌 소속 기관에 가서 연금을 수령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고난의 행군 시작하기 전에 북한이 일반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딱딱 동사무소 배상은, 연로보장대상은 다 동사무소에서 배상하거든요. 다 거기에서 연금이 나와요.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90년대부터는 전혀 못 받았어요. 80년대 퇴직해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하기 전에 그 전에는 아마 연금이 조금씩 나왔나 봐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인 김일성 시대까지는 대체로 년로년금의 지급이 동사무소를 통해 잘 이루어졌다.

(70년-80년대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시는 거네요?) 모르는데,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년금을 준다는 게 일반 노동자들은 없고. (중략) (주변에 그러면 연금을 타거나 60세가 넘어서 배급을 받거나 이런 분들을, 70년대 80년대에 전혀 본 적이 없으세요?) 70-80년대에 못 봤어요.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그러나 일부의 경우 고난의 행군 이전 김일성 시기에도 년로년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국가자체가 은행에 돈이 없으니 그 급여를 제때 못주잖아요. 그러니깐 년로보장자들에 대한 년금도 밀려서 나오고.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이 년금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조치이기 때문에 법상에는 있지만 혜택이 없고 알아도 못해요. 구역 사무소라든가 돈 타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녀봤자 국가에 돈이 없으니깐 못 준다가 다 예요. 그러니깐 그 뒤로 나오는 퇴직 생들은 다 “퇴직금은 있으나 마나 한 것”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직장을 나올 때 “내 퇴직금은 얼마다” 알고 나온 사람 본인만 알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퇴직하면 얼마를 받는지 관심도 없어요. 잘 몰라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90년대부터는 전혀 못 받았어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2002년 이후) 두 번인가 세 번 받았어요. 3년 동안 700원씩. (중략) 세 번 탔다는 게 석 달 치 탔다는 게 아니고, 한 너덧 달 치 모아서 한 번 타고, 그리고 한 일년 또 지나서 받을 궁리도 안 하고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돈 타가라고 써 붙이거든요. 가면 또 한 석 달 치 주고. 이렇게 해서 한 3번 타봤어요.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고난의 행군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조금 주다가, 그 다음에는 한 달 치 밀렸다가, 두 달 치 밀렸다가 그랬다가 두 석 달치 한 번에 줬다가. 그러다가 우리 올 때는 몇 달 치 밀려서 못 타고 왔어요, 2005년도에. (중략) 받았는데, 힘들게 받았어요.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은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 못 받으니까 안 줄 때는... 밀리니까 결국 안 준 것이나 같죠. 주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끌다가 몇 달 있다가 또 주고. 한 달 치 주고. 뭐 이렇게 했죠. 타다가 말다가 타다가 말다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탔는지도 계산이 안 돼요. 그거 뭐 쌀 한 킬로그램 값도 안 되니까 신경도 안 썼죠. 쌀 비쌀 때, 우리 입국할 때는 쌀이 900원에 옥수수가 500원 되었어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아빠가 60세쯤 되면, 98년도니까 고난의 행군 때잖아요. 그 때 년로보장금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엄마도 년로보장금은 한 번도 못 받고. (여/42세/무산/농장원/2007년 탈북)

늘그막에 600에 60은 받겠구나. 김일성 시대에는 쉽게 말하면 년금 같은 형태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새 세대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없어졌으니까. 북한의 법에는 있습니다, 이게.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고난의 행군 이후 김정일 시대에는 년로년금을 밀려서 받거나 혹은 거의 받지 못했다.

그거는 와서 가져가라고 하는데 안 가져가서 그렇지 돈이 요만큼 된다고. (여/60세/남포/회계 담당/2002년 탈북)

그러니깐 월급이 끊겼으니깐 거기(=연금)에는 관심을 안 가졌지. 왜 그러냐? 집에서 돈 벌어먹는 정신에 그 (연금에 대한) 관심이 필요가 없는 거여.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받았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15원씩 주는 걸, 뭐. 모르겠어. 제일 어려울 때, 현금이 다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긴 우리 엄마가 돈 계산도 안 했겠지, 나 보고 뭐 그 잘난 15원을 받으면 뭐하고 못 받으면 어떻고. 근데 년금 못 받았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주변에 아시는 분들 중에 사회보장비 받으시는 분들 있었어요?) 많죠. 농촌의 노는 영감들도 많고, 직장인들도 많고, 뭐 숱하게 알죠. 년로보장 받으면 북한에서는, 환갑 세는 게 61세잖아요. 그걸 기다린단 말입니다.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북한에야 무슨 그 때 이제처럼 화폐개혁이 끝나고 원래 그 전에 년금을 줬어요. 지금도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나오고,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 그게 지금 그런 거죠. 2009년도에 화폐개혁을 했으니까 그 때 화폐개혁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 년금을 또 줬어요. (남/45세/청진/군인/2011년 탈북)

돈은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그래도 헐뜯을 것은 헐뜯어도 정확하게 할 것은 정확히 해야죠. (중략) 그런 것을 신경 안 써요. 너무나 보잘 것 없

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100퍼센트 신경을 안 써요. (남/42세/혜산/군인/2015년 탈북)

고난의 행군 이후 년로년금은 지급되었으나 그 실질 가치가 보잘 것 없이 하락하였다. 년로년금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어서 받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년로년금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심지어 년로년금 제도 자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내 예전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뭐라 그러던가 하면, “년금을 주는 시스템이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뭐가 바뀌었냐” 하면, “이제는 직장에서 주게 되어 있다, 동사무소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못 받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 하더라고요. (중략) 그런데 직장에 년금 줄 돈이 없는 직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 하던데. (중략) 이런 것을 재정비하면서 국가가 자기 책임을 다 떼버린 거겠지.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동사무소 사회보장 지도원이 있어서 어느 공장에 다니던 동사무소에서 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체돼서 자기 있던 곳(직장)에서 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죠. 주지 말라는 말은 안 나오고. 그렇게 훈장 탄 사람들도 로력훈장 이렇게 탄 사람들도 ‘자기 있던 데에서 주라’ 이렇게 2005년 1월 달에 지시문이 내려오니깐, “아니, 일 나오는 사람도 못주는데, 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줘.” 그건 주지 말라는 소리나 같죠. (중략) 그건 국가에서 ‘주지 마라’ 소리 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지요.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아무공장에 다녔든 내가 연로보장 대상이 되면 서류해서 동사무소 가져가면 동사무소에서 줬습니다. 동사무소 사회지도원이 있어서 줬지만, 2005년도 1월 달부터는 그거를 자기 있던 기업소에서 줘라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 사회보험 지도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깐 내가 지배인이면, 지배인 한 20년 했으면 그전에 있던 사람 알고 했지만 암만 우리에게 서류 가져와도 지금 일나오는 사람도 강냉이 하나를 못주고 돈 10원을 못주는데, 옛날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줘요. 그건 국가에서 “너희 주지 마라.” 하면 여론이 나빠지니깐, 기업소에서 줘라 하는 소리나 같죠.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2000년대 중반 이후 연금 수령지가 기존의 동사무소가 아닌 직장으로 변경되었다는 진술이 있다. 은퇴한 노인이 과거의 직장에 가서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더 번거로운 일이 되었을 뿐더러, 동사무소가 아닌 기업소가 연금 지급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을 표하는 진술이 있다. 이는 국가가 년로년금을 지급할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기업소에 년로년금 지급 업무를 떠넘김으로써 사실상 노인들에게 년로년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의 년로년금 전달체계 경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Ⅳ-1〉 년로년금 전달체계

노동 (근로자)	–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년로년금 수급권을 획득
⇓	
신청 (기관 · 기업소 · 단체 · 협동농장위원회)	– 기관 · 기업소 · 단체 · 협동농장위원회 등 각 단위는 년로년금 수급자격을 확인 후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시 · 군 인민위원회에 신청
⇓	
심의 · 승인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 인민위원회)	–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및 도, 시 · 군 인민위원회에서 심의 후 동 · 리의 동사무소 승인 통보
⇓	
지급 (은행)	– 시 · 군 은행에 동사무소 지도원에게 지급 – 동사무소 지도원은 방문수령 후 현금수송
⇓	
공고 (동사무소)	– 동사무소에 년로년금 지급일 공고
⇓	
수령 (수급권자)	– 년로년금 수급권자는 해당 날짜에 년로년금카드 및 도장을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연금 수령

이상의 년로년금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의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6〉 년로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구분	실태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결과	설명
적용대상	노동자 · 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모두 포함됨	○	제도상의 적용대상이 확인됨 다만, 외국인 검증 안 됨
	수급개시연령은 남성 61세, 여성 56세의 태어난 달부터이며, 해당 수급연령 당시 근로활동에 종사해야 함	△	성별에 따른 5세 차이가 확인됨 제도상의 수급개시연령보다 실제로 1살이 더 많음
	근로연한은 15년~35년으로 다양함 근로연한 성별 차이에 대해서도 일치하지 않음	×	근로연한은 실제 〉 제도(남성 12년, 여성 10년)
급여	시기별, 지역별, 부문별로 급여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함 7 · 1조치 이후 년로년금은 지급되었으나 실질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수급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찾아가지 않기도 함	△	1990년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됨 1990년대부터 '계획'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과 부문에서는 중단 또는 간헐적 지급되었고, '계획'이 작동하는 지역과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급됨
	기여기간 및 생활비등급제가 적용됨 소득비례 급여이지만 임금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년로년금 급여격차도 낮음 소득대체율은 대략 40%에서 80%까지 추정됨	○	기본적으로 기여기간 및 생활비등급제라는 소득비례의 원리가 확인됨
	직장 간 이동 시 가입기간 합산 가능 제대군인도 군복무기간 + 근로기간으로 합산됨	○	가입기간 합산이 확인됨
	일시금을 받아보지 못하였음	×	양로일시금은 제도로만 존재함
	보조금과 년금을 동시에 수급 못함	○	이중급여 없음이 확인됨
	조기연금제도는 들어본 적 없음	○	조기연금제도 없음이 확인됨
	생활비와 년금의 동시 수급은 불가함	×	현실에서는 병급 수급이 불가능함

구분	실태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결과	설명
재원	피보험자의 사회보험료가 있으나 실제 금액이 적어 비율을 알 수 없음 기업소의 사회보험료는 알 수 없음 기업소에서도 납부하나 실제 비율은 확인 못함 사회보험료는 위험별로 따로 부담하지 않음 군인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음	△	피보험자의 사회보험료는 존재하지만 로동보수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 기업소의 사회보험료는 확인되지 않음 통합 사회보험료로 확인됨 군인은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음
전달체계	기관 · 기업소 · 단체 · 협동농장위원회 신청 →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 인민위원회 심의 · 승인 → 리 · 읍 · 로동자구 · 동사무소 통보 → 지급	○	신청과 지급절차는 동일 수급 시 도장과 사회보장카드 제시하여 확인 다만, 일부 진술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연금 수급장소가 기존의 동사무소가 아닌 직장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함

2. 로동능력상실년금

가. 적용대상

1)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아파서 그렇게 그만 두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으로 넘어가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이 사람은 병으로 해서 로동능력을 상실했다는 그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사회보장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보장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년로보장금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육체적 능력이 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보장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북한은. (남/45세/청진/군인/2011년 탈북)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적용대상은 제도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장기

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와 사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병으로 인해 로동능력이 상실된 경우의 급여를 로동능력상실년금으로 부르지 않고 사회보장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치료를 하면 진단비 얼마라는 게 나와요, 이 사람에게. 나는 해당자가 아니라서 규정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앓는 동안 진단비가 나와요. 한 달에 얼마씩. 이 사람 로임에서 몇 퍼센트를 준다든가 하는 진단비가 나오거든요. 진단비로 계속 지불하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노동능력상실이라고 하면 사회보장으로 넘기죠.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사회보장을 받는 거가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이 사람은 환자라고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받는데 그 사람이 낫지 않는다, 6개월 동안 낫지 않았다하면 사회보장으로 넘겨요.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제도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로동능력상실년금은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제공됨이 확인된다. 먼저 급여신청 이후 6개월 이전까지 받는 일시적보조금과 6개월 이후 노동능력 완전상실 진단 이후 받는 로동능력상실년금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위의 '진단비'는 사회보험법의 일시적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시적보조금은 직종과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의 50%에서 75%까지 지급이 가능하며(사회보험법 제53조), 폐질자(즉 노동능력 상실자)로 인정되면 일시적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폐질년휼금(→로동능력상실년금)을 받는다(사회보험법 제55조).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로동법 제73조에서 6개월 미만의 일시적 노동능력 상실자의 경우 일시적보조금을, 6개월 이상 노동능력상실자의 경우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등능력상실년금을 준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연금을 타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었어요. 남자의 노부모가 계세요. 그런데 이 연금 타는 남자 밑으로 부양가족으로 쌀 300g을 받으셨는데,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어르신은 누구 부양가족으로 붙일 수 있어요?) 그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 앞으로 타고, 자식이 없으면 무연고로 해서 동네에서 주거든요. 리나 동에서 무연고로 수속해서 주거든요. (리나 동에서 준다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네. 동사무소나 리사무소에서 수속을 다 밟으면, 거기서 돈을 얼마 준다든가, 배급을 300 준다든가. 무연고는 줘요. 무의무탁이라고 해서 줘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제도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로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로력자 부재세대'는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수령한다. 만약 어떤 가구에서 노부모만 남고 노동가능 연령대의 가구원이 사망 등의 이유로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무의무탁 대상자로 무연고 처리를 하여 정부에서 배급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이라는 게 딱 일을 하다가 그것도 몇 년이라는 노동연한이 있어야 사회보장을 받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한 5년 일했다 그러다 아팠다 그러면 사회보장이 없어요. 단지 사회보장을 받는 것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거나 내가 결핵이 걸리거나 간염 걸렸거나 뇌졸중 걸려서 일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노동연한이 얼마가 된 다음부터 사회보장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사회보장을 줘요. (중략) 남자는 20년, 여자는 15년 그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어쨌든 내가 사회보장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 15년이 안 되어서. 하다가 끊어진 것은 제쳐놓고 쭉 내가 사회보장 받을 때까지 기간이 15년이 안 되니깐 사회보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중략) 그런데 사회보장 대상이 보장비를 받는 대상은 연한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일한 연한이. 그런데 나는 그 일한 연한이 안 되서 사회보장비를 못 받았죠.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제도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6개월 이전에는 국가사회보험에 의한 일시적보조금, 6개월 이후에는 국가사회보장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이 확인된다. 일시적보조금 수급자가 노동능력 완전상실 진단을 받으면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자로 전환되는 내용이다.

또한 제도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경우 일정 근속년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다.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을 위해서는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노동능력 상실 이전에 일정 수준의 근속연한을 충족한 노동자만이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도에서 설명하였듯이 사회보험법에 의하면 직무에 의한 질병·부상으로 불구폐질이 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폐질년휼금의 경우 근속연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직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불구폐질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령별·직종별 근속연한에 따라 폐질년휼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직업 없이 놀 수가 없고. 아파서 진단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것은 일을 못한다, 그것도 일도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노동능력 상실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편의협동조합에서 6시간 정도는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편의노동자로 배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노동능력 상실이 되어야 그 사람이 일을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때부터는 사회보장자가 되는 거고요. 사회보장자는 많지 않아요. 사회보장을 받자면 그 수속이 무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자는 그다지 많지 않고, 모든 사람은 일생동안 40년씩 남자들은 다 일을 해요. 그리고 직장 이동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한 직장에 고정되어서 살거든요. 직장을 일곱 여덟 번 옮겼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병원 생활 오래하고 거기 사회보장금 막 안 줘요. 북한도 장애판정 받는 것처럼 판정이 다 있어요. 판정 다 받고 이 사람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진단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일을 못 한다. 우리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진단되는 것처럼 북한도 똑같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단해서 일 못한다 하면 사회보장으로 떨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보장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에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자가 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완전한 노동능력 상실이 되어야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자가 될 수 있

다. 6개월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보조금을 받다가 노동능력이 회복되었다고 판정되면, 1개월 이내에 해당 노동자는 경노동 일자리로 국가에 의해 배치된다(사회보장법 제15조). 또한 사회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로동능력상실에 의한 사회보장자는 정기적으로 로동능력에 대한 의학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사회보장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게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때가 그게. 원래 만 60세인가 지나면 정년퇴직으로 알고 있는데, 50세에 할 수도 있고, 40세에 할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러면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받는 거죠. (남/30세/무산/군인/2012년 탈북)

로동능력상실년금은 로등능력상실자로 인정되면 지급되므로 년로년금과 달리 은퇴 연령 이전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남자가 60세 전에 사회보장비 받다가 60세 지나면 연로보장비로 바뀌나요?) 61살까지 일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못했으니 61살 전이니깐 무조건 사회보장이지, 년로보장 대상자가 아니지. 이게 사회보장이니깐 기본 로임에 따라서 사회보장비는 받습니다.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은퇴 연령 이전부터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수급하였던 자가 남자 60세, 여자 55세의 은퇴 연령을 넘겼을 경우 년로년금 수급자로 전환됨 없이 사망시까지 계속 로동능력상실년금을 받는다는 진술이 있다.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자는 대개 년로년금 수급요건 중의 하나인 근로연한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년로년금 수급개시연령이 도달하였다고 이유로 년로년금 수급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이다. 즉 노동능력 상실자가 근속연한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의 노후소득보장은 로동능력상실년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환될 수 없다는 것은 곧 년로년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의 병급 수급이 불가하다는 의미도 있다.

(만약에 연한을 채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35년간 일하고 사회보장비를 한 1~2년 타다가 61세가 되버렸죠.) 그럴 때는 변경을 해줍니다. 연한이 제대로 됐을 때는 될 수 있습니다. 61세까지 일 해야 되는데 60세까지 일 못해서 한 1년 사회보장비를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깐 이게 사회보장비나 년로보장비나 비슷합니다. 국가 공로가 없이는 그 돈과 이 돈이 비슷합니다.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55세부터 몸이 아파서 논다 그러면 사회보장비를 준단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보장해준다는 뜻에서 사회보장이 되겠지요? 사회보장비를 주는 게 년금액수와 비슷하단 말입니다. (중략) 장애로 계속 받으나, 연로보장비로 받으나 똑같은데. 그거 힘들게 군(郡)에 가서 수속하고 그거 뭐 얼마 되지 않아요.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그러나 년로년금의 근로연한을 충족하고 은퇴 연령 이전에 노동능력을 완전 상실하여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년로년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년로년금 수급자로 전환된다. 년로년금 실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인터뷰 참여자들은 년로년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급여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두 급여 간 급여수준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권자가 년로년금 수급권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하여 크게 개의치 않았을 공산이 크다.

우리 어머니가 분명 사회보장이었는데, 그런 돈을 받은 기억이 안 나요. (남/42세/혜산/군인/2015년 탈북)

본인의 어머니가 분명히 사회보장자인데 로동능력상실년금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내용이다. 제도는 있으나 실제로는 없었다는 진술이다.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도 년로년금과 마찬가지로 시기별, 지역별, 부문별로 급여 집행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년로년금과 마찬가지로 받고 있었다 할지라도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

(노동능력 상실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어떤 사유로 일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럼 (사회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남자들은 도중에 일을 그만둔다는 게 북한에서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여자들의 경우에는 일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근로연령기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이 사람은 사회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노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북한 사회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 국가사회보험 및 국가사회보장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에 종사해야만 한다. 따라서 남성은 노동능력 완전상실자 외에는 모두가 은퇴 연령에 이를 때까지 노동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은 결혼 이후 임신·육아·부양 등으로 가구 내 돌봄노동으로 사회노동을 대신할 수 있다.

세대주가 사회보장 받으면 아주머니가 일을 해야 돼요.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사회보장비는 받았으니까 노력을 상실했잖아요, 상실했으니깐 내가 세대주 되지. 우리 한 집에 식구가 셋이라 하면 이렇게 아들이다 엄마다 아빠이다. 내가 기본 세대주인데 일을 못하거든. 일을 못한다고 해서 했으니깐 이 부인이 세대주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깐 부인이 세대주가 돼서 노동과에 배치된단 말이야. (중략) 남편이 사회보장 받는다면 내가 일해야 돼. 내가 700g 받고 남편이 300g 받고.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1년이 지나도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본다면 그 때는 그 가족 중에서 한 분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이 세대주로 일을 하고 거기에 부양을 붙여서 그렇게 살게 하죠.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아빠가 기본 노력이 안 되니까, 엄마가 대신 기본 노력이 된 거예요. 한 집에 기본 노력이 한 명은 있어야 해요. 남편이나 부인중에 한 명은 있어야 해서. 아빠가 사회

보장을 받으니까 엄마가 자연스럽게 기본 노력이 된 거죠. (여/42세/무산/농장원/2007년 탈북)

남편이 없다보니까 어쨌든 직장에 붙여놓고 있어야 돼요. 어디다 부양을 붙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만약 세대주가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가구 내 다른 가구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노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가구의 경우에도 최소한 1명 이상의 가구원은 노동을 해야 그 부양가족원에게 배급이 지급되는 것이다.

(오빠가) 정년퇴직을 하기 전에는 엄마, 아버지를 부양으로 붙이고, 와이프도 붙이고, 거기다 붙여서 300그램씩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빠가 정년퇴직을 딱 하면, 나머지 꼬리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가구원 중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 배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업무와 무관한 일시적 노동능력상실에 의한 일시적보조금 수급 이후 회복되지 못하여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해 지급된다.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은퇴 연령 이전이라도 노동능력 완전상실 판정이 있으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정한 근속연한이 있어야 한다. 은퇴연령 이후라 하더라도 년로년금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로동능력상실년금이 노후소득보장의 기본 제도로 작동한다. 실제로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수급은 매우 어렵다.

2)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탄광에서 일하다가 허리 다쳐서 굴이 무너져서 척추 다쳤습디다. (중략) 그렇게 해서 그저 일 못하고 사회보장 받고 있었지.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사회보장금은 국가의 일을 하다가 다쳤잖아요?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 사회보장금이고요. (여/42세/무산/농장원/2007년 탈북)

제도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업무에 관련된 부상,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면 사회보장금, 즉 로동능력상실년금을 받는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업무상 재해이건 아니건 로동능력상실 시 받는 급여를 사회보장금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발목을 다쳐서 다리를 절거든요? 그 사람들 여기로 말하면 몇 급 장애인 이잖아요. 그런데도 일을 했어야 되었어요. 경노동의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분은 일을 하셔서 사회보장으로 못 넘어가고, 몇 시간제 경노동을 하셨어요. (여/42세/무산/농장원/2007년 탈북)

척추가 마비됐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쉬고 지내보다가 안 되겠다 할 때는 사회보장으로 넘기고. 팔이 부러졌다든가 다리가 끊어졌다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회복되면 또 다른 데서 일할 수 있잖아요. 탄광 바깥부문에서도 일하는 게 많거든요. 거기 부서가 많거든요. 재봉도 있고, 선반, 볼트 깎는 데도 있고, 상도 만들고 등등 탄광에 속한 그런 데에다가 배치하지요. 배치해서 일시키죠. 뇌에 마비가 왔다든가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탄광에서 계속 봐주다가 사회보장으로 넘기죠.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다친 경우에 따라 마비가 왔다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로동능력 상실이니까 사회보장으로 넘겨줘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제도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로동능력 상실의 경우

에도 로동능력 완전상실의 경우가 아니면 경노동에 종사한다. 만약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라면 '사회보장으로 넘어가는', 즉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수급한다.

저희 아빠는 농장에서 양수기 운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전기기술 이런 것을 하다가 전동기 안쪽에 발이 끼인 것을 도와주다가 아빠가 다리가 절단되었거든요. 그 일로 해서 국가의 일을 하다가 다쳤으니까 국가가 보장해준다고 해서 사회보장금을 받았었어요. (중략) 아빠는 사회보장을 받고 경노동을 했죠. (중략) 사회보장도 완전히 장애인이 아니면 일을 내가 해야 해요. 4시간 근로노동 인정, 6시간 근로노동인정, 3시간 2시간 근로노동인정이 있어요, 사회보장이라고 해도. 그 때 아빠가 사회보장금만 받고 다른 급여 없이 대신 뭐가 있냐면 분배가 있었어요, 일을 하니까. 그 분배가 뭐냐면, 식량 있잖아요, 곡식. 그것을 아빠가 대신 받았어요. (여/42세/무산/농장원/2007년 탈북)

제도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시적 보조금은 농민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농장원은 농장업무 과정에서 다리 절단 사고를 당했지만 로동능력 완전상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노동에 종사했다. 사회보험법에 의하면 해당 농장원은 제2류 폐질연휼금을 받으면서 경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폐질년휼금 제2류 기준 중 '일편하지를 상실하여 또는 그 작용이 전폐된 자'가 있는데, 위의 농장원은 다리가 절단되었으므로 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농장원은 노동자처럼 매월 받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임금 없이 보조금만 받고 년간 분배를 받는다.

(로동능력)상실되어서 받는 연금? 이 사람 탄 적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와이프하고도 친한데 이 집 이 사람이 큰 공장 기업소 건설 직장에 다녔는데 남자는 건설 직장에서 높은 데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노는 때가 많았는데, 직장에서 배급표는 나와요. 거기에 딸린 식구가 있으니깐. 배급표는 나오는데 와이프는 제가 동 단위로 식료상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식료상점 판매원 이예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로동능력이 상실되었지만 로동능력상실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배우자가 세대를 대표하는 로력자가 되었으므로 기존 세대주는 부양가구원으로서 배급은 받았으나 현금지급은 없었다는 진술이다. 따라서 년로년금과 마찬가지로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과 부문도 존재한고 할 수 있다.

3)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은 젊었을 때 군인 하다가 다리가 잘리거나 그러면 영예군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예군인 대상부류에 따라 급수가 나옵니다. 장애인들 1급, 2급 하듯. 그렇게 나오는 거에 따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특류 영예군인 그 다음에 부류가 있거든요. 일류, 이류, 삼류. (중략) 눈이 특류 영예군인일 거예요. 그 다음에 팔다리가 일류. 팔다리가 완전히 없는 것. 다리도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일류일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이 한쪽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류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삼류까지 있는데. (중략) 특류 영예군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방 기관들에서, 예를 들어서 군이나 리에서 쌀 같은 것은 대줄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아무런 생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반신 마비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거의 특류 영예군인에 속해요. 다니지 못하니까, 하반신 마비는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여를 한 정도에 따라서. 내가 사람 한 명을 구원하면서 내가 다쳤다. 그 다음에 김부자 3대 초상화를 하면서 어떻게 또 다쳤다. 이런 정치적...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많이 첨가 되거든요. (남/42세/혜산/군인/2015년 탈북)

제도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영예군인의 경우에도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복무중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할 경우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을 받는다. 또한 재해의 정도에 따라 급수별 차등급여를 받는다.

(사회보장을 받다가, 60세가 되면 영예군인들은 연로보장으로 바뀌나요?) 아니에요. 그냥 사회보장으로 받아야죠. 그냥 가겠죠. (남/42세/혜산/군인/2015년 탈북)

영예군인들의 경우에도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년로년금 수급개시 연령이 된다 하더라도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자로 남아 있게 된다. 영예군인의 경우 대부분 근로연한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사망시까지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물 박스가 이렇게 커요. 거기에 양복도 있고 술도 있고 뭐 놓고 뭐놓고 그래서 정말 엄청 좋은 고급술이랑 이런 거 보내주거든요. (중략) 영예군인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 아직 일할 대상이니깐.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대우는 좀 있어요. 북한이.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북한에는 각 도, 시, 군, 구역들에 영예군인공장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영예군인들만 일하는 데. 거기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자기 육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국가에서 여느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중략) 기차를 타도 영예군인 좌석이 따로 있고. 식당을 가도 영예군인 식탁이 따로 있고. 공로자, 영예군인 식탁들이 따로 다 있고. (남/45세/청진/군인/2011년 탈북)

영예군인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가니까 그냥 팔 못 쓴다고 해서 그런 것 없이 일반 사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런 대리급 되는 것. 북한은 지도원이거든요. 외삼촌한테 그런 것부터 자리를 주더라고요. 영예군인은 되게 대우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남/30세/무산/군인/2012년 탈북)

영예군인은 사회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양복, 술 등의 생필품 현물급여, 기차, 식당 등에서의 특별좌석, 영예군인들이 운영하는 자체 공장, 일반 공장에서의 높은 지위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특권을 누린다.

나. 급여

1) 로동능력상실년금 급여수준

사회보장비라는 게 갱에서 나가서 일하다가 이렇게(=갱 붕괴로 척추 손상) 되니깐 사회보장비를 27원을 줍디다. 매월 27원. 그리고 식량은 300g. (여/77세/경원/식당 노동/2004년 탈북)

(2000년대) 사회보장비가 700원이였어요. 700원인데, 그 후에 쌀값이 비싸졌잖아요. 그래도 2009년도 12월 1일에 화폐교환을 했거든요. 화폐교환을 한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돈이 엄청나게 작은 돈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게 하루와 다르게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전만해도 2011년도 그때 쌀값이 5,000원. 700원 타가지고 쌀 1kg 사기가 힘들잖아요. 500원이면 100g 사는데, 1kg에 5,000원이니깐.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여자가 (연로보장 수급연령이) 56세인데 사고가 나서 50세에 퇴직을 했어요. 사고가 나서. 퇴직된 다음에 돈을 줘요. 한 달에 20원씩 줘요. (남/77세/평양/대학교원/2007년 탈북)

위의 인터뷰 참여자들이 기억하는 로동능력상실년금 급여액은 시기, 지역, 부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김일성 시기에 탄광노동자였던 남편이 갱내 붕괴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로동능력상실년금을 받았을 당시인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월 27원에 쌀 300g을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월 20원씩 지급했다는 진술도 있으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사회보장비가 700원이었다고 기억하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로동능력상실년금 급여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김일성 시대(1990년 초반까지), 김정일 시대(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까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인터뷰 참여자들의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급여수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Ⅳ-7〉과 같다.

〈표 Ⅳ-7〉 시기와 대상에 따른 급여수준 및 급여주기: 로동능력상실년금

참여자	시기	수급자(사유)	급여수준	급여주기
6	68.07~72.04	탄광노동자 (갱내 붕괴에 따른 척추손상)	27원, 300g	계속 지급
12	김일성(80년대)	농민	15원, 기본노력 농장원의 분배량	지급
21	김일성(80년대)	공장 사무원(허리부상)	20원대	3년 지급
13	김일성, 김정일	일반 노동자	20원	
6	김일성, 김정일	일반 노동자	월급의 40%	
5	김일성	일반 노동자	월급의 70%	
11	김일성, 김정일	일반 노동자	월급의 70%	
16	김정일	공무원 (뇌혈전)	월급의 60-80%	
16	김정일	일반 노동자	30원, 300g	
23	7·1조치 이후	군관제대 후 당비서(뇌출혈)	700원	간헐적 지급
5	7·1조치 이후	공무원(결핵)	700원, 300g	간헐적 지급

주: 1) 급여액이 가장 낮은 순부터 기입
2) 인터뷰 시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자의 배급량에 대해 따로 진술하지 않은 경우, 연금액만 기입하였음. 따라서 특정 대상자가 연금액만 있고 배급량이 없다고 해서 배급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님

2) 로동능력상실년금 전 일시적보조금의 급여수준

(사회보장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기업소 다니다가 아파서 6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지나면 없어집니다. 퇴직되죠.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사회주의로동법에서 일시적보조금의 지급 기간을 6개월 한도로 설정

하고 있는 규정과 동일하다. 6개월이 지나면 퇴직 처리가 되어 기업소에 적을 두지 않고 동사무소로, 즉 '사회보장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다.

입원을 해도 자기 임무를 수행하다 6개월 동안 출근을 못하면, 월급의 30% 떼고 주고. 가정은 어쨌든 유지해서 가야하니까. 1년 이상이 넘어가고 투병생활을 하면, 50%를 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중략) 처음에 3개월부터 6개월 안에 출근을 못하면, 월급의 30%를 뗍니다. 기본 월급이 옛날의 국정가격으로 2,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30%를 떼고 받습니다.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한 달 동안에는 100% 못 받고?) 100% 받고. 주고. (세 달까지는 100%에요?) 네. 세 달까지는 100%를 주지. 3개월까지는 주고. 3개월 지나서 6개월까지는 30%를 떼서 줍니다. (30%를 떼고. 6개월이 지나면?) 지나면 50%를 뗍니다. 그 때부터 인사조정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략) (그러면 6개월부터 언제까지 50% 입니까?) 6개월부터 1년간에. (중략) (그 다음부터는 13개월째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자동 그걸로(=사회보장으로) 되던데. 안 되는 걸로 되는.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위의 진술에서 노동능력상실 기간 6개월 시점과 1년 초과 시점에서 임금 대비 급여 비율이 각각 다른 것은 전자의 경우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 후자의 경우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에 의해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비는 일할 때 내가 다쳐서, 아프거나 병원진단으로 못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입직(=입사)해서 1년까지는 결근으로 무단결근으로 안 봐주고 돈 없습니다. 배급은 주고. 그렇지만 1년 지나면 1년부터 3년까지는 자기 로임의 50%. 아파서 진단서 떼어왔을 때. 그 다음에 7년 이상은 로임의 70% 이렇게 줍니다. 3~5년까지는 자기 로임의 50%. (중략) 입사날짜가 1년 못 됐으면 그 사람은 진단비가 없단 말입니다. 1년이 지났으면 1~3년까지는 (로임의) 50%, 7년까지는 50%, 7년 이상은 70%.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일시적보조금도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년한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사회보험법 제53조에 의하면 일시적보조금 제3급[11]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전 기간 동안 임금의 60%,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자의 경우 최초 20일 동안은 60%이고 그 이후는 65%, 근속 3년 미만자는 최초 20일 동안은 65%이고 그 이후는 75%, 근속 3년 이상 근로자는 최초부터 75% 등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근속 1년 미만자도 일시적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회보험법 제16조에 의하면 보험료를 만 7개월 이상 계속 납부한 피보험자만이 수급권을 가지기 때문에, 근속 7개월 미만 근로자는 사실상 일시적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비록 위의 진술이 근속년수 및 임금 대비 지급비율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의 일시적보조금 규정과 그 수치는 불일치하지만, 진술에서 나타나는 지급의 기본 틀은 사회보험법의 해당 규정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근속년한에 따른 급여는 일시적보조금과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에도 적용되는 기준이다.

내가 일하다가 우리기업소에서 사망하는 것도 있고 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진단이 되면, 그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돈이 나와요.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노동능력상실자에 대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사회보장자가 사망할 때까지이다.

11) 광산의 일반노동자 및 공업, 철도, 체신, 수운, 육운, 어로, 토목, 건축, 노동자, 교원, 의술인

3) 소득비례의 원리: 생활비

자기가 퇴직하기 전 사회보장 넘기 전 자기가 돈을 얼마큼 탔느냐 거기에 한해서 사회보장비가 규정되는 거죠.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환자로 자기 로임의 몇 퍼센트인가를 주면서 배급을 주고...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거기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인 경우, 뭐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돈이 얼마 자기 돈 타던 데에서 70%인가 나와요.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사회보장으로 넘어가는 분들은 사회보장액수가 있어요. 월급의 70%인가. (여/78세/청진/중등교원/2005년 탈북)

뇌혈전이셔 가지고요. (중략) 아버지 앓는다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월급은 아마 60%를 줬는지 80%를 줬는지 그러더라고요.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로동능력상실년금액은 로동능력상실 이전 소속 직장의 임금에 기반을 두어 결정되는 소득비례의 원리이다. 임금의 몇 %를 로동능력상실년금으로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임금의 40%, 60%, 70%, 80%로 차등이 있다. 사회보험법의 폐질년휼금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직무 관련 질병·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제1류 폐질자는 최근 1년간 평균임금 연액의 90%, 제2류는 65%, 제3류는 35%의 지급한도를 갖는다(사회보험법 제82조). 따라서 로동능력상실년금이 임금의 몇 %인지 의견이 다양한 것은 노동능력상실자의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장애정도에 따른 급여

북한은 사회보장금이 있어요. 사회보장금이라는 게 여기 진단비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회보장비가 있어요. 그 때 저희 아버지도 제가 처녀 때인데, 일 못해서 허리를 다쳐서 사회보장을 3년인가 받았어요. 그 때 20얼마인지의 사회보장금을 받았어요. (중략) 그게 부류에 따라 또 다르겠지요. 받았어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위 진술에서는 인터뷰 참여자의 아버지가 북한에서 허리 부상으로 3년간 월 20원대의 로동능력상실년금을 받았으며, 이 액수는 부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5)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급여수준

120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중략) (120원) 그거는 사회에서는 받을 수 없고, 군대에서 무슨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동네 한 분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 군관 제대군인인데 그 분이 하반신 마비로 장애 판정을 받고 나왔는데, (중략) 그 분이 120원을 받았어요. (중략) 받으러 같이 가니까. 근데 그래서 '저건 어떻게 120을 받지?' 그 집 와이프가 이랬어요. "우리 남편이 군대에서 너무 많이 공을 세우고 이래서 받는다." 이랬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때 120원 받은 사람은 만 60세 이상의 남자 였나요?) 아니에요. (만 60세 이하였어요?) 네. 이하에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위의 진술은 로동능력상실년금을 받는 영예군인에 대한 진술이다. 김일성 시기 당시에 12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시기의 년로년금액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액수이다. 영예군인이므로 공로가 인정되어 로동능력상실년금 액수 역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 전달체계

그 진단서와 확인이 다 들어 가야되. 그래서 확인이 돼서 행정위원회 사회보장과가 있어요. 그거 담당하는 사람한테 문건을 제출하면 어느 동에서부터 병원에서 다 해오라고 그래. 그거 다 해가서 조건이 되면 사회보장자가 되죠. (남/77세/평양/대학교원/2007년 탈북)

이 돈은 1%에 한한 건 군 사회보험과로 가면 이거는 동사무소로 가게 됩니다. 이런 돈은 다 모아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했다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략) 이 돈이 모여서 사회보장비로. 시 행정위원회 사회보장과로 갔다가 이 돈이 진단서... 내가 아파서 진단을, 내가 감기가 왔다 어쨌든 앓으면 일 할 수 없다는 진단서를 떼 줍니다. 그러면 그 진단서를 가져다가 기업소에 바치면 그 진단서 날짜에 의해서 나오는 돈을 이 돈이 댑니다.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아파서 일을 못하는 사람은 진단서류 엮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사회보장, 년로보장 받는다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받습니다.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사회보장으로 넘기면 구(=로동자구)에서 사회보장금이 나오지요. 기업소에서 넘기면 사회보장금 줘요. 넘기면 해당하는 구에서 수속이 되어 은행가서 돈 타다가 사회보장비를 줘요. (중략) 한 달에 한 번씩 줘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위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소속 기업소·기관·단체 등은 로동능력상실년금 신청자의 신청문건을 진단서와 함께 해당 기관(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해당 인민위원회 등)의 사회보장담당부서에 신청한다.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를 거친 후 승인을 한다. 동사무소 지도원은 은행에서 사회보장비를 수령하여 동사무소로 가져 온다. 해당 노동자는 사회보장자로 등록되어 사회보장금증서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월 단위로

수령할 수 있다.

그 돈도 사실 동사무소에서 타는데 그것도 못 줄 때도 많아요. 주면 받고 안주면 못 받는 거죠. 그 후에 밀렸다 준다준다 했다가 못 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그런데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는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는 못사니깐 바라보지도 않고 살았죠.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노동능력상실연금도 년로년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 경제난이 본격화되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90년대부터는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공급부족에 따른 암시장의 성행 그리고 장마당 물가의 급등에 따라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실질가치가 크게 저하되면서 로동능력상실년금에 대한 북한 주민의 관심도 매우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위원회에서 다 관리를 하죠. (중략) 관리위원회 안에서 통계원이나 관리지도원 그런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돈은 거기에 가서 받고요. (여/42세/무산/농장원/2007년 탈북)

농민의 경우 기본적으로 농장 관리위원회에서 사회보장비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농장법 제19조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는 농장의 집행기관이고 “농장의 생산, 로력, 자재, 재정, 후방, 수매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 기관이다. 사회보장금의 수령 날짜가 다가오면 관리위원회의 담당자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온 후 농장 관리위원회를 방문한 해당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로동능력상실년금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의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8〉 로동능력상실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구분		실태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결과	설명
적용대상		6개월 이상의 장기적 로동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혁명투사와 그 부양가족, 로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로력자 부재세대에게 적용됨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경우 일정 기여기간을 충족해야 지급됨	○	제도상의 적용대상이 확인됨 6개월 기준도 일치함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경우 기여기간 충족 요건이 확인됨 다만, 귀국공민 검증 안 됨
급여	급여여부	시기별, 지역별, 부문별로 급여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함	△	대부분 수령함 그러나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수급경험 없음이 확인됨
	급여종류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재해, 일반, 영예군인의 급여종류에 따라 구분됨	○	로동능력상실년금의 3가지 급여종류가 확인됨
		일시금을 받아보지 못하였음	×	폐질일시금은 제도로만 존재
	급여수준	소득비례의 원리가 반영됨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급여임 업무기인성과 업무불기인성으로 구분됨 일시적보조금 또는 년로년금 수급시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이 불가함	△	소득비례 원리가 확인되나 각 노동강도 및 근속연한별 평균임금의 몇 % 반영되는지 확인 안 됨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급여가 확인되나 각 등급별 급여수준은 확인 안 됨 직무관련 여부로 구분됨 이중급여 수급 불가 확인됨
재원		사회보험료가 있으나 실제 금액이 작아 비율을 계산한 응답자는 없음 기업소에서도 납부하나 실제 비율은 확인 못 함	△	통합 사회보험료
전달체계		신청과 지급절차는 모든 년금제도가 동일함 영예군인도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수령함	○	통합 전달체계

3. 유가족년금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도 없죠. (돌아가셔도 나머지 가족들에게 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이혼을 안했더라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에게 연금수급권이 오나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건 본인한테 오는 거예요. (중략) 그 사람만 없어지면 (년로년금 수급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돌아간 다음에 없지. 죽은 사람이 없는데 왜 나를 주겠어.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어떻게 그것을 승계할 수 있나요? 못 받죠. 남편 보조금에 대해 본인이 없는데 가족이 어떻게 그것을 승계 받아요? 본인이 노동연한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돈이 나온 것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 가족에게 못 넘겨주지요. 안돼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일을 안 해도 남편이 일함으로 인해 거기에 붙어서 배급도 탔거든요. 남편은 연로보장 나이 되어서 연로보장을 받았지만, 아주머니는 노력자로는 안 되거든요. 남편이 죽으면 일 해야 해요. 연로보장 나이가 지나서 남편이 죽었으면 괜찮고. 연로보장비로 남편 것은 못 하고, 아내가 일을 해서 식구들 다 먹여 살려야 해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유족년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아버지는 군인년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하나도 못 받았어요. (중략) 자식이 먹여 살리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엄마가 밤낮 년금 자랑하더니, 하나도 쓸 필요 없다 이러면서 날 보고 아버지 욕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유가족년금을 수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년로년금 수급자 또는 년로년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더라도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승계되거나 유가족년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남편이 죽으니깐 40원이 나한테로 나온 거예요. (중략) 그것도 일정하게 주다가

90년대 말에 가서는 없어졌어. 뚝 끊어졌어. 그때부터 돈을 못주니깐. (중략) 국가 일을 하려고 나갔다가 차사고로 돌아갔어요. (중략) 본인이 94년도에 그거 받아놓고 94년도에 사망했잖아요. 사망한 뒤로는 나에게로 97년까지 (중략) 나왔어요.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업무기인성, 즉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3년간 유가족연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배우자의 수급기간 연령은 38세부터 40세 사이였으므로 제도상의 '여성 55세 이상이라는 유가족 연령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년금은 사회보장비는 그 사람이 죽으면 다예요. 그 가정에 식구가 많건 적던 상관이 없이 돈은 없어요. (중략) 북한에는 딱 당사자에게만.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반면 년로년금뿐만 아니라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에게 수급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이상과 같이 유가족연금은 제도상에서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다만 업무기인성의 경우 유가족연금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다.

이상의 유가족년금에 대한 적용대상과 급여의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9〉 유가족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구분	실태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결과	설명
적용대상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제도 존재 자체에 대하여 부정함		×	유가족연금 제도 자체가 없다는 진술이 대부분임 다만 직무 중 사망한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3년간 유가족연금을 받았다는 진술 있음
	직무 중 사망한 배우자가 유가족으로 확인되나 연령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	적용대상 중 배우자는 확인되나 연령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급여	급여종류	유가족년금은 3가지 급여종류에 따라 구분되지 않음	×	3가지 급여종류를 특정할 수 없음
		일시금을 받아보지 못하였음	×	유가족일시금은 제도로만 존재
	급여수준	소득비례의 원리를 확인하지 못함 유가족 수에 따른 차등급여를 확인하지 못함 업무기인성의 경우 수급경험이 있으나, 유가족 수에 따른 급여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움 업무불기인성의 경우 수급경험을 확인하기 어려움	△	소득비례의 원리를 확인하지 못함 유가족 수에 따른 차등급여를 확인하지 못함 직무관련 여부로 구분 가능

4. 공로자년금

가. 적용대상

먼저 공로자년금의 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공로자년금이 별도의 특별연금제도로 이해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일반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군인들만 가입하고 군인들에게만 연금을 주는 군인연금, 공무원들이 따로 하는 공무원연금, 그리고 교사들은 교직원연금 이렇게 따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북한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북한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하는 거지. (군인들은?) 군인들도 같고, 노동자도 같고. 군인들도 내가 군복무를 25년 끝나고 나오면 나도 뭐 국가적인 혜택에 의해서 받는 거죠, 국가. 무슨 어디 국민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통으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죠. (혹시 유급 당 간부라든지, 보위부나 안전부 이쪽 사람들을 위한 연금제도가 따로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이제처럼 그런 게 없다고요. 여기는 그런 게 갈라져 있지만, 북한은 내가, 글쎄요, 군이 되었든 보안을 했든 보위원을 했든 똑같다고요. 년금 받는 것은 국가적인 혜택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이 공무원을 해서 공무원년금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없다고요. 똑같은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연금 받는 액수는 동일합니까?) 액수는 자기가 세운 공로에 따라 좀 다른 거죠. 내가 국가에 특출한 공로를 세웠다면 국가가 그만큼 더 주는 거고, 어쨌든 20년 이상 노동자를 했든 뭘 했든 그 사람은 국가에 기여한 걸로 되잖아요. 그만큼 자신의 노동력을 받쳐서 했든 뭘 했든 분야가 서로 다르다 뿐이지 기여한 것은 똑같은 거니까요.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죠. 내가 남보다 더 특출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여기로 말하면 가산점이 좀 붙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45세/청진/군인/2011년 탈북)

공로자년금은 별도의 연금제도로 보기 어려우며 모든 근로자, 군인, 공무원 등은 동일한 단일 연금체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에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는 국가가 그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 특별한 급여체계가 작동시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공로자년금 적용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높은 훈장이 김일성훈장이죠. 그 다음에 김일성 표창, 그 다음이 국기훈장 1급, 로력훈장, 국기훈장 2급, 국기훈장 3급.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북한의 훈장 순서를 말하면 로력영웅 칭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기훈장 1급이 있고. 그 다음에 로력훈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국기훈장 2급이 있고, 그 다음에 3급이 있고, 그 다음에 공로메달이 있고. 공로메달이 제일 하질이지. 그렇게 6가지가 있어

요. 군대에 보면 리순신훈장도 있고 그렇긴 하지요. (중략) 김일성훈장 있죠. 그것은 뭐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나눠가지는 거니까. (중략) 그건 꿈에도 생각 못하죠. 우리 군(郡)이 30만 명이 되는데, 김일성훈장 탄 사람이 없어요.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가장 위에는 김일성훈장이에요. 그 다음에 노력영웅 영웅칭호 받는 사람들. 노력영웅도 있고 공화국영웅도 있고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노력영웅이라는 건 일 잘한 사람들이고 공화국영웅은 나라에 특출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 (중략) 그 다음에 국기훈장 1급이에요. 그 다음에 2급, 3급이에요. (남/45세/양덕/군인/2007년 탈북)

영웅메달, 김일성훈장, 그리고 공화국영웅 칭호, 국기훈장 이라고 있고. 1급부터 3급까지 있어요, 이것도. 1급이 최고로 높은 것이고. 1급은 노력영웅이라고 또 있거든요. (남/30세/무산/군인/2012년 탈북)

제도상으로는 다양한 훈장이 서열대로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북한 훈장은 서열상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국기훈장 1급, 로력훈장, 국기훈장 2급, 국기훈장 3급, 그리고 기타 공로메달 1·2·3급 등의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이 포함된 훈장을 받을 시 그 급수는 국기훈장 1급이 되어 공로자년금 대상에 포함된다.

나도 국기훈장 2급에 공로메달... '골고루 메달'이라 해요, 북한에서는. 왜 '골고루 메달'이냐. 나는 지금 국기훈장 2급타고 메달까지 총 3개란 말이에요. 4개부터 되는데, 3개 탔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하나 더 주려고 애매 하니깐, 또 공로메달 하나 신청을 해요. 그럼 4개 돼요. 너 나가서도 600g에 60원 타라고 서로 어울려서 도와주죠. 그 다음에 2개밖에 없다 하면 또 추천해서 타고. 대학에 당 위원회가 있어요. 당 위원회에서 하니깐 "이 사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타고. (남/77세/평양/대학교원/2007년 탈북)

대학교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 노동자에 비해 국기훈장과 공로메달을 받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원의 경우 공로자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공로자년금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원들은 30년 교원 생활을 하면 600에 60을 줘요. 우리 둘째 언니도 평양에서 교육자였는데, 600에 60을 벌었어요. (중략) (언니는 교원 30년을 해서 600에 60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원 30년을 해서 받으신 건지, 아니면 교원을 30년 정도 하면 국기훈장 1급을 주니까 받는 건지?) 그게 다 동반되죠. 30년 되면 그런 것을 다 타게 만드니까.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우리 교원들 30년이면 600에 60 받는다. 또 나도 적용 받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겠는데, 일반 로동자들은 몇 년인지 사무직도 몇 년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여/78세/청진/중등교원/2005년 탈북)

초·중등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 노동자에 비해 국기훈장과 공로메달 수여가 용이하다. 교원으로 30년 이상 근속시 공로자년금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훈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는가 하면, 실례로 당에서 보기에 이 공장이 잘했다고 할 경우, 거기에 훈장을 배정해 주거든요. 국기훈장 1급이 2명, 3급은 3명, 공로메달은 몇 개 이렇게 주거든요. 그거를 당에서 통보 내려오면, 간부들 모아 놓고 "우리 공장에 이 만큼이 떨어졌는데 지배인 하나 가지시오, 기사장 하나 가지시오, 지도원 하나 가지시오" 하면 로동자들은 찾아줄 게 없거든요. 북한이 항상 그렇죠. 간부들이 나눠 먹는 훈장이 되고 말지. 우리 공장이 600명이 있었는데, 로동자가 탄 게 불과 10명이 안 돼요. 하나라도 타 본 사람이. 간부들은 거의 다 되고. (중략) 600에 60원씩 타는 사람이 불과 5%도 안 될 거예요, 600명 가운데.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유급당원의 경우 일반 노동자에 비해 국기훈장과 공로메달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한 개 회사에 예를 들어서 공로자 훈장이라는 것은 명절 때마다 주는데, 김일성

생일, 노동당 창립일 뭐 이럴 때 가끔가끔 주는데 정말 회사에 겨우 1명 정도? 3급 이상짜리 나오는 것은 거의 (150명 중) 1명도 되나 마나야. 참 힘든 일이야.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북한에서 노동자가 훈장으로 600에 60을 탄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노동자에게 누가 훈장 줍니까? 내가 자랑은 아니지만, 꾸준히 일을 잘했는데, 공로메달 2개 탔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것도 일반노동자들은 40년 일해도 공로메달 못 타요.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600g에 60원이라는 것의 기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군대 훈장은 여러 개 받았지요. 그런데 군대 기준은 또 달라요, 훈장이. 그러니까 공화국영웅, 영웅에 국기훈장 1급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급에서만이 600g에 6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준이 너무나 국부적으로 극소화되어 있지요. 많이 못 받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 오빠도 거기서 고위급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00g에 60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거기서는 김일성표창을 하나 받으면 공로자에요. 그거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거든요. (중략) 그 상을 받으면 그 사람 일생 먹고살아요.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공로 있는 분들은 로력훈장을 받았다고 하면 배급 600그램에 60원을 줬어요. 로력훈장은 군(郡)에 1명도 받기 힘들어요. 내가 한 직장에서 30년을 너무 일 잘해서 뉴스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 주는 거예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김일성청년영예훈장이라든가, 김일성청년영예상을 받으면 1급이에요. 600에 60이에요. 그리고 국기훈장 1급을 받는다든가, 국기훈장 1급이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이고. 청년훈장도 하늘의 별따기이고. 그 다음에 로력영웅. 로력영웅도 별따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600에 60이에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내놓고는 일반에서는 뭐 직종에 관계없이 연로보장은 다 비슷해요. 공로에 따라주기 때문에.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반면 일반 근로자들이 국기훈장을 수여받기는 쉽지 않다. 공로메달을

2개 수상하였으나 추가적으로 국기훈장을 수여받지 못해 공로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공로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로자 연금은 잘 모르겠어요. (농장원들 중에서도?) 네. 있어요. 농장원들도. (중략) 금액이 좀 더 다른 것 같던데. 농장원들도 일을 열심히 잘 하잖아요. 몇 공수 하듯이 일을 잘하면 국기훈장 1급, 2급 주는 게 있어요. 1급 받고 2급 받고 그러면 공로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어요. (여/42세/무산/농장원/2007년 탈북)

농장에서 공로를 세워서 국기훈장 1급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60원을 받고. (남/42세/혜산/군인/2015년 탈북)

물론 농민들도 공로자가 될 수는 있다. 이상과 같이 누구나 공로자가 될 수 있으나 공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기훈장 또는 공로메달을 수상해야 한다.

나. 급여

1) 공로자년금 급여수준

공로 있는 사람들은 60원 줬으니까.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저희 남편이 보훈대상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공로자. 그러다보니깐 그 사람이 살아서 연로보장을 받으면 60원을 가지게 돼 있어요.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남편이 살았으면 남편은 60원을 탄다. 남편이 급여가 150원이거든요. 그니깐 60원을 타는데 이제처럼 딱 정해져 있어요. 김일성표창은 돈이 얼마, 국기훈장 1급은 돈이 얼마, 인민병원은 돈이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사회주의를 할 때 600에 60원이 구호였거든요? 쌀 600g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돈보다도 쌀이 중요했죠. 왜냐하면 쌀은 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훈장 받은 정도에 따라 주기 때문에. 국기훈장을 두 개 받겠나 세 개 받겠나 여기에 따라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받느라고 선생들이 무지... 나는 그 때 아직 어렸으니까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그것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학 선생들은 거의 은퇴할 때 쯤 되면 다 600에 60 대상이 거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훈장을 다 받으니까.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공로자는 자격을 인정받으면 제일 최하가 600에 60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나 일반 노동자는 최하 15원부터 시작.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연로보장 받아도 공로자인 경우에는 쌀을 600g줘요. 그런데 공로자가 아닌 경우는 300g 주거든요.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일을 잘해서 국기훈장 1급 탔을 때는 국가에서 돈 60원에 배급 600g줬죠.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훈장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600에 60이라고 있어요. 퇴직연금처럼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거는 아닌데, 나 그만큼 공이 많다 해서 가슴에 이렇게 다 달잖아요, 무겁게. 훈장가격이에요, 그게. (남/30세/무산/군인/2012년 탈북)

년로보장비를 더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공로있는 사람들. 국기훈장 1급 있는 사람들은... 그 때 배급이 년로보장 받는 사람들은 300그램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기훈장 1급이 있는 사람들은 600그램에 60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배급도 두 배, 돈은 한 네 배. 이렇게 되었죠.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김일성 시대를 포함하여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에는 공로자가 될 경우 기본적으로 월 60원, 일 배급 600g의 년로보장을 받았다. 공로자에게 배급되는 현금급여는 공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배급량은 수훈 및 표창의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600g이었다.

3급 타서는 뭐 없습니다. (중략) 공로자 연금은 하나 일 때는 김일성훈장을 탔거나 김일성표창 그 다음에 로력훈장, 국기훈장 1급 탔을 때, 이럴 때는 하나만 타도 대상이 됩니다. 국기훈장 2급 탔을 때는 다른 공로메달 붙어서 4개가 돼서 그거까지 5개가 되어야 그 다음에 연금대상이 되는데 그건 돈이 40원이죠. (중략) 국기훈장 2급에 메달 되었을 때는 배급은 600g 주지만 돈은 40원 줍니다.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국기훈장이 2급에 국기훈장 3급이 들어가 있거나, 만약 군대에서 받았다면 전사영예훈장 2급, 3급. 그것도 1급이 있어요. 1급은 600에 60이에요. 그런데 2급, 3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2급, 3급을 받았거나, 공로메달이 또 있거나 이렇게 해서 국기훈장 2급에 쓸데없는 메달이 4개 들어가 있으면 5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때 600에 40원은 줬어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40원 받는 사람이 있고, 60원 받는 사람이 있고.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공로자 중에서도 훈장의 급수와 개수에 따라 년로년금액은 차이가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기훈장 1급 1개는 일 배급 600g에 월 60원, 국기훈장2급 1개에 공로메달 4개가 합산되었을 때는 일 배급 600g에 월 40원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당에 충실해서 훈장을 받잖아요. 그 훈장을 받은 것을 무엇을 받았냐에 따라서 공로를 인정해줘요. 저희 어머니는 국기훈장. 북한에서는 훈장 중에서 제일 큰 훈장이 김일성훈장이에요. 김일성 이름으로 나온 훈장이 있어요. 김일성훈장 다음에 국기훈장이에요. 국기훈장인데, 국기훈장이 1급, 2급, 3급이 있어요. 일을 잘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3급은 한 두 개 거의 있을 거예요. (중략) 국기훈장 3급까지 있어요. 그 다음은 그냥 년로보장으로 나오죠.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국기훈장 1급의 급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3급까지는 다 받아요. 위는 말할 것도 없고. 3급 이상 받아야지 600g에 60원 받을 수 있어요.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국기훈장 3급 하나만으로는 공로자년금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국기훈장 2급인데 2개 탄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600g에 60원 줬지. 공로에 따라서. (중략) 국기훈장 3급타고 공로메달 뭐 타고 여러 개 타면 되고.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공로메달이 다섯 개 있으면 돼요. 국기훈장 3급에 붙어서 공로메달이 4개 있으면 해당 되어서 600에 60원 받지요. (중략) 국기훈장 2급은 공로메달 2개만 있으면 되요. 1급하고 로력훈장은 거저 되고.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국기훈장 1급만 받으면 다른 것이 없어도 600에 60 벌이는 해요. 그 다음에 국기훈장 3급 외에 훈장 몇 개에 메달을 몇 개 해서 다섯 개 이상을 하면 또 600에 60 벌이를 하고. 그게 다 부류가 달라요. 김일성 표창을 타면 또 어떻게 되고. 그게 다 다른데, 그냥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한 달에 20원 벌이를 하죠. 20원을 받고, 배급을 하루에 200그램인가 300그램인가를 받아요. (남/42세/혜산/군인/2015년 탈북)

위의 진술은 국기훈장 2급이 2개 이상이거나 국기훈장 3급에 공로메달 여러 개를 보유하면 국기훈장 1급 1개 이상 보유시 받는 60원에 600g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기훈장 1급 하나면 600g에 60원이 되어요. 그런데 2급부터는 거기에 훈장이 3개가 딸려야 되요. 그래야 배급 600g에 그 때 당시 로동자들이 700g을 탈 때 600g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국기훈장 2급이 한 세 개쯤 되면 1급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기가 쉽지 않죠. 이게 북한에 최고 훈장이에요. 1급까지가. 국기훈장 1급만 받아도 600g에 60원이에요. 이건 아무나 주는 건 아니에요. 김일성훈장 그리고 노력영웅들 그 다음에 국기훈장 1급. (남/45세/양덕/군인/2007년 탈북)

위의 진술은 국기훈장 2급 1개에 훈장 3개 보유시 혹은 국기훈장 3개

이상을 보유하면 국기훈장 1급 1개 이상 보유시의 년로년금액수와 동일하게 받는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공로자년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최소 훈장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기훈장 1급 1개, 둘째, 국기훈장 2급 2개, 셋째, 국기훈장 2급과 공로메달 4개, 넷째, 국기훈장 3급 2개와 공로메달 4개, 다섯째, 국기훈장 3급 2개와 기타 훈장 그리고 공로메달 4개일 경우에는 최소 훈장 요건에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표 Ⅳ-10〉 공로자년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최소 훈장 요건

유형	국기훈장	공로메달
1	국기훈장1급	0개
2	국기훈장2급 2개	0개
3	국기훈장2급	4개
4	국기훈장3급 2개	4개
5	국기훈장3급 2개 + 기타훈장	4개

그 후에부터는 아마 바뀌었어요. 보조금 주는 것 보니까 70원 줄 수는 없는 것이고, 700원, 500원, 1,200원 이렇게 주는 거 봐서는 옛날에 1,200원 2,000원 주던 할머니는 옛날에 간부를 했더라고요. (중략) 1,200원씩 주더라고요. 이거 왜 받느냐 하니까 뭘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61살까지 일했는데 국기훈장 몇 개 타고 로력훈장 몇 개 타고했다 이러면 국가에서 그 사람에서 나오는 '국기훈장 하나에 로력훈장 하나 내면 천 육백 원이다, 국기훈장 두 개에 로력훈장 두 개면 천 팔백 원이다' 이렇게 부류가 다 다릅니다. (중략) 가장 위가 로력훈장입니다. 그 다음에 국기훈장 1급, 2급, 3급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표창. (중략) 내가 직접 동사무소 가서 보고 친구들 타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로력훈장 하나에 다른 공로자 훈장 일 잘해서 주는 거 몇 개 딸리면 (중략) 2,400원까지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1,800원, 1,400원, 1,200원 각이합니다.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북한 주민이 2002년 7·1.조치이후에 평균생활비가 3천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3천원에 30% 계산하면 900원 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이 (한국전쟁 참전) 영예군인이신데, 상이군인. 상이군인은 2천원 받았어요. 상이군인은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깐 2천원이라고 생각할 때는 2천원은 몇 % 한 7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공로자 600g에 60원을 받던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는 똑같이 올랐다는 거죠.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내가 년로보장 처음 받았을 때 그런 훈장 있다 해서 (일반 은퇴자가) 15원씩 타는 거 로임이 우리는 63원이였습니다. 24원을 탔던가? 24원을 탔습니다. 2002년 개혁 후 800원을 탔습니다.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공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200원, 1,500원, 그리고 군부대에서 간부로 있던 장교 급이 이런 사람들이 타는 거보니깐 3,000원 정도 타고.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공로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쌀을 600g 타느냐 300g 타느냐에 관계되고 돈은 내가 얼마큼 탔는지 거기에 한해서 돈을 2,500원 타는 사람도 있고 1,200원 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저희 어머니는 전쟁 시기에 군수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니까는 국가가 말하는 공로 퇴직자에 해당하는 분이죠. 공로 퇴직자는 퇴직할 때 연금 받는 액수가 다른 사람들 보다 조금 많고 (중략) 공로로 나오신 분들은 600g, 평생 죽도록 너는 600g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냥 직장에서 노동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은 300g에 퇴직한 이후부터 받는 연금 액수가 있고요. 공로자로 나오신 분들은 국가가 죽을 때까지 보장해준다는 그거에다가 연금이 있는데 액수가 그저 나오신 분보다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한 600원? 500원 이정도 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2002년 화폐개혁 이후) 800원 정도 타셨거든요. (중략) 저희 어머니는 2급이 있어요. 2급이 있어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공로메달도 있고. (중략) 국기훈장 3급 받으신 분들이 어머니보다 차등이라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2급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이 받았어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로임을) 1,030원 받았는데, (연금은) 한 700원쯤 탄 것 같아요. (여/64세/온성/주

부·노동자/2006년 탈북)

저희 아빠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대 된 다음에 공로자협회에서 비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인 데거든요. 저희 아빠가 비서한 그 단위 사람들이 다 60~70대 어르신들인데, 그 분들이 다 학교 교장을 하다가 그만 두셨거나, 무슨 무엇을 하시다가 나오신 다 이런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예요. 600g 이상 다 2천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였거든요. 그 조직이.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이상과 같이 김일성 시기에는 대체로 공로자에 대한 연금액수가 월 60원을 기준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공로자에 대한 연금액수는 월 800원부터 1,200원, 1,400원 1,500원, 1,800원, 2,400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7·1조치 이후 공로자년금 급여수준이 상승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에 참전한 지휘관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자유독립훈장과 국기훈장 1급을 수여받은 제대군인(대좌 전역) 공로자의 연금액은 7·1조치 이후 2,500원으로 같은 시기의 일반 노동자 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공로자가 제대 이후 지역 공로자협회의 비서를 하면서 만난 다른 공로자들의 연금액 수준이 2,000원대였다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7·1조치 이후에도 공로자년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공로자의 공훈에 따른 급여수준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공로자의 공훈에 따른 급여수준

참여자	시기	공로자 기준	급여(월), 배급(일)	비고
21	김일성	국기훈장2급 1개+기타메달 4개	40원, 600원	
1	7 · 1조치이전	혁명열사(빨치산, 한국전쟁 참가자)	60원 이상,600g	공로자 유가족 연금수령
1	7 · 1조치이전	애국열사(대남공작원, 사회주의 로동 수행중 사망)	60원 이상,600g	
1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3급 이상	60원, 600g	
2	7 · 1조치이전	김일성표창	60원, 600g	공로자 유가족 연금수령 (40원)
2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1급 1개 이상	60원, 600g	
2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2급 2개 이상	60원, 600g	
2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2급+국기훈장 3급 +공로메달 여러개	60원, 600g	
3	7 · 1조치이전	상급 국기훈장+하급 훈장 여러 개	60원, 600g	
4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2급+공로메달	60원, 600g	
5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등 훈장 5개 이상	60원 이상,600g	
7	7 · 1조치이전	김일성훈장 1개	60원, 600g	
7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1급 1개	60원, 600g	
7	7 · 1조치이전	로력훈장 1개	60원, 600g	
7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2급 1개+공로메달 4개	40원, 600g	
8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1급 1개	60원, 600g	
8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2급 1개+기타훈장 3개	60원, 600g	
9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1급 1개 혹은 로력훈장 1개 이상	60원, 600g	
9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2급 1개+공로메달 2개	60원, 600g	
9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3급 1개+공로메달 4개	60원, 600g	

참여자	시기	공로자 기준	급여(월), 배급(일)	비고
13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2급+공로메달 4개 이상	60원, 600g	
15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1급	60원, 600g	
15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2급 3개	60원, 600g	
15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3급 5개	60원, 600g	
16	김일성	로병, 당간부30년 이상, 유공자, 국기훈장 보유자	60원, 600g	
20	김정일	국기훈장 2급, 군공메달, 복무메달, 복무훈장, 공로메달, 공로훈장 등 다수	60원, 600g	
21	김일성, 김정일	국기훈장 1급 1개	60원, 600g	
22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1급 1개	60원, 600g	
22	7 · 1조치이전	국기훈장 3급+기타훈장/메달 4개	60원, 600g	
22	7 · 1조치이전	전쟁참가메달(한국전쟁참전군관)	80원, 600g	
4	김일성 시기	국기훈장 1급, 자유독립훈장(한국전쟁 참전, 32년 복무 후 대좌 전역)	2,500원, 600g	
4	7 · 1조치이후	국기훈장 2급+공로메달	800원, 600g	
14	김정일	국기훈장 2급+기타훈장 3개 이상(한국전쟁기 군수공장 노동자)	800원	
22	7 · 1조치이후	국기훈장 1급 1개	800–1,000원, 600g	
22	7 · 1조치이후	국기훈장 3급+기타훈장/메달 4개	800–1,000원, 600g	
6	7 · 1조치이후	기타 훈장 여러개	1,200–1,400원 등 다양, 600g	
11	7 · 1조치이후	국기훈장 3급 1개+공로메달 2개	1,200원, 600g	
5	7 · 1조치이후	국기훈장 등 훈장 5개 이상	1,200원–2,500원 등 다양, 600g	
6	7 · 1조치이후	로력훈장 1개+국기훈장 1개	1,600원, 600g	
6	7 · 1조치이후	로력훈장 2개+국기훈장 2개	1,800원, 600g	

참여자	시기	공로자 기준	급여(월), 배급(일)	비고
22	7 · 1조치이후	전쟁참가메달(한국전쟁참전군관)	2,000원, 600g	
6	7 · 1조치이후	로력훈장 1개+기타훈장 다수	2,400원, 600g	유가족 연금은 혁명 유가족 (전사자,대남공작원) 에 한함
14	김정일	국기훈장 포함 훈장 다량 보유 (상좌 전역 제대 군인)	2,500원	

주: 1) 급여액이 가장 낮은 순부터 기입
2) 인터뷰 시 년로년금 수급자의 배급량에 대해 따로 진술 하지 않은 경우, 연금액만 기입하였음. 따라서 특정 대상자가 연금액만 있고 배급량이 없다고 해서 배급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님

저희 친정아버지가 조선전쟁 당시부터 소대장이었어요. 남북한이 전쟁 일어났을 때. 병사가 아니었고. 그 때 당시 장교였어요. 그러고 쭉 32년간을 군복무 하셨습니다. 그러고 제대됐죠. (중략) 아빠가 차려지는 돈이 2,500원이였어요. 북한 돈으로. 매달 받는 연금이. 그 수첩에 의하면. 그런데 그 돈을 줘야 내 돈이죠. 쌀도 못 사먹어요. (중략) 좀 너무 어렵게 살고 고난의 행군을 할 때니깐 그나마 좀 받아보려고 동사무소 여기로 말하면 주민센터 같은 데 몇 번 다녀봤거든요. 아빠가 아파서 누워계시니깐. 없어요. 매번 가봐야 거기에 찍혀진 액수 2,500원이라는 것을 알죠.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고난의 행군 시기 공로자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보통사람들은 600원, 700원 보통 타는데 나는 800원 탔어요. 왜 그렇게 탔냐하면 국기훈장 2급도 있었고 전쟁 시기에 군수품공장에서 일했다 해서 메달이 하나 있었어요. 전쟁승리 기념일을 맞이해서 메달 하나 또 타고, 그래서 훈장이 한 3~4개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800원 탔단 말입니다. 그 돈이라 해봤자 국수 한 사리밖에 안되는데. (여/79세/청진/공장노동자/2007년 탈북)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공로자년금의 급여수준이 상승하였으나 장마당의 등장으로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공로자년금 급여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김일성 시대(1990년 초반까지), 김정일 시대(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까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인터뷰 참여자들의 공로자년금의 급여수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Ⅳ-12〉와 같다.

〈표 Ⅳ-12〉 시기와 대상에 따른 급여수준 및 급여주기: 공로자년금

참여자	시기	수급권자	급여수준	급여주기
11	7·1조치 이전	교원	60원, 600g	
6	김일성	공로자(훈장 급수 불명)	24원 (마지막 월급의 40%)	간헐적 지급
2	김일성	유가족(공로자(교원)사망 후 그 배우자)	40원	97년까지 지급 후 계속 미지급
7	김일성	공로자(국기훈장2급+공로메달4개)	40원, 600g	
8	김일성	공로자(국기훈장 1급 1개 혹은 국기훈장2급+기타훈장 3개)	60원, 600g	
7	김일성	공로자(국기훈장 1급)	60원, 600g	
9	김일성	공로자(국기훈장 1급)	60원, 600g	
2	김일성	공로자(교원)	60원	94년까지 지급
8	김일성	교원(30년 이상 재직, 대개 훈장이 동반됨)	60원, 600g	
9	김일성	제대 군인(상좌(중령급) 이상)	월급의 80%, 600g	
12	김일성	공로자	60원, 600g	
13	김일성	공로자 (국기훈장2급+공로메달4개 이상)	60원, 600g	

참여자	시기	수급권자	급여수준	급여주기
16	김일성	공로자(로병, 당간부 30년 이상, 국기훈장 보유자)	60원, 600g	
20	김정일	공로자(국기훈장 2급, 군공메달, 복무메달, 복무훈장, 공로메달, 공로훈장 등 다수)	60원, 600g	
22	7 · 1조치 이전	공로자(국기훈장 1급)	60원, 600g	
22	7 · 1조치 이전	공로자 (국기훈장 3급+기타훈장/메달 4개)	60원, 600g	
4	7 · 1조치 이전	공로자(한국전쟁시기 군수공장 노동자, 국기훈장 2급+공로메달)	60원, 600g	90년대 이후 미지급
15	7 · 1조치 이전	공로자(국기훈장1급 1개 혹은 국기훈장2급 3개 혹은 국기훈장3급 5개)	60원, 600g	
22	7 · 1조치 이전	전쟁로병 (한국전쟁참전군관,전쟁참가메달)	80원, 600g	지급
3	7 · 1조치 이전	제대 군인(장성)	220–230원, 600g	계속 지급
4	7 · 1조치 이후	공로자(한국전쟁시기 군수공장 노동자, 국기훈장 2급+공로메달)	800원, 600g	미지급
6	7 · 1조치 이후	공로자(훈장 급수 불명)	800원	간헐적 지급
14	7 · 1조치 이후	공로자(국기훈장 2급+기타훈장 3개 이상, 한국전쟁기 군수공장 노동자)	800원	4–5회 지급
22	7 · 1조치 이후	공로자(국기훈장 1급)	800–1,000원, 600g	
22	7 · 1조치 이후	공로자 (국기훈장 3급+기타훈장/메달 4개)	800–1,000원, 600g	
2	7 · 1조치 이후	공로자(노력훈장,국기훈장2급이상)	1,200원	
11	7 · 1조치 이후	공로자(교원 35년 근무, 국기훈장3급+공로메달2개)	1,200원, 600g	1회 지급
16	7 · 1조치 이후	간부	1,200–2,000원, 600g	

참여자	시기	수급권자	급여수준	급여주기
16	7 · 1조치 이후	공로자	1,200원	
5	7 · 1조치 이후	공로자	1,200원	
5	7 · 1조치 이후	공로자	1,500원	
23	7 · 1조치 이후	일반 노동자(무역회사)	1,800원	밀려서 지급
1	7 · 1조치 이후	영예군인(한국전쟁 참전)	2,000원	밀려서 지급
22	7 · 1조치 이후	전쟁로병 (한국전쟁참전군관,전쟁참가메달)	2,000원, 600g	지급
9	7 · 1조치 이후	공로자(국기훈장 1급)	2,000원대, 600g	
14	7 · 1조치 이후	공로자(상좌 전역군인, 국기훈장 등 훈장다량보유)	2,500원	3-4회 지급
4	7 · 1조치 이후	공로자(한국전쟁 참전, 32년 장교(대좌) 복무, 국기훈장 1급, 자유독립훈장 등 훈장 다수 보유)	2,500원, 600g	미지급
5	7 · 1조치 이후	제대 군인	약 3,000원	

주: 1) 급여액이 가장 낮은 순부터 기입
2) 인터뷰 시 년로년금 수급자의 배급량에 대해 따로 진술 하지 않은 경우, 연금액만 기입하였음. 따라서 특정 대상자가 연금액만 있고 배급량이 없다고 해서 배급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님

2) 공훈 및 표창에 따른 급여의 원리

자기가 세운 공로에 따라 좀 다른 거죠. 내가 국가에 특출한 공로를 세웠다면 국가가 그만큼 더 주는 거고. (남/45세/청진/군인/2011년 탈북)

돈은 그 사람이 공로자인가 국기훈장 몇 급짜리 있어야 되고 훈장이 5개 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5개 이상을 자기가 일하는 과정에 탔어야지 공로자로 되어가지고 쌀을 배급 타는 걸 600을 탈 수 있거든요. (중략) 공로자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공로자가 되는 거만큼 로임이 올라가잖아요. 그니

깐 자기가 퇴직하기 전 사회보장 넘기 전 자기가 돈을 얼마큼 탔느냐 거기에 한해서 사회보장비가 규정 되는 거죠. (연로보장도 마찬가지?) 네, 년로보장도 마찬가지죠. (중략) 부양으로 쌀 300타고 700원을 받는 사람은 사회보장이나 년로보장이나 같거든요 700원은. 년로보장대상도 700원 주고 사회보장 된 사람도 700원 주는데, 그 돈은 규정된 거고 그 이상으로 받는 사람은 내가 공로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쌀을 600g 타느냐 300g 타느냐에 관계되고 돈은 내가 얼마큼 타댔는데 거기에 한에서 돈이 2,500원 타는 사람도 있고 1,200원 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공화국의 영웅이니깐. 영웅이기 때문에 년금이 나오는데 그 년금이 적지 않고 좀 클 거예요 그 년금이.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국가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것은 훈장으로 말해주거든요. 그걸 보고 주는 거예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같은 공로자라 하더라도 공훈 및 표창이 많을수록 공로자년금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3) 공로자유가족년금

일하다가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일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열사가족이 되요. 애국열사가족. 그러니깐 열사가족년금이 나오는 거죠. (중략) 혁명열사하고 애국열사가 있는데 혁명열사는 빨치산, 전쟁참가자 이런 사람들이고 애국열사는 사회주의 그러니깐 이게 현재 죽는 사람들에 대한 거, 애국열사에요. (중략) 남파공작원. (중략) 그러나 그 안에서 세분화되어 대우자체가 다르죠, 같은 애국 열사지만.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죽지 않고 공로를 세운 사람은 공로자, 일하다가 내가 탄광에서 내가 일을 하다가 갱이 무너졌어. 갱도가 무너지니깐 내가 죽었어. 이거는 내가 열심히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갱이 무너져서 죽었잖아요. 내 불찰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사회주의의 애국열사죠. (그러면 유가족들에게 연금이?) 년금이 나왔죠. 아이들한테도 계속.

(일반사람들이 노환으로 죽으면 유가족들에게 연금은?) 그건 없어요.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열사들은 지금 당장 공로는 안 세워도 열사면 주는 거지. 열사 가족이랑 생기면 다줘요. 그건 유가족년금이니깐. 우리 할아버지가 열사였기 때문에 나한테 대대로 다 쭉 열사가족년금 받아요. 그건 공로자하고 달라요. (중략) 열사가족은 열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대대손손 준다니까요, 줄줄이 줄줄이 해서. 그렇죠. 그런 건 참 잘 돼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공로자들은 (승계)되지. 아버지가 만약 군대나가서 전사했다, 남조선에 가서 혁명활동하다 죽었다, 이런 특별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족들은 대를 이어가며 몇 %를 줍니다. (중략) 그저 사회적으로 일하다가 그런 건 안 되고. 혁명유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대남공작 갔다가 와서 하다가 년로보장비 나오면 사회보장비 받다가 그거는 그 집에서 한 사람을 대를 이어가며 줍니다. 몇 %를. 가족. 아버지가 내가 대남 나왔다가 죽었다,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집 아들이 다섯이라도 어느 하나에다가 아버지가 100원을 탔다하면 어느 한 아들에다가 35%를 준다든지 하여튼 그런 돈 몇 %를 해서 30 몇 원을 주더구먼. 아들이 죽어서 손자가 있지 그러면 몇 % 낮게 또 줍니다. 그거는 대를 이어가며 줍니다. 그러나 그저 일반적으로 갱에서 일하다 죽어 그런 건 없습니다. 혁명유가족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공로자들은 부인에게 상속 되고, 자식에게 상속되고. 그런 법제도는 있어요. (중략) 자식들에게 전사자가족이면 아버지가 전쟁에 참가했다면 전사자 가족으로서 찾아지는 게 있고. (여/78세/청진/중등교원/2005년 탈북)

혁명열사 가족들은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배려하는 거. 당중앙위원회에서 직접 줘요. 동사무소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남/77세/평양/대학교원/2007년 탈북)

공로자의 경우 공로자유가족년금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특히 항일투쟁활동, 빨치산활동, 한국전쟁 참전 등에 의해 선정된 혁명열사나 사회주의로동 수행 중 부상 내지는 사망한 애국열사의 경우 보다 높은 연금액이

주어진다. 일부 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혁명열사 유가족에게는 유가족연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이 대를 이어 지속된다고 추정된다.

다. 전달체계

애국자도 영웅도 다 똑같이 동사무소에서 받아요. (남/45세/양덕/군인/2007년 탈북)

군대는 연금 관리를 따로 한다? 안 그러죠. 그 우리 아버지도 연금 타는 거 동사무소에서 탔다니까요? 함북 동사무소에서 군대를 탔기 때문에, 여기로 말하면 국방부에 가서 타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동사무소에서 일체로 다 준거거든요. (중략) 다 동사무소죠! 100%! 공로자고 뭐이고 다 동사무소에 타는데 그 탈 때 문건을 해 갖고 가야해요. 그 수속을 동사무소에다 올려놔야 하잖아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원래 국기훈장 1급은 영웅이 됐을 때 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탔을 땐 국기훈장 1급, 로력훈장 그 다음에 국기훈장 2급부터 공로메달 이렇게 해서 5개 이상 될 때 그때는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하루에 배급 600g, 한 달에 돈 60원 이렇게 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기업소에서 주라 했으니깐 이젠 다 없어졌죠.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년로년금 실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공로자년금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수령한다. 일원화된 통합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년로년금 실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00년대 중반 모든 년금을 동사무소가 아닌 각 소속 해당 기업소에서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옴으로써 사실상 일반 노동자를 포함하여 공로자에 대한 년금 지급이 실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있다. 이상의 공로자년금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의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3〉 공로자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구분	실태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결과	설명
적용대상	누구가 공로자가 될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공로자가 되기는 매우 어려움 공훈에 따라 수상한 훈장과 공로메달에 기초하여 공로자년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년로년금의 수급연령과 동일함 공로자의 로동능력상실 시 공로자년금 적용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공훈에 따라 공로자년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연령기준 확인됨 로동능력 상실기준 확인 안 됨
급여	급여종류	공로자년금과 공로자유가족년금은 확인되나 공로자로동능력상실년금은 확인되지 않음	△	2개의 급여종류만 확인됨
	급여수준	공훈에 따라 급여수준에 차이가 있음 일반 근로자보다 급여수준이 높음	○	공훈에 따른 급여임이 확인됨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급여수준임이 확인됨
전달체계	신청과 지급절차는 모든 년금제도가 동일함 공로자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동사무소에서 수급 일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연금 수급장소가 기존의 동사무소가 아닌 과거 소속직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함		○	통합 전달체계

5. 인체보험

가. 적용대상

그걸 일정 액수로 정해가지고 인체보험에 드는데, 그거 다 의무적으로 들라고 해서 들었어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안 들면 안 돼요. 안 들면 로임을 안줘요. (남/77세/평양/대학교원/2007년 탈북)

노동자들은 인체보험의 가입을 집단적으로 강제 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업소에서 자꾸 인체보험 들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요구하죠. 그런데 돈 조금씩 주는 거 인체보험까지 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분들이 많죠. 나도 인체보험 안 했어요. (중략) 그건 자유에요. 그거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인체보험이 임의가입이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강제적으로 할당되었을 경우, 당 일꾼이 강제하므로 근로자들은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제가입을 거부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했다는 내용도 있다. 노동자가 인체보험의 가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동자가 반드시 인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인체보험의 가입에 대한 강제성은 지역이나 기업소의 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체보험 가입을 강요받을 수는 있으나 임의가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업소 차원의 집단가입만 있고 개별가입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저 무조건 막 공제하고 뗐으니까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런데 3년이 되어서 300원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500원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협동농장 농민도 인체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급여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자 개념이지. 하니까 무슨 470원인가 480원인가 그 정도 내고 마지막에 만기가 차면 500원 돌려주는 거지. 이자를 붙여서. (중략) 만기가 차면 돌려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환급성 보험이죠. 100% 전액 상환받는 그런 보험인데.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1년 내가 다 물었다하면 그 숫자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깐 하죠. 사람들이. 만약에 100원짜리 하면 실제 91원정도 내면 100원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그것을 다 돌려받아요. 3년짜리를. (중략)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3년치를 다주고 내가 사고가 안 났어. 그러면 3년 치 쭉 모았던 것을 (중략) 280얼마인데 300원으로 주는 거예요.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뗐는지 모르겠는데, 3년에 300원짜리를 해서 은행에서 찾아다 주니까 3년 되니까 300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더라고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인체보험도 액수가 달랐거든요? 많은 게 있고, 좀 적은 게 있고. (중략) 우리는 그걸 어떤 개념으로 들었는가 하면, 적금이라는 개념으로 들었어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만기보험금의 경우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보험금 전액을 이자와 함께 환급받는다. 약정에 따라 급여수준에 차이가 있다. 대부분 적립방식의 장기적·반환적 성격의 적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내가 사고가 나서 3년 되기 전에 2년 만에 어떤 사고로 죽었으면 2년이 돼서 천원을 타요. (남/77세/평양/대학교원/2007년 탈북)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1년 지나면 100원짜리는 자기 날짜 되면 조금 보태져서 이자가 붙어서 타고, 500원짜리는 한 10년 정도해야 받아줘요. 그렇게 해서 인체보험이라는 게 있지, 여기처럼 죽은 다음에 많이 준다, 뭐 앓으면 몇 % 준다는 인체보험 그런 게 없어요. (중략) 저금식이죠. 조금 이렇게 주지 내가 인체보험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앓으면 돈을 준다 이런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무상치료니깐.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그러나 인체보험에서는 만기보험금 제도만 있으며 사망보험금과 로동능력상실보험금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다. 재원

(인체보험 들어보셨나요?) 로임으로 자르니깐. 로임이 나올 때 자르니깐. (로임 표 딱지?) 요만한(=A4 1/4 크기) 표 딱지에다가 기본 로임이 얼마, 내가 63원이다 이렇게 되면 63원에 따라서 인체보험이 얼마, 1%했던 거 같은데, 인체보험이. 직장에서 맹비 얼마. 내가 당원이면 당비를 내고 직맹원이라 하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에 못 드는 사람은 직맹원이라 합니다. 맹비를 내고. 농촌은 농근맹. 그런 거는 제하고 마지막에 계를 내서 돈하고 해서 주지. (중략) 기본 로임 63원이다. 인체보험, 맹비는 로임의 1%했습니다. 60전인가 되지. 여기다가 직장에서 뭐 나눠먹었었다 어쨌다 하면 다 쭉 내려와서 어느 명절에 술을 가져갔다, 명절 공급에 당과류를 가져갔다 쭉 제하고 나오게 되면 마지막에 57원이다, 이렇게 쭉 내려온다.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인체보험하고 떼요. 월급에서 많이 받는 사람은 다르죠, 매 사람마다. 월급에 한해서 몇 퍼센트 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예금을 무조건 저축했어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각 공장에서 로임에서 예를 들면 저처럼 100원 타는 사람은 한 5원 정도를 저금으로 강제적으로 떼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인체보험의 보험료 납부방식은 생활비 지급 전 보험료를 사전 공제하는 원천징수 형태이다. 인체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당비, 직장 내 상호부조금 등 공제내역은 '로임표'에 기입되어 임금과 함께 나오는 것으로 진술에서 확인된다.

자기가 1년짜리 들었으면 1년 뒤에 받고, 3년짜리 들었으면 3년 후에 받고 그러지. (최대 몇 년까지?) 10년까지. 500원짜리 10년 해야 합니다. 100원짜리는 1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되고.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선생님은 얼마 약정하셨나요?) 나 천 원짜리 3년 약정. (남/77세/평양/대학교원/2007년 탈북)

인체보험이라는 건 100원짜리 있고 200원 짜리 있고 최고 500원짜리가 있습니다. 로임 탈 때 옛날 소리인데, 북한이 잘 살 때 인체보험 나 100원짜리 들래요 하면, 100원짜리는 한 달에 얼마 제한다는 게 있습니다.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인체보험의 약정보험금과 약정기간은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약정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이지만 3년 약정이 일반적이다.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보험금이 다르다. 약정보험금의 경우 100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에 걸쳐 약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금액은 모두 7·1 조치 이전에 해당한다.

3개월에 한 번씩 냈는데 분기에 한번씩. (중략) 100원 생활비일 때 24원이였어요. (중략) 6원씩 내는 거죠,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1년에 4번 잘라가지요. 우리가 24원씩 잘라간 것 같은데... (여/73세/평양/무역업/2014년 탈북)

연한이 있어요.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예를 들어서, 3년에 100원짜리 있고, 300원짜리 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만약에 100원이라면, 그걸 3년으로 나눠서 한 달에 얼마씩 돌아가는가를 쪼개가지고, 한 달 것만 딱딱 받지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인체보험에 든 분들은 매달 로임쪽지에서 제해요. 제해 가지고 3년짜리 한 사람들은 3년 만에 그 날짜가 돌아오면 지급해주고.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그 때 얼마짜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3년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다달이. 그 때 얼마씩? 16원씩 냈던가? 그 총액수가 얼마고. 다달이 얼마씩 낸다. 그래서 만기

가 되면, 돌려준다. 근데 그걸 100% 다 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인즉슨 최고한도를 500원으로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500원에서 마지막에 그 500원까지 안 문다고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분기별로 납부했다는 진술과 매월 납부했다는 사례가 있다.

인체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같은 거는 무상치료인데 왜 필요하냐 하는데 그거는 현금이 필요하니깐 그거는 북한이 무상치료에서 우리는 생명보험 가입하는 게 북한은 현금을 주자는 목적도 있지만, (중략) 북한이 개인에게 들어가는 몫을 생활비를 주는데 국가에서 공급하는 양의 100원에서 한 30% 밖에 못써요. 그러면 한 70%남잖아요. 그럼 이거 다 은행에 다시 저금을 해야 되는데 안 저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깐 이거 인체보험이라는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현금을 유통을 원활하게 위해서 강제적으로 떼는 거죠.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그거 들어서 은행에 들어가면 돈이 많이 돌잖아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강제 저금을 시켜요. 국가 은행이 너무 곯아있으니깐.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인체보험이라는 건 국가수탈이라고 보면 돼요. 말이 보험이지. 인체보험이 무엇이냐면 “너 인체보험 천 원짜리 들어라, 3년이다” 그러죠. 그러면 3년에 천 원을 내려면 자기 로임 매달 얼마 잘라야하는지 계산이 되잖아요. (중략) 그럼 인체보험 천 원짜리 들기도 하고 500원짜리 들기도 하고 3년 동안 꼬박꼬박 로임에서 내요. 그럼 3년 내면 본전 돌려받아요. (남/77세/평양/대학교원/2007년 탈북)

인체보험은 국가차원에서 현금확보 및 현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각 기업소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인체보험 가입을 강하게 독려한다는 것이다.

(월급) 3천원을 내가 받았는데 받고 쥐고 나오는 동시에 또 문턱에 책상 놓고 교

사가 앉아서 그것 이름이 뭣이던가. 공채. (중략) 공채를 천 원짜리 내밀어요. 그러면 내 현금을 천원을 내놔야 돼. 그래가지고 언제 나를 줄지 모르는 종이 장을 내가 쥐어야 돼요. 그게 내가 이제처럼 첫 월급이자 마지막 월급이었어요.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복권이라고 있어요. 사라고 선전하고 매 사람이 사야 돼요. 국가은행에 돈이 없을 때 그런 짓 하는데, 로임 타는 사람마다 무조건 5,000원 어치는 사라고해요. 그럼 5,000원 주고 사면 5,000원이 국가은행에 들어간단 말이야. 복권증명서가 있어요. 복권을 사면 그저 끝나요. 뭐 돈을 준다든지 혜택이 없어요. (남/77세/평양/대학교원/2007년 탈북)

인체보험 이외에 국가가 현금확보 및 현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채와 복권 구입을 강요했다는 진술도 있다.

라. 전달체계

인체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인체보험이라는 게. 그러면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몇 프로를 떼서 보험에다 넣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떼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몇 프로라는 보험 그거는 계속 떼는 거죠. (남/45세/청진/군인/2011년 탈북)

3년이 지나 그 날짜가 되면 은행에서 딱 돈을 주거든요. (여/74세/경원/수매원/2005년 탈북)

인체보험료의 납부는 생활비에서 공제되어 원천징수되고 인체보험의 만기지급은 은행을 통해 지급된다.

그런데 인체보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로임도 못주는데 무슨 인체보험을 들어.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인체보험?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보험 소리는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요.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체보험은 실제 운영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노동자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가입의 인체보험 제도는 운영되기 어려운 것이다. 공적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인체보험도 '계획'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정대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은행에 저금한 돈은 주지 않지. 저금한 돈 다 무효 되었어요. 줄 돈이 있어야 주지, 못 주죠. (여/78세/청진/중등교원/2005년 탈북)

그런데 500원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못 받았어요. 다 하고 못 받았어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인체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환급받지 못한 사례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인체보험 전달체계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고난의 행군 종료 이후 탈북할 때까지 만기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북한 정부는 경제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음성적으로 개인이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단위가 생겼어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최근에는 국가 전달체계가 아닌 개인이 국가은행을 대신하기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상의 인체보험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의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4〉 인체보험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구분	실태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결과	설명
기본 특징	강요받기도 하였으나 개인선택의 임의가입임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적립하였으며, 보험금은 장기저축 및 반환적 성격임			○	임의가입이 확인됨 적립방식이 확인됨 장기저축 및 반환적 성격이 확인됨
적용 대상	노동자 · 사무원, 농민 등 공민이면 누구나 가능함 소속직장별로 집단가입하며 개별가입자를 확인하기 어려움			△	개별가입은 확인되지 않으며 집단가입만 확인됨
급여	급여 종류	만기보험금을 수령함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공존함 로동능력상실보험금은 없다는 주장이 있음		△	만기보험금은 확인됨 사망보험금에 대해 주장이 상반됨 만기 · 사망보험금은 일시금으로 확인됨 로동능력상실보험금은 확인되지 못함
	급여 수준	만기 · 사망보험금	만기 ·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전액과 일부 이자를 받았음	○	보험금과 이자의 합임
		로동능력상실보험금	본인과 주변에서 경험하거나 들어보지 못함	×	로동능력상실보험은 확인하지 못함
재원	보험료		약정 금액에 따라 생활비에서 사전 공제하며, 로임표에 기입됨	○	보험료 사전공제가 확인됨
	보험료 면제	전액 면제	본인과 주변에서 경험하거나 들어보지 못함	×	면제 경험 부재함
		일부 면제	본인과 주변에서 경험하거나 들어보지 못함	×	면제 경험 부재함
전달 체계	소속직장에 납부하며 은행을 통해 수령함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 존재는 알지 못함 보험대리인 및 보험중개인인 확인되지 않음			△	소속직장에 납부 및 은행 통한 수령이 확인됨 중앙보험지도기관,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은 확인되지 않음

6. 노년기 근로활동

가. 김일성 시대

3대가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집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집이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손자 손녀 이렇게 같이 살죠. (중략)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장남이 의무적으로 그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맏며느리는 무조건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게 있어요, 북한에.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장남의 집에 같이 살죠.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자식들이 부양을 해요, (노인이) 일을 못하면.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이때 당시는 주거 형태가 대게 다 한 집에 살았어요. 북한은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게 조금 아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집가서도 한집에서 살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때 80년대 까지만 해도 장가를 가도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또 그 때 당시에는 배급을 줬으니깐. 굶지는 않았어요. 먹고 살았거든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김일성 시기의 노인들은 직계 가족과 한 가구를 이루어 살았다. 자녀 역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이 높았다. 이 시기 노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노년기 근로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는 부담이 적었다.

북한은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가 없으니깐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살아요. 그러니깐 너무 친하잖아요. 네 집, 내 집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똑같이 먹고살았기 때문에 그냥 동네사람들끼리 이 집 가서놀고 저 집 가서놀고 계속 TV도 잘 안 나오고 뭐 문화생활 할 것도 없고 밖에 나가도 구경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살 것도 없고 파는 것도 딱 국가가 공급해주니깐 더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동네사람들끼리 모여앉아 할아버지끼리 모여앉아 담배피면서 술 마시면서 놀고 집에서 그것도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놀고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 오면서 할아버지들 다 장마당에 나앉았지.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남한에 비해 거주 이동의 자유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는 이웃이 많아 북한의 지역 공동체 내 유대와 상호부조도 원활한 편이었다.

집에서 뭐하는가 하면,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 애 봐주고, 밥 하고, 집 살림을 도와줬죠. 북한은 여자의 년로보장 나이가 쉰다섯이거든요. 젊어서 직장 그만하면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그 때부터는 집에 앉아서 집 살림 하는 거죠. 여자들이 뭐 기껏 일한다면 텃밭이나 가꾸겠나?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여성 노인의 경우 직장에 출근하는 며느리를 대신하여 손자의 양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에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에 대한 압박감이 이런 것도 시달리지 않았고요. 보건, 의료 혜택을 놓고 볼 때도 그 당시에는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그 때는 명실공히 무상치료, 무료교육이 실시되고 있을 때라 병원에 가면 돈 안내고 치료도 받았고.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옛날 시골에서는 다 공동체 생활을 했지요. 그렇지만 북한도 지금 어절싸한 저런 시장 체계로 전환되면서 그게 점점 파괴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간에도 서로 옆집 일에 나날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김일성 시대의 북한 노인들은 자녀의 부양, 배급, 연금 등을 토대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따라서 노년기 근로활동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

나. 김정일 시대 및 김정은 시대

늙으면 진짜 죽어야 되요. 자식들도 안 좋아하고 천대하지. 뭐 아무것도 없지. 아이들도 굶겨 죽이는 판인데, 부모를 먹여 살리고 싶겠어요? 늙은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공개적으로 죽어라 없어져라 별 소리를 다 하죠.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생활고로 인해 부모 부양의식이 약화되었다.

옛날에는 정부가 다 지원해주고 걱정 없이 살았으니깐 그랬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는 입을 던다고 다 분가하고 따로따로 살아요. (중략) 자식들이 다 부양하지 않으면 이제처럼 본인들이 시장에 나가 앉았죠. (중략) 거기는 아직까지 가족 단위라는 게 이게 있었거든. 가족이라는. 그러니까 크게 막 방치하고 그러는 게 없었는데 고난의 행군이 들어서면서부터 가족 방치가 나온 거지. 노인들 방치하는 게.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90년대 들어서부터 우선 사는 걸 주거에서 될수록이면 자식들이 집을 얻어서 나가고, 노인은 노인대로. 그때부터 동거 서로 별거. 왜냐하면 입을 하나라도 줄인다고. 먹고사는 게 너무 힘드니깐. 줄이기 시작하니깐 노인들은 갑자기 배급 안줘, 자식들도 갈라져 살기를 원해.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생활고로 인해 가구가 해체되었다.

다 갈라져 살자에요. 살림이 어려울 때 합쳐 살게 되면, 오히려 다 힘들다고. 입이 많으면 건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입을 덜자고. 그래서 다 갈라져 살 것을 요구하는데, 합쳐서 사는 집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택사정 때문이에요. 자식들을 장가보내도 집을 얻어주기가... 여기도 집 얻어주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월세라도 해서 내보내는데, 북한은 월세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서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같이 사는 집이 있고. 어떻게든 자식을 다 내보내려고 생각해요. 같이 안 살고. 그런데 평양 같은 데에 생각 외로 모여 사는 집들이 많은데 평양은 집이 크거든요. (중략) 들어보니까. 지방은 주택이 어려워가지고, 같이 사는 집들이 많고. 남쪽보다는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이 없어서.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주로 집이 없으니깐 같이 살아요. 나는 아들이 2명이니깐 할 수 없이 큰아들은 세간 내어줬지. 오두막 같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작은아들하고 같이 있다가 또.. 식구 많으면 더 곤란해요. (여/79세/청진/공장노동자/2007년 탈북)

생활고로 인해 가구해체를 고려하였으나, 주택부족으로 동거하기도 하였다.

북한사람이 장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니깐, 기껏 해봐야 할아버지들이 뭘 하겠어요. 힘든 것도 못하지 하니깐 빗자루 만들어 팔고. 뭘 만들어 팔고 앉아서 구두수리해주고. 뭐 이런 정도. 그래서 할아버지들 나와서 내 용돈만 버는 거지.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에다 짐이 된다, 성성하지 못한, 그러니깐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짐이 된다 그래가지고, '입을 하나 덜면' 북한말이에요 이게. 우리식구 다섯에서 한명만 덜면 똑같은 식량가지고 4명이 좀 더 돌아가는 몫이 크니깐 그러니깐 자살하는 할아버지가 많았지.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가구가 해체되어 생활고로 인해 자살하는 노인도 있었다.

저희 아버지처럼 그런 공로자도 굶어서 돌아가시는데 누가 돌봐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고난의 행군 시기 한국전쟁 참전 공로자라 할지라도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옛날에야 일을 안 하다가, 다 이렇게 못 사니까 할 수 없이 시장에 나갔죠. (중략) 이제는 자식에게 바랄 것도 안 되고. 남에게 바랄 것도 안 되고. 나라에 바랄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가 벌고, 자기가 뭐 어떻게든 마련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했어, 그러면 자식들이 봐야죠.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알아서 해야죠. 자기가 혼자 나가서, 장마당에 가서 물건을 팔아야죠. 팔아서 돈을 벌든가, 산에 가서 풀 뙈기를 뒤지든가. 그렇지 않고 아무 것도 못하면 그 사람은 그저 거기서 철철 굶다가 죽는 거죠. 동에서 "저 집에서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면 동에서 이웃들이 조금 모아주면 되는 거고. 근데 다 자기살기 힘든 판에 도와주나요? 뭐 근근이 살다가 거기서 사망하는 거죠.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이러니깐 살기가 어려우니깐 풀 뜯어서 드시고, 막 돌아가시고. 그래도 좀 생활력이 강하셔서 자기가 산에 가서 나물이라도 뜯어서 팔고, 삭정이 나무라도 주워다가 나무라도 몇 단씩 팔고 살아가신 분들은 장사 이치를 터득해가지고. 그 돈을 불려서 또 그 다음에는 미원 장사하다가, 돈이 조금 더 보태면 고춧가루까지 받아서 이렇게 조미료 장사. 마늘이나 그런 거 까지 받아서 점점 매대를 늘려서. 지금 한 80~90대 거의 되시는 분들이 시장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때 당시 살아남는 요령을 터득하신 분들이고. 얼굴이 부끄러워서 못 나가고, 능력이 안 되어 못나가고, 몸이 아파서 못 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혼자서 나가서 장마당에 앉아서 농촌에서 농산물 넘겨 주면은 좀 싸게 넘겨받아서 좀 붙여서 팔잖아요. 팔아서 한 끼 식사비를 벌어서 그렇게 사는 어르신들이 있죠. 그렇게도 못하면 그저 혼자서 앓다가 죽는 거죠.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전국 각지에서 약초 같은 거 수집해서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지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우리 친구들보면 장마당에 나갔어요. 도둑질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거라도 장마당에 놔서 혼자팔고. 중국이 가까우니깐 중국에서 오는 상품들도 되받아서 셔츠던가 이런 거 놓고 팔았습니다. (여/79세/청진/공장노동자/2007년 탈북)

가구가 해체되자 스스로 생계유지를 위해 장마당에서 일을 하거나 산에서 풀을 뜯어 연명하였다. 90년대 이후 경제난이 심해지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북한 노인들은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파는 등 생계를 위한 근로활동에 종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식량 및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이 현실의 문제로 닥치면서 공동체 내 상호부조도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교환경제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 노인들은 장마당에서 큰 규모의 상행위를 할 능력이 되지 못했고, 가계에 보탬이 되거나 최소한 자신으로 인해 타 가구원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으로 장마당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식량이 부족해 가구원 모두가 어

렵게 지내는 상황에서 자신의 입을 하나라도 '덜면' 좀 더 가계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분가를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의 모습도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년기에도 근로활동을 한 것은 93년 이후부터나 시작됐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요?) 그거야 장사밖에 할 게 없죠. 장사하거나 아니면 이 땅을 뜨져가지고... 국가 경지면적에는 가서 개인이 다룰 수가 없거든요. 지금 북한 산이 벌거벗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산에 가서 땅을 일구는 거죠. 밭이 될 만한 데는 다 땅을 일궈서. 지금은 못 일구게 하는데, 그 때는 통제를 못했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농사 지을만한 곳은 사람들이 다 일궜어요. 그래서 거기에 씨를 뿌려가지고 아득바득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집짐승으로서 돼지를 많이 길렀어요. 돼지를 기르면 돼지가 옛날에는 국가에서 수매를 했고, 대신 강냉이쌀하고 바꿔줬거든요. 그 돼지 킬로 수를 떠서, 돼지 산 채로 60킬로라고 하면 1킬로 당 통 강냉이를 몇 킬로 씩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국가에다가 수매시키고 그 4대1로 받으면 그게 쌀에 보탬이 되는 거죠. 돼지도 기르고. 시골에 가면 시골 사람들이야 할 게 많죠. 근데 도시에 있는 은퇴자들은 노는 거죠.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기관별로 자체를 해결을 해라 이렇게 되니깐 (중략) 식량은 전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교원들이 오후에는 장사를 해라. 그래서 오후에는 다 장사를 했어. 그니깐 본인이 오전에만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장사를 해서 먹고살아라. 이렇게 됐으니깐 오후에는 다 집에서 이제처럼 돼지 먹이는 사람은 돼지 먹이고 사탕을 넘겨받아서 팔아먹는 사람은 사탕을 넘겨받아 내다 팔고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그저 출근 체크만 하라고 그래요. 나는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못하면 저녁에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해요. 아침도 못 먹고 나왔는데. 그럼 또 도망치는 거예요. 직장에서 시장으로 가요. 시장에 가면 나한테 장사를 하라고 돈을 물려준 조상도 없었고,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장사가 뭔지 말도 모르고 시장에 들어갔어요. 어쨌든 시장으로 가야 산다하기 때문에 갔거든요? 갔는데 그 얼굴이 체면이 좀 있어가지고 시장바닥에 앉지는 못 하고 날라다 팔았는데.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는 직장 나가서 일할 일이 없어요. 전기가 없고 자재가 없고 그러다보니깐 가서 사회노동. 사회노동이라는 게 돈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일하는 거죠. (중략) 94년 이후로부터는 지방은 일체 배급이 단절됐고 돈도 일한 게 없으니깐, 일한 게 있어야지 로임을 주잖아요. 로임을 못 줘도 공장에 출근해야 돼요.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우리는 교원이라는 게 수매원이에요. 고물상이에요. 매 달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꼬마 과제라는 게 나와요, 과제. 그러니깐 그걸 이제 교사가 의자를 그니깐 학교운동장에 앉아서 저울 쥐고 앉아서 이집 파지 가져온나, 이집 고철 가져온나, 이집 파동 가져온나, 파늄 가져온나.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일반 서민들이 88년도부터 배급 못주니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산에 가서 (약초)캐지.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여자들은 대체로 직장일 안 하고, 오래전부터 장사를 했어요. 그런 집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기술자, 과학자, 직장에 붙이고 월급에 매달린 사람들은 갑자기 그게 다 끊어지니까 허둥지둥 한 거예요. 사는 방도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고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장사에 재미 붙인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고난의 행군 때 돌아갔어요. 우선 기술자들이 먼저 죽더라고요, 인텔리들이. (중략) 다 박사들이 굶어죽었어요. 배급하고 돈 나오던 걸 아니 주니까. 다 굶어죽었어요. 그 다음 백성들 중에 장사질하는 사람들은 살고. 절반 이상이 굶어죽었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참혹하게 죽었지요. (여/73세/영광/주부/2007년 탈북)

각자가 알아서 노년기가 되어서 사는 것이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년로년금)을 알려면, 그것이 몫이 있어야 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들이고 며느리고 우리 엄마 얼마 받는지, 우리 아빠 얼마 받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텐데, 하도 그게 집안 살림에 보탬이 안 되는 거니까. (중략) 껌 값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신경을 쓰겠냐고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상기한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노인의 생활고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비단 북한 노인뿐만 아니라, 인터뷰 참여자의 진술에서 드러난 일반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배급은 90년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지급되거나 이내 끊겨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배급 혹은 임금 지급의 중단이 예고 없이 이루어진 탓에 현물급여에 익숙해져 별다른 생계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은 더 늘어났다. 그나마 장마당에서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 끼니를 이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1990년대 초반 김일성 주석의 사망, 자연재해, 경제위기 등으로 시작된 19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 동안 배급제(식량공급제)를 비롯하여 생활비 및 년로년금의 지급 중단 등 국가가 인민생활을 거의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노인을 비롯한 주민들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만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절실하게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인들은 국가의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의한 사회보장 급여를 포기하고 노년기의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각자도생으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을 진술로서 알 수 있다. 동시에 대다수의 북한 노인들은 정기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실질 가치도 거의 상실한 각종 년금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노인들은 누구나 근로활동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장마당 활동이 대부분인 비공식적 일자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노년기 근로활동에 대한 기본특징, 적용대상, 급여의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5〉 노년기 근로활동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구분	실태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결과	설명
기본 특징	주요 사회 참여 활동	김일성 시기는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음 능력있는 노인들은 노년기에도 사회참여를 하고 있음 김정일 시기부터 사회활동에 참여하였으나, 법령상의 일자리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한 장마당 활동이 대부분이었음	△	누구나 근로활동을 할 수 있으나 장마당에서의 생계유지 활동이 대부분인 비공식적 일자리임
	지방 정부 및 년로자 보호 기관의 역할	지방정부 또는 년로자보호기관의 역할은 확인되지 않음	×	공식적인 정부기관의 지원은 확인되지 않음
적용 대상	년로자의 연령은 남성 60세와 여성 55세이며, 기본적으로 남성은 노동연한을 충족한 후 노년기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부터 은폐된 실업이 등장함		△	년로자의 연령은 인지하고 있으나 은폐된 실업으로 년로자 연령 이전부터 장마당에서 활동함
급여	생활비와 년금의 동시 수급은 불가함		×	현실에서는 병급 수급이 불가능함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원전에 기초하여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도와 실태 연구의 병행, 1층 이외에 노후소득보장 원천이 될 수 있는 인체보험 및 노년기 근로활동에 대한 분석, 법령을 포함한 각종 사전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관련 용어의 변화 분석,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규명 등 북한원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접근가능한 북한 법령과 사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태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참여한 FGI를 통해 연구결과를 검증하였다.

가. 주요 연구결과 및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북한 노후소득보장의 제도와 실태는 '일부에서만 정합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즉 '계획'이 작동하면 제도가 구현되나 '계획'이 작동하지 않으면 제도로만 존재할 뿐이다.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인체보험, 노년기 근로활동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정도를 완전정합성, 부분정합성, 완정부정합성으로 구분하여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완전정합성의 경우, 노동자·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라는 적용대상, 기여기간 및 생활비등급제라는 소득비례의 원리, 군복무를 포함하여 직장 간 이동 시 가입기간 합산, 이중급여 부재, 조기연금제도 부재,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이다. 부분정합성의 경우, 성별에 따라 5세 차이가 있으나 제도상의 남성 60세, 여성 55세가 아니라 실제로는 남성 61세, 여성 56세 태어난 달부터라는 수급개시연령, 일부 지역과 부문에서 연금을 지급했으나 '계획'이 작동하는 지역과 부문에서만 급여, 피보험자는 통합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실제 금액이 적어 비율을 알 수 없으며 기업소의 납부비율을 확인할 수 없는 사회보험료이다. 완전부정합성의 경우, 제도상의 남성 12년, 10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최소 15년부터 최대 35년까지라는 근로연한, 수급연령 당시 근로활동에 종사해야만 하는 노동규정, 제도상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부재한 양로일시금, 제도상에는 동시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생활비와 연금의 병급수급이다.

2)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완전정합성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적 로동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사무원, 협동농민, 군인, 혁명투사와 그 부양가족, 로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로력자 부재세대라는 적용대상,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경우 일정하게 충족해야 하는 기여기간,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이라는 3가지 급여종류, 일시적보조금 또는 년로년금 수급시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을 할 수 없는 이중급여 불가의 원칙, 업무기인성과 업무불기인성으로 구분되는 직무관련성 원칙, 동사무소

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이다. 부분정합성의 경우, 특정 시기에 일부 지역과 부문에서 지급받았으나 일부는 미지급, 소득비례 원리이나 확인되지 않는 노동강도별 및 근속연한별 소득대체율,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급여이나 확인되지 않는 등급별 소득대체율이다. 완전부정합성의 경우, 제도상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부재한 폐질일시금이다.

3) 유가족년금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유가족년금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유가족년금 제도 존재 자체에 대하여 부정하였기에 완전정합성의 경우는 없다. 부분정합성의 경우, 유가족연금 수급자로서 배우자는 확인되나 부적합한 연령조건, 업무기인성과 업무불기인성으로 구분되는 직무관련성 원칙이다. 완전부정합성의 경우, 유가족연금, 전사자가족 유가족연금, 피살자가족 유가족연금으로 구분되지 않는 급여종류, 제도상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부재한 유족일시금이다.

4) 공로자년금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공로자년금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완전정합성의 경우, 공훈에 따라 누구나 공로자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적용대상기준, 년로년금과 동일한 연령기준, 공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급여수준,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급여수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를 통한 전달체계이다. 부분정합성의 경우, 공로자년금과 공로자유가족년금은 확인되나 공로자로동능력상실년금은 확인되지 않는 급여종류이다. 북한은 공훈 중심의 사회이므로 제도와 불일치한 완전부정합성의 경우는 없다.

5) 인체보험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인체보험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완전정합성의 경우, 임의가입, 적립방식, 장기저축 및 반환적 성격의 보험, 일시금 방식의 만기 · 사망보험금, 만기 · 사망보험금 급여수준은 보험금과 이자의 합, 생활비에서 사전 공제되는 방식의 보험료이다. 부분정합성의 경우, 가입방식에서 집단가입은 존재하나 부재한 개별가입, 제도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 사망보험금, 소속직장 납부 및 은행을 통한 수령방식이나 중앙보험지도기관,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의 존재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전달체계이다. 완전부정합성의 경우, 부재한 로동능력상실보험금, 로동능력 완전상실 및 부분상실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이다.

6) 노년기 근로활동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노년기 근로활동의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년로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노년기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완전정합성의 경우는 없다. 부분정합성의 경우, 누구나 근로활동을 할 수 있으나 장마당에서의 생계유지 활동이 대부분인 비공식적 일자리, 년로자의 연령은 인지하고 있으나 은폐된 실업으로 년로자 연령 이전부터 시작하는 장마당 활동이다. 완전부정합성의 경우, 지방정부 또는 년로자보호기관의 부재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제도상에는 동시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생활비와 연금의 병급수급이다.

나. 학술적 함의

기존 연구에서 설명되지 못했거나 본 연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

을 중심으로 학술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단층이 아니라 다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처음으로 다층화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층으로서 사회보장년금(년로년금), 3층으로서 인체보험, 4층으로서 근로소득이라는 구분을 통해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전체적(holistic)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다. 특히 북한 공적연금제도의 작동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은 북한 노인에게 중요한 소득보장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북한 노인, 특히 여성노인의 상당수가 장마당에서 활동한다고 추정되므로 향후 통일시 북한 노인의 시장에서의 경험은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이것은 시장경제 경험이 없이 체제전환을 단행했던 동구 국가들에서 겪었던 조기연금 및 장애연금의 확대적용과 그로 인한 재정부담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둘째, 공로자년금과 영예군인년금은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가 아닌 통합된 제도 내의 급여수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한 대상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남한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공로자년금과 영예군인년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두 연금을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하나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공로자년금과 영예군인년금은 년로년금과 재원 및 전달체계에서의 차이가 없고 일반 근로자 중 누구나 공훈 정도에 따라 공로자가 될 수 있으며 군인 중 상해를 입을 경우 영예군인이 된다는 점에서 독립된 사회보험제도로 이해하기 어렵다. 두 제도는 공훈이라는 사회적 기여에 기초하여 높은 급여수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급여제도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영예군인년금은 로동능력상실년금의 3가지 급여종류 중 하나이다.

셋째, 별도의 특별연금제도로써 군인연금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남한의 일부 연구에서는 직업군인, 즉 특무상사 이상의

제대군관들이 별도의 군인연금 제도를 받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령이나 사전에서 군인연금제도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서도 한국전쟁 참전군인, 장교급의 제대군인, 영예군인들이 별도의 연금제도를 통해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급여수준이 높을 뿐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별도의 군인연금제도의 부재는 직업군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원, 경비대 등 군인신분인 모든 군기관 종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동독에서는 국가공안부 및 국가안전청 종사자, 경찰 · 소방관 · 형무소 집행관, 군인, 세관원을 대상으로 4개의 특별연금제도를 운영하였으나 북한에서는 군인은 물론이고 특수계층을 위한 별도의 특별연금제도가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를 볼 때, 양로년휼금, 폐질년휼금, 유가족년휼금은 각각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으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법령 및 사전에 기초하여 해방 이후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법령으로 조국광복회 10대 강령(1936),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1946),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 북조선 노동당 강령(1946), 사회보험법(19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1978),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 년로자보호법(200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2010), 사회보장법(2008,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2, 20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사전으로는 정치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3a, 1973b), 경제사전(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1985b),

재정금융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5), 조선대백과사전(백과사전출판사, 1995~200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과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법령과 사전의 연결을 통해 1946년 사회보험법에서 규정하였던 3개의 급여종류가 각각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사회보장년금은 북한의 모든 연금제도를 통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2008년 제정되고 2014년 남한에 공개된 사회보장법에 사회보장년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사회보장년금이라는 용어는 기존 법률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용어이다. 이로 인해 소수 연구는 사회보장년금이 년로년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사회보장년금이 기존의 연금제도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사회보장법만을 분석하고 사전은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1995년 재정금융사전과 1996년 조선대백과사전에는 사회보장년금의 용어의 정의 및 타 년금과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깊이있게 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회보장년금이 기존 제도의 대체 용어 및 새로운 제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가사회보장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년금제도, 대표적으로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규정한다.

여섯째, 사회보장법에서 등장한 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사회보장제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생활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인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방조비, 정휴양비, 료양비이며,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보조금은 영예군인·영예전상자 보조금, 영예군인·영예전상자 간호보조금, 인민군후방가족원호보조금, 장례보조금, 귀국공민부양

가족 생활보조금, 로력자가 없는 사회보장년금대상자세대에 주는 보조금, 의료상 방조비를 지칭하는 것이다. 즉 사회보장법에서 등장한 보조금이라는 용어는 현 노동세대에게 제공하는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이 아니라 현 비노동세대에게 제공하는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보조금이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분석에 있어 법령을 넘어 사전에 기초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실태 분석에 있어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체계적으로 시행한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에 기초할 때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연구내용에서의 후속연구 제언

연구내용 차원에서의 후속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이 작동하는 지역 및 부문과 계획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 및 부문에 대한 시기별 북한연금 지도구축(mapping)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에서 확인되듯이 '계획'이 작동하지 않는 부문과 지역에서는 연금제도도 운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연금지도를 구축하는 연구는 향후 남북한 연금통합 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계획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소한 은폐된 실업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근로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곧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기별로 계획이 작동하는 지역과 부문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장기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농민을 위한 연금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는지를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와 실태에서 농민연금이라는 용어는 발견되지 않으며 일부 농민들도 년로년금과 사회보장금을 받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민도 사회보장년금의 범주에 포함시켜 년로년금 및 로동능력 상실년금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노동자·사무원과 달리 농민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국가예산으로 전환되지 않고 각 협동농장 내에서 자체기금으로 적립되어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예산수입법 제48조인 "협동농장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체사회보험기금으로 적립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유일하게 농민만 별도의 기금을 운영한다. 노동자보다 무려 40년이 지난 시점인 1985년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를 통해 국가사회보험 및 국가사회보장의 적용을 받게 된 협동농장 농민들의 경우, 별도의 자체기금을 적립 및 집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충분히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셋째, 근로연한을 충족하지 못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를 위해 별도의 '년금과 보조금'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다 심도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제2조 사회보장대상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대상에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19조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 지출에 따르면, "사회보장자는 사회보장금증서에 따라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여 사회보장년금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으로만 이해한다면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은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노동연한을 채우지 못한 노인과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들을 위해 지급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써 역할을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있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3개의 층 이외의 0층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는 이러한 대상을 위한 년금과 보조금 시행에 대하여 검증하지 못하였다. 노동연한을 충족하지 못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를 위해 특정한 년금과 보조금 제도에 관하여 보다 더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2000년대 중반부터 전달체계가 동사무소에서 과거 소속단위로 변경되었다는 일부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인터뷰 참여자는 년로년금 집행기관이 동사무소가 아니라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의 과거 소속단위로 변경되었고, 군인들의 경우 동사무소가 아닌 군사동원부에서 연금을 수령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동사무소에서 사회보장 담당 지도원이 없어졌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 배경은 은행에 현금이 없다는 점과 계획이 작동되는 기업소나 군대가 동사무소보다 집행능력이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는 국가가 년로년금 지급 감당이 어려워지자 소속단위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별도의 전달체계가 등장한다는 것은 제도의 분리 또는 급여의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섯째, 로동능력상실년금 수령시 장애정도에 따른 급여차이, 경노동 종사자 구분, 근속연한 조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수령시 장애정도에 따른 급여수준이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수급자는 경노동에 종사해야만 하며 어떤 수급자는 경노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며, 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의 경우 근속연한 조건이 불분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로동능력상실년금 수급 과정에서 회복하여 재배치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례가 없었다. 이에 6개월 간의 일시적보조금 수령 이후 로동능력상실년금 수령 기간 동안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화될 필요가 있다.

나. 연구방법에서의 후속연구 제언

연구방법 차원에서의 후속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북한 원자료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1946년 제정된 북한 사회보험법은 용어 및 제도에서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기초한 제도연구와 인터뷰에 기초한 실태연구를 통해 사회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들이 새롭게 발견된다. 사회보험법에서 규정하였던 용어와 제도들이 1970년대부터 발간된 사전과 북한이탈주민 인터뷰에서는 변화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다양한 법령과 사전 등 북한 원전에 기초한 제도해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북한에 갈 수 없는 현실에서 접근가능한 북한 원자료의 활용은 북한 제도연구에 필수적이다. 공개되어 있고 접근가능한 북한 원자료의 활용은 기존 연구에서 포착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게 한다. 이에 로동신문, 김일성 저작집, 김일성저작선집, 김정일 선집, 조선로동당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등의 출판 단행본, 경제연구 · 근로자 · 사회과학 등의 학술지 논문, 조선로동당대회 및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 및 실험자 효과로 인한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결과의 편향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법령, 사전, 신문, 단행본, 논문 등으로만 북한 노후소득보장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는 제도이해 및 현실파악의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정보습득은 인구학적 특성 및 실험자 효과로 인하여 편향적일 공산이 크다. 특히 인터뷰 참여자로서 북한이탈주민 중 연금수령 경험이 있는 남성노인의 부족은 본 연구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피면접자가 의도한대로 진술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상의 한계가 있으나 북한이

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 파악은 최선의 현실적 대안이다. 과거에는 생계형 탈북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탈북배경을 보면 정치적인 이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연구주제에 합당한 북한이탈주민을 새롭게 표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북한 현지 방문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을 직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 원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라는 간접 경로보다는 북한 연금담당기관, 북한 근로자, 북한 각종 연금수급권자 등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제도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담당기관의 노동기록 및 연금수급 이력에 관한 통계, 개별 노동자의 로동수첩, 로임표, 진단서 등을 열람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통일시대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생산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연명(1991),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북한·통일연구논문집: 경제·사회·인권실태 분야, 통일원.

김연정(2010), “북한 복지체제의 성립과 성격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규(2012), “북한의 사회보장법제”, 법학논총, 36(2), 959-992.

김진수(1996), “통일에 대비한 인구이동 및 사회복지 대책방안”, 한국사회정책, 3, 235-271.

김태성(2003),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의 통합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김준엽 편(2010), “북한연구자료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데일리NK(2016), “북 장마당 동향”, 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2016년 7월 25일 검색.

노용환·연하청(1997), “북한의 주민 생활보장정책 평가: 국가배급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형표·이지혜(2013), “남북한 통일 시 연금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KDI 북한경제리뷰, 15(8), 29-67, 한국개발연구원.

민기채(2014),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비교”,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866-902.

박관우(2002), “통일 대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현(2002),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공적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원·장창수(2014), “북한의 노인복지 법제 분석: ‘년로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6(3), 173-205.

박진·이유수(1994),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한국개발연구원.

백과사전출판사(1995), “조선대백과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1996), “조선대백과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1997), “조선대백과사전 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1998), “조선대백과사전 7”,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1999), “조선대백과사전 1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1999), “조선대백과사전 1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2001), “조선대백과사전 28, 29”,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백진현(1997), “통일한반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망: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 통일한국의 연금제도”, 통일문제연구, 19(1), 143-177.

백진현(2000), “남북한 연금제도의 통합방안”, 산경연구, 7(1), 155-182.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a), “경제사전 1”,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b), “경제사전 2”,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a), “정치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b), “정치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95),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세계농정연구원(2006), “북한의 시장개방 및 농산물 가격체계 변화에 따른 식량수급 정책의 발전방향”, 세계농정연구원.

양문수(2003), “북한의 시장화 초기 거시경제 운용방향”, 아세아연구, 46(2), 33-60.

우해봉·백화종·이지은·노용환(2011), “남북한 통일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국민연금연구원.

윤용문(2014), “남북한 통일 시 공적연금제도 적용방안 및 소요비용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두식(2003),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용하·이정우(2002), “통일시 남북한 연금제도의 통합과정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이철수(2003a), “북한사회복지법령집”, 서울: 청목출판사.

이철수(2003b), “북한사회복지: 반복지의 북한”, 서울: 청목출판사.

이철수(2015a), “북한 「년로자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타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9(1), 57-91.

이철수(2015b), “북한 사회보장법 법적 분석: 기존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4(1), 177-207.

이철수·민기채(2014),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김원섭·이철수·민기채(2014), 통일 연금연구 I, 국민연금연구원.

이현주(2001), “남북 통일에 대비한 공적연금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명봉(2015), “2015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장창수(2016), “남북한의 노인복지법제 통합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기원·강혜규·이상은(1995), “남북한의 인구·보건·사회보장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배·김기옥·김상호·이상은(1992),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공주(1995),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연구”, 사회과학논집, 10, 186-214.

조영국(2005),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9(1), 125-156.

조흥식(2006), “남북한 사회통합과 통합한국의 노동자복지 발전전략: 남한과

북한의 사회통합전략 모색 - 노동자복지를 중심으로", 김선구, 류근관, 이상승, 조흥식, 정지웅(2006), 남북한 사회 경제 통합과 발전전략, 서울대 통일연구원.

차문석(2005), "'고난의 행군'과 북한 경제의 성격 변화 - 축적 체제와 조정 기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8(1), 39-79.

통일부 보도참고자료(2001), 2001년도 북한의 물가동향 조사결과, 통일부.

통일부 북한통계포털(2016), http://www.unikorea.go.kr/download.do?filename=46123_201607110849408350.pdf. 2016년 7월 20일 검색.

BMAS(2016), Uebersicht ueber das Sozialrecht 2016/2017. Berlin: BMAS.

Kloß, M., Lehmann, R., Ragnitz, J., & Untiedt, G.(2012), Auswirkungen veranderter Transferzahlungen auf die wirtschaftliche Leistungsfahigkeit der ostdeutschen Lander, Ifo Dresden Studien.

저자 약력

- **민 기 채**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졸업(경제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박사통합과정) 졸업(사회복지학 박사)
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 체제전환 전후 동독 특별·부가 연금제도의 변화: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 및 방향(공저), 보건사회연구, 36(3), pp.516-552, 2016.
-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운영방식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공저), 보건사회연구, 36(1), pp.377-409, 2016.
- 주요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공저), 국민연금연구원, 2015.
- 슬로베니아 복지체제의 성격변화와 발전요인에 관한 연구: 연금정책과 건강정책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39(2), pp.221-252, 2015.
-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 제도 운영 실태 분석(공저), 국민연금연구원, 2014.

- **조 성 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현 서울기독대학교 조교수

〈주요 저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와 특성 변화 추정(공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4), pp.207-233, 2016.

- 근로빈곤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유인과 걸림돌에 대한 질적 연구(공저), 사회복지정책, 43(2), pp. 241-275, 2016.
-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에 대한 태도와 탈수급 전략에 대한 질적 연구(공저), 사회복지정책, 41(1), pp. 177-212, 2014.

• 한 경 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수료
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주요 저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와 특성 변화 추정(공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4), pp.207-233, 2016.
- 근로빈곤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유인과 걸림돌에 대한 질적 연구(공저), 사회복지정책, 43(2), pp.241-275, 2016.

• 김 아 람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응용통계학
University of Manchester 개발금융학 석사
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

〈주요 저서〉

- Relations of Financial Development and Income Inequ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Dissertation, 2013.

연구보고서 2016-01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2017년 1월 인쇄
2017년 1월 발행

발행인 : 문 형 표
편집인 : 김 성 숙
발행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TEL : 063-713-6778 / FAX : 063-715-6565

ISBN 978-89-6338-331-6